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0019-10

# 2010년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2010. 6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 || 목 차 ||

<b>제 I 장 총괄편</b> .....	1
1. 2010년도 시행계획 개요 .....	3
가. 추진배경 .....	3
나. 2010년도 시행계획의 기본방향 .....	4
다. 2010년도 시행계획에 새로이 반영된 내용 .....	5
라. 추진체계 .....	6
2. 2010년도 주요 추진목표 .....	7
3. 2010년도 부문별 주요 추진방향 .....	10
가. 보건·복지 증진 .....	11
나.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	14
다.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	15
라. 농어촌의 경제활동 다각화 .....	17
마. 문화·여가여건 향상 .....	18
바. 농어촌 환경·경관개선 .....	20
사. 지역발전 역량 강화 .....	22
4. 2010년도 투융자 계획 .....	24

**제Ⅱ장 부문별 시행계획편** ..... 25

**1. 보건·복지 증진** ..... 27

**1-1. 농어업인 생활안정 강화** ..... 27

- 1-1-1-1.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29
- 1-1-2-1.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32
- 1-1-3-1. 농업인 재해공제 지원 ..... 34
- 1-1-3-2. 수산인 안전공제 지원 ..... 36
- 1-1-3-3. 어선원 및 어선보험 지원 ..... 39
- 1-1-4-1. 농작업재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전문가 협력기반 조성 · 42
- 1-1-4-2. 농작업재해 원인구명 및 농작업 안전기술 개발 ..... 45
- 1-1-4-4.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및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 48
- 1-1-4-5. 농작업재해예방 체험매체 개발 및 정보화 지원 ..... 52
- 1-1-5-1. 농부증예방 지원방안 마련 ..... 55

**1-2. 농어촌 보건·의료기반 확충** ..... 57

- 1-2-1-1. 농산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 59
- 1-2-1-4. 공공보건기관 기반 확충 ..... 62
- 1-2-1-5.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 65
- 1-2-2-1.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 ..... 68

**1-3. 농어촌 취약계층 복지 지원** ..... 70

- 1-3-1-1.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73
- 1-3-2-1. 농지담보 노후 연금제도 지원 ..... 75
- 1-3-2-2. 영세·고령농어업인 주거복지 개선 ..... 77
- 1-3-2-3. 경영이양 직불제 ..... 79
- 1-3-3-1. 농산어촌 보육시설 확충 ..... 82
- 1-3-3-2. 농산어촌 만5세아 무상보육 지원 ..... 84
- 1-3-3-3.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87
- 1-3-3-4. 여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 90

1-3-3-5.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	93
1-3-3-6.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	97
1-3-4-1. 다문화 가정 농업 교육 .....	100
1-3-4-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	105
1-3-4-3.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	108
1-3-5-1. 취약농가 인력지원 .....	111
1-3-5-2. 농업인 복지시책 교육·홍보 강화 .....	114
<b>1-4. 농어촌의 능동적 복지기반 강화 .....</b>	<b>117</b>
1-4-1-1.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 .....	118
1-4-3-1. 농산어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120
<b>2.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b>	<b>122</b>
<b>2-1.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b>	<b>122</b>
2-1-1-1.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 .....	124
2-1-2-1.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육성 .....	128
2-1-2-2.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	130
2-1-3-1. 기숙형고교 지정·육성 .....	133
2-1-4-1. 적정규모 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 .....	136
2-1-5-2. 한국농수산대학 개편·운영 .....	139
<b>2-2. 우수 공교육프로그램 확충 및 교원확보 .....</b>	<b>142</b>
2-2-1-1. 우수 영어공교육 프로그램 제공 .....	143
2-2-2-1.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 .....	147
2-2-3-1. 농어촌학교 우수교원 유치방안 마련 .....	150
<b>2-3.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균등 교육기회 제공 .....</b>	<b>154</b>
2-3-1-1.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	156
2-3-1-2.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	159
2-3-1-3. 농어촌 대학생 장학금 지원 .....	162
2-3-2-1.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	165

2-3-2-2. 자연농수산고교 급식비 지원 .....	167
2-3-3-1. 지역균형 선발제 확대 유도 .....	173
<b>3.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b>	<b>175</b>
<b>3-1. 지역주도의 개발체계 정착지원 .....</b>	<b>175</b>
3-1-1-1. 일반농어촌개발(포괄보조) 관리 .....	176
3-1-2-1. 지역개발사업의 민간참여 확대 .....	181
<b>3-2. 정주계층별 선도거점 개발 .....</b>	<b>182</b>
3-2-1-1. 신규마을조성 및 재개발 .....	184
3-2-2-1. 소생활권 종합정비 등 .....	186
3-2-3-1. 지역거점 기능 향상 .....	189
3-2-4-1. 농산어촌형 뉴타운 조성 .....	192
3-2-4-2. 금수강촌 만들기 사업 .....	194
<b>3-3. 농어촌 기초생활여건 개선 .....</b>	<b>196</b>
3-3-1-1. 농어촌주거환경 개선 .....	198
3-3-1-2. 농어촌주택 스레이트 철거·처리지원 .....	200
3-3-1-3.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	203
3-3-2-2. 교통서비스 강화 .....	205
3-3-2-3. 국고여객선 건조 .....	208
3-3-2-4.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	210
3-3-3-1. 정보화마을 조성 .....	212
3-3-3-2. 농어업경영체 정보화 지원 .....	215
3-3-3-3. 농어촌정보이용활성화 .....	218
<b>4. 농어촌의 경제활동 다각화 .....</b>	<b>221</b>
<b>4-1. 농어촌산업 고도화 .....</b>	<b>221</b>
4-1-1-1. 복합산업화지원(포괄보조) 관리 .....	223

4-1-1-2. 향토자원 발굴 및 D/B화 .....	227
4-1-2-1. 농어촌생산물품 수요확대 지원 .....	230
4-1-3-1. 농어촌지역 창업, 기업성장 지원 .....	232
4-1-3-2. 소규모 농업인 창업 및 소득화 지원 .....	235
4-1-3-3. 농어촌 관광상품 품질제고 .....	239
4-1-4-1. 지역간 연계·협력 프로그램 지원 .....	242
4-1-4-2.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舊,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	244
<b>4-2. 체험, 휴양기반 구축 및 도농교류 활성화 .....</b>	<b>247</b>
4-2-1-2. 산림휴양공간 조성 .....	249
4-2-1-3. 수목원 조성 및 산림박물관 건립 .....	254
4-2-2-1.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	257
4-2-3-1. 슬로시티 녹색관광 자원화 .....	260
4-2-4-1.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	263
4-2-4-2. 초·중·고등학교의 농어촌 체험·교류 확대 .....	267
<b>5. 문화·여가여건 개선 .....</b>	<b>269</b>
<b>5-1. 생활친화형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 .....</b>	<b>269</b>
5-1-1-1.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	271
5-1-1-2. 지방테마과학관 건립 지원 .....	274
5-1-2-1.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조성 지원 .....	277
5-1-4-1. 지역문화 컨설팅기반 구축 .....	280
<b>5-2. 농어촌 주민 문화향유 지원 .....</b>	<b>282</b>
5-2-1-1. 방방곡곡 문화예술 지원 .....	283
5-2-1-2. 찾아가는 도서관, 박물관 운영 .....	285
5-2-1-3.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운영 .....	292
5-2-2-1.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	294
5-2-2-2. 향토문화 관광축제 육성 .....	296
5-2-2-3. 지역개발과 문화예술프로그램 연계 .....	299

5-3. 문화예술 전문인력 지원 및 교육강화 .....	303
5-3-1-1. 농산어촌 학교 문화예술교육 확대 .....	304
<b>6. 농어촌 환경·경관 개선 .....</b>	<b>307</b>
<b>6-1.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활용 .....</b>	<b>307</b>
6-1-1-1. 경관보전직불제 .....	309
6-1-1-2. 조건불리지역직불제 .....	313
6-1-2-1. 자생식물원 및 생태숲 조성 .....	316
6-1-4-1. 농촌경관조성 관리기반 기술 구축 .....	320
<b>6-2. 농어촌 환경오염 방지 .....</b>	<b>324</b>
6-2-1-1. 농어촌지역 하수도 설치 .....	326
6-2-1-2.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	328
6-2-2-1. 유기질비료(친환경비료) 공급 .....	331
6-2-2-2. 생물학적 병해충 방제 지원 .....	334
6-2-2-3. 친환경농업기반(지구조성) 구축 .....	337
6-2-2-4.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	340
6-2-3-1. 해양폐기물 정화 및 쓰레기 수거사업 .....	343
6-2-3-2. 소하천정비사업 .....	347
<b>6-3. 저탄소 녹색성장기반 구축 .....</b>	<b>352</b>
6-3-1-1. 목재펠릿 사용 확대 .....	354
6-3-1-2. 유리온실 등에 지열냉난방 지원 .....	357
6-3-1-3. 가축분뇨 자원화·에너지화 .....	360
6-3-1-4. 가축분뇨처리 지원 .....	365
6-3-1-5. 농작물 및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 .....	369
6-3-2-1.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	373
6-3-2-1.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	376
6-3-2-1. 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조성 .....	380

<b>7. 지역역량 강화</b> .....	383
<b>7-1. 지역발전 인적자원 확충</b> .....	383
7-1-1. 단계별·맞춤형 교육훈련 강화 .....	384
7-1-2. 역량강화 교육 품질 제고 .....	387
<b>7-2. 지역발전 컨설팅 강화</b> .....	389
7-2-2-1. 농어촌지역개발 총괄계획가 제도 도입 .....	390
<b>7-3. 지역발전 네트워크 강화</b> .....	391
7-3-1-1. 지역발전협의회 구성 .....	392
7-3-2-1. 전국단위 지역개발 네트워크 구축 .....	394
7-3-3-1. 농어촌개발 포털사이트 확충 .....	395
<b>7-4. 도시민 및 귀농인력 활용 강화</b> .....	398
7-4-1-1. 시군의 도시민 유치활동 지원 .....	399
7-4-2-1. 도농 인재 매칭시스템 구축 .....	402



※ 제2차 기본계획 관리과제(133개) 대비 변경과제 목록

분 류	기본계획	'10년 시행계획	
과 제 통 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4-1(농업재해모니터링시스템구축)</li> <li>• 1-1-4-3(안전한 농촌사회 구현 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4-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2-2(취약계층 작업안전기술 교육매체 개발)</li> <li>• 1-2-2-3(농업인 건강·안정 정보화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4-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1-1(농산어촌 응급의료기관 인프라 확충)</li> <li>• 1-2-1-2(농어촌 119 구급지원센터 확충)</li> <li>• 1-2-1-3(낙도오지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1-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1-3-2(소규모농업인 창업 및 소득화지원)</li> <li>• 4-1-1-3(향토음식자원화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1-3-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1-1-1(경관보전직불제)</li> <li>• 6-1-3-1(경관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1-1-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1-1-1(주민역량교육 강화)</li> <li>• 7-1-1-2(핵심리더 육성)</li> <li>• 7-1-1-3(역량강화교육이수자 pool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1-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1-2-1(우수민간교육기관 육성)</li> <li>• 7-1-2-2(교육쿠폰제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1-2</li> </ul>	
	제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1-3-1(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li> </ul>	사업종료로 제외
	미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1-6</li> </ul>	'11년 이후 계획 수립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2-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5-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6-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4-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2-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2-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2-1-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2-1-1</li> </ul>			

제 *I* 장

총괄편





# 1. 2010년도 시행계획 개요

## 가 추진배경

-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05~'09) 추진에 따라 사회안정망의 강화·기초생활환경 개선 등 많은 부문 성과 달성
  - 범정부적 추진체계 및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주민 참여 및 지역발전 역량 강화
    - \* 먼단위 상수도 보급률 ('04) 36.2% → ('08) 56.8
    - \* 1인당 건강보험료 경감률 ('04) 30% → ('09) 50%
- 하지만, 부처별 계획의 단순취합, 시도·시군 계획의 중앙단위 계획 모방, 서면평가 위주의 일회성 점검·평가제도 등의 한계 노정
  - \* 「삶의질 향상 기본·시행계획 추진 평가 및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연구」(농경연)
- 제1차 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농산어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10~'14) 수립('09.12)
  - 7개부문 133개 과제(일부과제 통합)로 1차 계획과는 달리 분류
    - \* 제1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4대 분야(교육, 복지, 지역개발, 복합산업) 중 지역개발, 복합산업 분야 일부 사업이 포괄보조사업으로 통합
- 변화된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 수립·추진
  - 관계부처별로 업무소관에 따라 세부과제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
- 시행계획에 대한 점검·평가를 통해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환류시스템 구축으로 기본계획 투융자의 효율성 제고

◇ 법적근거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 제6조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나 2010년도 시행계획의 기본방향

- '10년은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기본계획('10~'14)의 시행 1차 연도로 제1차 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수립 경험과 점검·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하되 새롭게 변화된 점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 추진
  - 각 부처에서는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새로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사업별로 '10년도 사업목표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추진
- 광특회계 개편 및 포괄보조사업의 도입으로 기존 균특회계 210개 사업이 24개 사업군으로 관리됨에 따라 각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적합한 차별화된 사업 추진 가능
  - 재원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하고 시도별로 부여된 한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설계
  - '09년 삶의 향상 사업 기준 포괄보조 대상 사업
    - \* (농식품부)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지표수보강개발, 소규모 용수개발, 농촌생활 정비, 전원마을조성, 농촌마을종합개발,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신활력지역 지원, 어촌종합개발
    - \* (행안부) 도서종합개발, 소도읍 육성, 접경지역지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국토부) 개발촉진지구지원, 주거환경개선,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 \* (산림청) 산촌생태마을조성, (환경부) 도서지역식수원 개발
- 농어촌 서비스기준 세부운영방안(실태조사·평가방법 등)을 마련하고, 농어촌영향관리 가이드라인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대상정책 등) 실시
- 금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11년 상반기 중 점검·평가하여 이를 '12년 예산에 반영토록 함
  - 이를 위해, 금년 하반기에 점검·평가단의 현지점검 등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사전점검 실시

## **다** 2010년도 시행계획에 새로이 반영된 내용

- 광특회계 개편 및 포괄보조사업 등의 도입으로 각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적합한 차별화된 사업 추진
  - 지역주도의 지역개발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인적자원 확충, 지역리더 양성, 지역발전협의체 구성 등 지역 참여 확대
- 다양한 주체간의 연계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농어촌지역 복지·교육·문화·지역개발 등 추진
  -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정부-민간, 지자체간, 관련 부처간 관련 사업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정책 효과성 확대 및 시너지 효과 유도
- 저탄소 녹색성장기반 구축 등을 통해 환경경관 개선에 대한 소극적 정책에서 적극적 정책으로 확장
  -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목재펠릿 사용 확대, 농작물 및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 등을 통해 경관개선 뿐만 아니라 친환경에너지 확보 및 저탄소 경제 실현
- 농어촌 지역의 인구 및 가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농업기초교육,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한국어교육, 가족교육·상담 등을 통해 적응 지원
- 농어촌 주민의 문화향유 지원 강화
  - 국립예술단체, 도서관, 박물관이 문화소외지역에 직접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제공
  - 생활문화공동체 지원, 향토문화 관광축제, 문화이모작 등을 통해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생활 유도

## 라 추진체계

- 지자체 수요 및 농어촌 지역주민의 의견, 부처협의 내용을 반영하고, 기본계획의 비전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에서 시행계획 수립
- 과제에 따라 다양한 주체 간 협력·연계 등 네트워크 구축



※ 일부 과제만 예시로 나타냄

## 2. 2010년도 주요 추진 목표

<b>비 전</b>	<p>◇ <b>삶터, 일터, 쉼터가 조화된 행복한 농어촌 구현</b></p> <p>○ 기초생활인프라와 복지기반이 갖추어지고, 다양한 산업이 발전하며, 누구나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농어촌</p>
----------------	---



		최종목표 (2014)	2009년까지 실적	2010년 추진목표	
<b>'10 년 목 표</b>	<b>보 건 · 복 지 증 진</b>	<b>농어업인 생활안정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률(%)/ 사망시 보상(백만원) 60/100</li> <li>○ 수산인 안전공제 가입률(%)/ 사망시 보상(백만원) 50/8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9/60</li> <li>○ 20/4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1/60</li> <li>○ 30/60</li> </ul>
		<b>보건·의료 기반확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급의료기관 설치 : 100%</li> <li>○ 119구급센터 설치 : 175개소(1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3.6%</li> <li>○ 0개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7.1%</li> <li>○ 50개소</li> </ul>
		<b>복지지원 및 기반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시설 확충 834개소</li> <li>○ 농촌건강장수마을 388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78개소</li> <li>○ 91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개소(494)</li> <li>○ 59개(150)</li> </ul>
	<b>농 어 촌 교 육 여 건 개 선</b>	<b>교육기회 강화 및 교육품질 제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교(4년제) 진학률 : 60%</li> <li>○ 연중돌봄학교 육성 : 826억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9.6%(‘08)</li> <li>○ 378교지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2%</li> <li>○ 383교, 230억</li> </ul>
		<b>교육비 부담 경감 및 균등 교육기회 제공</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대학생 장학금 - 마사회적립금에 따라 변동</li> <li>○ 원어민 영어수업 기회 확대 (학 교수/ 영어봉사장학생수) 4000개교/600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0억</li> <li>○ 2,655/54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9억</li> <li>○ 3,000개교/600명</li> </ul>

※ '14년 최종목표(예산 및 물량)는 중기재정계획('10~'14)에 따라 변동 가능



		최종목표(2014)	2009년까지 실적	2010년 추진목표	
'10 년	기초생활인프라확충	지역주도의 개발체계 정착지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포괄 보조사업 예산 : 1조852억	- ○ 9,736억원	
		정주계층별 선도거점 개발	○신규마을조성 및 재개발 : 200개소 ○소생활권 종합정비 수혜가구수 : 400천 가구	○ 64개소 ○ 92.8천 가구	○ 59(123) 개소 ○ 32(124.8)천 가구
		농어촌 기초생활 여건 개선	○면단위 생활용수 공급 상수도 보급률 : 75%	○ 59.8%	○ 60%
목표	농어촌의 경제활동다각화	농어촌산업 고도화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예산 : 2,660억원 ○향토사업 지원 : 22개 시군 ○소규모창업지원 : 458개소 ○농촌관광상품개발건수 : 25 (매년 5건씩)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舊,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 지원 : 100개소(~'16)	- - ○ 135개소 - ○ 54개소	○ 2,356억원 ○ 10개 시군 ○ 33개소(168개소) ○ 5건 ○ 54개소
		체험, 휴양기반 구축 및 도농교류 활성화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 지역네트워크 사업 : 270 - 농촌교육농장 : 820 - 농촌체험활동 기술보급 : 140 ○팜스쿨 시범운영 : 100개교	- 42개소 - 64개소 - 40개소 -	- 20개소 - 64개소 - 20개소 ○ 20개교

		최종목표(2014)	2009년까지 실적	2010년 추진목표	
'10 년 목 표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 문화향유 지원	○농어촌공공도서관 : 260관 (13년까지)	○ 243개관	○ 19개관 지원 (신규 7, 계속 12관)	
		○지방테마과학관 확충 (지원 수/완공 수) 40/37	○ 34/17	○ 8/4	
	문화향유 지원 및 문화예술 전문인력 지원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확충 : 75개소	○ 28개소	○ 5개소 조성	
		○국립예술단체 수혜대상 : (매년 약 80개소, 55천명)	-	○ 80여개소, 54천명	
	농어촌 환경· 경관개 선	농어촌 어메니티의 관리활용 및 환경오염 방지	○지방문화원 살버문화프로그램 : 170개	○ 137개	○ 150개
			○경관보전직불제 16,600ha	○ 15,600ha	○ 16,600ha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		○하수도 보급률 71%	○ 49.2%('08)	○ 53%	
	○화학비료 사용량 200kg/ha	○ 292kg/ha	○ 277kg/ha		
지역 발전 역량 강화	인적자원 및 컨설팅 강화	○목재펠릿 공급확대(~13) - 펠릿보일러 11,050대 - 펠릿제조시설 38개소	○ 3000대/5개소	○ 4000대/8개소	
		○주민역량강화 교육 인원 : 60천명	○ 26천명	○ 31천명	
	도시민 등 귀농인력 활용 및 지역발전 네트워크 강화	○체험마을 사무장 확대 : 1000명	○ 465명	○ 605명	
○도시민 농어촌 유치 10,000명		○ 2,664명	○ 600가구(약1500명)		
		○시군의 도시민 유치활동 지원 : 30개 시군	○ 10개	○ 22개	

※ 2010년 추진목표의 ( )는 누적치

### 3. 2010년도 부문별 주요 추진방향

- ◇ 생활안정강화, 보건·의료확대, 취약계층지원 등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보장
  - 농어촌공동체 회사 육성 등 민간기업·사회단체 참여를 유도하여 능동적 복지실현
- ◇ 농어촌특성을 살린 교육기반·교육력 강화를 통해 교육여건 개선
  - 전원학교·돌봄학교 육성 등 우수학교를 육성하고, 급식비·학자금 지원 확대를 통해 교육비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 확대
- ◇ 민간참여 확대·선도거점개발 방식의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농어촌 생활공간 창조
  - 주택개량·상수도 정비, 교통정보기반 확충 등 기초생활환경정비
- ◇ 농어촌산업 고도화·고부가가치화와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농어촌산업 육성 및 다양한 일자리 창출
  - 향토자원을 활용하여 산업 융복합화를 추진하고 농어촌체험마을과 농어촌유학제도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도농교류 활성화
- ◇ 문화·여가 인프라구축, 문화향유 기회 확대, 전문인력 파견·교육 확대를 통해 농어촌의 문화·여가 여건 향상
  - 문화공간·생활체육공간을 조성하고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확대 지원,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예술전문 인력 파견
- ◇ 경관개선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농어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녹색성장기반을 확충하여 농어촌 환경·경관 개선
  - 농어촌 어메니티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고 하수도 정비 및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확대를 추진하여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활용 제고
- ◇ 농어촌 인재육성과 민간과 정부, 농어민과 도시민의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적 개발을 통해 지역발전 역량 강화

## 가 보건·복지 증진

### (1) 농어업인 생활안정 강화

◇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을 내실화하고 농작업 재해·안전사고 재해보장 확대 등 사회안전망 지속 확충

-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에 대해 건강보험료 50% 경감 지원 지속
  - 경감률 50%(농식품부 28%+복지부 22%)를 유지하여 의료비 부담 경감 및 복지 증진 도모
- 농어업인의 국민연금보험료를 국고로 최대 50% 지원
  - 기준소득금액 상향 조정 : ('09) 730천원→('10) 790천원
  - 소득이 790천원 이상시 정액지원(35,550원), 미만시 정률지원(50%)
- 재해공제 가입률 제고를 통해 농림어업인 생활안정 도모
  - 농업인 재해공제 가입률 제고 : ('09) 49.1% → ('10) 51.0%
  - 수산인 재해공제 가입률 제고 : ('09) 20% → ('10) 30%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지원을 통해 열악한 연근해 어선의 조업여건 개선 및 조업원들의 생활안정 강화
  - '10년도 어선원/어선 재해보험가입률 목표치 : 12.2%/6.0%
- 농작업재해 원인규명 및 농작업 안전기술을 개발하고 농작업으로 인한 사고 및 질환 발생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관련 정책을 지원

## (2) 농어촌 보건·의료 기반 확충

◇ 응급의료 인프라 등 공공 보건의료 시설을 확충하고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여 농어촌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 농어촌 주민 의료비 부담 감소 및 건강증진을 위해 농어촌 지역 공공보건기관의 시설·의료장비 현대화 지원
  - 지방의료원 34개, 적십자병원 6개를 신·증축, 개·보수
- 응급의료 취약지에 응급의료기관을 지정·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22개군의 민간의료기관을 응급의료 기관 지정·지원
  - 119 구급지원센터 50개소 설치, 헬기(8대) 내 응급구조장비 구비
  - 118만가구를 대상으로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인력이 직접 찾아가 가구별·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 (3) 농어촌 취약계층 복지지원

◇ 영세·고령농, 다문화가족, 영·유아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돌봄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 등을 통해 복지지원을 내실화

- 영농 및 가사도우미 지원·농지담보 노후연금제도 등을 통해 영세·고령 농업인의 안정적 생활 유지 도모
  - 공동체 홈 모델 개발, 집 고쳐주기 등을 통해 주거복지 개선하고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를 대상으로 경영이양직불제 실시
    - \* 경영이양직불제는 연령(65~70세)에 따라 ha당 250천원을 75세까지 매월 분할지급

- 국공립보육시설 신·증축, 만5세아 무상보육지원, 영유아양육비 지원 등을 통해 육아 부담 경감,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 유도
- 국공립보육시설 16개소를 신·증축, 만5세아 무상보육 확대
-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기초농업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에서 한국어교육, 가족교육·상담 등 종합적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9개소 운영, 센터내 다문화 언어지도사 배치
- FTA 등 농어업개방화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민에게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원활한 전업 지원, 농어민 소득향상 등 가계안정에 기여
- 실효성확보를 위해 소정훈련일수의 80%이상을 출석한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원(총 916백만원, 415명 지원)

#### (4) 농어촌의 능동적 복지기반 강화

◇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 등을 통해 지역의 사회서비스 수요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민간의 복지서비스 전달기능 활성화

- 농어촌에 기반한 공동체를 형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기업방식으로 경영하는 농어촌 공동체회사를 육성하여 농어촌 일자리 및 소득 창출 등 지역 사회 활성화에 기여
-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10 상반기 통과 추진)
  - \* 농어촌 유학 시범사업 추진(100백만원, 3개소)
- 농어업인의 활용도가 높은 농수협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활용하여 복지사업 공동 추진 방안 모색
- 복지전달 체계의 효율성 제고와 정책대상에서 누락방지 효과 기대

## 나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 (1)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 농산어촌 전원학교 및 연중돌봄학교 육성, 기숙형고교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해 농어촌 현실에 맞는 교육·복지 학교모델 창출

□ 초·중학교 110개교를 전원학교로 육성, 학기중·방학중·주말 등에 교육·문화·복지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연중돌봄학교 지원, 저렴한 방과후 서비스 제공

○ 전원학교 110개교 육성, 연중돌봄학교 383개교 지원

□ 150개교 기숙사 시설비 50%를 지원하고,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통해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 및 교육여건 개선

□ 한국농수산대학의 학제 개편, 실습 강화와 졸업자·창업후계농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로 우수 농어업인력 양성

### (2) 우수 공교육프로그램 확충 및 교원 확보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확대 및 우수교원 확보 등으로 농어촌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학습능력 향상

□ 재외동포 대학생, 원어민 자원봉사자 등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 지원 및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근무기피 학교·지역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교원을 선발, 교사업무부담경감

### (3)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균등 교육기회 제공

#### ◇ 농어촌 지역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학입학 기회를 확대

- 고교학자금 지원,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농수산계고 급식비 지원 등을 통해 교육비 부담 경감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용자 지원, 장학금 지원, 지역균형 선발제 확대를 유도하여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대학입학기회 확대
  - 총27천명에게 등록금 전액 학자금 용자 지원
  - 농촌희망재단을 통해 총 3,420명에게 장학금 지원

#### **다**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 (1) 지역주도의 개발체계 정착지원

#### ◇ 지자체에 예산과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정부는 간접 지원하는 상향식 개발체계 정착

- 포괄보조제도 도입으로 지자체의 사업추진 자율성 확대됨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상향식 지역개발정책 추진 유도
  - 지자체 포괄보조사업 계획수립 지원 및 지역개발조직 및 전문가 등의 지역개발 역량 강화 지원
- 농촌생활환경정비에 민간참여 확대(마을정비조합)로 파트너십에 의한 지역개발 추진으로 농촌지역의 활성화



## (2) 정주계층별 선도거점 개발

◇ 「마을-소생활권-거점읍·면-중소도시」로 이어지는 지역개발의 기본 패턴을 정립

- 면소재지에 생활편의·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농어촌지역의 거점공간으로 육성
  - 생활편의시설, 문화복지시설, 지역상권시설 등 시설위주로 지원
- 소생활권 종합정비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 농어촌형 뉴타운 및 다양한 모델의 마을 조성을 통해 농촌인구유지 및 지역활성화 도모
  - 신규마을 조성 및 재개발 사업 59개소 22,345백만원 지원
  - 농어촌뉴타운 ('09) 5개소 시범사업 지정 → ('10) 공사시행 및 입주자 선정 → ('11) 공사완료 및 입주

## (3) 농어촌 기초생활여건 개선

◇ 농어촌 어디에 거주하든지 기본적인 기초생활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종합 정비

-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슬레이트 지붕 처리 연구사업 지원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제고하고, 상수도 시설 및 대중교통시스템 개선
  -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에 4000억원 대출지원
  - 공영버스 지원(25억원) 및 내항여객선 운임보조(정률지원 20%)
- 농어촌 마을 정보화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실시
  - 정보화마을 컨설팅 지원, 전자상거래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자 육성

## 라 농어촌의 경제활동 다각화

### (1) 농어촌산업 고도화

◇ 향토자원을 활용한 1-2-3차 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해 농어촌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고용과 소득의 안정적 성장 토대를 구축

-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이 포괄보조사업으로 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 생산·유통기반 구축 및 향토기업 집적화 기반 조성
  - 농산어촌의 향토자원을 조사, 발굴 및 DB화
  - 농산업·향토자원 등의 지역간 연계협력 촉진으로 시너지 효과 유도하고, 지역의 산·학·관·연이 주도하는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舊,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추진
    - \* 1-2-3차산업의 공동마케팅강화, 특화품목(한방약초, 천일염 등)의 시군간 협력 촉진
- 농어촌 생산품의 전시·판매 등 종합적 홍보·마케팅을 통하여 농어촌생산품의 수요확대 촉진
  - 제2회 농어촌산업박람회 개최('10.7) : 우수 시·군 및 농어촌산업 대상 시상, 지자체별 테마관 개설 및 개발 농산품 전시
- 농어촌지역 창업, 기업성장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어촌 경제활성화
  - 여성농업인의 소규모 창업지원, 전문 컨설팅 지원체제 확보
- 도시민의 수요에 맞는 농촌체험관광 상품개발을 통해 농가소득향상 및 농촌지역 공동체 복원에 기여

## (2) 체험, 휴양기반 구축 및 도농교류 활성화

◇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체험·휴양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도농교류 생활화를 통해 농어촌지역 사회·경제 활성화 유도

- 야영시설 인프라 구축, 자연휴양림 조성, 공립수목원 조성, 산림박물관 건립을 통해 산림문화와 휴양이 연계된 산림휴양공간조성
- 농촌체험과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농어민, 도시민,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육, 컨설팅, 홍보 등 다양한 지원사업 시행
  - 농촌 어메니티 자원을 관광상품화하여 부가가치 향상
  - 도농교류센터 운영 및 도농교류 안테나 숍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농어촌 체험 활성화 및 문화사업 등 도농교류 촉진
- 도시학교와 농촌체험마을 사이에 1교1촌 결연을 맺어 팜스쿨(Farm school) 시범운영(20개소)

### 마 문화·여가여건 향상

#### (1) 생활친화형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

◇ 주민의 수요,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농어촌에 부족한 문화, 학습, 체육관련 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연계 운영

- 농어촌 지역 공공도서관, 지방테마과학관을 지원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전문가 등을 이용한 컨설팅 제공으로 문화인프라 구축
- 공공 체육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자체의 읍·면 단위에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및 문화체육센터 설치를 지원

## (2) 농어촌 주민 문화향유 지원

### ◇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생활 속 문화향유 기회 확대

- 국립예술단체의 우수공연 프로그램을 소외지역 문예회관 및 연계 시설에 제공하고,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위해 문화예술단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지원(12억)
- 농식품부와 문화부가 MOU를 맺어 공동노력함으로써 농어촌의 문화향수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관광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 문화이모작, 대학생 농촌문화, 문화농부키움 등 문화를 매개로 한 사업들을 통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3) 문화예술 전문인력 지원 및 교육강화

### ◇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확충·파견 지원 및 농어촌학생의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

- 국악, 연극, 영화 등 분야별 전문 예술강사를 전국 초·중·고교에 파견/지원하여 학생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지원
- 5,436개교 174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예술강사 4,136명 파견
- 지역 현장예술인을 예술강사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강사비(시간당 4만원 보조)로 총사업비 625억원 지원

## 바 농어촌 환경·경관 개선

### (1)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활용

◇ 지역주민 주도로 어메니티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확충

- 경관보전직불제를 통해 유휴농지를 활용한 경관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활성화를 도모
  - 16,600ha에 대해 224억원 지원(국고 70%, 지방비 30%)
- 농촌경관계획 및 경관맵 현장적용 연구, 농촌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정보서비스 구축 연구를 통해 농촌경관조성 및 농촌어메니티 자원관리기반 구축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 도모하고 지역 공동화 예방

### (2) 농어촌 환경오염 방지

◇ 농어촌의 생활 및 농어업 생산 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요인을 최소화

- 공공하수도,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13개소) 설치하여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개선하고 영농·해양 폐기물 수거·처리지원
  -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 '12년까지 64%로 달성, '10년도 2,940억원 지원

○ 폐비닐 수거 비용 1,950백만원 지원

- 유기질(친환경) 비료 사용 및 생물학적병해충방제(천적, 미생물)를 지원하여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추진
-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마을단위 퇴비장, 미생물배양기 등 생산시설과 저온창고, 선별장 등 유통시설 지원

### (3) 저탄소 녹색성장기반 구축

◇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쾌적한 농어촌을 만들고, 에너지 자립도 제고 및 난방비 부담 완화

- 신재생 에너지 활용 기반 조성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어촌 조성 및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
  - 목재펠릿의 생산·보급지원, 유리온실 등에 지열냉난방을 지원
  - 농작물·해조류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에 4,665백만원 지원
- 가축분뇨 처리 시설·장비 등을 지원, 가축분뇨의 자원화·에너지화 추구
-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를 활용하는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하여 지역내 가용 자원 활용, 일자리창출에 기여
  -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 실행계획('09.7월)에 따라 각 부처가 유형별로 시범 추진 중

## 사 지역발전 역량 강화

### (1) 지역발전 인적자원 확충

#### ◇ 농어촌 주민과 마을리더 등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 강화

- 리더 양성 과정, 사업 동기화 과정, 사업 특화 과정 등 3개 과정 하에 교육 대상별(지역리더, 주민, 지자체 공무원)로 특화된 8개의 세부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수준에 맞는 교육 시행(1,073백만원 지원)
- 체험지도사와 마을해설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자를 정부가 인증하여 교육품질 제고 및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

### (2) 지역발전 컨설팅 강화

#### ◇ 지역주도의 지역개발체계 정착을 위해 컨설팅 지원 내실화

- 지역개발 우수 컨설팅 기관 인증제 도입 추진
  - 컨설팅 품질제고 및 수요자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컨설팅업체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우수기관으로 인증
- 농어촌정비계획 수립의 전 과정을 진행·조정할 수 있는 총괄계획가 제도 도입
  - 농어촌정비법 제54조에 따라 농어촌계획·지역개발 관련 학과 교수, 박사·기술사로 경력이 7년 이상이고 전문지식을 겸비하여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을 총괄계획가로 위촉

### (3) 지역발전 네트워크 강화

◇ 마을리더, 전문가, 컨설팅업체 등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유도하여  
정보교환 및 지역 간 연계사업 활성화

- 농어촌지역발전협의회가 지역개발 등 지역사업의 발굴, 계획수립, 모니터링 등에 참여하여 지역주도의 상향식 지역개발정책 추진
  - 지역주민, 관계 공무원, 지역개발 전문가로 구성
- 전국단위 지역개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농어촌 지역개발 전문가의 역할과 참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정책포럼 구성
- 농어촌 포털사이트 확충을 통해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어촌 체험 관광과 농촌 이주·정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
  - 체험여행 상품정보를 기반으로 GIS 지도서비스, 투어맵과 연계하고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홍보 추진으로 포털 인지도·만족도 제고

### (4) 도시민 및 귀농인력 활용 강화

◇ 도시 우수 인력을 농어촌 지역개발에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

- 시·군이 자체 ‘도시민농촌유치 지원계획’ 수립 및 유치활동 추진시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비용 지원(22개 시군, 시·군당 5~6억원 이내)
- 농어촌 지역에 관심 있고 일하고자 하는 도시민(기술자 및 단체, 농작업인력 등)의 인력활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함으로써 농어촌 활력화 도모 및 도시민 일자리 창출
  - 도시지역 자원봉사자를 통한 농어촌지역 복지·의료·교육 등 지원



#### 4. 2010년도 투융자 계획

□ 2010년도 투융자 규모는 6조 1,457억원으로 제2차 삶의 질 향상 5개년 투융자 총액 34조 385억원의 18.1% 수준, '09년도의 5조 3,108억원 대비 15.7% 증가

##### □ 재원별 투융자 규모

○ 국비는 3조 7,157억원, 지방비는 2조 2,403억원, 민자 등 기타는 1,897억원으로 구성

##### □ 분야별 투융자 규모

○ 복지 8,685억원, 교육 7,068억원, 기초생활기반확충 2조 2,092억원, 경제활동다각화 7,646억원, 문화·여가 1,302억원, 환경·경관 1조 4,663억원으로 구성

##### <재원별>

(단위 : 억원)

국 비	지 방 비	기 타	합 계
37,157	22,403	1,897	61,457

##### <분야별>

복 지	교 육	기초생활 기반확충	경제활동 다각화	문화·여가	환경· 경관	합 계
8,685	7,068	22,093	7,646	1,302	14,663	61,457

# 제 *II* 장

## 부문별 시행계획편





# 1. 보건·복지 증진

## 1-1. 농어업인 생활안정 강화

### (1) 개관

#### □ '10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농어촌거주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를 28% 지원
  - 경감률 50%(농식품부 28% + 복지부 22%)를 유지하여 의료비 부담경감 및 복지증진 도모
- 농어업인의 국민연금보험료를 국고로 최대 50% 지원
  -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 상향조정 : ('09) 730천원 → ('10) 790천원
  - 소득이 기준소득금액 이상 시 정액지원(35,550원), 미만 시 정률지원(50%)
- 재해공제 가입률 제고를 통해 농림어업인 생활·경영 안정 도모
  - 농업인 재해공제 가입률 제고 : ('09) 49.1% → ('10) 51.0%
  - 수산인 재해 공제 가입률 제고 : ('09) 20% → ('10) 30%
  - 어선원/어선 재해보험가입률 현행 유지 : ('09~'10) 12.2% / 6.0%
- 전문인력활용 및 기술개발을 통해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작업재해를 예방, 농림어업인의 안전성 향상
  - 농작업재해 통계수립·감시체계 구축하고 농작업안전모델 시범(개소당 3년간 2억) 및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개소당 5천만원)
  - 농작업재해 원인 구명을 통하여 업무상재해 판정 근거 마련, 안전관리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농작업재해 발생 예방
- 연구용역을 통한 농부증예방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영농관련 질환을 예방

□ 예산 내역

<2010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159,423				159,423			159,423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93,977				93,977			93,977
농업인 재해공제 지원	33,224				33,224		33,224	66,448
수산인 안전공제 지원			1,221		1,221			1,221
어선원 및 어선보험 지원			62,921		62,921			62,921
농업재해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380	380			380
농작업재해 원인구명 농작업 안전기술 개발			400		400			400
농작업재해예방 체험매체 개발 및 정보화 지원			300		300			300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1,320	3,369			4,689	4,689		9,378
농부중예방 지원방안 마련								비예산 사업
합계	287,944	3,369	64,842	380	356,535	4,689	33,224	394,448

□ '11년도 추진 방향

- 건강보험료 지원절차 및 서식의 법정화를 추진하여 업무의 효율화 도모
- 국민연금보험료 기준소득금액 상향(79천원→85천원) 및 여성협업농 연금보험료 지원으로 농어업인의 노후대비 강화
- 재해공제 보상금액·가입대상·지원율 등 확대를 통한 농림어업인 부담경감
  - 농업인 재해공제 사망시 보상금액 '14년까지 산재보험수준(100백만원)으로 확대
  - 어업인(78천명)과 비어업인배우자(12천명)를 포함한 보험가입대상 확대
  - 어선원/어선보험 지원 부가보험료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 : ('10) 75% → ('11) 100%
- 농작업 안정성 향상위해 필요한 연구 강화 및 예산확보

< 1-1-1-1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농촌사회과	담당자	박성우(서기관)
전화번호	02-500-1819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경감 및 복지증진 도모
- 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의료보장 사각 지대 해소

○ 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추진방향에 대한 개괄적 서술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세대당 지원액	건강보험공단 정산자료 (전체 지원액 ÷ 전체 가구수 ÷ 12개월)	천원	50

○ 사업 추진근거

-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및 33조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추진절차 : 보험료 납입고지(공단→농어업인) → 보험료 납입(농어업인→공단)  
→ 보험료 지원(농식품부→공단) → 사업비 정산(공단→농식품부)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

- 사업 규모(사업량) : 463천 세대
- 지원금액 및 형태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의 28% 지원, 민간보조
- 지원조건 : 국고 100%
- 사업 주요내용 :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세대 중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에게 건강보험료(28%) 지원
- \* 건강보험료 차등지원(안) 관련 법률 개정안 복지위 제출('09.4.20)
  - 부과점수 1250점 이하 : 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부과점수 1250~2500점 이하 : 1250점 해당 보험료의 28% 정액지원(14~28%)
  - 부과점수 2500점 초과 : 지원 배제
- 시도별 배분내역 : 해당 없음(공단을 통해 일괄 지원)

○ 예산

- 사업기간 : '04년 ~ (계속 사업)
- 재원형태 : 국비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170,704	-	-	-	170,704	-	-	170,704
2010	159,423	-	-	-	159,423	-	-	159,423
(증△감)	△11,281	-	-	-	△11,281	-	-	△11,281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건강보험료 지원절차 및 서식의 법정화를 추진하여 건강보험료 지원업무의 효율화 도모
- 관련 법령(농어촌 보건복지 특별법, 개정안 복지위 계류)이 개정되는 대로 부과점수별 차등 지원을 추진하여 형평성 확보

	사업규모 (천 세대)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135	8,346						8,346
'10	463	1,594						1,594
'11	434	1,629						1,629
'12	423	1,668						1,668
'13	413	1,707						1,707
'14	402	1,748						1,748



< 1-1-2-1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농촌사회과	담당자	박성우(서기관)
전화번호	02-500-1819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어업인에 대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 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추진방향에 대한 개괄적 서술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납기내 징수율	연금보험공단 정산자료 (납기내 징수인원 ÷ 전체 대상자 × 100)	%	86

○ 사업 추진근거

-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국민연금공단,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추진절차 : 보험료 납입고지(공단→농어업인) → 보험료 납입(농어업인→공단)  
→ 보험료 지원(농식품부→공단) → 사업비 정산(공단→농식품부)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
- 사업 규모(사업량) : 243천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의 최대 50% 지원
- 지원조건 : 국고 100%
- 사업 주요내용 :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농어업 소득이 농외소득보다 많은 지역가입자 농어업인에게 연금 보험료 지원
  - 연금 신고소득 79만원 이하 : 연금보험료의 50% 지원
  - 연금 신고소득 79만원 초과 : 35,550원/월 정액 지원
- 시도별 배분내역 : 해당 없음(공단을 통해 일괄 지원)

○ 예산

- 사업기간 : '95년 ~ (계속 사업)
- 재원형태 : 국비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91,665	-	-	-	91,665	-	-	91,665
2010	93,977	-	-	-	93,977	-	-	93,977
(증△감)	2,312	-	-	-	2,312	-	-	2,312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국민연금보험료 기준소득금액 상향(79천원→85천원) 및 여성협업농 연금보험료 지원으로 농어업인의 노후대비 강화

	사업규모 (천 세대)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98	4,784					4,784	
'10	243	940					940	
'11	222	921					921	
'12	216	949					949	
'13	211	975					975	
'14	206	999					999	

< 1-1-3-1 : 농업인 재해공제 지원(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농업금융정책과	담당자	이두형(주무관)
전화번호	02-500-1743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림업인(이하 “농업인”)의 농림업관련 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 육성
- 농기계의 각종 사고 및 파손을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재산적 피해에 대한 신속한 재생산 여건 조성
- 농작업과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발생시 지급하는 보상수준의 현실화를 통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 여건 조성

○ 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농가의 생활 불안전 해소와 안정적인 농업경영여건 조성을 위해 공제 지원 확대 및 상품개선 등으로 재해공제 가입률 제고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농업인 재해공제 가입률	$(\text{당년도 재해공제 가입자 수} / \text{공제가입대상 농림업 경제활동인구}) \times 100$	%	51.0

○ 사업 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에 대한 지원)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사업추진절차 : 자금교부 요청(농협→농식품부)→자금교부(농식품부→농협)  
→가입신청(농업인)→공제증권 발급(농협)→정산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총사업비 : 33,224백만원
- 사업 지원대상 : 농업인
- 사업 규모(사업량) : 농업인 79만명, 농기계 25천건
- 지원조건 : 국고 50%, 자부담 50%
- 사업 주요내용 : 농업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농업인재해공제의 기본 공제료 50% 지원

○ 예산

- 사업기간 : '96년 ~
- 재원형태 : 국비 50 %, 자부담 50 %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32,176				32,176		32,176	64,352
2010	33,224				33,224		33,224	66,448
(증△감)	1,048				1,048		1,048	2,096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농업인 실익증대를 위해 보장 수준을 단계적 확대
  - 사망시 보상금액을 '14년까지 산재보험수준(100백만원)으로 확대
- 홍보강화 및 상품개선 등으로 공제 가입률 제고

< 1-1-3-2 : 수산인 안전공제 지원(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수산개발과	담당자	양진문 사무관
전화번호	02-500-2335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한·미 FTA 협상타결에 따라 어선에 승선하지 아니하는 수산인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상 강제가입 대상자가 아닌 어선원을 보장하는 수산인전용공제를 산재보험 대응상품으로 개발하여 수산인의 근로의지를 고취하고 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 수산업에 종사하는 수산인에 대한 일상적 경제활동 중의 상해를 보장하여 생활안정도모 및 사회복귀 촉진

○ 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수산인」을 기본단위로 사업을 추진
  - 수산인
    - 1) 수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수산업을 영위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 2) 수산업법 제10조에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 3) 기타 상기 1항 및 2항에 준하는 자로 수협이 따로 정하는 자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법, 2003. 3.19제정」에 따라 2004년부터 정책적으로 어선원보험 및 어선보험을 위탁운영 하고 있는 수협을 통하여 공제사업 운영
- 수협의 관할 시·군 회원조합과 공제보험지부를 통하여 공제가입과 공제금을 지급하며, 수협중앙회를 통하여 보조금 정산 및 운용현황 파악
  - 공제가입율 : ('09) 20% → ('10) 30% → ('12) 40%
- 어업인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문제점 개선·보완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수산인공제가입률(%)	(공제가입인/공제가입대상) ×100	가입률(%)	30%

○ 사업 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에 대한 지원)

## □ '10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개괄적으로 서술)

- 사업추진주체 : 농림수산식품부(수협중앙회 위탁 운영)
- 사업추진절차 : 공제사업 약정 체결(수협중앙회↔농림수산식품부) → 수산인이 관할 시·군 수협에 공제 가입신청 → 청약서 작성 및 공제료 수납 (공제료 산출, 국고지원 공제료 상당액 감면) → 공제 증권발급 → 보조금지원명세 제출(회원조합→공제보험지부 → 수협중앙회)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수협중앙회↔농림수산식품부) → 공제사업 운용현황보고(수협중앙회 → 농림수산식품부)

###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만 15세 ~ 84세로 수산업에 종사하는 수산인
- 사업규모 : 어업종사가구원 78천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814백만원 (순공제료 및 부가공제료의 50% 지원)
  -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추가로 공제료 지원 추진
- 지원조건
  -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및 수산물가공업자(만15세~84세)
  -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자격), 제22조(업종별수협의 조합원 자격) 및 제23조(수산물가공수협의 조합원 자격)에 해당자
  - 어업경영체(영어조합 등)의 종사자 중 영어종사자[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된 외국인 중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포함]
  - 상기 이외에도 만15세이상 어가인구중 『1개월이상』 어업에 종사한 가구원
  - \* 사업초기에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수산물가공업자는 향후 예산확보시 확대 예정
  - 「어선 및 어선원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어선원보험 가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 주요내용

- 민영보험사 등에서는 공제가입이 지난한 수산인에 대하여 산재보험대용상품으로 수산작업 중 사망, 장애, 입원 및 수술 등을 보장하는 수산인안전공제에 대한 공제료의 일부 지원

○ 예산

- 사업기간 : '09년 ~ (계속)
- 재원형태 : 국비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	-	814	-	814	-	-	814
2010	-	-	1,221	-	1,221	-	-	1,221
(증△감)			407	-	407	-	-	407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어업인(78천명)과 어업인의 비어업인배우자(12천명)을 포함한 보험가입대상 확대를 통한 어업인 복지 증대
- 어업인의 부담경감시키고 미비점 보완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92				92
'10	1식			12				12
'11	1식			16				16
'12	1식			19				19
'13	1식			21				21
'14	1식			24				24

< 1-1-3-3 : 어선원 및 어선보험 지원(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수산개발과	담당자	양진문 사무관
전화번호	02-500-2335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을 통해 소득수준이 낮고 조업여건이 열악하여 조업이탈 현상이 심화되어 가는 어선원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 연근해 어선원의 재해발생시 신속·공정하게 보상하여 안정적인 어업경영 유도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보험제도의 정착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보험가입을 제고 추진
  - 보험가입대상어선원수 대비 보험가입율 : ('08) 12.1 → ('09) 12.2% → (10) 12.2%
  - 보험가입대상어선척수 대비 보험가입율 : ('08) 5.9 → ('09) 6.0% → (10) 6.0%
- 장기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조치 등 보험의 형평성 제고
- 어업인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문제점 개선·보완
- 추진방향에 대한 개괄적 서술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어선원재해보험가입률(%)	$(\text{가입어선원}/\text{가입대상어선원}) \times 100$	가입률(%)	12.2
어선재해보험가입률(%)	$(\text{가입어선척수}/\text{가입대상어선}) \times 100$	가입률(%)	6.0

○ 사업 추진근거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법” 제4조(보험료 국고지원)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에 대한 지원)



## □ '10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농림수산식품부(수협중앙회 위탁 운영)
- 사업추진절차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승인(농림수산식품부) → 보험가입 (어업인 → 회원조합) → 보조금 지급신청(수협중앙회 → 농림수산식품부) → 보조금 지급(농림수산식품부 → 중앙회) → 보험사업 결산보고 제출 및 승인(중앙회 ↔ 농림수산식품부)

###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연근해 어업인
- 사업 규모(사업량) : 연근해 어선소유자(가입대상 : 약 79천척) 중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
- 지원금액 및 형태 :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순보험료 : 10톤미만 70%, 30톤미만 60%, 50톤미만 30%, 100톤미만 20%
  - 부가보험료 : 예정사업비의 75%
- 사업 주요내용(\*제도개선사항을 포함하되, 구체적으로 기재)
  - 어업인의 보험가입 촉진을 위해 매체를 다양화하여 홍보활동 강화
    - \* 어선원보험 가입율 : ('09) 80% → ('10목표) 80% → ('12목표) 83%
  - 어업인의 보험료부담 완화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
    - \* 운영사업비 지원율 확대(75%→100%)
  -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자진납부기간 운용 및 장기 미납자 체납처분 실시
  - 어업인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하여 미비점 개선·보완

○ 예산 (비예산사업은 비예산사업이라고 표시)

- 사업기간 : '78년 ~ (계속)
- 재원형태 : 국비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	-	36,355	8,000	44,355	-	-	44,355
2010	-	-	62,921	-	62,921	-	-	62,921
(증△감)			26,566	△8,000	18,566	-	-	18,566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어선원 보험의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로 어업경영 안정망 확충
  - 부가보험료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 : ('10) 75%→('11)100%
- 어업인의 부담경감시키고 미비점 보완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47,233				347,233
'10	1식			62,921				62,921
'11	1식			68,768				68,768
'12	1식			68,549				68,549
'13	1식			71,709				71,709
'14	1식			75,286				75,286

< 1-1-41 : 농작업재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전문가 협력기반 조성(농진청)>

※ 1-1-43. 안전한 농촌사회 구현 위한 발전전략 통합작성

담당부서	농업재해예방과	담당자	채혜선
전화번호	031-290-1939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업활동으로 인한 사고 및 직업성 질환 발생의 전국현황 파악 및 장기 추적 연구를 통하여 경시적인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관련 정책수립 등을 지원
- 농업·의료·공학 등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시적인 정보교류를 통하여 농작업안전보건 쟁점 선도

○ 사업추진방향

-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격년주기 조사, 통계승인 제 14303호)
  - 조사대상 : 전국에서 표본 추출된 400개 마을 6,000농가
  - 조사내용 : 농업종류와 규모(4항목), 가구원 사항(6항목), 가구 구성원별 농업활동 특성(9항목), 사고/중독/질병 경험(1항목), 농작업과 관련있는 사고 및 질병 부문(9항목), 급만성 질환 및 농작업과 관련없는 사고/손상 부문(5항목)
- 장기추적 연구를 위한 농작업재해 감시체계 구축 및 유형별 사례 조사
  - 농작업재해 감시체계 구축·운영 : ('09) 45개소 →('10) 50개소
- 농작업재해 예방센터 마련을 위한 전문가 협력기반 구축·운영
  - 농업인 건강연구회 운영, 심포지엄·학회 참여, 농촌현장 지원 등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농작업재해 통계수립	조사농가 수	농가	6,000농가
농작업재해 감시체계 구축	장기모니터링 농업인수	명	3,000명
대내외 협력지원	세미나, 심포지엄 등 건수	건	20건

##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10조, 36조, 40조, 42조 및 55조

## □ '10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 사업추진절차 : 시험연구사업 설계 심의(내외부 심의위원) 및 협약 추진 → 현장 인터뷰 및 방문 조사를 통한 연구수행(연구원) → 중간진도관리(내외부 심의위원) → 연구결과 분석 및 평가서 작성 → 연말평가(내외부 심의위원) → 결과활용 제출 및 산업재산권 출원(내외부 심의위원)

###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농업인
- 사업규모 : 1 소과제 2세부과제(3.8억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시험연구사업 예산(국비 100%)
- 사업 주요내용
  - 농작업재해 감시체계 구축·운영 활성화 연구
  - 농업인 건강안전 장기코호트 연구
  - 농작업재해 예방센터 마련을 위한 전문가 협력기반 구축
- : 농업인 건강연구회 및 농업인 현장지원 등 수행 : 20회

### ○ 예산

- 사업기간 : '10년 ~ '14년 (총 5년)
- 자원형태 : 국비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예시)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9	-	-	-	400	400		-	400
2010	-	-	-	380	380		-	380
(증△감)	-	-	-	△20	△20		-	△20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시험연구사업 수행시 최초 설계계획서에 따른 농작업재해 통계 구축 및 농업인 건강 장기 추적 연구 수행방안 반영 필요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45개소			3.8				3.8
'11	55개소			5				5
'12	70개소			7				7
'13	85개소			10				10
'14	100개소			15				15

< 1-1-4-2 : 농작업재해 원인구명 및 농작업 안전기술 개발(농진청) >

담당부서	농업재해예방과	담당자	이 경 숙
전화번호	031-290-1937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업인 유해환경 평가 및 농작업재해 원인 구명을 통하여 업무상재해 판정 근거 마련
- 농작업 유해요인 증가에 따른 농작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경감하기 위한 안전관리기술 개발 지원

○ 사업추진방향

- 작목별/작업별 유해요인 평가, 보호구 개발 사업을 추진
  - 작목/작업을 중심으로 작업특성에 맞춘 유해환경 평가 및 개인보호구/편이장비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농작업 재해 예방효과 극대화
- 농작업재해 원인구명 등을 통하여 인적/물적/환경적 여건에 따른 농작업 관련성 및 재해판정 기초자료 제공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논문게재	논문 저자로서 참여 여부	건	6
영농활용	제안자 참여 여부	건	3
특허출원	발명자 참여 여부	건	5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10조, 36조, 40조, 42조 및 55조

## □ '10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 사업추진절차 : 시험연구사업 설계 심의(내외부 심의위원) 및 협약 추진 → 현장 인터뷰 및 방문 조사를 통한 연구수행(연구원) → 중간진도관리(내외부 심의위원) → 연구결과 분석 및 평가서 작성 → 연말평가(내외부 심의위원) → 결과활용 제출 및 산업재산권 출원(내외부 심의위원)

###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농업인
- 사업규모 : 3 소과제 5세부과제(4억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시험연구사업 예산(국비 100%)
- 사업 주요내용
  - 농작업 유해요인 노출평가 및 JEM 구축
  - 농작업 제품 설계를 위한 농업인 인체치수 표준화 연구
  - 저상, 과수, 가지작목 수확작업개선 방안 연구
  - 기능성 신소재를 이용한 농작업복 개발
  - 인체모형을 적용한 작업부담 및 작업공정 개선 연구

### ○ 예산

- 사업기간 : '10년 ~ '14년 (총 5년)
- 재원형태 : 국비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예시)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9	-	-	500	-	500		-	500
2010	-	-	400	-	400		-	400
(증△감)	-	-	△100	-	△100		-	△100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시험연구사업 수행시 농업인의 업무상재해 보장 및 예방제도 도입에 땀으  
하기 위한 안전관리 및 재해판정 기준설정 등에 관한 연구 강화 필요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5 과제			4				4
'11	7			5				5
'12	10			10				10
'13	15			15				15
'14	20			20				20



< 1-144 :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및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농촌진흥청) >

담당부서	농촌자원과	담당자	박찬순
전화번호	031-299-1076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업인의 농작업 관련 재해발생을 줄이고 농작업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과 능력 향상으로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환경 조성
- 농작업재해 예방 관리를 위한 종합 지원 체계 모델 확립

○ 사업추진방향

- 농업인의 주도적 참여와 안전의식 향상으로 농작업 안전보건의 생활화
- 전문가컨설팅 등 현황 진단을 바탕으로 작목 및 마을별 특성에 맞는 농작업 재해 예방 대책 추진
- 사업추진단 운영으로 지도, 연구, 학계,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전문적 지원 확보
- 사업시행 성과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평가 실시와 피드백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농작업 안전관리 실천율	농작업 안전보건 현황 점검 조사	%	80
농작업 안전사고 감소율	사업추진마을 조사결과 분석	%	20
농작업 효율 개선율	사업 농가 작업시간 분석	%	25
농작업개선 평가 점수 증가율	사업 농가 작업자세 분석	%	25

○ 사업추진근거

- 농촌진흥법 제4조제1항(지역농업 균형발전 추진)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14조 (농림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 □ '10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마을) → 마을 기초조사 및 심사(시·군) → 우선 순위를 정하여 마을 추천(시·군→시·도) → 검토 후 대상 마을 확정(시·도) → 마을 운영위원회 구성(마을) → 세부 사업추진계획수립(마을, 시·군, 시·도) → 사업추진(마을, 시·군, 시·도, 중앙) → 기술지원 및 평가(시·도, 중앙)

###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시설원예(채소, 화훼, 버섯 등), 노지채소, 과수, 축산 등, 주산단지 마을(리)
- 사업규모 : 173 개소(농작업안전모델시범 38, 농작업환경개선편이장비지원 135)
- 지원금액 및 형태
  - 농작업안전모델 시범 : 개소당 3년간 2억원(국비 50%·지방비 50%)
  - \* 연차별 지원금액 : (1년차) 4천만원, (2년차) 1.2억원, (3년차) 4천만원
  -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 개소당 5천만원(국비 50%·지방비 50%)
- 지원조건
  - 농작업조건 : 주작목 농가 비율이 높고 영농규모가 크며 농작업 유해 요인이 많아 개선이 필요한 마을
  - 사업참여도 : 참여농업인수가 최소 50명이상으로 전체 농업인 중 참여 희망 농업인의 비율이 높고 교육, 환경개선, 안전관리 등 개선방안을 적극 실천하고자 하는 마을
  - 사업기반 : 이장/지도자의 지도력이 탁월하며 마을민 조직활동이 활발하고 화합이 잘되는 마을 등

- 사업 주요내용

- 농업인의 건강수준 및 농작업유해요인 등 진단 실시 :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 현황 파악,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농작업 유해요인 등 진단
- 현황 진단 결과에 기초하여 마을 및 작목 특성에 맞는 농작업 개선 방안 도출 및 실행 : 농기계·기구의 안전 사용, 농약 등 유해물질 안전 보관 및 개인보호구 사용, 마을 및 작목 특성에 맞는 농작업 환경 및 시스템 개선, 운동프로그램 및 건강요법 실시, 안전관리교육 실시 등

- 시도별 배분내역 ('10년 농작업안전모델시범 및 농작업환경개선편이장비지원)

(단위 : 개소수)

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부산	대구	울산
농작업안전모델시범	38	3	5	5	5	5	4	5	5		1		
농작업환경개선편이장비지원	135	10	4	14	17	14	12	34	20	6		2	2
계	173	13	9	19	22	19	16	39	25	6	1	2	2

○ 예산

- 사업기간 : '06년 - 14년(총 9년)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9	1,280	3,675	-	-	4,955	4,955	-	9,910
2010	1,320	3,369	-	-	4,689	4,689	-	9,378
(증△감)	40	△306	-	-	△266	△266	-	△532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사업시작 전 최소 1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마을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 및 역량을 갖추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

- 마을리더, 참여주민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견학 등 실시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28	308.69			536.69		1,073,38
'10	173(38,135)*	13.2	33.69			46.89		93.78
'11	289(89, 200)	21.8	50			71.8		143.6
'12	395(145, 250)	55	62.5			117.5		235
'13	505(205, 300)	68	75			143		286
'14	560(210, 350)	70	87.5			157.5		315

\* (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사업 개소수

< 1-1-4-5 : 농작업재해예방 체험매체 개발 및 정보화 지원 (농진청) >

※ 1-2-2-2, 1-2-2-3 과제 통합 및 과제명 및 중분류 변경

담당부서	농업재해예방과	담당자	김효철
전화번호	031-290-1938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작업재해 안전관리 및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한 안전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농작업 안전관리 정보화를 위한 콘텐츠 구축 및 홈페이지 탑재를 통한 농작업 안전보건 정보 보급의 활성화

○ 사업추진방향

- 농작업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작업환경에 대하여 농업인이 가상체험을 할 수 있게 함으로서 실제 위험작업에 대한 대응력 확보
- 농작업 안전보건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 기반 구축
- 농업인 건강안전정보센터 구축 및 고도화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농작업 안전관리 체험프로그램 개발	개발 건수	건	3
농작업안전보건 DB건수	정보화 DB건수	건	1,000건
농업인 건강안전정보센터 방문자수	홈페이지 방문자수	명	1,000,000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10조, 36조, 40조, 42조 및 55조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 사업추진절차 : 시험연구사업 설계 심의(내외부 심의위원) 및 협약 추진 → 현장 인터뷰 및 방문 조사를 통한 연구수행(연구원) → 중간진도관리(내외부 심의위원) → 연구결과 분석 및 평가서 작성 → 연말평가(내외부 심의위원) → 결과활용 제출 및 산업재산권 출원(내외부 심의위원)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농업인
- 사업규모 : 소과제 1, 정보화 용역사업 1(3억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시험연구사업 및 정보화 사업 예산 (국비 100%)
- 사업 주요내용
  - 농업인 건강안전정보시스템 구축
  - 농작업 안전관리 정보화 지원 연구
  - 농작업 안전관리 체험 프로그램 개발

○ 예산

- 사업기간 : '10년 ~ '14년(총 5년)
- 재원형태 : 국비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예시)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9	-		200		200			200
2010	-		300		300			300
(증△감)	-		▲100		▲100			▲100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시험연구사업 및 정보화 사업 수행시 시범사업이 아닌 전국농업인에게 재해 경감기술 및 안전교육을 전파하기 위한 예산확보 필요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1,000,000			3				3
'11	1,100,000			4				4
'12	1,500,000			10				10
'13	1,800,000			15				15
'14	2,000,000			20				20

< 1-1-5-1 : 농부중예방 지원방안 마련(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농촌사회과	담당자	박성우(서기관)
전화번호	02-500-1819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업인의 영농 활동과 관련된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생활 안정 도모

○ 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추진방향에 대한 개괄적 서술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지원방안 마련	관련 연구용역을 통한 지원방안 마련 여부	-	수립

○ 사업 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추진절차 : 농업인 건강안전증진 연구용역 추진(농식품부) → 관련 연구 추진(연구 기관) → 최종 결과 보고서 유인(농식품부)

○ 사업 내용(신규사업)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
- 사업 규모(사업량) : 해당 없음



- 지원금액 및 형태 : 해당 없음(비예산 사업)
- 지원조건 : 해당 없음(비예산 사업)
- 사업 주요내용
  - 농어업인의 질환, 사고 현황 파악 및 원인별 대책 마련
  - 관련 용역이 끝나는 대로 의견 수렴 등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용역 및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안전증진 방안 마련
- 시도별 배분내역 : 해당 없음(비예산 사업)

○ 예산 : 해당 없음(비예산 사업)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해당없음(비예산 사업)

○ 세부지원 방안 정책화 모색

## 1-2. 농어촌 보건·의료기반 확충

### (1) 개관

#### □ '10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응급의료가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하여 농어촌 주민의 생존률 개선
  -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없는 43개 군 중 22개소 설치(지정)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가 부족한 6개 진료권 중 3개소 설치(지정)
  - 119 구급지원센터 50개소 설치, 8대 헬기 내 응급구조장비 구비, 25척 선박내 해양원격 응급의료 시스템 설치 등 이송취약지 보강
- 농어촌 주민들의 의료비 부담 감소 및 건강증진을 위해 농어촌 지역 공공보건기관의 시설·의료장비 현대화 지원
  - 신·증축, 개·보수에 625억원 지원('09년까지 기 투자액 : 8,344억원)
- 지방의료원 34개, 적십자병원 6개를 신·증축, 개·보수하고 의료장비를 지원하여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육성
  -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에 시설·장비 및 교육, 평가 등을 지원하여 공공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이 직접 찾아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인력이 직접 찾아가 가구별·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등록관리가구 118만가구, 건강관리 방문인력 2,700여명

□ 예산 내역

< 2010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농산어촌 응급의료기관 인프라 확충 농어촌 119 구급지원센터 확충 낙도 오지응급환자 이송체계구축				23,020	23,020			23,020
공공보건기관 기반 확충	62,503				62,503	31,251		93,754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40,912		40,912	31,342		72,254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				31,001	31,001	30,545		61,546
합계	62,503	0	40,912	54,021	157,436	93,138	0	189,643

□ '11년도 추진 방향

- 농산어촌 내 응급환자가 30분 이내 구급차 등 응급처치 서비스를 받고 1~3시간 내 응급실에서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사각지대의 단계적 해소
- 도서·오 벽지 등 의료취약지역과 통합보건기관 등을 우선지원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 노후된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현대화를 추진하고,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공공병원에 의료인력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기능강화 추진

< 1-2-1-1 : 농산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응급의료과	담당자	공인식(사무관)
전화번호	02-2023-7337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응급의료 취약 군지역은 응급의료기관의 부재로 응급환자 발생시 적절한 응급 치료가 불가능하고, 병원자체의 수입에만 의존하여 응급의료기관 인프라를 구축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
- 이에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없는 43개 군 지역을 대상으로 응급의료기관을 지정· 지원하고,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정확한 환자이송을 통한 적절한 응급의료 제공 으로 생존률 개선 및 국민편의 도모
- 응급의료 취약지 해소를 통해 예방가능한 응급환자 사망률(32.6%)을 선진국 수준 (10~20%)으로 개선하고 선진 응급의료기관 육성 등을 통해 선진 응급의료체계 구축

○ 사업추진방향

- 농산어촌 응급환자 발생시 30분 이내에 구급차 등 응급처치 서비스를 받고 1~3시간 내 응급실에서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해소
- 응급의료 취약지의 응급의료 서비스 확충 및 도농간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없는 43개 군 중 22개소 설치(지정) 및 지역응급의료센터가 부족한 6개 진료권 중 3개소 설치(지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
- 119 구급지원센터 50개소 설치, 8대 헬기 내 응급구조장비 구비, 25척 선박내 해양원격 응급의료 시스템 설치 등을 통한 이송취약지 보강으로 선진 응급 의료체계 추진

○ 사업추진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국민 응급의료제공 의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재정지원) : 응급의료기관 등에게 필요한 재정 지원
-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응급의료체계의 구축) 및 제14조(농어촌 민간의료기관 육성) : 농어촌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민간의료기관 육성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보건복지부(총괄, 응급의료기관 인프라 확충), 소방방재청(구급지원센터), 해양경찰청(선박 해양원격시스템), 산림청(산악 헬기 내 응급장비 및 구급지원)
- 사업추진절차 : 시도/시군구(응급의료기관 인프라 확충), 소방본부/소방서(구급지원센터), 민간산악구조대(산악 구급지원)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지원대상 :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없는 43개 군지역의 민간의료기관 등
- '10년 사업 규모

(단위 : 개소, 백만원)

2008결산		2009예산 (A)	2010예산 (B)	증감 (B-A)	%
예산(계획)현액	실집행액				
(5,668)	(4,669)	(7,684)	23,020	23,020	순증

- 지원조건 : 국비 100%
- 총사업비 : 435억원('09년까지 기 투자액 : 205억원)
  - \* 기 투자액은 결산기준으로 작성
- 지원액
  -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기관 육성 : 21,356백만원
  - 취약지 군 응급실 보강 : 1,664백만원

○ 예산

- 사업기간 : '06년 ~ 계속사업
- 재원형태 : 지자체 보조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 회계	기금	소계			
2009	3,484	4,200				-		7,684
2010	-	-		23,020		-		23,020
(증△감)	△3,484	△4,200		23,020		-		15,336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 농산어촌 내 응급환자가 30분 이내 구급차 등 응급처치 서비스를 받고 1~3시간 내 응급실에서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사각지대의 단계적 해소
  - 환자이송 취약지역의 구급차·헬기·선박 이송체계를 확충
  - 응급의료기관 부재한 43개 군 및 상급 응급센터가 부족한 6개 진료권에 대한 지원 확대

< 1-2-1-4 : 공공보건기관 기반 확충(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건강정책과	담당자	김옥수(주무관)
전화번호	02-2023-7192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보건의료자원의 도시지역 집중과 농어촌 인구의 노령화, 만성질환자 증가, 농가소득 정체 등의 농어촌 보건의료 환경 변화
- 이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공공보건기관의 시설·의료장비 현대화를 통한 농어촌 지역 보건의료체계 기반 마련
- 도서·오 벽지, 의료취약지역의 농어촌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으로 삶의 질 향상
-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예방, 질병관리, 건강증진 등 포괄적인 보건사업 추진기반으로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의료비 부담 감소 및 국민 건강증진 향상 도모

○ 사업추진방향

- 사회 양극화 심화에 따른 건강불평등의 해결을 위해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 지역 보건기관 중추 역할 제고 및 지역실정에 적합한 통합모델개발을 위해 통합 보건기관 우선지원
- 농어촌 의료장비·전산장비 지원강화를 통한 진료 및 건강증진사업 추진여건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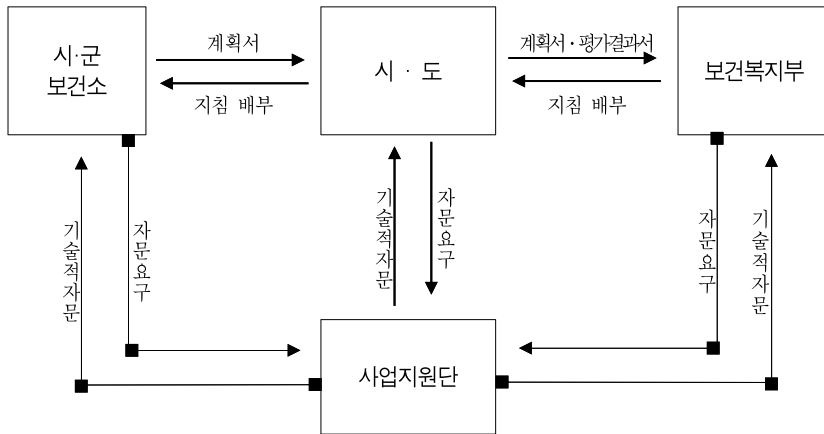
○ 사업추진근거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 지역보건법 제19조(비용의 보조)농림어업인의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특별법 제14조(농림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및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에 대한 지원)
-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개발대상도서의 지정)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
- 사업추진절차 : 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시도평가 → 중앙평가위원회 평가(1차 탈락 : 다음년도 재신청) → 1차 선정 → 계수조정위원회 심사 → 중앙평가위원회 현지 실사(탈락 : 연건성숙 후 재신청) → 대상지역 사전예고 통지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지원대상 : 군 지역 및 도농 통합지역의 시 지역 보건의료기관
- \* 도·농 통합지역이 아닌 일반시지역의 보건의료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10년 사업 규모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시설개선			의료장비 (대수)	전산장비 (대수)	보건사업 차량(대수)	구강보건 차량(대수)	합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원 개수	21	69	127	257	76	144	5	699
지원액	16,242	23,085	17,048	4,257	60	1,238	570	62,500



- 지원조건 : 국비 2/3, 지방비 1/3
  - 재정자립도를 반영한 차등지원 : 개선사업 지원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정자립도별 지원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원하고 그에 따른 일정 비율을 지방비로 부담
  - \* 재정자립도 40%미만→지원비율100%, 재정자립도 40%이상~60%미만→지원비율80%, 재정자립도 60%이상→지원비율50%
- 총사업비 : 625억원('09년까지 기 투자액 : 8,344억원)
  - \* 기 투자액은 결산기준으로 작성
- 지원액
  - 신·증축 : 489백만원(평당 국고지원 기준 단가)
  - 개·보수 : 100백만원(평당 국고지원 기준지원 단가)
  - \* 도서지역의 지원액은 신·증축 및 개·보수의 평당 국고지원기준단가에 20%가산

○ 예산

- 사업기간 : '94년 - '14년(총 20년)
- 재원형태 : 지자체 보조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군특	기타 회계	기금	소계			
2009	62,503					31,251		93,754
2010	62,503					31,251		93,754
(증△감)	-							-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 열악한 농어촌지역 공공보건기관의 시설 및 장비개선을 통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확충
- 도서·오 벽지등 의료취약지역, 통합보건기관 우선지원 등을 통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으로 삶의 질 향상

< 1-2-1-5 :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공공의료과	담당자	이표희사무관
전화번호	2023-7368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지방의료원(34개)과 적십자병원(6개)에 시설·장비 및 교육, 평가 등을 지원하여 공공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양질의 진료 및 공익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농간 의료격차를 완화하고 의료접근성을 높이며 지역주민들의 의료안전망으로서 기능

○ 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기능 강화를 위해 시설, 장비 지원을 추진하되,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 경영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공공병원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고지원 대상선정 시 경영개선 노력을 반영하고, 의료취약지 지원 강화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지역거점공공병원 이용자만족도	설문조사 (전화, 면접)	점	79.5

○ 사업 추진근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1조

## □ '10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보건복지부, 지자체, 대한적십자사,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 사업추진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각 병원, 시도 및 대한적십자사 경우) → 사업 계획서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예산 교부 및 집행 점검

###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지방의료원 34개, 적십자병원 6개
- 사업 규모(사업량) : 지방의료원 34개, 적십자병원 6개
- 지원금액 및 형태 : 사업규모에 따라 다양(국비 50%, 지방비 50%)
  - ※ 적십자병원은 국비 100%
- 지원조건
  - (신축) 건축경과년수 20년이상 이상으로 노후도가 심각한 의료원
  - (증개축) 급성기 2차 진료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 하여 병동증축 등 시설 확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개보수) 노후 등으로 시설개보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의료장비) 노후장비 교체 및 의료수요 증가에 따른 신규장비 필요 등
- 사업 주요내용
  -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기능보강(신축, 증개축, 개보수, 의료장비)
  -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임직원 실무 교육 및 운영평가 실시
- 시도별 배분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예산

- 사업기간 : '05년부터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1%(적십자병원은 국비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44,818			40,848		85,666
2010			40,912			31,342		72,254
(증△감)			△3,906			△9,506		△13,412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노후된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현대화를 추진하고,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공공병원에 의료인력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기능강화 추진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40,912		31,342		72,254
'11				64,497		52,627		117,124
'12				70,120		52,627		122,747
'13				76,570		64,200		140,770
'14				76,820		64,200		141,020

< 1-2-2-1 :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보건복지부) >

- 1-2-2-1 ②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담당부서	가족건강과	담당자	권혜나
전화번호	02-2023-7539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빈곤, 질병, 장애, 고령 등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의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추진방향

-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인력이 직접 찾아가 가구별·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로 가구원 전체의 건강증진, 질병예방, 합병증 관리

-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서비스 만족도	방문가구 수혜자 만족도 설문조사	%	80

○ 사업 추진근거

- 지역보건법 제9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군구 보건소
- 사업추진절차 : 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 보건소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건강위험군
- 사업 규모(사업량) : 등록관리가구 118만가구, 방문인력 2,700여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직접 서비스 수행
- 사업 주요내용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이 직접 찾아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예산

- 사업기간 : '07년 - (계속)
- 재원형태 : 국비50%, 지방비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	-	-	30,545	30,545	30,545	-	61,090
2010	-	-	-	31,001	31,001	30,545	-	61,546
(증△감)	-	-	-	456	456	-	-	456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	-	-				
'10	120만가구	-	-	-	310	305	-	615
'11		-	-	-	310	305		615
'12		-	-	-	310	305		615
'13		-	-	-	310	305		615
'14		-	-	-	310	305		615

### 1-3. 농어촌 취약계층 복지 지원

#### □ '10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농어업인의 기초생활보장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의 특례 인정을 유지하고 소득산정에서 제외되는 직불금 범위 확대
-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고령농에게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농지연금 도입
-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한 공동체 홈 모델 개발, 농어촌 소외계층의 주거 지원을 위한 집 고쳐주기 등을 통해 영세·고령농어업인 주거복지 개선
- 농어촌에 국공립보육시설 16개소를 신·증축, 취학전 만5세아 무상보육지원, 영유아양육비 지원 등을 통해 육아 부담 경감,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 유도
  - \* 시설신축(396백만원/개소), 공동주택 의무보육시설 리모델링(50백만원/개소)
  - \* 만5세아 무상보육 실시율을 70%에서 순차적으로 실시 확대
  - \* 시설 이용(미이용) 아동 : 보육료 단가의 70%(35%) 지원
- 여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매뉴얼 개발·보급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10개 시군구 지정),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기초농업교육실시(500명 대상)
-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년생활 유도 등 장수문화 정립을 위한 농촌건강장수 마을 150개소를 조성하여 고령화 대책 시범마을로 육성
-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개방화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민 중 전직 희망자에게 직업훈련기회 제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교육, 가족교육·상담,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언어지도사 100명 배치)
- 영농 및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생활 유지 도모
  - 영농도우미 : 사고·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75세 이하의 농업인
  - 가사도우미 :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부부가구,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등

□ 예산 내역

<2010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비예산 사업
농지담보 노후 연금제도 지원				2,240	2,240			2,240
영세·고령농어업인 주거복지개선			100		100		600	700
경영이양 직불제	69,884				69,884			69,884
농산어촌 보육시설 확충			1,423		1,423	1,163		2,586
만5세아 무상보육 지원			1,218		1,218	1,218		2,436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40,648				40,648	40,648		81,296
여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해당없음)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3,700			3,700	3,791		7,491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893	23			916	229		1,145
다문화 가정 농업 교육	1,176				1,176		52	1,228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8,278	8,278	3,644		20,200
다문화가족 아동 청소년 언어발달 지원				2,154	2,154	687		2,841
취약농가 인력지원	6,520				6,520		2,780	9,300
농어업인 복지시책 교육·홍보 강화	18				18			18
합계	119,139	3,723	2,741	12,672	138,275	51,380	3,432	201,365

□ '11년도 추진 방향

- 농어촌 지역특성을 감안한 농어민 가구의 기초생활보장제도 특례 지속추진
- 농어촌 지역에 소규모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
- 무상보육지원대상 아동수 지속적 확대 : ('10) 31천명 → ('11) 32천명



-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
  - 시설 이용 : 보육료 지원 단가의 70%지원 → 80%
  - 시설 미이용 : 보육료 지원 단가의 35%지원 → 50%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확산('11년까지 20개 시군구)하고, 다문화가정의 여성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20년까지 5,500명을 목표로 도별·권역별로 연간 500명 규모 교육 실시
- 농촌건강장수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환경 정비 등 종합적 지원을 추진하고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 농어민 특화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훈련과정 선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확대 : ('10) 159명 → ('11) 200명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언어발달 지원 확대 : ('10) 2,154 →('11) 2,356억원
- 가사도우미를 농어촌 경로당의 가사도우미로 활용하여 농어촌 노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
- 농어업 복지시책 교육·홍보(상·하반기 실시)를 통해 복지업무 담당자 업무 역량 강화 및 고객 만족도 제고
- 농어촌 소외계층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에 (사)한국농촌건축학회, (재)다솜 등지복지재단 등 민간 참여 활성화 유도

< 1-3-1-1 :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기초생활보장과	담당자	최신광(사무관)
전화번호	02-2023-8125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대처 및 농어촌 지역의 특수한 경제 상황을 반영한 농어민가구 선정기준 특례운명을 통한 기초생활보장 강화

○ 사업추진방향

- 농어촌의 경제상황을 고려한 농어민 소득 및 재산산정 특례제도 실시
- 소득산정에서 제외되는 직불금의 범위 확대 추진

○ 사업추진근거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국정과제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농림수산식품부 주관)」 과제 중 소과제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보장기관(시·군·구청장)
- 사업추진절차 : 급여신청(본인, 친족 등) → 조사(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 → 급여결정(급여실시 여부 및 급여내용) → 급여실시(생계, 주거비) → 확인조사(매년 1회 이상, 수급자 적정여부) → 보장중지(소득·재산 증가 등으로 사유 발생시)

○ 사업 내용

- 사업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전체수급자 중 농어민가구 특례수급자
- 지원 형태 :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 제공

- 지원조건

-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서,
- 가구전체의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 사업 주요내용(기존사업)

-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소득평가액 산정 및 재산의 소득환산제 특례 운영
  - 농지를 1ha 미만 소유자(임차한자포함)가 지급받은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논농업소득보조금) 및 농어민가구가 부담한 보육료 중 15만원 이내의 금액 등을 소득평가액 산정시 지출요인으로 추가인정
  - 농지법에 의한 농지가액과 가축·종묘 등 농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동산의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 중 5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로 차감하는 등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 소득산정에서 제외되는 직불금 범위 확대(신규사업)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경영이양 소득보조금도 실제소득에서 차감

○ 예산

- 사업기간 : '04년~ 계속
- 재원형태 : 지자체 보조사업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 수급권자 선정기준 특례는 비예산사업임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농어촌 지역특성을 감안한 농어민가구의 기초생활보장제도 특례 지속 추진

< 1-3-2-1 : 농지담보 노후 연금제도 지원(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농지과	담당자	안종락(사무관)
전화번호	02-500-1720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고령농에게 노후생활안정지원 방안 도입

○ 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고령농에게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노후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농지연금 도입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농지연금사업 인프라 구축	운영시스템 개발	-	100%
	모형설계 구축	-	100%
	업무처리지침 제정	-	100%

※ '10년 운영시스템 구축, 모형개발, 업무지침 제정 등 사업기반 구축을 완료하고 '11년 농지연금사업 착수

○ 사업 추진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 및 제34조

- 제24조의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① 공사는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방법, 지원대상자의 권리보호, 농지의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및 자금의 회수방법, 가입비와 위험부담금의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기금의 용도) 제1항 제7호 :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

□ '10년도 추진계획

○ 2011년부터 농지연금이 원활히 도입되도록 2010년에는 상품모형 설계 및 운영시스템 개발 등 동 제도의 기반조성을 위한 비용 산정 및 집행에 중점을 두어 성공적인 제도 정착 추진

- 담보농지의 관리, 농지연금의 신속·정확한 지급을 위한 「농지연금사업 운영시스템」 구축
- 적정 월지급금 결정을 위한 이자율, 농지가격상승률, 사망확률 등을 적용한 「농지연금 사업모형」 구축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농지연금사업 업무지침」 제정
- 각종 언론매체, 현장형 밀착홍보 등 다각적인 홍보매체를 동원하여 사업 집중 홍보

○ 사업 내용(신규사업)

- 사업 주요내용
  - 2011년부터 농지연금 사업을 차질 없이 착수할 수 있도록 사업기반 구축
- 시도별 배분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예산

- 사업기간 : 2010년
- 재원형태 : 농지관리기금 100%(보조)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	-	-	-	-	-	-	-
2010	-	-	-	2,240	2,240	-	-	2,240
(증△감)	-	-	-	2,240	2,240	-	-	2,240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해당없음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2			22
'10	-	-	-	-	22	-	-	22
'11								
'12								
'13								
'14								

< 1-3-2-2 : 영세·고령농어업인 주거복지 개선(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김학조(사무관)
전화번호	02-500-1810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어촌 지역에서 경제적 자립능력이 미약한 독거노인, 영세·고령농어업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도모
-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농어촌 취약계층의 주거지원 수혜 기회 확대

○ 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농어촌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나 경제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미약한 계층에 대해 특화된 주거지원 추진
- 정부·지자체·봉사단체·민간 등과 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지원체계 확보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농어촌 공동체 홈 추진계획수립	계획수립 정도	-	100%
농어촌 집 고쳐주기 실시	다솜등지복지재단 자료확인	호	130

○ 사업 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55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제67조(농어촌 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제108조(자금지원)

□ '10년도 추진계획

- 농어촌 공동체 홈 조성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및 방안 마련
  - 농어촌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한 공동체 홈 모델 개발, 추진 및 운영방안 마련 등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
  - 농어촌 취약계층 공동체 홈 조성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안 수립

○ 농어촌 소외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한 집 고쳐주기 실시

- 농어촌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의 집 고쳐주기 : 130가구
-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재)다솜등지복지재단 주관으로 실시

○ 예산

- 사업기간 : 2010년
- 재원형태
  - 농어촌 공동체 홈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예산) : 100백만원
  - 농어촌 집 고쳐주기 추진(비예산) : 600백만원(마사회특별적립금 400, 기부금 2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	-	-	-	-	-	600	600
2010	-	-	100	-	100	-	600	700
(증△감)	-	-	100	-	100	-	-	100

\* 기타투자금액(600백만원) : 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 및 다솜등지복지재단의 기부금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금액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농어촌 지역에서 열악한 거주환경환경에 거주하고 있으나, 주거환경개선이 불가능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동체 홈 시범조성 추진
- 농어촌 소외계층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에 (사)한국농촌건축학회, (재)다솜등지복지재단 등 민간 참여 활성화 유도

	사업규모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	-	1		-		
'11								
'12								
'13								
'14								

< 1-3-2-3 : 경영이양 직불제(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담당자	이창일
전화번호	02-500-1763	이메일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지원으로 소득안정
-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으로 전업농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

○ 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경영이양대상 농업인에 대한 홍보 강화로 신규 경영이양 목표 달성
- 쌀전업농(6ha 수준) 7만호 육성 등 3ha 이상의 전업농 영농규모화 촉진에 기여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경영규모 3ha 이상 농가수 비율(%)	(경영규모 3ha 이상 농가수 / 전체 농가수)×100	%	7.67

※ 최근 5년간('05~'09년) 경영규모 3ha 이상 농가수 증가율 0.17% 반영

○ 사업 추진근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제5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제3항제3호 및 제5호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시행규칙」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추진절차

사업시행계획 공고 및 홍보(공사) → 대상자 선정 신청(농업인→공사)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공사) → 대상자 선종 통보(공사→농업인)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체결(공사↔농업인)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공사→농업인) → 사후관리(공사)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지원대상자 : 65세 이상 70세 이하 농업인으로 보조금 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는 자
- 지원대상 농지 : 지원대상자가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의 전·답·과수원 및 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를 마친 전·답·과수원 등
- 사업 규모(사업량) : 신규이양 10천ha, 분할지급 15천ha('09까지 61.6천ha)
- 지원금액 및 형태 : 63,564백만원, 민간경상보조(국고100%)
  - 약정시 연령(65~70세)에 따라 ha당 250천원을 75세까지(6~10년) 매월 분할지급
- 지원조건 : 지급약정 체결 전날까지 소유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60세 이하의 전업농업인등에게 매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 또는 임대위탁해야 함
  - \* 농가의 자가소비량 생산을 위한 3,000㎡ 이하의 농지는 경작 허용
- 사업 주요내용
  - 경영이양자에게 지급기간(6~10년) 동안 직불금을 매월 분할 지급
  - \* 지급상한 : 2.0ha까지(매도·임대 각 각 적용)
- 시도별 배분내역

(단위 : 백만원)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유보
63,564	3,719	2,708	3,136	7,801	13,261	15,158	5,980	4,240	20	7,541

※ '10예산 69,884백만원 중 사업운영비 6,320백만원 제외

○ 예산

- 사업기간 : '97년 ~ 계속
- 재원형태 : 국비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32,429				32,429	-	-	32,429
2010	69,884				69,884	-	-	69,884
(증△감)	37,455				37,455	-	-	37,455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 2011년도 사업수요는 농지원부 전산자료상의 65~70세 농업인의 소유농지 현황 및 최근년도 경영이양 실적 등을 감안하여 수요 추정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ha)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0,000	436,308						436,308
'10	10,000	69,884						69,884
'11	5,000	83,849						83,849
'12	5,000	94,909						94,909
'13	-	96,907						96,907
'14	-	90,759						90,759

< 1-3-3-1 : 농산어촌 보육시설 확충(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보육기반과	담당자	윤정혜(사무관)
전화번호	02-2023-8946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보육시설 확충을 통하여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에 저렴한 고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부모들의 안정된 사회참여 유도

○ 사업추진방향

- 농산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 우선 설치
- 다양한 방안을 통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열악한 민간시설을 매입하여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
  - 초등학교내 유휴 교실을 활용하여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 공동주택 의무보육시설을 무상제공 받아 국공립시설로 운영

○ 사업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사업추진절차
  - 세부사업계획 수립(시군구) → 사업계획서 검토 및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시·도) → 국고보조금 교부 및 제도개선(보건복지부) → 사업추진(시군구)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보육시설 이용아동
- 사업 규모 : 16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시설 신축비 지원(396백만원/개소), 공동주택 의무보육 시설 리모델링비 지원(50백만원/개소)

- 사업 주요내용

- 보육시설 신축, 군관사 보육시설 국공립전환, 민간시설 매입, 초등학교 유휴 교실을 활용한 보육시설 설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설 확충
- 농어촌 지역에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 예산

- 사업기간 : '91년~
- 재원형태 : 국비50%, 국비7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군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6,323			4,156		10,479
2010			1,423			1,163		2,586
(증△감)			△4,900			△2,993		△7,893

※ '10년 소규모보육시설 설치 시범사업(5개소, 국비 455백만원, 국비70%)

※ '10년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신축 4개소, 공동주택 7개소)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농산어촌 지역의 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시설 신축, 민간시설 매입, 학교내 유휴교실 활용 등 다양한 방안으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 지속 추진
- 농어촌 지역에 소규모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16			1,423		1,163		2,586
'11	85			11,267		11,007		22,274
'12	85			11,267		11,007		22,274
'13	85			11,267		11,007		22,274
'14	85			11,267		11,007		22,274

\* 소규모보육시설 설치 매년 5개소(국비 455백만원, 국비70%)

\*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매년 80개소(국비 10,812백만원)

< 1-3-3-2 : 농산어촌 만5세아 무상보육지원(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보육사업기획과	담당자	진상인 주무관
전화번호	2023-8937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산어촌지역 취학전 만5세아 아동에 대한 균등한 보육기회 제공을 통해 아동의 학업준비 도모
- 만5세 무상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가 소득경제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농산어촌 지역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아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 농산어촌 만5세아 무상보육 실시를 목표로 '10년에 만5세아 무상보육 실시율 70%에서 순차적으로 실시율 확대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농산어촌지역 만5세아 무상보육 실시율	만5세아지원아동수 / 보육시설 정원아동수	%	70

○ 사업 추진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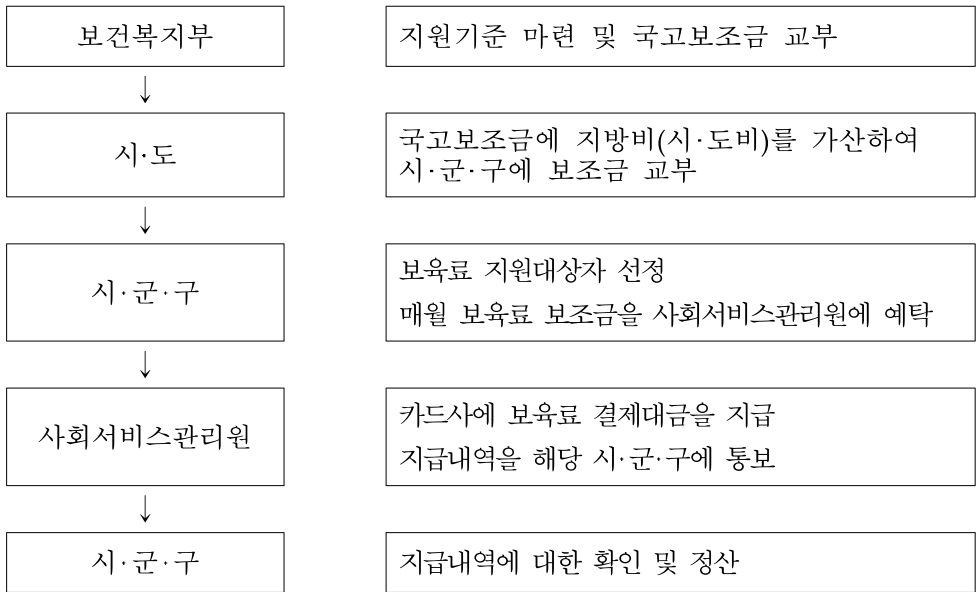
- 영유아보육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개괄적으로 서술)

- 사업추진주체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사업추진절차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농산어촌 만5세아
- 사업 규모(사업량) : 31천명('10년 계획)
- 지원금액 및 형태 : 월 172천원, 보육전자바우처(아이사랑카드)로 지급
- 지원조건 : 국고보조 40~60%, 지방비 40~60%
- 사업 주요내용 : 소득하위 70%이하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농산어촌 만5세아에 대한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월172천원) 지원
- 시도별 배분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예산

- 사업기간 : '99년부터 (단년도 계속사업)
- 재원형태 : 국고보조 40~60%, 지방비 40~6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1,356			1,356		2,712
2010			1,218			1,218		2,436
(증△감)			△138			△138		△276

※ 만5세아무상보육료 예산은 농산어촌지역만을 대상으로 편성하지 않고 농산어촌지역을 포함한 전국단위로 편성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천명)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32			6,853		6,853		13,706
'10	122(31)			1,218		1,218		2,436
'11	96(32)			983		983		1,966
'12	113(33)			1,337		1,337		2,674
'13	155(36)			1,680		1,680		3,360
'14	146(35)			1,635		1,635		3,270

※ ( )는 농산어촌 지역 지원아동수  
지원예산은 농산어촌을 포함 전국 만5세아 보육료 지원 예산

< 1-3-3-3 :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농촌사회과	담당자	박성우(서기관)
전화번호	02-500-1819	이메일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어업인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육아 부담 경감 및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 유도

○ 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추진방향에 대한 개괄적 서술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만족도	지자체를 통해 대상자 설문조사 (2분위 이상 응답비율)	%	75%

○ 사업 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8조 및 제22조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추진절차 : 농업인(신청) → 이·통장(내용 확인) → 읍·면·동(지위 여부 확인) → 시·군·구(대상자 확정) → 보육료 지원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의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 사업 규모(사업량) : 47천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연령별 지원단가의 35% 또는 70% 지원, 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 주요내용
  - 시설이용아동에게 보육시설 보육료 및 유치원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
    - \* 지원금액(월/인) : 정부인건비 지원시설 이용시 지원되는 법정저소득지원단가의 70%
  - 시설미이용 아동에게 가정 육아비용의 일부를 지원
    - \* 지원금액(월/인) : 정부인건비 지원시설 이용시 지원되는 법정저소득지원단가의 35%
- 시도별 배분내역
  - \* 시도별 배분은 '09년 실적에 따라 배분

(단위 : 백만원)

시·도 (보조사업자)	계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계	40,648	27,797	12,851
서울	4	4	-
부산	137	117	20
대구	228	201	27
인천	252	142	110
광주	30	21	9
대전	36	24	12
울산	361	281	80
경기	5,460	4,241	1,219
강원	1,950	1,216	734
충북	2,548	1,751	797
충남	6,017	4,016	2,001
전북	3,531	2,224	1,307,000
전남	5,946	3,748	2,198
경북	5,512	3,707	1,805
경남	4,199	2,782	1,417
제주	4,437	3,322	1,115

○ 예산

- 사업기간 : '04년 ~ (계속 사업)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40,648	-	-	-	40,648	40,648	-	81,296
2010	40,648	-	-	-	40,648	40,648	-	81,296
(증△감)	-	-	-	-	-	-	-	-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로 육아 부담 경감
  - 시설 이 용 : 보육료 지원 단가의 70% 지원 → 80%
  - 시설 미이용 : 보육료 지원 단가의 35% 지원 → 50%

	사업규모 (천 세대)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23	2,529				2,529		5,058
'10	47	406				406		812
'11	46	470				470		940
'12	45	549				549		1,098
'13	43	551				551		1,102
'14	42	553				553		1,106

< 1-3-3-4 : 여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여성가족부) >

담당부서	여성정책과	담당자	김가람 사무관
전화번호	02-2075-4635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지역정책의 전 과정과 분야에 양성의 동등한 참여와 혜택 실현
- 농어촌 정책의 성주류화와 여성친화적 생활공간 조성을 통하여 농어촌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 등 삶의 질 제고에 기여

○ 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시·군·구를 기본단위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확산' 사업 추진
  - 여성친화도시에서 '도시'는 지역적·공간적 개념일 뿐이며, 농산어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
    - ※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이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 되도록 하는 완결적 행정단위를 의미함
- 농어촌 성 주류화 및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기반 구축, 각종 농촌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여성 독거노인 및 결혼이민여성 지원정책 마련, 여성친화적 생활공간 조성 및 여성의 일상적 요구에 대한 적극적 대응
  - ※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제 예시 : 여성 관리직 공무원 비율 확대,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확대, 여성친화 건축물 표준설계제도 도입, 버스 승강장 및 보도 개선 등 여성의 이동 편의방안 마련, 아동 등하교 도우미 제도 운영 등 지역안전망 구축, 공공시설 유모차 대여 및 수유실 설치, 여성 불편신고센터 운영 등

- 여성친화도시 지정 도시에 대한 분야별 전문 컨설팅 지원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여성친화도시 지정 시군구 수	'10년도 여성친화도시 지정 시군구 수	개소	8

### ○ 사업 추진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4조 및 제3장(제15조~제28조의2)

### □ '10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개괄적으로 서술)

- 사업추진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추진절차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시·군·구) → 여성친화도시 지정 요청(시·군·구→여성부) → 여성친화도시 지정(여성부) → 여성친화도시 조성 컨설팅(여성부→시·군·구) →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시·군·구)

####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대상 : 시·군·구
- 사업 규모 : '10년까지 10개 시·군·구 지정
- 지원 내용 :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따른 예산 지원 없음
- 사업 주요내용
  -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개발·보급
  - 여성친화도시 교육운영 프로그램 및 표준강의안 개발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형성 교육('10년도 지자체 공무원 300여명 이내)
  - 여성친화도시 지정도시 컨설팅 실시('09년 여성친화도시 지정도시)
  - 여성친화도시 조성·확산('10년까지 10개 시·군·구 지정 계획)

○ 예산

- 사업기간 : '09년 - 계속
- 재원형태 : 별도 예산 없음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2010								해당없음
(증△감)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 여성친화도시 컨설팅단 구성·운영 및 컨설팅 지원
- 여성친화도시 조성 확산('11년까지 20개 시·군·구)
- 다양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모델 개발 추진
  - 시·도 및 전국 여성정책네트워크 협력을 통하여 지역 특색에 적합한 다양한 모델 개발 추진
  - (예) 신도시형, 농촌형, 도농복합형 등

<1-3-3-5 :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농촌진흥청) >

담당부서	농촌자원과	김영아
전화번호	031-299-2681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촌노인과 예비노인에게 건강, 학습·사회활동, 안전한 환경조성, 경제·소득활동 등 4영역을 접목하여 건강하게 장수하는 문화 조성
- 농촌노인에게 건강증진, 사회활동 참여 등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 지원으로 건강한 생활 영위와 저강도의 노동을 투입하여 농업·전통문화 영역에서 알맞는 일거리 개발 및 참여로 생산적인 활동 영위와 생활환경 정비, 건강하고 당당한 성공적인 노년생활 영위와 생활의 질 향상
-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여 더불어 사는 문화 조성과 장기적 도시민 유치 효과

○ 사업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노인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 지식, 기술의 활용 발굴과 전승기반 조성
-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환경 정비 등 종합적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고령화 대책의 시범 모델마을로 육성, 운영
- 소일거리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일감을 제공하여 건강도 유지하면서 보람되고 여유로운 노후생활 도모 등 생산적 여가활동 지원
- 1교·1촌, 어린이-노인 등 세대간 프로그램 운영으로 세대간, 가족간 통합
- 건강한 노인, 농촌여성조직체 협력으로 거동 불편노인의 안전 체계 구축
- 3년간 마을별 발전계획 수립, 시행, 마을주민의 자발적 참여 조장으로 건강한 장수문화 조성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수혜자 생활만족도	사업대상마을 설문조사	점	70

##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19조(고령농림어업인의 은퇴 후 생활안정 지원, 고령 농림어업인의 생활안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

## □ '10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개괄적으로 서술)

- 사업추진주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마을) → 심의회, 대상마을 선정(시군농업기술센터) → 마을추천(시군→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 사업시행 준비(마을, 시·군) → 예산지원(농촌진흥청→시·도 농업기술원→시·군 농업기술센터) → 사업시행 및 농촌건강장수마을 운영(시·군농업기술센터 및 마을)

###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농촌건강장수마을을 추진하겠다고 사업신청을 하여 선정되고 농업기술센터와 협정을 체결한 단일 마을 또는 둘 이상의 마을
- 사업 규모(사업량) : 150 마을('08년 선정 84, '09년 7, '10년 59개소) 조성
- 지원금액 및 형태 : 마을당 연간 50백만원(개소당 3년간 지원)
- 지원조건
  - 마을 내 65세 이상 노인의 50% 이상이 참여의사를 표명한 마을
  - \* 2009 신규마을은 65세 이상 비율이 20% 이상일 것
  - 55세 이상의 예비 노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사가 있는 마을
  - 노인들의 농산물 가공, 공예품 제조 등 생활 활동이 활발하거나 가능성이 있고, 학습사회 활동을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
  - 마을 지도자의 사업추진 의지가 강하고 리더십이 있는 마을

- 유사한 사업 경험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마을 또는 농촌지도 시범사업과 연계되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마을

- 사업 주요내용

- 식생활, 운동 등 건강생활 프로그램 실천 지원으로 장수의 조건 갖추기
- 학습·사회활동 촉구를 통한 뇌의 활동 촉진으로 노화 방지
- 노년기 활동에 알맞은 생활환경 정비, 수질 등의 환경개선을 통하여 안전 생활 유도
- 소득·경제활동 지원으로 경제적·심리적 여유 갖기

- 시도별 배분내역

구 분	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량	150	2	1	2	1	1	8	27	15	11	20	12	20	16	14

※ 전북 2개소(지방비 100%), 제주계정 14개소 포함

○ 예산

- 사업기간 : '05년 ~ '16년(총 12년)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군특(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3,150	375			3,525	3,525		7,050
2010		3,700			3,700	3,791		7,491
(증△감)	-3,150	3,325			175	266		441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환경 정비 등 종합적 지원을 통해 고령화에 따른 시범적 해결, 요구와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 지속 운영 등 생산적 여가 활동 지원
- 일거리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저장도 노동의 일감을 제공하여 여유로운 노후 생활 도모

	사업규모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49		33,675			33,766		67,441
'10	150		3,700			3,791		7,471
'11	168		4,200			4,200		8,400
'12	293		7,325			7,325		14,650
'13	350		8,750			8,750		17,500
'14	388		9,700			9,700		19,400

< 1-3-3-6 :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노동부) >

담당부서	인적자원개발과	담당자	박준용 사무관
전화번호	02-2110-7266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향후 한미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개방화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민에게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원활한 전업 지원, 농어민 소득향상 등 가계안정에 기여

○ 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전직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에게 직업훈련 기회 제공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수료자 취업률	[수료후 취업자수 (조기취업 포함) / 수료자수(조기취업 포함)] * 100	%	44.7
훈련참여자 만족도	5점 척도에 의한 설문조사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점	78.6

○ 사업 추진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고용정책기본법 제20조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 제외)
- 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서 및 실적 평가, 지자체별 지원금 결정('10.1월~, 노동부) → 훈련과정 승인 및 훈련생 모집('10.2월~, 지자체) → 사업실시('10.3월~, 지자체)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업인
- 사업 규모(사업량) : 415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916백만원(농특회계 및 광특회계 포함), 지방자치단체 보조
- 지원조건 : 훈련실시과정에 대하여 훈련기관에는 훈련비를, 소정훈련일수의 80%이상을 출석한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원
- 사업 주요내용
  - FTA피해 예상 농어민에 대한 특화 과정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예산계상신청서 취합
  - 예산계상신청서 및 훈련실적, 농어민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 배분
  - 지자체가 훈련과정을 심사·승인하고 훈련기관을 지도·감독하는 등 사업 시행 전반을 관장하도록 자율성, 책임성 부여
  - 매칭사업으로 지자체 부담은 20%
- 시·도별 배분내역

(단위 : 천원)

도별	소계	국고보조(80%)	지방비(20%)
강원	73,750	59,000	14,750
충남	375,000	300,000	75,000
전북	150,000	120,000	30,000
전남	163,750	131,000	32,750
경북	190,000	152,000	38,000
경남	163,750	131,000	32,750
제주(광특회계)	28,750	23,000	5,750
계	1,145,000	916,000	229,000

○ 예산

- 사업기간 : '95년부터 ~ 계속
- 재원형태 : 국비 80%, 지방비 2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855	26	-	-	881	220	-	1,101
2010	893	23	-	-	916	229	-	1,145
(증△감)	38	△3	-	-	35	9	-	44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10년과 마찬가지로 예산계상신청서 및 훈련실적 등을 평가하여 예산을 차등 배분하고, 농어민 특화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훈련과정 선정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10	415	893	23			229		1,145
'11	420	920	24			236		1,180
'12	425	948	25			243		1,216
'13	430	976	26			251		1,253
'14	435	1,005	27			258		1,290

※ '10년 예산을 바탕으로 매년 물가상승률(3%) 반영

< 1-3-4-1 : 다문화 가정 농업 교육(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농촌사회과	담당자	장현아(사무관)
전화번호	02-500-1825	이메일	

1. 여성결혼이민자 기초농업교육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업에 종사할 의지가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농어촌 환경에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에 필요한 기초교육 실시

○ 사업추진방향

- 1단계 :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업인으로써 자긍심을 갖는 농업의식 및 기초 농업교육 실시
- 2단계 : 농촌사회의 지속적 유지와 농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인적자원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맞춤형 농업교육 실시
- 3단계 : 전문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농업기술경영, 농관련산업, 창업지원을 위한 컨설팅 등 전문경영기술 및 역량강화교육 실시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교육참여 이민여성 수	교육이수자 수	명	500

\* 교육수준 : 1단계로 기초이해 등 적응에 집중

○ 사업추진근거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 국가 및 지자체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업관련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 '10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농협중앙회
- 사업추진절차 : 교육계획수립 및 예산지원(농식품부) → 세부사업계획 수립(농협중앙회) → 교육대상자 모집(지역농협) → 예산신청 및 배정(농협중앙회) → 기초농업교육 진행(지역농협) → 추진실태점검(농식품부, 농협중앙회) → 교육완료·보고(지역농협 → 농협) → 교육만족도 조사(농협중앙회) → 평가회(농협중앙회) → 국고정산·사업완료보고(농협중앙회 → 농식품부)

###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대상 :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중 기초 농업교육을 희망하는 이민 초기 여성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자  
영농정착 의지와 실천능력이 강한 자  
본 교육과정 참여를 남편 등 가족이 동의한 자
- 선정규모 : 총인원 500명  
8개도: 도별 2~4 개소 (1개소당 20명 기준)
- 사업 주요내용
  - 교육내용 : 농업일반, 기초영농교육, 농기계사용법, 현장체험, 소양교육 등
  - 교육회차 및 시간 : 연 15회 , 1일 3시간(총 45시간)
  - 교육 주관 : 시군지부, 지역농협
  - 교육 장소 :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 회의실
  - 교육 실시방법 : 집합교육, 현장실습, 선진농가견학
  - 교육 이수자 사후관리  
: 전체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증 수여  
향후 영농정착 지원 사업 시행시 인센티브 제공 검토

전체 교육과정 이수자 중 희망자는 전문 작목반에 연계하여 지속적  
관리 방안 모색

맞춤농업교육 및 품목전문교육 각종 이수기회 제공

농업관련 취업프로그램 우선 제공 등

## ○ 예산

- 사업기간 : '10년 신규사업

- 재원형태 : 국비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10	750	-	-	-	750	-	-	750

##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20년까지 5,500명을 목표로 도별·권역별로 연간 500명 규모 교육 실시

## 2. 이민여성농업인 1:1 맞춤농업교육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업에 종사를 희망하는 이민여성농업인과 전문여성농업인을 1:1 맞춤  
농업교육을 통한 우수 여성농업인 양성 및 안정적인 농촌정착 유도

#### ○ 사업추진방향

- 1단계 :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업인으로써 자긍심을 갖는 농업  
의식 및 기초 농업교육 실시

- 2단계 : 농촌사회의 지속적 유지와 농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인적자원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맞춤형 농업교육 실시
- 3단계 : 전문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농업기술경영, 농관련산업, 창업지원을 위한 컨설팅 등 전문경영기술 및 역량강화교육 실시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교육참여 이민여성 수		명	500

\* 교육수준 : 2단계로 전문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 ○ 사업추진근거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 국가 및 지자체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업관련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 '10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농협중앙회
- 사업추진절차 : 사업계획 시달(농식품부) → 지원대상자 수요파악(지역농협)  
→ 프로그램 신청(이민 여성) → 지원대상 선정(지역농협)  
→ 후견 여성농업인 파견(지역농협) → 수당지급(지역농협)

####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대상
  - 이민여성농업인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중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고 신청일 현재 거주 기간 1년 이상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배우자 또는 가족이 교육에 동의하는 자



· 농업교육후견인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를 우수한 농업·농촌의 농업 인력으로 양성할 의지가 있는 여성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5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 여성농업인

- 선정규모 : 총인원 500명(시군별 4명 기준 인원배정)

- 사업 주요내용

· 교육내용 : 8개 품목(곡류, 과일, 채소류, 특산류, 화훼류, 잔류종묘, 가축류, 란류) 전문교육

· 교육회차 및 시간 : 2월~10월 중 품목별 시기에 맞추어 교육 실시  
 품목별 15일~20일, 1일 3시간 기준 교육 진행

· 교육 주관 및 장소 : 이민여성농업인 혹은 후견인 농장에서 실시  
 공동교육 및 기타 견학 등의 경우 해당 농장에서 교육

· 교육실시방법 : 현장교육, 공동교육, 견학 등  
 후견인은 교육일지 작성, 교육완료 후 농업교육일지 제작·보급

○ 예산

- 사업기간 : '09년 부터

- 재원형태 : 국비, 농협자체예산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농협예산)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9	426	-	-	-	426	-	118	544
2010	426				426		52	478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20년까지 5,500명을 목표로 도별·권역별로 연간 500명 규모를 대상으로  
 집합교육 실시

< 1-3-4-2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여성가족부)>

담당부서	다문화가족과	담당자	이창은
전화번호	2075-8725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역사회의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가족 교육·상담,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 조기 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도모

○ 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9개소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다문화가족에게 한국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
- 기본사업 : 한국어교육, 가족통합 및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취·창업지원, 자조모임, 상담
- 특성화사업 : 이중언어교실,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등
- 멘토링·자원봉사단 운영, 다문화인식개선, 지역사회 홍보 등 지역사회 특성 및 수요를 감안한 다양한 사업 추진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수	2010년 사업결과보고서	명	960천명(연인원)

○ 사업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개괄적으로 서술)

- 사업추진주체 : 여성가족부, 시·도/시·군·구, 민간단체(사업지원기관)
- 사업추진절차 : 여성가족부(사업총괄) → 시·도/시·군·구(사업관리 및 예산지원),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사업지원) → 지역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사업집행)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업 규모(사업량)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9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센터별 50백만원~87백만원 지원 (국비+지방비)
- 지원조건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된 센터
  - 지자체 보조(서울50%, 지방70%)
  - 민간경상보조(국고100%)
- 사업 주요내용(\*제도개선사항을 포함하되, 구체적으로 기재)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비, 전담인력 인건비 등 지원
- 시도별 배분내역

센터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9	19	7	6	7	3	2	3	24	12	9	10	11	15	15	14	2

○ 예산 (비예산사업은 비예산사업이라고 표시)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재원형태 : 서울(국비 50%, 지방비 50%), 지방(국비 70%, 지방비 3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4,944		2,156		7,100
2010				8,278		3,644		11,922
(증△감)				3,284		1,488		4,772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159				83	36		119
'11	200				127	60		187
'12	230				216			216
'13	283				360			360
'14	283				454			454

< 1-3-4-3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여성가족부)>

담당부서	다문화가족과	담당자	이창은
전화번호	2075-8725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진단 및 촉진교육을 통해 건강한 성장 지원

○ 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언어발달진단 및 교육 전문인력인 다문화 언어지도사를 지역 센터에 배치
  - 센터내 자체 프로그램 운영 및 인근 보육시설 파견
- 추진방향에 대한 개괄적 서술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다문화 언어지도사 배치 수	2010년 사업결과보고서	명	100명

○ 사업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아동 보육·교육)

□ '10년도 추진계획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아동 보육·교육)

○ 사업추진체계(개괄적으로 서술)

- 사업추진주체 : 여성가족부, 시·도/시·군·구, 중앙관리기관
- 사업추진절차 : 여성가족부(사업총괄) → 시·도/시·군·구(사업관리 및 예산지원), 중앙관리기관(프로그램 등 관리) →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집행)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 사업 규모(사업량) : 다문화 언어지도사 101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다문화 언어지도사 1인당 인건비 21백만원 지원 (국비+지방비)
- 지원조건
  - 지자체 보조(서울50%, 지방70%)
  - 민간경상보조(국고100%)
- 사업 주요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진단 및 교육을 위한 다문화 언어지도사 센터내 배치 및 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
- 시도별 배분내역

지도 사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01	8	3	5	5	3	2	2	10	7	6	10	14	7	9	8	1

○ 예산

- 사업기간 : '09년 - (계속)
- 재원형태 : 서울(국비 50%, 지방비 50%), 지방(국비 70%, 지방비 3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일반회계	기금	소계			
2009			1,553					
2010				2,154		687		
(증△감)			△1,553	2,154				

\* '09년 일반회계 → '10년 복권기금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100			2,154		687		
'11	100			2,356		731		
'12	130			3,195				
'13	150			3,772				
'14	180			4,740				

< 1-3-5-1 : 취약농가 인력지원(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농촌사회과	담당자	박성우(서기관)
전화번호	02-500-1819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사고·질병 및 취약농가에 영농 및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취약농가 기초생활 유지 도모

○ 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추진방향에 대한 개괄적 서술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도우미 이용가구의 만족도	전문기관의 만족도 조사 보고서	%	90

○ 사업 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12조 및 제15조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농협중앙회
- 사업추진절차 : 세부사업시행지침 작성(농협) → 농업인 신청(농업인→농협) → 도우미 선정 및 파견(지역 농협) → 임금 신청(도우미) →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농협)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영농도우미 : 사고·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75세 이하의 농업인
- 가사도우미 :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부부가구,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등

- 사업 규모(사업량) : 총 3만 가구(영농 15천 가구, 가사 15천 가구)

- 지원금액 및 형태 : 민간보조

- 영농도우미 : 1일당 52,000원(8시간 기준)
- 가사도우미 : 1회당 10,000원

- 지원조건

- 영농도우미 : 국고 70%, 자부담 30%, 최대 10일
- 가사도우미 : 국고 70%, 농 협 30%, 최대 12회(월 1회)

- 사업 주요내용

- 영농도우미 : 사고·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 영농활동 도모
- 가사도우미 : 취약 농가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 가사활동 지원

- 시도별 배분내역 : 해당 없음

\* 농가인구 및 가구 이용가구 등을 감안하여 농협에서 지역본부별 배분

○ 예산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사업)

- 재원형태 : 국비 7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5,992	-	-	-	5,992	-	2,568	8,560
2010	6,520	-	-	-	6,520	-	2,780	9,300
(증△감)	528	-	-	-	528	-	212	740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가사도우미를 농어촌 경로당의 가사도우미로 활용함 농어촌 노인 돌봄사각 지대 해소

	사업규모 (천 가구)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0	349					148	497
'10	30	65					28	93
'11	20	71					30	101
'12	20	71					30	101
'13	20	71					30	101
'14	20	71					30	101

< 1-3-5-2 : 농업인 복지시책 교육·홍보 강화(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농촌사회과	담당자	박성우(서기관)
전화번호	02-500-1819	이메일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우리부에서 추진 중인 농업인을 위한 복지시책을 우리부 홈페이지, 리플렛 등을 통해 홍보 및 교육을 추진하여 지원대상 누락 등 방지

○ 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추진방향에 대한 개괄적 서술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지자체 담당자 대상 워크숍 추진	워크숍 추진 실적 (내부 보고용)	-	워크숍 추진

○ 사업 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추진절차 : 워크숍 기본계획 수립(농식품부) → 참석 대상 파악(지자체→농식품부) → 권역별 워크숍 추진(농식품부, 지역 농협) → 워크숍 결과 보고(농식품부)

○ 사업 내용(신규사업)

- 사업 지원대상
  - 우리부 복지시책 수혜자, 지자체, 유관기관 담당자 등
- 사업 규모(사업량) : 해당 없음
- 지원금액 및 형태 : 23백만원, 직접 수행(경비)
  - \* '11년부터 정규 예산으로 편성 추진
- 지원조건 : 국고 100%(직접 수행)
- 사업 주요내용
  - 복지시책 담당자의 업무전문성 제고, 의견 수렴, 네트워크 형성 및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권역별 워크숍 추진
  -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 취약농가 인력지원, 영유아 양육비 등 복지시책 홍보를 위한 리플렛을 제작하여 전국 읍·면·동 및 지역농협에 배포
  - 지침 개정, 대상자 일제 조사 등 중요한 사안 추진시 반드시 시·군에서 읍·면·동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추진 후 시행
- 시도별 배분내역 : 해당 없음

○ 예산

- 사업기간 : '10년 ~ (계속 사업)
- 재원형태 : 국비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				-			-
2010	18				18			18
(증△감)	18				18			18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농어업 복지시책 교육·홍보(상·하반기 실시)를 통해 복지업무 담당자 업무 역량 강화 및 고객 만족도 제고

	사업규모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식	258						258
'10	1식(워크숍, 홍보물)	18						18
'11	"	60						60
'12	"	60						60
'13	"	60						60
'14	"	60						60

## 1-4. 농어촌의 능동적 복지기반 강화

### (1) 개관

#### □ '10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농어촌에 기반한 공동체를 형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기업방식으로 경영하는 농어촌 공동체회사를 육성하여 사회서비스 공급 및 일자리 창출
  - 농어촌 공동체회사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농어촌 공동체회사 유형에 해당하는 농어촌 유학 시범사업 추진(100백만원, 3개소)
- 농수협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활용하여 복지전달 체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수협과 복지사업 공동 추진 방안 모색, 관련 법령 개정

#### □ 예산 내역

<2010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	100				100			100
농산어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개선								비예산사업
합계	100				100			100

#### □ '11년도 추진 방향

- 농어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지원 추진하고, 보육센터, 교육과정개설 등 측면 지원 활성화(세제·보험 등 제도적 지원방안은 중장기 검토)
- 선도적인 농·수협의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참여로 농촌복지 전달체계 사각 지대 해소

< 1-4-1-1 :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농림수산물)>

담당부서	농촌정책과	담당자	박종민(사무관)
전화번호	02-500-1788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어촌에 기반한 공동체를 형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기업방식으로 경영하는 농어촌 공동체회사를 육성하여 농어촌 일자리 및 소득창출 등 지역 사회 활성화에 기여

<p>농어촌 공동체회사 개념</p> <p>i) 목적 : 사회서비스 공급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 (지역성+공익성)</p> <p>ii) 구성 : 지역주민 또는 귀촌인력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공동체)</p> <p>iii) 운영 : 자립성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기업경영방식(수익성)</p> <p>iv) 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농어업법인, 농협 등 기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성)</p>
--

○ 사업추진방향

- 농어촌 공동체회사 운영에 필요한 활동비, 경비, 컨설팅, 교육비, 시설설치 비용 등 지원
- 농식품산업형, 도농교류형, 지역개발형,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형 등 다양한 유형의 수익모델 개발 및 확산
- 보육센터, 교육과정 개설, 세계·보험지원 등 측면지원을 통한 활성화 유도
- 농어촌 유학 등 시범사업 추진

##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재정을 지원하고, 사업의 기준 및 지원방법 등을 농식품부령으로 별도 규정하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안(법 제19조의3 신설) 국회 제출('09.11.27)

## □ '10년도 추진계획

### ○ 농어촌 공동체회사 종합지원방안 마련

- 다양한 농어촌 공동체 조직의 법인화 유도, 농어촌 공동체회사에 대한 제도적 지원(세제지원, 4대 보험 지원), 농어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지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홍보·확산지원, 귀촌인력 활용 방안 등

### ○ 농어촌 공동체회사 유형에 해당하는 농어촌 유학 시범사업 추진(100백만원, 3개소)

##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 ○ 농어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지원 추진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대상자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농어업 법인, 농협 등 기타 비영리 민간 단체
- 지원형태 및 조건 등
  - 지원형태 : 국고보조(농특)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내용 : 연간 5천만원 한도내에서 3년간 지원하되,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실적이 저조한 경우 지원 중단

### ○ 보육센터, 교육과정개설 등 측면지원 활성화

- 세제·보험 등 제도적 지원방안은 중장기 검토



< 1-4-3-1 : 농산어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농촌사회과	담당자	박성우(서기관)
전화번호	02-500-1819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어촌의 복지서비스 기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농어업인 대상 복지 사업을 시행중인 지역 농수협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활용
- 농어업인의 활용도가 높은 농수협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활용하여 복지전달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대상에서 누락 방지

○ 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추진방향에 대한 개괄적 서술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농수협의 농어촌 복지참여도 개선	복지부 소관 법령 또는 지침 개정 여부	-	개정

○ 사업 추진근거

-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농·수협 중앙회
- 사업추진절차 : 농어촌 복지서비스 방안 마련(농식품부, 타 부처) → 농·수협 시달(각 부처→농·수협) → 농어업인 전파(농협→농어업인)

○ 사업 내용(신규사업)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업인
- 사업 규모(사업량) : 3,379천명(농가 3,187천명, 어가 192, '08기준)
- 지원금액 및 형태 : 해당 없음(비예산 사업)
- 지원조건 : 해당 없음(비예산 사업)
- 사업 주요내용
  - 농·수협과의 연계를 통해 우리부 복지시책의 전달 체계로 활용하고 농·수협과 지자체간 연계 등 복지사업 공동 추진 방안 모색
  -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농·수협을 대상으로 농·수협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지침) 개정
- 시도별 배분내역 : 해당 없음

○ 예산 : 해당 없음(비예산 사업)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해당 없음(비예산 사업)

- 선도적인 농·수협의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참여로 농촌복지 전달체계 사각지대 해소

## 2.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 2-1.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 (1) 개관

##### □ '10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농산어촌 초·중학교 110개소를 전원학교로 육성하여 농산어촌 성공모델 창출
  - 자연과 첨단이 조화된 교육환경 조성,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특색있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이 돌아오는 성공모델 창출
- 농산어촌 학교 학생에 대해 학기중·방학중·주말 등에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연중돌봄학교 지원(383개교)
  - 농산어촌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증진시키고,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을 대신하여 학교·지역이 학습과 생활 공간의 역할을 하도록 지원
- 농산어촌 지역의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거점학교 중심 공동운영을 활성화하고 운영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140개 시군)
- 기숙형고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연구학교 운영, 교직원 연수 실시, 저소득층 기숙사비 경감대책 마련 등 다양한 지원
-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통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 학교 시설·여건 개선 및 학생 통학 지원
  -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여 지역발전과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력 강화의 선순환구조 형성
- 우수한 농어업인력 양성을 위한 한국농수산대학 운영 개편 및 예산증대
  - 현장실습교육 내실화, 졸업생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지도활동 강화
  - 지원금액 : ('09) 7,954백만원 → ('10) 13,638백만원

□ 예산 내역

<2010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						51,300		51,300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육성						23,000		23,000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42,081		42,081
기숙형고교 육성·지원						120,000	120,000	240,000
한국농수산대학 개편·운영			13,638		13,638			13,638
합계			13,638		13,638	236,381	120,000	370,019

□ '11년도 추진 방향

- 농산어촌 전원학교에 대한 교과부의 초기지원('09~'11)이후, 학교의 프로그램 운영·인건비 등 관련 제반 비용은 도교육청 및 지자체 부담
- 농산어촌 학교의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 '11년도에는 기숙형고교 150개교의 운영이 시작됨에 따라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공적인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 지역의 발전계획과 연계한 군 지역내 학교 통폐합·재배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초기연도에 사업비를 지원
- 한국농수산대학교 우수신입생 유치를 위한 전략적 홍보 및 제도개선

< 2-1-1-1 :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교육복지정책과	담당자	조홍선주무관 고정명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521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산어촌 지역의 초·중학교를 육성하여 자연친화적 환경과 e-러닝 시설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생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학교의 성공모델 창출

○ 사업추진방향

- 농산어촌 지역의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자연과 접단이 조화된 교육환경 조성, 우수인력 배치,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학교 교육력 제고
- 자율적인 학교운영과 지역주민과의 강력한 연계를 통해 학생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학교의 성공 모델 창출
-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농산어촌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입되는 인구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 농산어촌의 미래발전을 견인하는 지속가능한 전원학교로 육성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농산어촌 전원학교 만족도	설문조사	%	70%

○ 사업추진근거

- 「교육기본법」 제4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 '10년도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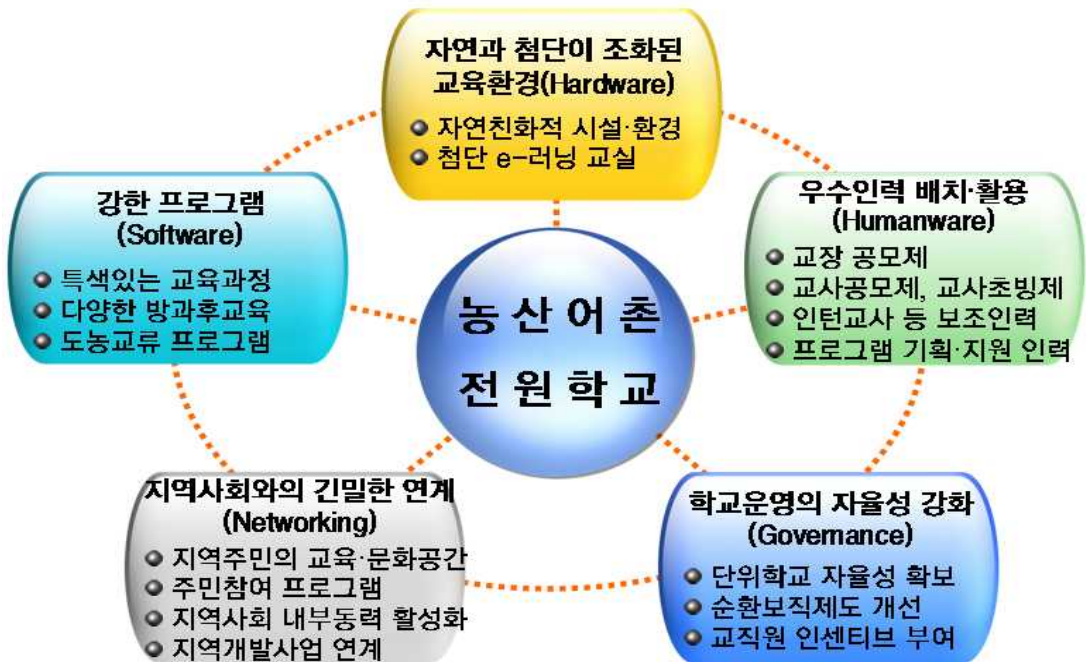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교육과학기술부, 9개 도(道)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 사업추진절차
  - 교과부 : 기본계획 수립, 대상학교 최종확정 및 사업비 지원
  - 도교육청 : - 사업대상 지역교육청 심사·추천, 전반적 사업관리 수행
    - 사업학교 지원계획(교장공모제·교사초빙제 지원, 자율학교 지정 등 행정적 지원, 연수 및 평가) 수립·실행
    - 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운영
  - 지역교육청 :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으로 각종 지원 사업을 연계·조정하여 사업학교 지원
  - 학교 : 학교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자율 운영 , 지역주민 협력체제 구축,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 ○ 사업 내용

- 지원대상 : 9개 도(道)교육청 초·중 110교('09년 지정)
- 지원금액 및 형태 : 총 513억원(특별교부금 100%)
- 농산어촌 전원학교 모델



- 농산어촌 전원학교 운영 모형



- 시도별 예산배분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시설비/프로그램비	8,167.5	4,657.5	3,532.5	7,965	6,007.5	7,312.5	6,030	6,817.5	810	51,300
학교수(교)	17	10	7	18	13	16	12	15	2	110

○ 농산어촌 전원학교 확대

- 지정 확대 대상

- 도(道)교육청내 소규모학교 통폐합 본교 또는 초·중 통합운영 전환학교가 면에 소재하고 61~200명 내외의 규모인 경우 전원학교로 지정·육성

- 교육환경 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통폐합 또는 통합운영 전환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보통교부금)를 지역·학교 여건을 감안하여 교육환경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

□ '11년도 이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농산어촌 전원학교에 대한 교과부의 초기지원('09~'11)이후, 학교의 프로그램 운영·인건비 등 관련 제반 비용은 도교육청 및 지자체 부담

	사업규모 (교)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01		601
'10	110교					513		513
'11	110교					88		88



< 2-1-2-1 : 농산어촌 연중 들봄학교 육성(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교육복지정책과	담당자	조홍선주무관 고정명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521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산어촌 학교 학생에 대해 학기중·방학중·주말 등에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교육복지 지원 강화 및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도모

○ 사업추진방향

- 농산어촌 학교·지역의 특색을 살린 자생적 교육역량 강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추진역량 및 지역교육청의 조정·지원 기능 강화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농산어촌 연중들봄학교 구성원 만족도	설문조사	%	70%

○ 사업추진근거

- 「교육기본법」 제4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교육과학기술부, 12개 시도(道)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 사업추진절차
  - 교과부 : 기본계획 수립, 대상학교 최종확정 및 사업비 지원
  - 도교육청 : - 사업대상 지역교육청 심사·추천, 전반적 사업관리 수행
  - 사업학교 지원계획(각종 행정적 지원, 연수 및 평가) 수립·실행

- 지역교육청 :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으로 각종 지원 사업을 연계·조정하여 사업학교 지원
- 학교 : 학교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자율 운영, 지역주민 협력체제 구축,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 ○ 사업 내용

- 지원대상 : 12개 시도(道)교육청 초·중 383교
  - ※ '09년 연중돌봄학교 11교 지정 해제(전원학교 중복지정교) 및 '10년 16교 추가지정
- 지원금액 및 형태 : 230억원  
(교과부 특별교부금 140억원, 교육청 대응투자 90억원)
- 사업 주요내용
  - 사업연계를 통해 농산어촌 학생에게 365일 교육복지 지원  
(학기중) 일과전·일과·일과후에 학생의 학습결손 치유를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학습·문화·복지 프로그램 지원  
(주말 및 방학)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을 대신하여 학교·지역이 학습과 생활 공간의 역할을 하도록 학습·문화·보건·의료 등 지원
  - 연중 돌봄학교의 교육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내실화 지원  
: 농산어촌 지역 여건 및 소규모 학교의 특성에 맞는 특성화 교육과정 및 기초학력증진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지원
  -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간 및 학교·지역간 연계 지원  
: 학교간 시설 공동 활용 및 공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을 통해 적정 규모의 학생이 교육활동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투자의 효율성 확보
  - 협의회 구성으로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 활용지원
- 시도별 예산배분 :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예산 배분하되, 구체적 내역은 미정

## □ '11년도 이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교)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28		528
'10	383					230		230
'11	383					298		298

< 2-1-2-2 :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학교선진화과	담당자	정윤경
전화번호	2100-6416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산어촌 지역의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여 농산어촌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및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 다양한 양질의 방과후 교육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만족도 제고 및 농산어촌 정주 여건 개선

○ 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농산어촌 지역의 방과후학교 운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 실시
-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인근 소규모 학교 간 방과후학교 공동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우수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운영
- '08년부터 방과후학교 지원을 전체 농산어촌 지역으로 확대하고, 사업을 지방이양하여 시·도교육청의 자율성 강화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농산어촌 지역의 방과후학교 만족도	농산어촌 지역 학생 만족도 조사 실시	%	68

○ 사업 추진근거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도별 방과후학교 기본계획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도교육청
- 사업추진절차 : (교과부) 시도교육청 보통교부금 교부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에 대한 기준재정수요 산정 → (시도교육청) 농산어촌 방과후 지원계획 수립, 예산지원 → (단위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 대상 : 군 및 읍·면이 있는 도·농복합시 전체
- 사업 규모(사업량) : 140개 시·군 (86개 군 및 54개 도·농복합시)
  - \* 사업 연차별 지역 수 : 3년차('06~) 19개, 2년차('07~) 70개, 신규('08~) 51개
- 지원금액 및 형태 : 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 4,208억원\*
  - \*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제외 금액 (제주특별자치도는 별도 기준에 의해 일괄 교부)
- 사업 주요내용
  - 농산어촌 지역은 지리적 여건, 학생 수 부족 등으로 수익자 부담에 의존한 방과후학교 운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강사비 또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컴퓨터, 문화·예술 등 특기·적성 교육을 위한 각종 기자재 및 학교 간 연계 프로그램을 위한 시설비·운영비 지원
  - 방과후학교 업무 전담 계약직 인건비 지원 등
- 시도별 배분내역 (시·도별 농산어촌 지역 수)

(단위 : 개)

시·도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시·군	1	1	2	1	15	15	11	16	13	21	23	19	2	140

○ 예산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재원형태 : 국비 0 %, 지방비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	-	-	-	0	38,177	-	38,177
2010	-	-	-	-	0	42,081	-	42,081
(증△감)	-	-	-	-	0	3,904	-	3,904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농산어촌 학교의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행·재정적 지원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개)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40(계속)	-	-	-	-	210,405	-	210,405
'10	140	-	-	-	-	42,081	-	42,081
'11	140	-	-	-	-	42,081	-	42,081
'12	140	-	-	-	-	42,081	-	42,081
'13	140	-	-	-	-	42,081	-	42,081
'14	140	-	-	-	-	42,081	-	42,081

※ '11~'14년 지방비 규모는 교육비특별회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추정치이므로 변동예상

< 2-1-3-1 : 기숙형고교 지정 · 육성(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학교제도기획과	담당자	김상규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456	이메일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산어촌 등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기숙사 시설을 지원하여 학생 통학여건 개선을 통한 실질적 교육력 제고
- 학교 내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학교 운영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공교육의 내실화 및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기대

○ 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11년까지 기숙형고교 150개교 지정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기숙형고교 지정	학교 수	개교	150

○ 사업 추진근거

- 국정과제 '다양하고 좋은 학교 더 만들기'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교육과학기술부
- '08년 82교 및 '09년 68교 지정으로 국정과제 목표를 달성함에 따라, '10년은 연구학교 운영, 교직원 연수 실시, 저소득층 기숙사비 경감대책 마련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한 기숙형고교의 안정적인 정착 및 성공적인 운영 도모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농산어촌 및 도농복합도시 등에 소재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 사업 규모(사업량) : 150개교 기숙사 시설 지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기숙사 시설비 소요액의 50% 지원
- 지원조건
  - 기숙형고교로 지속가능한 적정규모의 학교(학생 수의 적정성, 중장기 학생 변동 추이 등)
  - 지역 내 학생들의 통학불편 해소를 위하여 기숙사 시설이 필요한지, 충분한 기숙사 시설 보유 여부
  - 시·도교육청 및 학교 설립·경영자 등의 기숙사 시설비 대응투자금액
  - 기숙형고교 운영 후 기숙사비 지원계획 등 성공적 운영을 위한 비전 보유 등
- 사업 주요내용
  - 농산어촌 등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교에 기숙사 시설 지원
  - 학교운영을 위한 다양한 운영프로그램 지원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연구학교 지정 등 인센티브 부여
- 시도별 배분내역

시도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학교 수	1	2	3	1	14	18	13	17	13	23	25	20	150

○ 예산

- 사업기간 : '08년 - '11년(총 4년)
- 재원형태 : 지방비 50%, 자부담\* 50%
  - \* 공립고의 경우 시·도교육청 지원비율이며, 사립고의 경우 학교법인 대응투자 일부 포함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2010						120,000	120,000	240,000
(증△감)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11년도에는 기숙형고교 150개교의 운영이 시작됨에 따라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공적인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백만원)	자부담 (백만원)	합계 (백만원)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8					120,000	120,000	240,000
'10	68					120,000	120,000	240,000
'11								
'12								
'13								
'14								



< 2-1-4-1 : 적정규모 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교육복지정책과	담당자	조홍선주무관 고정명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521	이메일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군(郡) 지역 장기발전 계획과 연계된 학교 통폐합을 통해 소규모 학교를 적정 규모로 재배치함으로써,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여 지역발전과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력 강화의 선순환구조 형성
-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른 학교운영비(인건비, 운영비) 절감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 사업추진방향

- 군(郡) 전체 유·초·중·고를 통폐합·재배치하여 전반적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새로운 접근전략으로 발전
- 선도군에는 학교 통폐합에 따른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자체 자체 장기발전계획 및 관계부처의 농산어촌 지역 개발사업 등과 연계·추진
- 시설투자 중심의 사업비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특색있고 우수한 교육활동 운영 지원을 병행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군별 통폐합 실적	실적 조사	군(지역)	2군

○ 사업추진근거

- 「교육기본법」 제4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 □ '10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교육과학기술부, 시도(道)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 사업추진절차
  - 교과부 : 기본계획 수립, 대상학교 최종확정 및 사업비 지원
  - 도교육청 : - 사업대상 군 지역 심사·추천, 전반적 사업관리 수행  
- 사업대상 군 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계획 수립·실행
  - 지역교육청 : 지역발전 계획 및 학생 수용 계획과 연계한 학교 통폐합 및 재배치 계획 수립
  - 학교 : 학교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자율 운영, 지역주민 협력체제 구축,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 ○ 사업 내용

- 지원대상 : 8개 시도(道)교육청
- 지원금액 및 형태 : 250억원(국고), 369억원(특별교부금)
  - ※ '10년도 사업비 지원액은 16억원('09년도 미지급한 잔액)
- 사업 주요내용
  - '11년까지 지역내 소규모학교 통폐합·재배치하고 학생 재배치
  - (학교 시설·여건 개선) 지역발전계획과 연계된 학교 재배치에 따른 학교 증축, 리모델링 및 다목적 강당·지역사회교육센터·기숙사 등 신·증축
  - (학생 통학 지원) 지역교육청 내 가칭 '통학버스 통합관리센터' 운영 등 통학버스 확충 등으로 학교 통폐합에 따른 학생 통학 지원
  - (단위학교별 특성화된 프로그램 지원) 지역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체험중심 교육과정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

- 시도별 예산배분내역('09년도 배분 예산 포함)

(단위 : 억원)

구분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남	계
국고				125	125	250
특교	30	30	120	77	82	339
계	30	30	120	232	207	619

□ '11년도 이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지역의 발전계획과 연계한 군 지역내 학교 통폐합·재배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초기연도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 학교·학생 재배치후 자율적으로 지역 및 학교여건에 맞는 교육환경 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

< 2-1-5-2 : 한국농수산대학 개편 · 운영(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한국농수산대학(기획실)	담당자	김영환
전화번호	031-229-5161	이메일	

□ 사업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어업인구의 급감과 초고령화, 농수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우리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을 이끌어갈 후계농어업인력 양성
- 농어업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학제개편, 국내·외 장기현장실습교육 내실화 등으로 우수한 농어업인력을 양성하고 졸업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이 성공적으로 영농에 정착하도록 기여

○ 사업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전문농어업인력 양성 교육환경 기반 조성
- 학생교육(학교+장기현장실습) 내실화
- 졸업생의 체계적인 영농·영어정착 지원
- 창업 후계농 및 졸업생 위주의 교외교육 강화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09년 목표치	비고
졸업생 영농정착률	학비지원조건이행상황보고서	%	92.0	
졸업생농가 평균소득률	학비지원조건이행상황보고서	%	235	

※ 졸업생 영농 정착률 : (영농정착 졸업생 수/의무영농 대상 졸업생 수)\*100

※ 졸업생농가 평균소득률 : (졸업생농가 평균소득/농가평균소득)\*100

<농가평균소득 : 농림어업통계연보 참조>

○ 사업추진근거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법률 제9624호)」 및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757호)」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
- 사업추진절차 : 발전방안 마련 및 보완(T/F팀 운영) → 의견수렴(세미나, 공청회)  
→ 발전방안 보완 및 확정 → 추진 → 평가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 사업규모 : 재학생 930명(8개학과, 3년제), 전공심화과정 60명, 졸업생 2,287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13,638백만원(국비 100%)
- 지원조건 : 수업연한 2배 동안의 의무영농
- 사업 주요내용
  - 우수 신입생의 안정적인 확보와 면학분위기 조성
  - 학생의 수요와 진로를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현장실습교육의 내실화로 현장감 제고
  - 졸업생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지도활동 강화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
  - 창업 후계농 및 졸업생 위주의 농어업인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

○ 예산

- 사업기간 : '10년 ~ 계속
- 재원형태 : 국비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일반회계	기금등			
2009	-	-	7,954	-	-	-	7,954
2010	-	-	13,638	-	-	-	13,638
(증△감)	-	-	5,684	-	-	-	5,684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한 전략적 홍보 및 제도개선
-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교과과정의 지속적 개선
- 정원 60명 규모의 전공심화과정 지속 운영
- 졸업생 영농정착 지원 강화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일반회계	기금등			
합계	4,860			468				468
'10	930			136				136
'11	960			81				81
'12	990			83				83
'13	990			84				84
'14	990			84				84

## 2-2. 우수 공교육프로그램 확충 및 교원확보

### (1) 개관

#### □ '10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재외동포 대학생, 원어민 자원봉사자) 사업 지원을 통해 농산어촌의 영어교육여건 제고(600명)
-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을 위해 맞춤형 교육지원(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교·사대 예비교사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다문화교육 강좌 개설 등)
- 행정업무경감을 통해 농어촌 학교에 우수교원을 유치하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학교장의 단위학교 책임경영제 실현

#### □ 예산 내역

<2010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우수 영어공교육 프로그램 제공			3,915		3,915	5,507		9,422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				500	500			500
합계			3,915	500	500	5,507		9,922

#### □ '11년도 추진 방향

- 농산어촌은 원어민 배치율이 낮고 영어 교육여건이 취약하여 영어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차원의 특별한 지원 필요
-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 사업의 경우 '10년까지는 국비 지원을 통해 대학의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11년도부터 대학이 자율적으로 개설·운영 유도
- 농어촌학교 우수교원 유치방안 시범학교 운영평가 후 전학교 실시 ('11.3)

< 2-2-1-1 : 우수 영어공교육 프로그램 제공(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글로벌인재육성과	담당자	황지혜(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179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TaLK) 사업 지원을 통해 원어민 활용 영어 교육여건이 취약한 농산어촌 및 교복투지역 등에 대한 영어교육격차 해소
- ※ 사업명 :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TaLK : Teach and Learn in Korea) 사업
- 재외동포 자녀 또는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인 대학생들이 한국문화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여 미래 친한(親韓), 지한(知韓) 인재 육성

○ 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재외동포 대학생 등 원어민 자원봉사자를 초청하여 국내 선발 대학생과 팀을 구성, 농산어촌,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강사로 활용
- 해외 대학의 학점 인정을 통한 참여 활성화 및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 교환학생 등 기존에 입국해 있는 원어민 자원을 최대한 활용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TaLK 장학생 선발 인원	장학생 선발명단 확인	명	550명

○ 사업 추진근거

- 국정과제(핵심 2-1-2 영어 공교육 완성, 교과부 업무보고('08.3.20), 국정과제 (4. 영어교육격차 해소)
-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08.7.3) 및 국립국제교육원 기본 운영 규정 ('08.7.11)



□ '10년도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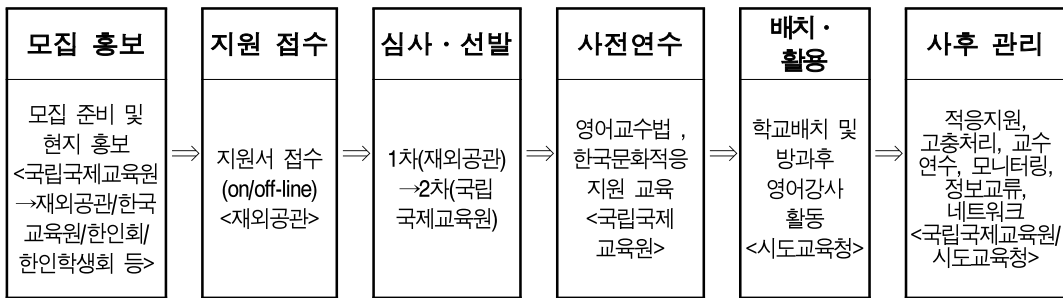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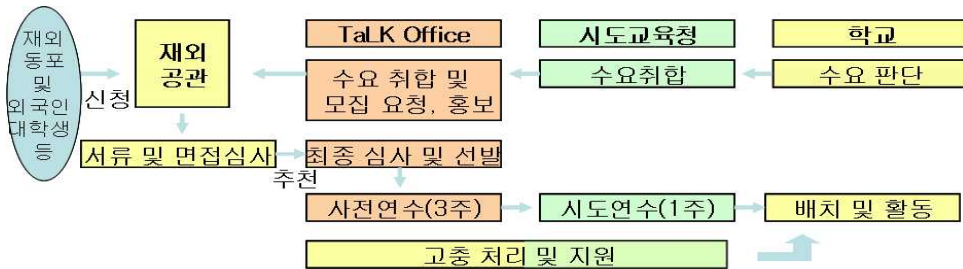
교육과학기술부/시도교육청(사업비 분담) → 사업 총괄 관리·운영(국립국제교육원) → 홍보·모집(국립국제교육원, 재외공관 등) → 입국, 사전연수(국립국제교육원) → 학교 배치·사후관리(시도교육청, 국립국제교육원) → 성과평가(교육과학기술부, 국립국제교육원)

-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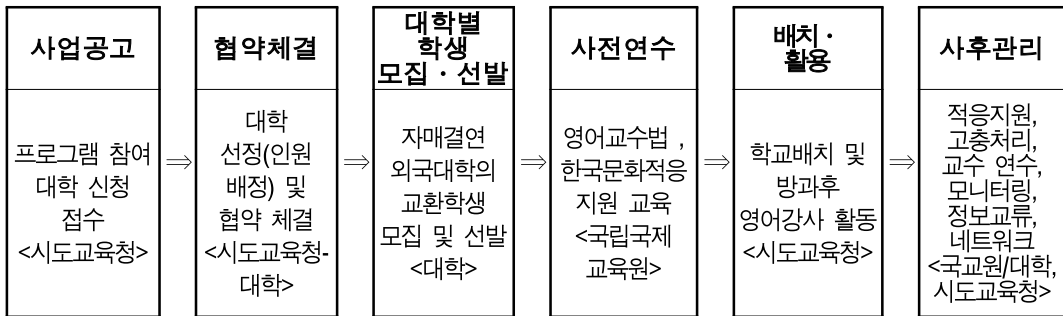
· 해외 직접 모집·선발



※ 주체별



· 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 활용 모집·선발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13개 시도교육청
- 사업 규모(사업량) : 600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9,422백만원, 지자체 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대응투자
- 사업 주요내용 : 재외동포 대학생 등 원어민 자원봉사자를 초청하여 국내 선발 대학생과 팀을 구성, 농산어촌, 교복투 지역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 강사로 배치
- 시도별 배분내역

(단위 : 백만원)

지역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국고	196	124	91	13	268	346	391.5	522	333	391.5	796	235	209	3,915
지방비 (시도대응투자)	196	124	91	13	268	346	391.5	522	333	391.5	796	235	209	3,915
특별교부금	80	50	37	5	109	141	159	212	135	159	324	96	85	1,592
사업비총계	472	298	219	31	645	833	942	1,256	801	942	1,916	566	503	9,422

○ 예산

- 사업기간 : '09년 ~ 계속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9,220			9,860		19,080
2010			3,915			5,507		9,422
(증△감)			△5,305			△4,353		△9,658

※ 사업회계연도 조정을 위해 '10년 예산은 하반기 5개월 예산 편성(인건비 4개월)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 사업(계속) : 매년 국고(9,474백만원)  
지방비(110.66백만원) 소요
- 농산어촌,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은 원어민 배치율이 낮고 영어 교육여건이  
취약하여 영어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특별한 지원 필요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000			418.11		497.71		915.82
'10	600			39.15		55.07		94.22
'11	600			94.74		110.66		205.4
'12	600			94.74		110.66		205.4
'13	600			94.74		110.66		205.4
'14	600			94.74		110.66		205.4

< 2-2-2-1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교육복지정책과	담당자	이혜진(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524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다문화가정 학생 멘토링 등을 통해 맞춤형 교육 지원
- 교·사대 등에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운영 지원, 교사의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교사 등의 다문화 이해 제고

○ 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다문화가정 자녀의 특성을 고려한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교사, 일반 학생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을 강화하여 맞춤형 교육 및 인식 개선
- 다문화가정 자녀가 다수 재학하는 학교를 '다문화교육 거점학교'로 지정하여 이들의 교육 수요에 맞는 다양한 지원 추진
- 예비 교사 대상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 지원 및 교대생 등을 활용한 다문화 가정 학생 멘토링을 통해 예비교사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교·사대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 수	'다문화교육 강좌'가 개설된 교·사대 숫자 파악	개교	20
다문화가정 학생 멘토링 참여 대학생 수	교대 등에서 보고한 멘토 대학생 수 집계	명	2,500

○ 사업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계획」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교대 및 국립대 사범대학, 중앙다문화교육센터
- 사업추진절차 : 사업 기본계획 수립(교과부)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대학 등 보조사업자) → 국고보조금 교부(교과부) → 사업추진(대학 등 보조사업자) → 사업결과보고 및 국고 보조금 정산(대학 등 보조사업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교대, 국립대 사범대학, 교대생
- 사업 규모(사업량) : 20개 대학에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 지원, 교대생 멘토를 선발하여 멘토링 활동 지원(약 2,500명 대상)
- 지원금액 및 형태 : 교당 800~1,000만원(국비 100%), 학생 1인당 80만원 (멘토링 60시간 참여시 기준)
- 지원조건 :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일정등급 이상인 대학을 지원하며, 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강좌 운영
- 사업 주요내용
  - 공모·심사를 거쳐 교대 및 국립대 사범대학에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
  - 예비 교사의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해 '다문화사회의 이해, 다문화가정 자녀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상담지도, 현장 수업 사례 등'을 포함하여 교육
  - 멘토링 참여 대학생을 선발하여, 사전교육 후, 교육청-교대가 연계하여, 멘토-멘티를 연결 후 학교 및 공공장소에서 멘토링 수행
- 시도별 분포 내역(교대·국립대 사범대학 강좌 개설)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	2	1	1	1	1	1	3	2	2	2	1	2	1

○ 예산

- 사업기간 : '09년 - 계속
- 재원형태 : 국비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군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800		800			800
2010				500	500			500
(증△감)			△800	500	△300			△300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 사업의 경우 2차년도까지는 국비 지원을 통해 대학의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3차년도부터 대학이 자율적으로 개설·운영 유도
- 다문화교육 강좌 이수생이 다문화가정 학생 멘토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 하여, 강좌와 멘토링 활동 등의 시너지 제고 유도

< 2-2-3-1 : 농어촌학교 우수교원 유치방안 마련(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교직원발전기획과	담당자	조용준(사무관), 이규열(사무관), 정은선(연구사)
전화번호	02-2100-6486, 02-2100-6689, 02-2100-6478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근무기간 학교 또는 지역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교원을 확보하여 학교장의 단위학교 책임경영제 실현
- 농어촌학교 교원의 행정업무경감으로 우수 교원 유치 기대
- 교사의 농어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농어촌 실정에 맞는 교육 실현

○ 사업추진방향

- 시·도교육감이 근무예정 학교 또는 지역 단위로 신규교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행정업무전담체계 모형 연구·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시·도교육청 관계자 협의 실시 및 시범운영 학교 운영
- 농어촌 지역 교사 대상 연수 과정에 '농어촌 교육' 관련 내용 편성 운영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근거 법령 마련	법령 개정 여부	건	2
행정업무전담체계 모형 연구·개발	정책연구 보고서	부	1
'농어촌교육' 관련 연수내용 편성	공문시행	교육청 수(개)	3

## ○ 사업추진근거

- 제3단계 학교자율화 추진방안('09.6.11),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방안 ('09.10.27)
-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 □ '10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 사업추진절차

(학교·지역단위교원채용) 교육공무원법 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 학교·지역단위 교원 채용 수요조사 → 시도교육청별 채용 공고 → 임용시험 실시

(교사업무부담경감) 단위학교내 행정업무전담체계모형개발 정책연구 → 전담모형 공개 의견수렴 → 시·도 관계자 회의 → 전담모형 실시에 따른 시범학교 운영 추진 → 시범학교 운영 → 시범학교 운영 결과 분석 → 전국확대 실시

(농어촌연수프로그램 개설) 연수 내용에 '농어촌 관련' 내용 포함(시·도교육청) → 연수 신청(교사) → 연수 실시(시·도교육청)

### ○ 사업 내용(신규사업)

#### (학교·지역단위교원채용)

- 사업지원대상 : 시·도교육청
- 사업규모 : 농어촌 등 근무기피 지역 근무 희망 교사 대상
- 지원금액 및 형태 : 법령 개정
- 지원조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전보제한
- 사업 주요내용



- 근무여건이 열악한 학교 또는 지역에서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교원 선발토록 법령 개정
- 그 시험에 따라 선발된 교사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전보 제한 가능
- 시도별 배분내역 (해당사항 없음)

**(교사업무부담경감)**

- 사업지원대상 : 시·도교육청
- 사업규모 : 단위학교 교원 업무 부담 경감
- 지원금액 및 형태 : 정책연구 및 시범학교 운영
- 지원조건 : 시범학교 운영
- 사업 주요내용
  - 단위학교내 행정업무전담체계 모형개발 정책연구 실시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 회의
  - 전담모형에 따른 시범학교 운영
  - 시범 운영학교 결과 분석 및 전국 확대 실시

**※ 연차별 추진계획**

분 기	실 행 내 용
'10.1/4분기	- 단위학교내 행정업무전담체계모형개발 정책연구(~2월) - 전담모형 공개 의견수렴(3월) - 전담모형 실시 관련 시·도교육청 관계자 회의(3월)
'10.2/4분기	- 전담모형에 따른 시범운영학교 운영 추진계획 수립(4월) - 전담모형에 따른 시범운영학교 운영(5~11월)
'10.3/4분기	- 전담모형에 따른 시범운영학교 운영(5~11월)
'10.4/4분기 이후	- 시범운영학교 결과 분석(12월~2011.1월) - 전국 학교확대 실시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2011. 2월) - 전국 학교 확대 실시 예정 (2011. 3월)

**(농어촌연수프로그램 개설)**

- 사업지원대상 : 시·도교육청 중 농어촌 지역 교육청
- 사업규모 : 농어촌 지역 교사 대상
- 지원금액 및 형태 : 해당사항없음
- 지원조건 : 농어촌 지역 근무 교사
- 사업 주요내용
  - 농어촌 지역에 대한 이해, 농어촌 지역과 연계한 체험학습 등
- 시도별 배분내역 (해당사항 없음)

○ 예산(비예산사업)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시·도교육청별 학교·지역단위 교원 채용 실시('11.3)
- 시범학교 운영평가 후 전 학교 실시 예정('11.3)
  - 교육청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견학 등 실시
- 교사 대상 연수에 '농어촌 교육'관련 내용 반영 지속적 권장
  - 농림수산물부가 '농어촌 교육'관련 연수 프로그램 개발하여 제공시, 시·도 교육청에 연수프로그램 및 강사풀 제공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해 당	사 항	없	음		
'11								
'12								
'13								
'14								

## 2-3.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균등 교육기회 제공

### (1) 개관

#### □ '10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도시에 비해 교육여건이 불리하고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민 학부모에게 고교학자금 등 교육비 지원을 통해 농가부담 경감
  - 농어촌 지역 86,679명에게 고교학자금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지방비 100%)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용자 지원(국고 100%, 총 27천명)
- 농어업인 자녀 및 농림수산계열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학금을 마사회 특별적립금으로부터 마련·지원하여 젊고 유능한 후계농업인 양성
  - 후계인력양성 장학금, 전문인력양성 장학금, 농어업인자녀 장학금, 농어촌 특별전형 장학금(총 3,420명에게 총 7,940백만원 지원)
- 초·중·고등학교(7,500개교)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을 지원하여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수농산물 소비기반 확보 및 농산어촌 경제 활성화
  -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및 식품비 등 급식경비 지원은 지자체장 소속으로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 사용을 위한 지자체의 급식지원 확대(지방비 100%)
- 농과계 고등학교 자영농과 재학생, 수산계 고등학교 자영수산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젊고 유능한 농어업 전문인력 육성 및 농촌정착 유도
  - 11개 농과계교 2,758명 지원, 5개 수산계교 710명 지원
- 개별 대학이 지역균형 선발제 기준을 설정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전형 유형 파악 및 선발 인원 통계 관리하여 지역균형 선발제 확대 유도
  - 대입에서 특별전형의 실시여부, 대상, 방법, 규모 등은 대학의 자율 사항

□ 예산 내역

<2010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85,227		85,227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50,521				50,521			50,521
농어촌 대학생 장학금 지원				7,940	7,940			7,940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180,000		180,000
자영농수산고교 급식비 지원						2,436	744	3,180
합계	50,521	0	0	7,940	58,461	267,663	744	326,868

□ '11년도 추진 방향

- 대학생 학자금 용자에 대한 부담경감을 위해 졸업 후 상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예정
- 'KRA와 함께하는 농촌희망재단'(한국마사회) 설립 5년차로 장학사업 전반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개선안을 수립하여 시행
- 지역거점에 우수식재료 유통기능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 '11년도 대학 지역균형 선발제 목표 : 실시대학수 62개교, 선발학생수 6,000명

< 2-3-1-1 :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농촌사회과	담당자	박성우(서기관)
전화번호	02-500-1819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도시에 비해 교육여건이 불리하고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게 고교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 경감 도모

\* '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사업 이양

○ 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추진방향에 대한 개괄적 서술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계획대비 지원율	계획대비 지원 실적	%	100

○ 사업 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23조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추진절차 : 학자금지원신청서 작성·제출(보호자 → 이장경유 → 읍·면·동장) → 학적 조회(읍·면·동장 → 학교장) → 학자금 지원대상 여부 통보(읍·면·동장 → 보호자)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농산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림어업인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
- 사업 규모(사업량) : 86,679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해당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지원 제외 : 국가, 지자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 지원조건 : 지방비 100%
- 사업 주요내용 : 농산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림어업인의 자녀, 손자녀 등에게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 시도별 배분내역

(단위 : 백만원)

시·도 (보조사업자)	'10년 지원계획
계	85,227(86,679)
서울	68(45)
부산	1,222(860)
대구	1,160(900)
인천	911(879)
광주	400(285)
대전	133(94)
울산	988(731)
경기	10,907(9347)
강원	4,400(5,700)
충북	6,013(6,000)
충남	10,151(13,119)
전북	8,850(7,500)
전남	13,928(14,105)
경북	12,625(13,606)
경남	8,834(9,225)
제주	4,637(4,283)

\* ( )안은 지원 인원

○ 예산

- 사업기간 : '90년 ~ (계속 사업)
- 재원형태 : 분권교부세 및 지방비에서 지원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군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	-	-	-	-	80,580	-	80,580
2010	-	-	-	-	-	85,227	-	85,227
(증△감)	-	-	-	-	-	4,647	-	4,647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천 가구)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11								
'12								
'13								
'14								

\* 지자체 이관 사업('05년부터)으로 지자체 특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중기재정 파악 곤란('11년 사업은 '10년 하반기 확정)

< 2-3-1-2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농촌사회과	담당자	박성우(서기관)
전화번호	02-500-1819	이메일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어촌 출신 대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 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추진방향에 대한 개괄적 서술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수혜자 만족도	전문기관의 만족도 조사 보고서	%	86

○ 사업 추진근거

-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 제2항
-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한국장학재단
- 사업추진절차 : 융자지원 세부지침 작성(재단) → 융자신청(학생) → 융자대상 추천(대학) → 융자대상 선정(재단) → 융자금 입금(재단→대학) → 학자금 대체(대학)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로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자
- 사업 규모(사업량) : 총 27천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당해 학기에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전액, 민간 보조
- 지원조건
  - 지원 조건 : 국고 100%
  - 용자 학기 : 재학대학의 정규 학기 수까지 지원
  - 상환 조건 : 졸업 후 1년 거치, 1학기분 용자금을 1년 이내에 상환
- 사업 주요내용 :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 대한 용자 지원
- 시도별 배분내역 : 해당 없음(재단에서 일괄 용자)

○ 예산

- 사업기간 : '94년 ~ (계속 사업)
- 재원형태 : 국비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47,500	-	-	-	47,500	-	-	47,500
2010	50,521	-	-	-	50,521	-	-	50,521
(증△감)	3,021	-	-	-	3,021	-	-	3,021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천 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5	3,181						3,181
'10	27	505						505
'11	27	631						631
'12	27	642						642
'13	27	704						704
'14	27	699						699

\* 부담 경감을 위해 졸업 후 상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예정임에 따라, 1년 추가 상환유예에 따른 예산 반영

< 2-3-1-3 : 농어촌 대학생 장학금 지원(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농촌사회과	담당자	이태용(사무관)
전화번호	02-500-1813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미래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젊고 유능한 후계농업인 양성
  - 우리 농업을 지식집약적 첨단산업으로 한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선도 농림수산업인의 육성기반 조성 및 잠재인력군 확충
-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및 농림수산업인의 교육비 절감에 따른 삶의 질 향상

○ 사업추진방향

-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장학사업 실시 및 확대
- 장학제도를 개선하여 장학금액 증액, 지원대상 세분화 등 집중 지원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지원계획인원 대비 실적인원	$(\text{연간 총 지원실적인원} \div \text{당초 지원계획인원}) \times 100$	%	100.0%
지원계획금액 대비 지원금액	$(\text{연간 총 지원실적금액} \div \text{당초 지원계획금액}) \times 100$	%	100.0%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 한국마사회법 제42조 4항(특별적립금은 농어업인 자녀 및 농어업후계인력 장학사업 등에 대한 지원)

## □ '10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KRA와 함께하는 「농촌희망재단」
- 사업추진절차 : 재단(사업홍보 및 홈페이지 공고) → 대학생(대학에 신청서 제출) → 대학(장학생 추천 및 홈페이지에 신청서 등록) → 농촌희망재단(장학생 확정 및 장학금 지급)

### ○ 사업내용

#### < 후계인력양성 장학금 >

- 지원대상 : 농림수산계열학과 2학년 이상 재학생 중 농어업인의 자녀
- 선발인원 : 연간 1,420명(1학기 620명, 2학기 800명)
- 지원액 : 연간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 선발방법 : 대학(교)의 추천을 받아 재단의 심사를 거쳐 확정

#### < 전문인력양성 장학금 >

- 지원대상 : 농림수산계열 및 농어업경영과 관련 있는 학과 2학년 이상 재학생 중 농림수산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학생
- 선발인원 : 연간 600명(학기당 300명)
- 지원액 :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선발방법 : 대학(교)의 추천을 받아 재단 심사를 거쳐 확정

#### < 농어업인자녀 장학금 >

- 지원대상 : 전계열학과 2학년 이상 재학중인 농림수산업인의 자녀
- 선발인원 : 연간 1,200명(1학기)
- 지원액 : 연간 300만원(연 1회)
- 선발방법 : 대학(교)의 추천을 받아 재단에서 최종 선정

< 농어촌특별전형 장학금 >

- 지원대상 : 재단 고교장학생 또는 전문계(농수산계열)고교 출신자 특별전형,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으로 농림수산계열대학(학과) 신입생
- 선발인원 : 연간 200명(1학기)
- 지원액 : 연간 300만원(연 1회)
- 선발방법 : 대학(교)의 추천을 받아 재단에서 최종 선정

○ 예산

- 사업기간 : '05. 2학기 ~ (계속)
- 재원형태 : 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9	-	-	-	5,993	5,993			5,993
2010	-	-	-	7,940	7,940			7,940
(증△감)	-	-	-	1,947	1,947			1,947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 재단 설립 5년차로 장학사업 전반에 대한 진단(컨설팅 실시예정)을 토대로 개선안을 수립하여 시행

< 2-3-2-1 :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학생건강안전과	담당자	박진욱 사무관 김동로 주무관
전화번호	2100-6543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우수농산물 사용 확대를 통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급식의 질 향상
- 우수농산물 소비기반 확보 및 농산어촌 경제 활성화

○ 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 사용확대를 권장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지역농산물의 생산 및 안정적인 소비기반 구축,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지자체의 우수농산물 급식지원 현황	지자체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액 (교육청 제출자료)	억원	1,800억원

○ 사업 추진근거 : 학교급식법 제5조 및 제8조

- '06. 7월,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우수한 식자재 공급을 위하여 자치단체장 소속하에 급식지원센터 운영 및 식품비 등 급식경비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장(교육청 협조)
- 사업추진절차 : 지원대상 학교수 및 소요액 파악(지자체, 교육청 협조) → 예산확보 및 사업시행 준비(지자체, 교육청 협조) → 예산지원(지자체 → 교육청, 학교) → 사업시행(학교) → 우수식재료 사용확대(학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
- 사업 규모(사업량) : 7,500개교
- 지원금액 및 형태 : 1,800억원(추정), 지방비 100%
- 지원조건 :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
- 사업 주요내용 :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 사용을 위한 지자체(교육청 협조)의 급식지원(현금 및 현물) 확대

○ 예산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재원형태 : 지방비 100%(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180,000		180,000
2010						180,000		180,000
(증△감)						0		0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추정)

- 우수농산물 사용확대를 위한 지자체의 학교급식 지원 계속 추진(교육청 협조)
- 지역거점에 우수식재료 유통기능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농식품부, 지자체)

	사업규모 (개교)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000		11,000
'10	7,533					1,800		1,800
'11	8,000					2,000		2,000
'12	8,500					2,200		2,200
'13	9,000					2,400		2,400
'14	9,500					2,600		2,600

< 2-3-2-2 : 자영농수산고교 급식비 지원(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농촌사회과 수산개발과	담당자	박성우(서기관) 정동기(사무관)
전화번호	02-500-1819 02-500-2331	이메일	- -

[자영 농업계고 급식비 지원]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자영농과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통해 젊고 유능한 농업 전문인력 육성 및 농촌정착 유도

\* '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사업 이양

○ 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추진방향에 대한 개괄적 서술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계획대비 지원율	계획대비 지원 실적	%	100

○ 사업 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23조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지자체(도지사·도 교육감)
- 사업추진절차 : 농산어촌 학생수 및 소요액 파악(시·도교육청) → 예산확보 및 사업시행 준비(시·도교육청) → 예산지원(시·도교육청 → 지역 교육청→학교) → 사업시행(학교)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전국 11개 농과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영농과생
- 사업 규모(사업량) : 2,758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급식비 일부 지원
- 지원조건 : 자영농과생 재학생
- 사업 주요내용 : 농과계 고등학교 자영농과생 재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의 일부를 지원
- 시도별 배분내역

(단위 : 백만원)

시·도 (보조사업자)	'10년 지원계획
계	2,256(2,758)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491(420)
강원	267(370)
충북	183(280)
충남	143(250)
전북	331(353)
전남	221(420)
경북	211(225)
경남	290(220)
제주	116(220)

\* ( )안은 지원 인원

○ 예산

- 사업기간 : '86년 ~ (계속 사업)
- 재원형태 : 분권교부세 및 지방비에서 지원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	-	-	-	-	2,000	790	2,790
2010	-	-	-	-	-	2,256	564	2,820
(증△감)	-	-	-	-	-	256	△226	30

\* 지방비는 일괄 20% 가정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천 가구)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11								
'12								
'13								
'14								

\* 지자체 이관 사업('05년부터)으로 지자체 특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중기재정 파악 곤란('11년 사업은 '10년 하반기 확정)

## [자영 수산계고 급식비 지원]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공동화되어 가는 농어촌에 정착하여 수산업과 어촌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 나갈 우수한 수산인력의 조기 양성

#### ○ 사업 추진 방향

- 수산업을 합리적으로 자영할 수 있는 우수한 어업후계인력을 육성하고, 이들의 어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수산계고등학교 자영수산학과 학생의 식비 일부를 보조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급식비 지원 인원수	급식비 지원인원 합계	명	710명

#### ○ 사업 추진 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농산 어촌 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34조제2항(지역개발사업계정의 세출)
- 수산계학교 육성방안('86 교육부)

### □ '10년도 추진계획

#### ○ 사업 추진 체계

- 사업 추진 주체 : 시·도
- 사업 추진 절차상 등 사전 협의 → 보조금 지급신청(해당학교 → 교육청)  
→ 보조금 교부신청(교육청 → 시·도) → 보조금 교부결정(시·도 → 교육청)  
→ 보조금 정산(교육청 → 시·도)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자영수산과가 설치된 5개 수산계고 자영수산과 재학생
  - 충남해양과학고, 전남 완도수고·압해고·여천실고, 경북 포항해양과학고
- 사업규모(사업량) : 5개 고교 자영수산과가 재학생 710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360백만원
- 지원조건 : 시·도비 보조금 지급
- 사업 주요내용 : 해당학교별 자영학교 재학생 급식비 지원
- 시도별 배분내역

(단위 : 개소수)

계	충남도	전남도	경북도
5	1	3	1

○ 예산

- 사업기간 : '87 ~ 계속
- 재원형태 : 도비(분권교부세 포함) 50%, 교육인적자원부 30%, 자부담 2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9	-	-	-	-	-	180	180	360
· 충남	-	-	-	-	-	27.5	27.5	55
· 전남	-	-	-	-	-	110.5	110.5	221
· 경북	-	-	-	-	-	42	42	84
2010	-	-	-	-	-	180	180	360
· 충남	-	-	-	-	-	27.5	27.5	55
· 전남	-	-	-	-	-	110.5	110.5	221
· 경북	-	-	-	-	-	42	42	84
(증△감)	-	-	-	-	-	-	-	-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자영수산과가 설치된 5개 수산계고(충남해양과학고, 전남 완도수고·압해고·여천실고, 경북 포항해양과학고)에 대한 급식비 지원 계속 추진
- 수산 전문계고교 특성화프로그램 추진에 따른 입학생의 증가와 급식 질의 개선을 위한 지원단가 상향 등을 위하여 지원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550명					900	900	1,800
'10	710명,5개소					180	180	360
'11	710명,5개소					180	180	360
'12	710명,5개소					180	180	360
'13	710명,5개소					180	180	360
'14	710명,5개소					180	180	360

< 2-3-3-1 : 지역균형 선발제 확대 유도(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대학자율화팀	담당자	김태일(교육연구사)
전화번호	02-2100-6366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학생선발에 있어 지역적 다양성을 확대하고 대학진학을 위해 수도권 고등학교로 전학하는 수요 경감
- 대학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다양한 학생들이 학내에서 함께 성장하고 교류함으로써 재학기간 동안 폭넓은 간접경험 가능

○ 사업추진방향

- 개별 대학 단위로 사업 추진
  - 개별 대학이 해당 대학의 특성 및 교육방침에 적합한 방식으로 독자적인 선발 기준 설정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개별 대학의 전형 유형 파악 및 선발 인원 통계 관리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실시대학 수	2011학년도 실시대학 수	개	62
선발학생 수	2011학년도 선발학생 수	명	6,000

※ 최종 선발 결과는 '11년 3월 이후 확정됨

○ 사업추진근거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대학

※ 대입에서 특정전형의 실시여부, 대상, 방법, 규모 등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사항임

- 사업추진절차 : 개별 대학에서 '입학전형 시행 계획' 수립 → 학생 선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선발 결과 통보

○ 예산

- 해당사항 없음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11년도에도 '10년도와 동일한 수준에서 학생 선발

○ 중기재정계획 : 해당사항 없음

### 3.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 3-1. 지역주도의 개발체계 정착지원

##### (1) 개관

###### □ '10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10년부터 균특회계가 광특회계로 개편되고 포괄보조제도가 도입
  - 포괄보조제도 도입으로 지자체의 사업추진 자율성 확대됨에 따라 농산어촌 지역개발 추진체계의 조속한 정착 필요
  - 지자체 포괄보조사업 계획수립 가이드라인제시, 7월중 모니터링·컨설팅 추진
  - '09년 포괄보조사업 추진실적 평가(3월)
- 농촌생활환경정비에 민간참여 확대로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성 향상
  - 기존 시·군, 한국농어촌공사가 하던 것을 마을정비조합이 주택건설 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가능

###### □ 예산 내역

<2010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일반농어촌개발 관리		973,600			973,600	417,257		1,390,857
합계		973,600			973,600	417,257		1,390,857

###### □ '11년도 추진 방향

- 지역개발사업에 민간업체 등이 참여한 경우 포괄보조사업예산 지원 우대
  - 11년도 포괄보조사업 사업평가지 가점 부여로 실질적인 인센티브 혜택부여



< 3-1-1-1 : 일반농어촌개발(포괄보조) 관리(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이수열(사무관)
전화번호	500-1806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 '10년부터 종전의 균특회계가 광특회계로 개편되고 포괄보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확대
- 포괄보조사업의 효율적·성공적 추진을 위해 농산어촌 지역개발 추진체계의 조속한 정착 필요

◆ '포괄보조금사업'의 개념

- 재원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하고 시도별로 부여된 한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설계
- ⇒ 종전 지역계정의 200여개 세부사업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아도 포괄보조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지자체 자율적으로 발굴·예산신청 가능

○ 기대효과

- 지자체의 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킴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상향식 지역개발정책 추진 유도
- 지역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 리더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포괄보조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지자체는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포괄보조사업의 계획수립, 사업 모니터링, 자체평가 등을 추진
- 중앙부처는 사전통제보다는 사업계획 수립 지원, 사업추진 모니터링 및 컨설팅, 사업평가 등을 중점 추진

※ 포괄보조사업 정책프로세스 : 계획수립 가이드라인 제시 → 지자체 계획수립·사업 시행 → 모니터링 및 사업평가 → 정책조정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지자체 사업추진 체계정비 및 계획수립 비율	지자체 조사결과	%	60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결과	점	80

○ 포괄보조사업 추진근거

- 국가균형특별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지자체 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정비
  - 포괄보조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포괄보조사업 총괄 및 담당 부서 지정·운영(시도/시군구별)
  - 계획수립/사업추진/자체평가 과정에서 합리적인 결론도출,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을 위해 공공·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발전협의체 구성
- 지역특성에 맞는 지자체 포괄보조사업 계획수립 지원
  - '11~'14년 포괄보조사업 계획수립 가이드라인 제시('10년 계획은 수립중)
  - 지자체 계획수립 가이드라인 순회교육 실시
  - 지역개발 전문가 pool을 활용하여 계획수립 컨설팅 지원
- '10년 포괄보조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추진(7월)
  - 포괄보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
- '09년 포괄보조사업 추진실적 평가(3월)
  - '10년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시도 자율편성/시군구 자율편성)에 포함된 단위(세부)사업의 '09년도 추진실적을 평가
- 지역개발조직 및 전문가 등의 지역개발 역량 강화 지원
  - 지역개발 전문가 포럼 구성, 지역리더 등 교육지원 강화

○ '10년 예산규모

- 농식품부 소관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포괄보조사업)은 3개 사업으로 '10년 예산규모는 1조 4,935억원

사업명	담당부서	사업구성	예산(억원)	보조율(%)
<b>합 계</b>			<b>14,935</b>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역개발과	총전 15개사업	9,736	국고 70, 지방 30
▪ 복합산업화지원사업	지역개발과	총전 13개사업	2,356	국고 50, 지방 50
▪ 농어업기반정비	농업기반과	총전 13개사업	2,839	국고 80, 지방 20

※ 농식품부 소관 포괄보조사업 구조

- 포괄보조사업은 재원지원 주체에 따라 시도 자율편성사업과 시군구 자율편성 사업으로 구분
- 시도 자율편성사업은 부처별·기능별로 구분하였으나, 시군구 자율편성 사업은 지역별로 구분

구 분	포괄보조 사업명	주관부처	대상지역
기능별(시도 자율편성)	▪ 농어촌복합산업화지원사업	농식품부	163개 시군
	▪ 농어업기반정비사업	"	163개 시군
지역별(시군구 자율편성)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식품부	120개 시군

<참고>

## 대상사업 및 지역 구분

### □ 시·도 자율 편성사업

-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 녹색농촌체험등 13개사업(중전기준)

1.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2. 농어촌테마공원조성 3. 농공단지조성 4. 어촌어항관광개발 5. 복합낙시공원조성 6. 완전미브랜드파워현대화시설 설치 7. 한우명품화 8. FTA대비 축산경쟁력제고 9. 전통발효식품전용 공장건립 10. 향토산업육성사업 11. 특화품목육성사업 12. 김육상채묘 및 냉동망 보관 13. 고효율 어류사료생산 공장건립

- 농어업기반정비 : 받기반정비등 13개사업(중전기준)

1. 받기반정비 2. 대구획경지정리 3.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 4. 농업사관 학교건립 5. 전북실용농업교육센터건립 6. 씨감자생산기반조성 7. 소형 어선인양기설치 8. 지방어항 9.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10. 양식어장관리 11. 인공어초 12. 수산종묘관리 13. 내수면어업생산시설

### □ 시·군·구 자율 편성사업 (\* 별첨 : 기초생활권 지역 구분)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농촌마을종합개발 등 15개사업(중전기준)

1. 소도읍육성 2. 전원마을조성 3. 농촌마을종합개발 4. 거점면소재지 종합 개발 5. 어촌종합개발 6. 산촌생태마을조성 7. 농촌생활환경정비 8.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9.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0. 지표수보강개발 11. 소규모용수개발 12. 신활력지역지원 13. 주거환경개선 14. 개축지구 지원 15. 살기좋은지역·도시만들기

□ 일반농산어촌지역

구 분	120개 시·군
경 기	평택시, 남양주시, 양평군,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군, 가평군
강 원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
충 북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 남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당진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 북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 남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 북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상주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 남	합천군, 마산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제 주	제주시, 서귀포시

< 3-1-2-1 : 지역개발사업의 민간참여 확대(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김동권(서기관)
전화번호	02-500-1804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촌생활환경정비에 민간참여 확대로 파트너십에 위한 지역개발 추진으로 농촌지역의 활성화

○ 사업추진방향

- 생활환경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하여 시장참여 확대하여 마을정비조합이 주택건설 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가능  
(기존)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개선) 마을정비조합, 마을정비조합과 주택건설업체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등

○ 사업추진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52조 내지 제56조(생활환경정비), 제108조(자금지원)

□ 사업추진 체계

- 사업시행주체 : 시장 · 군수
- 사업추진절차 : 사업제안(제안자→ 시군) → 예비타당성조사 및 대상지 선정(시군) → 기본계획승인(시·군) → 마을정비구역지정(시·도) → 시행 계획승인(시·군, 시·도) → 사업시행(시·군, 민간업체) → 준공(시·군, 시·도)

□ 추진계획

- 지역개발사업에 민간업체 등이 참여한 경우 포괄보조사업예산 지원우대
- 11년도 포괄보조사업 사업평가지 가점 부여로 실질적인 인센티브 혜택부여

## 3-2. 정주계층별 선도거점 개발

### (1) 개관

#### □ '10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도시민의 농촌지역 유입을 통해 농촌인구를 유지하고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마을기반 조성, 다양한 마을 모델 제시
  - 마을의 규모(주택신축기준)에 따라 10~30억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소생활권 종합정비를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 조성
  - 지역실정에 따라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기초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확충, 지역사회유지를 위한 인구유치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종합추진
  - 기초생활시설(전액보조), 마을주민 공동 소득기반시설(80%보조) 등
- 면소재지의 지역거점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활편의·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17년까지 1000개 권역 추진)
  - 사업비(광특회계) : 권역당 3년간 70억원(국고 70%, 지방비 30%) 지원
  - 신규시설 설치보다는 기존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리모델링에 역점
- 도시거주 젊은 인력을 농촌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농어촌형 뉴타운 조성
  - ('09) 5개소 시범사업 지정 → ('10) 공사시행 및 입주자 선정
  - 부지조성,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공원·녹지, 커뮤니티시설, 주차장 등 마을기반 조성 및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 금수강촌 만들기 사업을 위해 통합형 지역개발모델 정립 및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농어촌개발정책의 패러다임(paradigm)을 통합적 개발 방식으로 변화를 유도

□ 예산 내역

<2010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신규마을 조성 및 마을재개발		22,345			22,345	9,576		31,921
소생활권 종합정비 등	5,192	171,134				73,343		249,669
농어촌형 뉴타운 조성	20,316				20,316	6,455		26,771
금수강촌 만들기 사업	150				150			150
합계	25,658	193,479	0	0	42,811	89,374	0	308,511

□ '11년도 추진 방향

- 신규마을 조성 및 재개발 사업비 연평균 6%로 증가(22,345 → 23,700백만원)
- '11년부터는 포괄보조사업 추진으로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유형과 추진 방식이 많이 변화될 것으로 추정
- 선정된 농어촌 뉴타운 5개소의 공사완료 및 입주 추진
- '10년도 수립된 농어촌 통합형 지역개발모델을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계획과 연계하는 등 농어촌 개발정책의 패러다임(paradigm)을 통합적 개발 방식으로 확산



< 3-2-1-1 : 신규마을조성 및 재개발(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김동권(서기관)
전화번호	02-500-1804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 조성을 지원하여 도시민등의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인구유지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사업추진방향

- 지역특성을 살린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여유롭고 쾌적한 삶의 공간제공
- 도시민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농촌지역 활성화
- 지역 주민간 공동체 형성을 강화하여 마을의 지속적인 유지·발전 도모

○ 사업추진근거

- 농어촌 정비법 제52조 내지 제56조(생활환경정비), 제101조~제103조(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시장 · 군수
- 사업추진절차 : 사업제안(제안자→ 시군) → 예비타당성조사 및 대상지 선정(시군) → 기본계획승인(시·군) → 마을정비구역지정(시·도) → 시행 계획승인(시·군, 시·도) → 사업시행(시·군) → 준공(시·군, 시·도)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시장 · 군수
- 사업규모 : 마을의 규모(주택신축기준)에 따라 10~30억원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
  - 20~29호 10억원 이내, 30~49호 15억원 이내, 50~74호 20억원 이내, 75~99호 25억원 이내, 100호 이상 30억원 이내
- 지원금액 및 형태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 보조

- 지원조건

- 기반시설비 : 국고 70%, 지방비 30% \* 부족한 기반시설비등은 지방비, 입주자 부담

- 사업 주요내용

- 부지조성,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공원·녹지, 주차장 등 마을기반 조성
- 은퇴자 마을, 슬로우푸드 마을, 예술인 마을 등 특색있는 모델 제시

○ 예산

- 재원형태 : 포괄보조금지원(일반농산어촌개발)
  - 10년도 예산(국고) : 59개소 22,345백만원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9	-	21,177	-	-	21,177	9,075	-	30,252
2010	-	22,345	-	-	22,345	9,576	-	31,921
(증△감)	-	1,168	-	-	1,168	501	-	1,669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123	-	22,345	-		9,576	-	31,921
'11	140	-	23,700			10,160	-	33,860
'12	160	-	25,200			10,800		36,000
'13	180	-	26,600			11,400		38,000
'14	200	-	28,000			12,000		40,000

\* 사업규모는 누계치임, 사업비는 연평균 6%증가로 계산

< 3-2-2-1 : 소생활권 종합정비 등(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이수열(사무관)
전화번호	02-500-1806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 도모

○ 사업추진방향

- 지역실정에 따라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기초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확충, 지역사회유지를 위한 인구유치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종합 추진
- 소권역별 잠재자원을 발굴·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유형의 농촌 공간정비 추진
- 권역별 고유 테마형성에 맞는 중점 개발과제를 개발하여 집중 육성
- 생활권·영농권 등이 같은 발전 잠재력이 있는 마을들을 상호 연계하여 소권역(1개 법정리 이상) 단위로 개발
- 지역주민과 지자체, 관련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으로 추진
- '17년까지 1,000개 권역 추진하여 농어촌의 400천 가구 혜택부여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 수혜가구 목표 달성율(%)	31.2	15.8	19.8	23.2	3월	수혜가구(누계)/400천×100(%)
• 권역주민 만족도(%)	90	-	95	98	12월	권역주민 대상만족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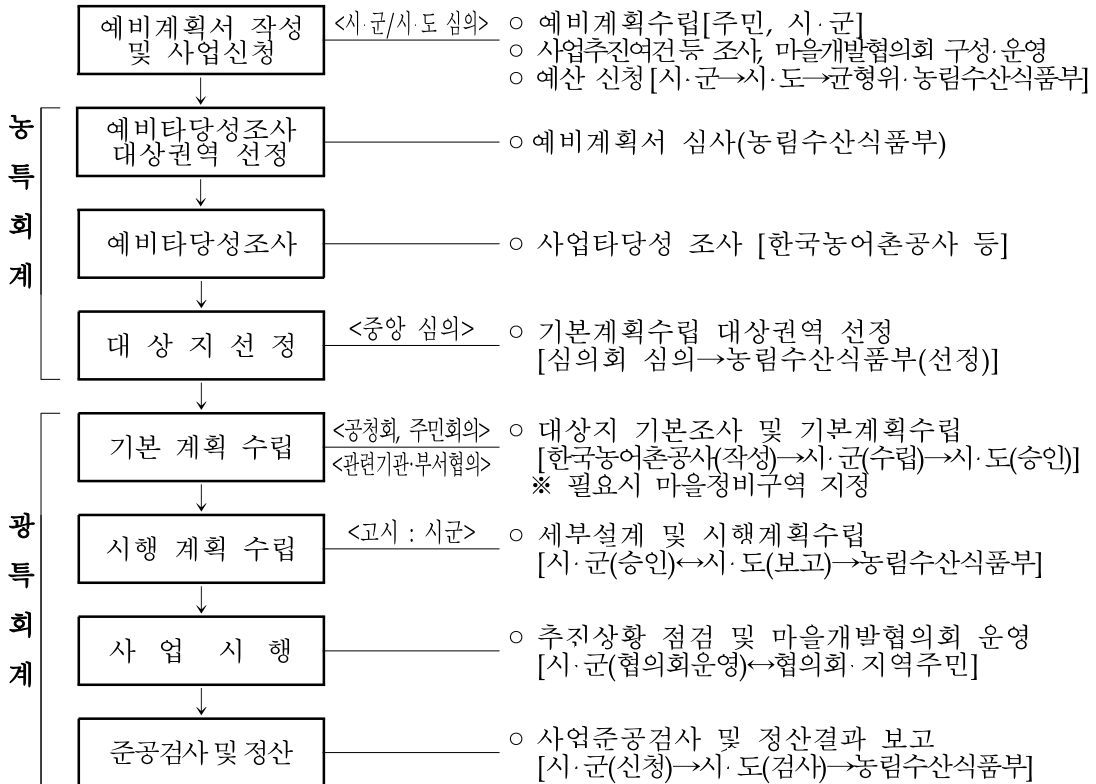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의하여 계획, 농어촌정비법 제24조 내지 제39조를 준용하여 시행

## □ '10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 시행주체 : 시장 · 군수
- 사업추진 체계



###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비(광특회계) : 권역당 3~5년간 40~70억원(국고 70%, 지방비 30%)  
범위 내에서 권역의 규모에 따라 지원
- 기초생활시설(주택 제외), 문화·복지시설 등 불특정 다수주민이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 : 전액 보조사업
- 마을주민 공동(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 소득기반  
시설 : 보조 80%, 자부담 20%
- 농촌체험·관광기반시설 및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지상물, 등기료 등 부지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 제공자가 부담)

- 시도별 배분내역('10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단위 : 권역수)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64	3	8	5	10	11	12	10	3	2

\* 거점면종합개발사업은 제외

○ 예산

- 사업기간 : '04년 ~ '10년
- 재원형태 : 국비 70%, 지방비 3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예시)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9	6,775	167,242	-	-	-	71,675	-	245,692
2010	5,192	171,134	-	-	-	73,343	-	249,669
(증△감)	△1,583	3,892	-	-	-	1,668	-	3,977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11년부터는 포괄보조사업 추진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유형과 추진 방식이 많이 변화될 것으로 추정
- 포괄보조제도는 지자체가 자체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임

< 3-2-3-1 : 지역거점 기능 향상(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이수열(사무관)
전화번호	02-500-1806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면소재지의 생활편의·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들의 정주서비스기능의 충족과 농어촌지역의 중심공간으로 육성

○ 사업추진방향

- 농어촌지역의 거점공간인 면소재지의 기능을 강화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및 서비스 기능 향상 도모
- 교육, 문화, 복지시설을 다수 주민이 이용 가능한 면소재지에 적정수준을 확충함으로써 서비스 기능 향상 필요
- 도시 및 소도읍 지역과 농어촌마을을 연계할 수 있는 중간 거점공간으로서의 면소재지의 역할 강화 필요
- 「중소도시 ↔ 소도읍 ↔ 면소재지 ↔ 자연마을」간 상호 연계되는 지역별, 공간별 기능 및 역할 강화
- '17년까지 1,000개 권역 추진하여 농어촌의 400천 가구 혜택부여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 수혜가구 목표 달성율(%)	31.2	15.8	19.8	23.2	3월	수혜가구(누계)/400천× 100(%)
· 권역주민 만족도(%)	90	-	95	98	12월	권역주민 대상만족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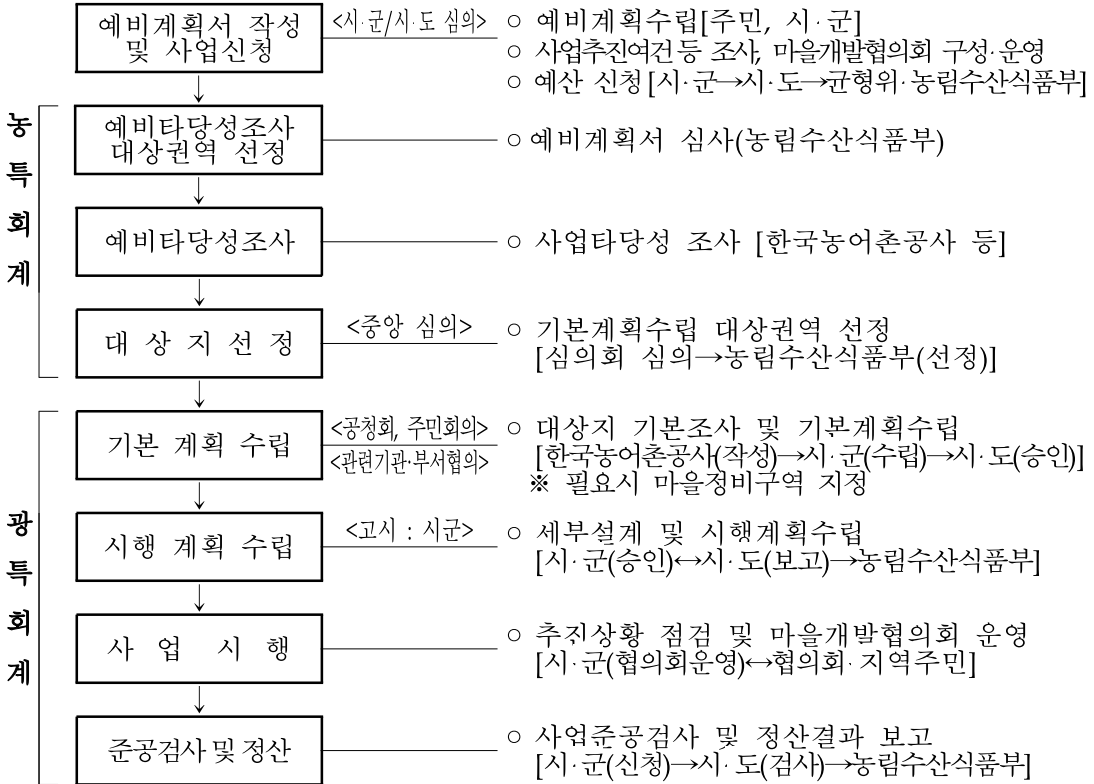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8조에 의하여 계획, 농어촌정비법 제24조 내지 제39조를 준용하여 시행

## □ '10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 시행주체 : 시장 · 군수
- 사업추진 체계



###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비(광특회계) : 권역당 3년간 70억원(국고 70%, 지방비 30%) 지원
- 생활편익, 문화·복지, 경관개선, 상권활성화 등 거점지역으로 면소재지의 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시설위주로 지원
  - 생활편익시설 : 가로정비, 공동주차시설, 승강장시설, 공공화장실정비 등
  - 문화·복지시설 : 다목적 복지회관, 건강관리시설, 보육시설, 운동·휴양 시설 등
  - 경관개선시설 : 마을숲 및 녹지정비, 가로경관정비, 경관저해시설정비, 불량 간판정비, 경관조형물 등

- 지역상권시설 : 재래시장정비, 특산품홍보, 지역축제활성화 등
- 기획운영S/W : 주민문화활동, 지역홍보, 시설물운영프로그램개발, 추진위원회 및 마을개발협의회 활성화지원 등
- 신규시설의 설치보다는 기존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리모델링 등 주민편의 증진에 역점
- 시도별 배분내역('10년 거점면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단위 : 권역수)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6	-	1	1	1	2	4	4	2	1

### ○ 예산

- 사업기간 : '04년 ~ '10년
- 자원형태 : 국비 70%, 지방비 3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예시)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9	6,775	167,242	-	-	-	71,675	-	245,692
2010	5,192	171,134	-	-	-	73,343	-	249,669
(증△감)	△1,583	3,892	-	-	-	1,668	-	3,977

###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11년부터는 포괄보조사업 추진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유형과 추진방식이 많이 변화될 것으로 추정
- 포괄보조제도는 지자체가 자체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임



< 3-2-4-1 : 농어촌형 뉴타운 조성(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김동권(서기관)
전화번호	02-500-1804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도시거주 젊은 인력 등을 농어촌으로 유치하여 농어업의 핵심주체로 육성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살맛나는 농어촌 조성

○ 사업추진방향

- 영농어지원, 교육·복지환경조성 등은 기존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맞춤형 교육과 창업자금 및 규모화 지원으로 지역 농산업의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
-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모델 창출 후 본격 확대 추진

○ 사업추진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장 제3절(농업인력의 육성) 및 농어촌 정비법 제52조 내지 제56조(생활환경정비)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시장 · 군수
- 사업추진절차 : 사업공모(시·군) → 예비타당성조사 및 대상지 선정(농식품부) → 기본계획수립(시·군) → 마을정비구역지정(시·도) → 시행계획수립(시·군, 시·도) → 사업시행(시·군) → 준공(시·군, 시·도)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지역실정에 맞게 공모제안서를 작성하여 선정된 지자체
- 사업규모 : 53개소('09~'11년까지 5개조성)
- 지원금액 및 형태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 보조(지역실정에 따라 표준사업비 지원)
- 지원조건
  - 마을기반시설 : 국고보조(농특회계) 70%, 지방비 30%

- 주택 : (임대주택) 국고보조 40%, 국고용자 60%(연리 3%, 10년 거치 20년 상환)  
(분양주택) 국고용자 100%(연리 3%, 2년 거치 1년 상환)

- 사업 주요내용

- 부지조성,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공원·녹지, 커뮤니티시설, 주차장 등 마을기반 조성
- 농어촌 주택건설 및 공급 : 농어촌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인 주거전용면적 기준 100㎡ 이하 범위 내에서 60㎡, 85㎡, 100㎡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 예산

- 사업기간 : '09년 ~

- 재원형태 : 1,038,327백만원(국고 360,459, 지방비 224,612, 용자 453,256)

\* 5개소 시범사업 개요

- 사업량 : 5개소 700세대(개소당 50~300세대 규모)

- 사업기간 : '09~'11년(3년)

- 추진일정 : 1차년도 : 부지확보 및 계획수립, 2~3차년도 : 공사시행, 입주

- 표준소요사업비 : 1,009억원(국고 895억원(보조 370, 용자 525), 지방비 114억원)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9	2,085	-	-	-	2,085	893	-	2,978
2010	20,316	-	-	-	20,316	6,455	-	26,771
(증△감)	18,231	-	-	-	18,231	5,562	-	23,793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5	20,316	-	-		6,455	-	26,771
'11	5(계속)	100,785				11,287	-	112,072
'12								
'13								
'14								

< 3-2-4-2 : 금수강촌 만들기 사업(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최국일(사무관)
전화번호	02-500-1800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어촌의 다양한 잠재자원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종합배치 되도록 하는 통합형 지역개발모델 정립 및 실행계획 수립
-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존의 지역개발사업과 생산, 가공, 유통 분야의 다양한 사업들을 지역 단위로 유기적으로 묶어 추진할 수 있는 종합개발 체계 확립

○ 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10년부터 운용되는 광특회계 체계에 맞게 농어촌 전역을 재정비하는 새로운 지역개발 모델 및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농어촌 전 지역 확산을 통해 농어촌개발정책의 패러다임(paradigm)을 통합적 개발 방식으로 변화를 유도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통합형 지역개발 모델 정립 및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물	1식	1식

○ 사업 추진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4조(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등), 제52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원칙) 내지 제60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제35조(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제36조(농산어촌 투자유치 활성화)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9조(지역 간의 소득균형), 제54조(농어촌 주민의 복지증진)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농어촌 통합형 지역개발모델 정립 및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추진

○ 사업 내용(신규사업)

- 통합형 지역개발 개념 및 방법론을 정립하고, 상이한 지역 특성을 지닌 3~4개 지역을 대상으로 3~5년간 실천 가능한 통합형 지역개발 실행계획을 수립
- 지원금액 및 형태 : 연구용역비 150백만원
- 주요 연구내용
  - 통합형 지역개발 개념 및 방법론 정립
  - 현장 중심의 실행계획 마련
  -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개념 적용 연구
  - 통합형 지역개발 모델의 농어촌지역 확산 적용 연구
  - 기타 국내외 사례조사 및 적용 연구

○ 예산

- 사업기간 : 2010년(총 1년)
- 재원형태 : 국비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2010	150							150
(증△감)	150							150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10년도 수립된 농어촌 통합형 지역개발모델을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계획과 연계 하는 등 농어촌 개발정책의 패러다임(paradigm)을 통합적 개발 방식으로 확산

	사업규모 (건)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	1.5						1.5
'10	1	1.5						1.5
'11	-	-						-
'12	-	-						-
'13	-	-						-
'14	-	-						-

### 3-3. 농어촌 기초생활여건 개선

#### (1) 개관

##### □ '10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농어촌지역에서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과 농촌 이주자 등에게 대출지원
- 석면비산 및 건강 위해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영세 농어가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 지원
  - 슬레이트 사용실태조사 및 석면슬레이트 적정처리 개선방안연구 ('09.11~'10.10), 범정부 슬레이트 관리대책 수립('10 하반기)
- 급수취약지역(농어촌·도서지역)에 취수원 개발, 정수시설 설치, 배수지 설치 등 용수공급시설 설치 지원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시스템 개선 및 도서지역 과중한 교통비 부담 완화
  - 대중교통시스템 개선 : 벽지노선 손실보상(39억원), 공영버스 지원(25억원)
  -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 최고운임제(5,000원)와 정률지원제(20%)
- 낙도보조항로의 노후된 여객선 26척을 연차적으로 국고여객선(차도선)으로 대체 건조하여 낙도 도서주민에게 안정적인 해상교통수단 제공
- 정보화마을조성사업의 정책방향을 정보격차 해소 중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중심으로 전환하여 농어촌지역의 실직적인 소득증대와 연계
  - 전국 363개 정보화 마을을 대상으로 컨설팅, 콘텐츠 유지·관리, 전자상거래를 지원하고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전자상거래시스템 개발
- 농어업경영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교육을 통해 농어업 경영효율화 및 생산성을 제고하고 농어업 전문인력 양성
  - 농림수산정보망 내실화, 농식품 지식·정보서비스(Okdab-CEO) 개발 및 운영

□ 예산 내역

<2010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농어촌주거환경 개선						120,000	280,000	400,000
농어촌주택 스트레이트 철거처리지원			200		200			200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224,598			224,598	59,965		284,563
교통서비스강화						63,629		63,629
국고여객선건조			1,600		1,600			1,600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6,713		6,713	6,713		13,426
정보화마을 조성			5,598		5,598	1,221		6,819
농어업경영체 정보화 지원	795				795	1,300	1,950	4,045
농어촌정보이용 활성화	6,246				6,246	427		6,673
합계	7,041	224,598	14,111	0	245,750	253,255	281,950	780,955

□ '11년도 추진 방향

- 슬레이트에 관한 조사·연구 결과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 우선순위 선정 및 부처간 역할분담을 통해 사업효과 극대화
- (교통서비스 강화)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분권교부세 지급 기한이 '14년까지 5년 연장되어 안정적으로 재원이 확보됨에 따라 지속적인 지원 추진
-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정률지원제 보조율을 30%로 확대하는 방안 강구
- (정보화마을 사업) 우수마을과 부진마을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 등 차별화된 정책 추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원의 마을 자부담을 확대하여 마을자립 운영 체제 구축
- (농어촌정보이용 활성화) 인터넷, IPTV, 스마트 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정보/교육 확산

< 3-3-1-1 : 농어촌주거환경 개선(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김학조(사무관)
전화번호	02-500-1810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통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도모
- 농어촌지역의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및 정주의욕 고취

○ 사업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투자효율성 증대를 위해 농촌지역개발사업과 연계
- 농어촌 빈집정비 등과 연계, 농촌지역의 경관을 고려한 주택개량 추진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주택정비율	시·군 추진물량 확인	%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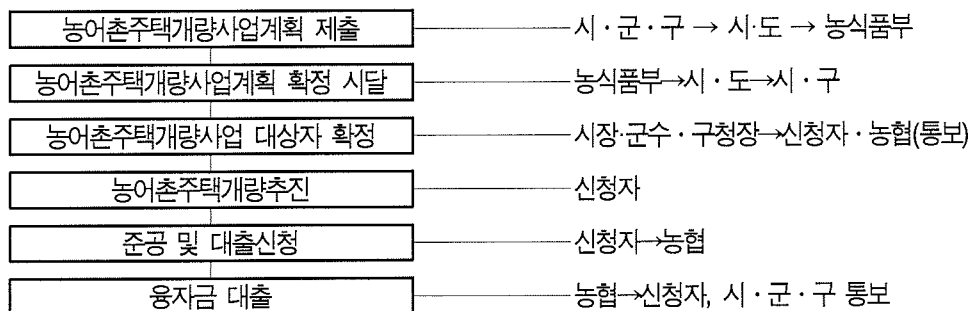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55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제67조(농어촌 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제108조(자금지원)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추진절차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서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과 농촌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중 시장·군수가 추천한 자
- 사업규모 : 8,000동('76~'09년까지 449천동 지원)
- 대출재원 규모 : 4,000억원(농협자금 2,800억원, 지방비 1,200억원)
- 지원조건
  - 대출한도 : 신·개축 동당 5,000만원, 부분개량 동당 2,500만원 이내
  - 상환조건 및 대출금리 :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연리 3%

○ 예산

- 사업기간 : '76년 ~ 계속
- 재원형태 : 농협자금 70%(2,800억원), 지방비 30%(1,200억원),  
\* 농협자금을 대해서는 정부에서 이차보전 지원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18,000	-	-	108,000	126,000	54,000	100,000	280,000
2010	-	-	-	-	-	120,000	280,000	400,000
(증△감)	△18,000	-	-	△108,000	△126,000	66,000	180,000	120,000

\* 기타금액은 정부에서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농협에서 조달하는 자금임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수요 물량과 연동하여 공급물량 확대 추진
- 농어촌 주택개량자금 재원 중 국비에서 이차보전 하는 자금(농협자금) 비율을 확대하여 지방비 부담 완화 추진

	사업규모 (동)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11								
'12								
'13								
'14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10년부터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됨



< 3-3-1-2 :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환경부) >

담당부서	생활환경과	담당자	최재웅(주무관)
전화번호	02-2110-7976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영세 농어가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 지원을 통해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비산 및 국민건강 위해요인 사전차단

○ 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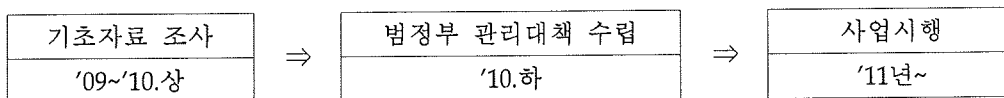
-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용 일부에 대한 국고지원(지방비에 매칭지원)으로 농어가 슬레이트 지붕재의 조속철거 유도
-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자치단체 '빈집정비사업' 등 유사사업간 연계 및 관계 부처간 역할분담 강화
- 슬레이트 사용실태, 비산가능성 등 기초조사·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업 우선순위 선정 및 범정부 슬레이트 관리대책 수립, 단계적 추진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슬레이트 철거 건축물 수	자치단체 보고자료	동	미정

○ 사업 추진근거

- 「석면안전관리법안」 제25조제2항 :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원가능
- 부처합동 「석면관리 종합대책」('09.7): 농어촌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 추진계획 >



\* 슬레이트 사용실태 조사, 비산가능성 평가 등 연구사업 진행 중('09.11~'10.7)

## □ '10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환경부(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협조)
- 사업추진절차('10년) : '해당 없음'(연구사업 추진 및 관리대책 수립)
  - \* 사업추진 절차('11년~) : 수요파악 및 사업계획 제출(자치단체 → 환경부) → 사업계획 확정·시달 및 예산지원(환경부 → 자치단체) → 사업시행(자치단체) → 사업실적 보고(자치단체 → 환경부)

### ○ 사업 내용(신규사업)

- 기초자료 조사 및 연구사업 추진('09.11~'10.10)
  - 농어가 슬레이트 사용실태 조사 및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09.11~'10.7) : 농어가 슬레이트 사용현황, 폐기물 발생량 조사, 슬레이트 사용 또는 철거 시 인체 위해성 평가 등
  - 석면 슬레이트의 적정 처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10.2~'10.10) : 도심지 슬레이트 사용실태 조사, 슬레이트 처리 방법별 비용·효과 분석, 처리비용 저감 및 친환경적 처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등
- 기초조사·연구결과를 토대로 농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범정부 슬레이트 관리대책 수립('10.하)**
  - 사업간·부처간 역할분담 및 연계방안, 예산 투자계획 등 협의·조정
  - 사업 우선순위, 연차별 추진일정, 지원대상·기준 등 세부 사업계획 확정

### ○ 예산

- 사업기간: '10년 ~ (계속)
- 재원형태 : '미확정'(기관별 분담비율은 범정부 종합대책에 따라 확정)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	-	-	-	-	-	-	-
2010	-	-	200	-	200	-	-	200
(증△감)	-	-	200	-	200	-	-	200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추진방향) '10년도 조사·연구 결과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 우선순위 선정 및 부처간 역할분담을 통해 사업효과 극대화
  - 건축연식, 용도(주거·비주거용), 노후화 정도 등에 따라 석면비산 가능성 및 인체 위해성 평가 후 우선순위 선정
- (중기재정계획) '반영예정'

	사업규모 (동)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3,000	-	-	1,505	-	430	215	2,150
'10	-	-	-	-	-	-	-	-
'11	-	-	-	-	-	-	-	-
'12	3,000	-	-	105	-	30	15	150
'13	20,000	-	-	700	-	200	100	1,000
'14	20,000	-	-	700	-	200	100	1,000

\* 분담비율은 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기준으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결과에 따라 변동가능

< 3-3-1-3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환경부) >

담당부서	수도정책과	담당자	행정사무관 이창규
전화번호	02-2110-6878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상습적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급수취약지역(농어촌·도서지역)에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상수도시설 보급의 도농간 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하고 풍부한 용수공급으로 농촌 산간지역 주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
-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 : 20.8%('97)→33.0%('03)→60%('10)→ 75%('14)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면지역 상수도보급률	면지역 급수인구/면지역인구×100	%	60.0

○ 사업 추진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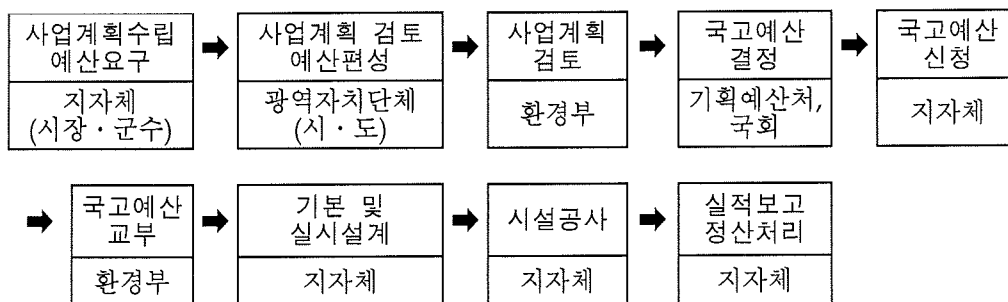
- 수도법 제56조, “농어촌특별세사업 통합지침”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면단위이하지역으로서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
- 사업 규모 : 151개 사업
- 지원금액 및 형태 : 202,295백만원(보조금)
- 지원조건 : 총사업비 70% 보조(계속사업인 경우 80%)
- 사업 주요내용 : 면단위이하지역 중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취수원개발, 정수시설 설치, 배수지 설치, 관로 등 용수 공급 시설 설치 지원
- 시도별 배분내역

(개소, 백만원)

계	인천	대구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47	1	1	12	17	14	22	15	23	30	10	2
224,598	2,591	1,000	14,153	30,530	18,974	36,118	16,782	49,010	40,705	9,000	5,735

○ 예산

- 사업기간 : '94년 ~ '14년(총 21년)
- 재원형태 : 국비 70%, 지방비 30% (계속사업의 경우 80:2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202,295			202,295	50,574		252,869
2010		224,598			224,598	59,965		284,563
(증△감)		증 22,303			증 22,303	증 9,391		증 31,694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371			4,042		14,413
'10	147개		2,246			599		2,845
'11	계속, 신규		2,283			978		3,261
'12	계속, 신규		2,334			1,000		3,334
'13	계속, 신규		2,404			1,030		3,434
'14	계속, 신규		1,104			435		1,539

< 3-3-2-2 : 교통서비스 강화(국토해양부/지자체) >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김주식 (사무관)
전화번호	02-2110-8670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시스템을 개선하여 농어촌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운송업체의 수익 등 문제로 안정적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지역의 농어촌 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에 기여

○ 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벽지노선 운행손실, 공영버스 운행 지원 등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 및 지역특성에 맞는 대중교통서비스 제공방안 강구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예산확보율	'10년 예산배분	%	100

○ 사업 추진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및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2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도지사
- 사업추진절차 : 시·도 수요조사 및 소요액 통보(국토부→행안부) → 분권교부세 버스재정지원(행안부→시·도)→사업시행(시·도)

○ 사업 내용(신규사업, 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버스운송업체 및 시·군·구

- 사업 규모(사업량) : 벽지노선(2999.2km) 운행손실 및 공영버스 구입 지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벽지노선 운행손실 39억원, 공영버스 구입 지원 25억원
- 지원조건 : 운송업체의 벽지노선 운행손실/지자체의 공영버스 구입비(대당 1,800만원)
- 사업 주요내용
  - 벽지노선 운행손실 지원 : 벽지노선으로 지정된 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업체에 대해 손실금의 일정액 지원
  -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비용 지원 : 시·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버스(공영버스)의 구입비용의 일부금액을 국비지원
- 시도별 배분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부산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벽지노선 손실보상	3,869	5	47	15	37	98	195	550	254	768	708	430	510	252
공영버스 지원	2,460	-	18	18	18	148	186	260	242	316	539	287	409	19

## ○ 예산

- 사업기간 : '05년 - '14년(총 0년)
- 재원형태 : 국비 분권교부세 지원 및 지방비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분권교부세)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57,300 (6,057)		57,300 (6,057)
2010						57,300 (6,329)		57,300 (6,329)
(증△감)						- (272)		- (272)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분권교부세 지급 기한이 '05~'09년에서 '14년까지 5년 연장되어 안정적으로 재원이 확보됨에 따라 지속적인 지원 추진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분권교부세)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865(300)		2,865(300)
'10						573(60)		573(60)
'11						573(60)		573(60)
'12						573(60)		573(60)
'13						573(60)		573(60)
'14						573(60)		573(60)



< 3-3-2-3 : 국고여객선 건조(국토해양부)>

담당부서	연안해운과	담당자	안재구(주무관)
전화번호	02-2110-8569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낙도 도서주민에 안정적인 해상교통수단 제공으로 기초생활 여건 개선

○ 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노후 여객선은 우선적으로 대체하고 차도선이 접안 가능한 항로의 일반여객선은 연차적으로 차도선으로 대체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국고여객선 건조 공정률	공사진척도	%	100

○ 사업 추진근거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농어촌특별세 대상사업)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개괄적으로 서술)

- 사업추진주체 : 국가(지방해양항만청)
- 사업추진절차 : 사업계획 작성 및 예산요구(지방청)⇒계획서 심의 및 예산확보·배정(국토해양부)⇒건조공사 발주(지방청)⇒여객선 건조(시공업체)⇒관리·위탁계약(지방청·운항선사)⇒여객선 취항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낙도보조항로 여객선 이용객(도주민 및 일반인)
- 사업 규모(사업량) : 150톤급 차도선 1척 건조
- 지원금액 및 형태 : 1,600백만원/직접수행, - 지원조건 : 국고 100%

- 사업 주요내용

- 전국적으로 26개 낙도보조항로에 26척의 여객선이 운항중으로 노후선 또는 항로특성에 부적격한 여객선을 선정 연차적으로 대체 건조
- '10년에는 낙도보조항로인 인천/울도 항로의 일반선을 차도선으로 대체

- 시도별 배분내역 : 해당없음

○ 예산

- 사업기간 : '95년 - 계속
- 재원형태 : 국비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1,600					1,600
2010			1,600					1,600
(증△감)			-					-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보조항로에 취향중인 선령 노후 여객선, 수송수요 및 주민 요구사항 등 항로 특성에 맞는 여객선 건조
- 매년 단년도 사업으로 국고여객선을 건조하여 낙도보조항로 취향 여객선 1~2척을 대체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			90				90
'10	1			16				16
'11	1			16				16
'12	1			18				18
'13	1			20				20
'14	1			20				20

< 3-3-2-4 : 내항여객선 운임보조(국토해양부)>

담당부서	연안해운과	담당자	안재구(주무관)
전화번호	02-2110-8569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육지에 비해 열악한 생활여건과 교통환경을 가진 도서지역 주민의 과중한 교통비 부담 완화 및 도시와 도서간의 교류증진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

○ 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한정된 예산과 운임지원의 취지를 감안, 고액 운임항로의 운임을 획기적으로 경감하여 지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입된 “최고운임제(5,000원)”와 “정률지원제(20%)” 지속 실시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도서민 수송실적	연안여객 수송실적	천명	3,750

○ 사업 추진근거

- 「해운법」 제44조(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지원)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도(시·군·구)
- 사업추진절차 : 사업자가 여객선 이용객에 대하여 할인 대표한 실적을 첨부하여 지원액을 청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심사) 후 사업자에게 지급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여객선이 기항하는 도서의 주민

- 사업 규모(사업량) :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연 370만명의 도서민
- 지원금액 및 형태 : 6,713백만원(지방비 제외)/지자체보조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 주요내용
  - 현재 최고운임으로 설정된 5,000원 이상을 초과하는 운임에 대하여는 전액 지원하고 최고운임 미적용 항로(구간) 운임에 대하여는 20%를 정률지원
- 시도별 배분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금액	6,713	1,560	10	160	230	2,469	1,709	260	315

### ○ 예산

- 사업기간 : '06년 - 계속(총 9년)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350	6,660		7,010	7,010		14,020
2010			6,713		6,713	6,713		13,426
(증△감)	-	△350	53		△297	△297		△594

###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도서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안여객선 최고운임제(5천원)을 유지하고, 기본운임 지원을 확대(20→30%)하는 방안강구(국가재정운영계획에 반영 추진)

	사업규모 (만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895		1,615	38,898		40,513		81,026
'10	375		315	6,398		6,713		13,426
'11	375		320	7,500		7,820		15,640
'12	380		320	7,900		8,220		16,440
'13	380		330	8,300		8,630		17,260
'14	385		330	8,800		9,130		18,260

< 3-3-3-1 : 정보화마을 조성(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정보문화과	담당자	이동호 사무관 안재현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2994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산어촌 정보이용환경 조성과 주민교육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를 통한 상거래 지원으로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 마을정보센터에 상근 근로자를 배치하는 등 농산어촌 지역 IT분야 청년·여성의 일자리 창출 기여

○ 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정보화마을 사업을 그간의 정보격차 해소 중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중심으로 정책 방향 전환
-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연계되도록 전자상거래 및 체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지속적인 운영평가를 통해 활성화 가능성이 낮은 마을은 특성별 컨설팅 지원 및 정비를 추진하고, 우수마을은 집중 지원 등 평가체계 정착과 성공마을 확산
- 자립운영기반 구축을 통한 미래 농산어촌 발전모델 개발
- '10년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가입실적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회원 누적	천명	480

○ 사업 추진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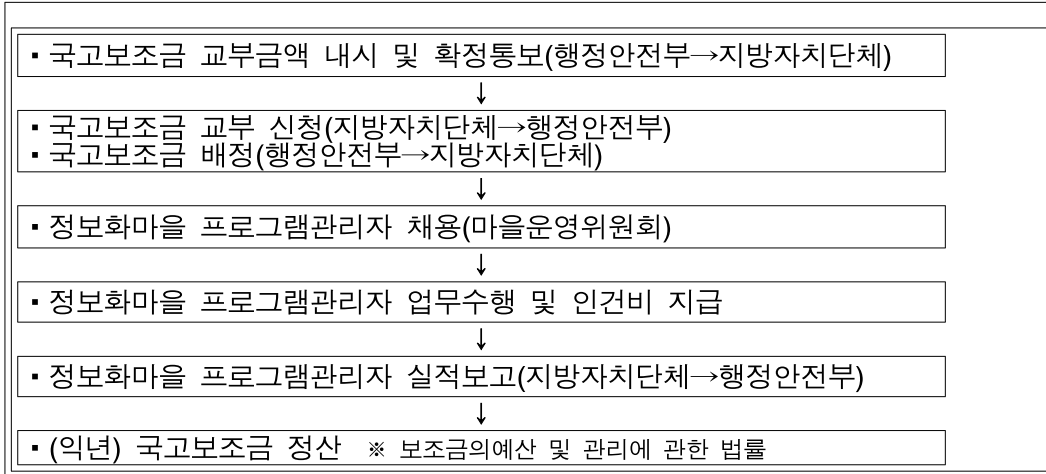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6조(지역정보화의 추진)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도시에 대하여 행정·생활·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행정, 재정, 기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 '10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 사업추진절차



###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전국 363개 정보화마을
- 사업 규모 : 363개 정보화마을 운영
- 지원금액 및 형태
  - 185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24억원, 국비 50%, 지방비 50%)
  - 운영평가, 전자상거래 지원, 운영전문가 육성, 홍보, 정보시스템 관리·운영 등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촉진을 위해 운영비 44억(국비)
- 지원조건
  - '09년에 실시한 『2008년 정보화마을 운영 평가』 결과 우수마을과 활성화 가능성이 있는 마을에 대해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원
- 사업 주요내용
  - 정보화마을 컨설팅, 콘텐츠 유지·관리, 전자상거래([www.invil.com](http://www.invil.com)) 지원
  - 정보화마을 지도자 및 운영전문가 육성 교육
  - 전자상거래시스템 및 대표포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시스템 추가 개발
  -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앙시스템 유지보수 등 운영·관리
  - 정보화마을 운영기반 정착과 활성화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등

- 프로그램관리자 시도별 국비 지원내역

합계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85	2	1	2	2	31	27	13	18	18	26	19	16	10

○ 예산

- 사업기간 : '01년 - 계속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	-	6,989	-	6,989	4,711	-	11,700
2010	-	-	5,598	-	5,598	1,221	-	6,819
(증△감)	-	-	△1,391	-	△1,391	△3,490	-	△4,881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정보화마을의 소득확충과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추진
-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원을 '11년부터 국비 10%씩 축소, 마을 자부담 10%씩 확대하여 국비 경감 및 마을자립운영 체제 구축
-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마을과 부진마을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 등 차별화된 정책추진으로 운영활성화 및 지속적으로 주민의 참여 동기 부여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	-	310	-	108	50	468
'10	363개 운영	-	-	56	-	12	0	68
'11	363개 운영	-	-	63	-	24	5	92
'12	363개 운영	-	-	81	-	24	10	115
'13	363개 운영	-	-	56	-	24	15	95
'14	363개 운영	-	-	54	-	24	20	98

< 3-3-3-2 : 농어업경영체 정보화 지원(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정보화담당관실	담당자	서봉열 사무관
전화번호	02-500-1687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어업경영체의 생산·유통·경영 업무에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생산성 제고 및 업무효율성 제고효과 발생
- 농어업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생산경영정보시스템 및 품목별자가진단시스템을 구축·보급으로 경영 효율화 및 비용절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추진방향

- u-IT기술을 접목하여 자동화 함으로써 농어업현장에 생산정밀화, 유통지능화, 경영선진화 구현
- 농가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유도 및 규모화된 전자상거래 사이트와 제휴 등을 통해 농산물 유통판로 확대 지원
- 생산경영정보시스템 및 품목별자가진단시스템 구축보급을 통하여 농어가 생산비 절감 유도

○ 사업추진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3조(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72조(유통정보화의 촉진)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 지방자치단체



- 사업추진절차

· 농수축산분야 u-IT사업

: 사업기본계획수립(농식품부) → 지자체과제선정(농식품부) → 사업검토 및 조정(농식품부, 정보센터) → 사업자 선정 및 사업수행(지자체) → 사업결과 보고(지자체) → 사업평가 및 정산(농식품부)

· 경영체정보화사업

: 사업기본계획수립(농식품부) → 세부사업계획 수립(보조사업자) → 사업계획 조정 및 승인(농식품부)→사업수행(보조사업자) → 사업결과보고(보조사업자) → 사업평가 및 정산(농식품부)

○ 사업 내용

- 사업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생산 및 유통)

- 사업규모 : 농어업경영체 u-IT 자동화시스템 구축지원, 품목별자가진단시스템 품목확대(2개 품목) 및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관리

- 지원금액 및 형태 : 2,095백만원(국비 + 지자체경상보조)

- 지원조건

· 농수축산분야 u-IT사업 : 지자체와 컨소시엄을 통해 공모과제를 신청한 농어업 경영체 중 평가를 통해 선정

· 품목별 자가진단시스템 : 100가구 이상 통합으로 운영되는 농어업경영체

· 기타시스템 기능개선 :기 구축·지원된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경영체

- 사업 주요내용

· RFID, USN 센서 등의 u-IT 자동화시스템을 농어업에 접목시켜 생산비 절감 및 경영효율화 지원

· 농어업경영체의 생산비절감을 위한 품목별 자가진단 시스템 구축·확산 및 웹농가 경영장부 SW 보급 확대로 기장을 제고

· 농어업경영체의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경영정보시스템 안정화 지원

- 농어가의 온라인 홍보 및 전자상거래 지원을 위한 EC솔루션 운영·관리
- 농림수산 정보화 리더 전진대회 개최 등 경영체의 IT기술 활용 촉진

### ○ 예산

- 사업기간 : '99년 ~ 계속
- 재원형태 : 국비 + 지자체경상보조 + 기타(지자체 및 농어가 자부담)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자체 경상보조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9	1,157	-	-	-	1,157	-	-	1,157
2010	795	-	-	-	795	1,300	1,950	4,045
(증△감)	362△				362△	1,300	1,950	2,888

###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 u-IT와 연계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경영정보시스템 보급 배포 확대
  - 지자체와 연계한 생산·유통·경영 u-IT 자동화시스템 구축사업 계속 추진( 5개 농어업경영체 내외)
  - 농어업경영체 현장중심의 맞춤형 경영정보시스템 표준모델 개발 및 보급
- 생산비 절감을 위한 품목별자가진단시스템 적용품목 추가 및 기능확장
  - 적용품목의 확대를 통하여 여러 품목에 대한 생산비용 절감 효과 제고
  - 시스템 구축 후 지속적 운영관리 지원을 통해 이용활성화 유도
  - 농어업 경영·유통·생산 관련 시스템 통합으로 시너지효과
- 시스템 유지보수 및 홍보·교육 추진
  - 기 구축시스템에 대한 지속적 유지보수를 통해 이용자 만족도 제고
  - 외부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하여 교육과정에 생산경영정보시스템 등의 강의지원

< 3-3-3-3 : 농어촌정보이용활성화(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정보화담당관실	담당자	서봉열 사무관
전화번호	02-500-1687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어업경영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커뮤니티를 통한 농어업인 상호간 정보 교류로 농어업 경영효율화 및 생산성 제고에 기여
- 농어업인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통해 정보화 능력을 향상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 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검색서비스를 개선하고 분석정보 개발 및 연계확대를 통해 농림수산정보망 ([www.affis.net](http://www.affis.net))을 내실화
- 경제, 경영 등 외부 전문지식 정보생산기관과의 협업체계 강화 및 멀티미디어 사업자와 제휴한 멀티미디어 기반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
- 인터넷 뿐만 아니라, 보편적 정보매체인 TV, 휴대폰등을 통해 농어업·농어촌 콘텐츠 확산
- 정보화교육의 대상을 농업인 등으로 확대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상시교육(온라인 교육) 강화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이용자 만족도	농림수산정보망 및 농업인 정보화 교육 이용자 대상의 만족도 조사	점	83

## ○ 사업 추진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2조(농어업 및 농어촌지역의 정보화촉진)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3조 및 제35조(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보급지원,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

## □ '10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농림수산식품부,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지자체
- 사업추진절차 : 기본계획수립(농식품부) → 세부사업계획 수립(보조사업자) → 사업계획 조정 및 승인(농식품부) → 사업수행(보조사업자) → 사업결과보고(보조사업자) → 사업평가 및 정산(농식품부)

###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업인 및 도시소비자
- 사업 규모 : 농림수산정보망 운영, 농어업인 정보화교육 실시
- 지원금액 및 형태 : 6,246백만원(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고 100%(일부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 주요내용
  - 농림수산정보망(AFFIS) 콘텐츠 확충 및 농림지식검색 통합운영
  - 농식품 지식·정보서비스(Okdab-CEO) 개발 및 운영
  -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운영, 멀티미디어 콘텐츠 확충 및 서비스
  - 농어업인 정보화교육을 통한 정보화 능력 함양
- 보조사업자별 배분내역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5,256백만원, 지자체 745백만원

○ 예산

- 사업기간 : '99년 - 계속
- 재원형태 : 국비 100%(일부 국고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군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6,166					534		6,700
2010	6,246					427		6,673
(증△감)	80					△107		△27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농어업인이 고품질의 정보서비스 및 교육을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이용환경을 마련
  - 농어업인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 멀티미디어 콘텐츠 지속 개발
  - 검색 기반 지속 확대 및 개선을 통한 사용자 만족도 제고
  - 인터넷, IPTV(D-CATV), 스마트 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정보/교육 확산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6,246				427		6,673
'11		6,300				267		6,567
'12		6,400						6,400
'13		6,500						6,500
'14		6,500						6,500

## 4. 농어촌의 경제활동 다각화

### 4-1. 농어촌산업 고도화

#### (1) 개관

##### □ '10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농어촌자원 1-2-3차 복합산업화 지원사업과 향토산업 활성화를 통해 창업 및 기업유치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고용창출 및 주민 소득 증대
  - R&D 및 컨설팅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생산·유통 기반 구축
  - 농촌 지역별 사업화유망 향토자원의 조사·발굴 및 DB 구축
  - \* 복합산업화지원 부문에 2,356억원(국고50%)을 지자체에 보조
- 농어촌의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농어촌에서 생산된 제품의 전시·판매 등 종합적 홍보 등을 통해 농어촌생산품의 수요확대 촉진
  - \* 우수축산물페스티벌, 수산물브랜드대전과 통합하여 농어촌산업박람회 개최
- 소규모 농업인 창업 및 소득화 지원을 통해 농외소득활동 활성화 촉진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
  -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유통을 위한 원료 확보
  - 전통식품 등의 생산·가공을 위한 작업장 및 시설설치, 가공장비 구입 및 설치
- 농촌축제·테마여행루트 개발, 농촌관광 해설사 양성매뉴얼 개발 등을 통해 농촌체험관광 활성화하고 농어촌 관광품질 제고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품목 육성, 산·학·연·관 네트워크가 주도하는 지원체계를 구축
  -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 정부지원금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패키지 방식으로 포괄적 지원

□ 예산 내역

<2010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복합산업화지원 (포괄보조) 관리		235,580			235,580	235,580		471,160
향토자원 발굴 및 D/B화			207		207			207
농어촌 생산품 수요확대 지원	200				200			200
소규모농업인 창업 소득화 지원		1,650	70		1,720	1,650		3,370
농어촌 관광상품 품질제고			30					30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舊,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61,470			61,470	61,320		122,790
합계	200	298,700	307	0	299,177	298,550	0	597,757

□ '11년도 추진 방향

- 기존 사업의 체계를 포괄보조사업(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목표에 부합토록 내역사업을 재편성하여 사업유형별로 예산 편성
- 농업인 창업과정 및 현장 담당공무원의 창업관련 교육과정 개설·운영
- 역사·문화·고전 등 지역문화와 연계한 스토리텔링으로 소비자 수요에 맞춘 콘텐츠의 다양화·차별화
- 농촌관광 품질관리를 위한 평가지표의 현장적용연구 강화, 도시민의 농촌 관광실태 조사 및 대응 전략 개발
- 참여주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으로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구상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실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4-1-1-1 : 복합산업화지원(포괄보조) 관리(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이수열(사무관)
전화번호	500-1806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2차-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고용 창출 및 주민 소득 증대
- 농어촌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주체 양성 및 지역혁신체계(RIS) 구축
- 지역 향토자원의 발굴 및 산업화에 필요한 R&D 기반 구축
- 농수산업, 향토식품·특산품 가공 등 제조업 육성 및 기업투자 유치
- 농어촌 체험·휴양서비스업 및 도·농교류 활성화 기반 구축

○ 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농어촌 자원 복합산업화를 위한 중장기 목표 및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전략적 추진체계 구축
- 농업인·기업·지역주민·전문가 그룹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 지역주민 소득 및 고용기회 증대 효과가 큰 분야에 선택과 집중
- 시·군별 2~5개의 테마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 특화품목 육성계획 등과 연계(벼의 타작목 전환 등 유도)
- 산업역량 S/W강화 및 인프라 구축 등 정책수단을 효과적으로 연계(생산-가공, 가공-체험·전시·판매 등 연계)
- 소규모 창업보육 및 외부기업 유치 촉진
- 산업역량 강화 교육학습 및 R&D지원체계 구축
- 농공단지 등 기업집적화 및 산업 인프라 조성
- 지역 특산품, 마을단위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한 도농교류 활성화
- 저탄소 녹색성장, 4대강 살리기와 연계 추진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지원대상업체 매출액 증가율(%)	(당해년도 매출액/전년도 매출액)*100	%	10



○ 사업 추진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포괄보조금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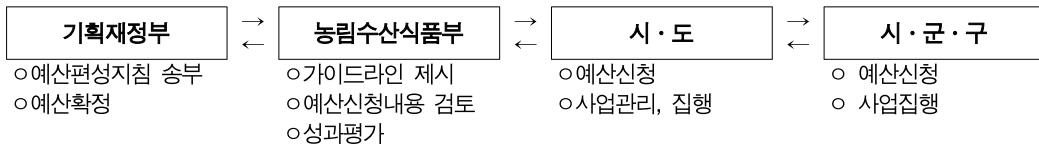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 사업주관기관은 시·도, 시·군·구이며, 사업담당부서는 시·도 농업정책과, 시·군·구 농정과임
- 포괄보조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포괄보조사업 총괄 및 담당부서 지정·운영(시도/시군구별)하고, 계획수립/사업추진/자체평가 과정에서 합리적인 결론도출, 폭넓은 의견수렴 등을 위해 공공·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발전협의체 구성

- 사업추진절차



○ 사업 내용(신규사업)

- 사업 지원대상

- 시·군·구 전체
- 2개 이상의 농어촌 시·군 협력사업인 경우 해당 시·군
- 다만 사업유형별로 대상지역에 대해 법령 및 법령에 근거한 타 지침에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름(농공단지 조성: 특별·광역시, 수도권 지역 시·군·구

- 사업 규모(사업량)

- '09년 기준 13개 세부사업에 대해 지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2,356억원, 지자체 보조(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

- 지원조건

- 지자체 예산한도내에서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취지에 맞는 예산 신청을 하여 사업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사업에 한하여 지원

- 사업 주요내용

- 농어촌 산업주체 역량강화 및 혁신체계 구축
- R&D 및 컨설팅 등 지원 강화
- 농어촌 자원 복합산업화를 위한 생산·유통 기반 구축
- 농어촌 기업 유치 및 향토기업 집적화 기반조성
- 농어촌형 체험·휴양 비즈니스 기반 구축

- 시도별 배분내역

(단위 : 백만원)

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35,580	500	1,270	3,311	500	1,090	10,662	16,236	10,049	24,896	61,759	41,734	22,316	27,591	13,666

○ 예산

- 사업기간 : '10년 - 계속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2010		235,580			235,580	235,580 (자부담포함)		471,160
(증△감)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기존 사업의 체계를 포괄보조사업(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목표에 부합토록 내역사업을 재편성하여 사업유형별로 예산 편성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444			12,444		24,888
'10			2,356			2,356		4,712
'11			2,403			2,403		4,806
'12			2,475			2,475		4,950
'13			2,550			2,550		5,100
'14			2,660			2,660		5,320

< 4-1-1-2 : 향토자원 발굴 및 DB화(농촌진흥청) >

담당부서	농촌환경자원과	담당자	김미희
전화번호	031-290-0280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산어촌의 향토자원을 조사, 발굴 및 DB화하여 지역별로 향토산업 육성에 활용될 수 있는 아이템 제공
- 농어촌지역에 산재한 향토전통자원 중에서 산업화 유망자원을 선별하고 산업화 모델을 개발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 활성화 및 향토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 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지역적 여건에 정통한 향토학자, 대학교수, 산업 및 마케팅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농어촌 지역 향토전통자원 조사
- 향토자원의 가치, 활용성 등을 평가하여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DB를 구축하여 향토산업 아이템 제공
- 향토자원 산업화 모델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향토자원 산업화 유망자원 발굴 조사	산업화 유망 향토자원 조사항수	건	300건
향토자원 산업화 유망자원 DB구축	농촌공익기능정보시스템상 자료 게시여부	건	300건

○ 사업 추진근거

- 농촌진흥법(법률 제5153호)
-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18,212호) 및 시행규칙 (농림부령 제1454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1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향토산업의 진흥)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농촌환경자원과
- 사업추진절차 : 어젠다 소과제 구성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소과제 공모 ⇒ 소과제 책임자 선정 ⇒ 과제계획 심의(외부전문가, 소비자)⇒ 최종과제계획서 작성 및 협약 ⇒ 과제 수행 ⇒ 연구과제 중간진도관리 및 현장평가(농촌환경자원과) ⇒ 연구과제 평가 및 보고회(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장, 외부전문가, 소비자) ⇒ 연구성과 결과활용심의회(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 사업 내용(신규사업, 기존사업) \* 신규사업은 '10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을 말함

- 사업 지원대상 : 관련 연구과제 추진 연구부서
- 사업 규모(사업량) : 10개 시군지역
- 지원금액 및 형태 : 2억, 국비 100%
- 지원조건 : 해당사항 없음
- 사업 주요내용
  - 농촌 지역별 사업화 유망 향토자원 조사·발굴
  - 농촌 지역별 사업화 유망 향토자원 DB구축
  - 향토자원 활용 문화컨텐츠 등 활용성 개발
- 시도별 배분내역 : '10년 농촌 사업화 유망 향토자원 조사 시군 수

(단위 : 시군 수)

계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0	-	-	5	2	3	-	-	-	-	-	-

○ 예산

- 사업기간 : '10년 - '14년(총 5년)
- 재원형태 : 국비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140		140			140
2010			207		207			207
(증△감)			67		67			67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2			6				6
'10	10			2				2
'11	3			1				1
'12	3			1				1
'13	3			1				1
'14	3			1				1

< 4-1-2-1 : 농어촌생산물 수요확대 지원(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최국일(사무관)
전화번호	02-500-1800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어촌의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농어촌에서 생산된 제품의 전시·판매 등 종합적 홍보·마케팅을 통하여 농어촌생산물의 수요확대 촉진
- 농어촌생산물 수요확대를 통한 농특산물의 가공확대와 농어촌기업 육성으로 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 활성화 촉진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농가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농어촌생산물 상설 홍보·마케팅을 위한 소비지안테나숍 개설 및 운영지원
- 농어촌산업박람회를 국제화하여 우수 농특산물의 수출확대 추진
- 대도시 재래시장(리모델링 시장) 등을 통한 품목별 공동마케팅 지원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농어촌산업박람회 방문객 증가율	(금년도방문객-전년도방문객) / 전년도방문객×100	%	10

○ 사업 추진근거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1조(향토산업의 진흥)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도농교류활동의 지원 : 농수산물 홍보)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 내용(기존사업)

- 농어촌생산물의 수요 확대 지원을 위한 수요창출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농어촌 산업 활성화 방안 수립('10.6월) 및 KREI 자체 연구과제와 연계·보완('10.12월)
- 제2회 농어촌산업박람회 개최('10.7월)
  - 우수 시·군 및 농어촌산업대상 시상
  - 지자체별·테마별 상품 및 한지·와인을 활용한 테마관 개설 및 지자체간 연계를 통해 개발한 농산물 전시
  - 지역혁신·마을혁신 우수사례, 품목별 연계발전 사례 발표 등 심포지엄 개최

- 농어촌기업 채용 등 일자리박람회, 투자회사 초청 기업설명회 개최
- 1시·군 1명품 판매를 위한 홈쇼핑 현장 스튜디오 개설
- \* 우수축산물페스티벌, 수산물브랜드대전과 통합 개최

○ 예산(농어촌산업박람회)

- 사업기간 : '09년 ~
- 재원형태 : 국비 + 지자체, 농협, 참여업체 등 참가비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군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138					(1,045)		138
2010	200					(1,000)		200
(증△감)	62							62

\* 우수축산물페스티벌, 수산물브랜드대전과 통합 개최(농어촌산업박람회 예산만 명시)

\* ( ) : 지자체, 농협, 참여업체 등 참가비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농어촌산업 활성화 방안에 따른 소비지안테나숍 개설·운영 지원, 농어촌산업 박람회 개최, 품목별 공동마케팅 추진 등 농어촌 생산품의 수요확대 지원
- 안테나숍 : 농어촌제품 전시·홍보·판매, 지자체 및 특산물 등 팜플렛 전시·제공 및 홍보영상 방영, 지자체 개별홍보 행사공간 제공, 홈쇼핑 등 방송공간 확보, 도시민의 휴식공간 제공
- 농어촌산업박람회 : 우수 농특산물 전시·판매·홍보, 우수사례보급, 해외바이어 초청행사 지원 등
- 품목별 공동마케팅 : 동일 품목생산자들이 품목별 사업단을 구성하여 대도시에 공동마케팅장소를 임대하여 공동홍보·마케팅 추진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4						14
'10	박람회 1회	2						2
'11	박람회 1회	3						3
'12	박람회 1회	3						3
'13	박람회 1회	3						3
'14	박람회 1회	3						3

\* 농어촌산업박람회 : 매년 3억원(국고 100%)



< 4-1-3-1 : 농어촌지역 창업, 기업성장 지원(농림수산식품부)>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최국일(사무관)
전화번호	02-500-1800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어촌기업비즈니스 지원을 통한 농어촌지역 기업성장 지원
-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 등 기존 창업지원기관의 역할보완
-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체계 구축을 통한 서비스관련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창업 및 기업성장 촉진
- 농어촌지역 창업 및 기업성장 지원을 위한 비즈니스서비스 제공
-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보급
- 네트워크 구축기회 제공을 통한 사업역량 강화 지원
- 성과관리 및 홍보를 통한 소비기반 확대
- 농어촌산업 활성화 기반 제공 및 농어촌 지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농어촌컨설팅 서비스산업 활성화 시스템 구축
- 시장진입서비스·농어촌산업화품목 시장성 진단프로그램 등 농어촌기업 High-Up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비즈니스모델 경연대회, 창업자 네트워크 연계 등 창업촉진프로그램 활성화
- 교류회, 유통매니저 품평회 등 교류촉진 지원을 통한 사업확대 기반 제공
- 농어촌기업 생산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성화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	-	-	-

○ 사업 추진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농어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및 제52조 (농어업 및 농어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 식품산업진흥법 제13조(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 농어업경영체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등) 및 제26조(선도적 농어업경영모델의 확산)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 내용

- 농어촌지역 창업 및 기업 성장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농어촌 산업 활성화 방안 수립('10.6월) 및 KREI 자체 연구과제와 연계·보완('10.12월)

○ 예산

- '10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2010								
(증△감)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농어촌산업 활성화 방안에 따른 농어촌기업컨설팅장터 개설, 창업 촉진, 농어촌지역 기업 교류 촉진 등 농어촌지역 창업 및 기업성장을 지원
  - 농어촌기업컨설팅장터 개설(<http://www.welchon.com>) 및 운영
    - 장터에 올릴 농어촌기업 강사·개별컨설턴트·컨설팅회사 선정 및 장터운영
    - 농어촌기업에 필요한 인재알선서비스 제공
  - 창업촉진 : 창업컨설팅, 창업설명회, 창업경연대회 등 촉진활동 실시, 창업자를 위한 네트워크 연계 지원
  - 농어촌지역 기업 교류촉진 : 교류회, 유통바이어 품평회, 비즈니스모델 경연대회
  - 농어촌지역 기업 및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사업
- 지역단위 창업보육기능의 활성화
  -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의 기능 전환 등
  - 지역 테크노파크, 지역 대학의 적극적 참여 유도
  - 주변여건 분석 등 입지, 시장 수요조사, 마케팅 관련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마련

- 경영·자금 지원체계의 재정비

- 전문경영인 유치 및 재무·법률·마케팅 등 경영지원 체계 정비
- 농업분야 및 중소기업 분야 정부지원 자금, 모태펀드 등의 적극 활용 유도
- 민간투자 유치, 자금조달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방안 마련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150							
'10								-
'11	600	1,000	-	-	-	480	320	1,800
'12	700	1,100	-	-	-	560	340	2,000
'13	850	1,300	-	-	-	660	440	2,400
'14	1,000	1,500	-	-	-	780	520	2,100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4-1-3-2 : 소규모 농업인 창업 및 소득화 지원(농촌진흥청) >

담당부서	농촌정책과	담당자	윤종탁(농업연구사)
전화번호	031-299-1071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국내원료를 기반으로 한 여성농업인의 소규모 창업지원으로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증진 및 농업인의 경제적 여권 신장
- 농업인 생산제품의 품질향상과 온라인 홍보 시스템 구축으로 농가 소득 증대
- 지역 식자재와 문화를 활용하여 스토리가 있는 향토음식의 상품화 및 체험 공간 조성으로 우리 식문화 계승 및 확산 기여
- 농업인 소규모 가공 창업활동 지원으로 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 활성화 촉진 및 지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농촌의 인적·물적·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농가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사업추진방향

- 농업인들의 보유솜씨와 지역농산물을 연계한 농외소득활동 기반 조성
- 소규모 창업을 위한 고품질 제품생산 및 전문기술 지도강화
- 사업주체에 대한 경영교육 및 우수지역 벤치마킹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우먼팜 콘텐츠 보강과 온라인 홍보 강화
- 전문적 컨설팅 지원체제 확보 및 연구모임 활성화
- 지역 농립수산물과 문화를 활용하여 차별화된 향토음식의 개발과 상품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활동 지원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2010년 농업인 창업사업장 매출액 증가율	(2010년 지원후 3년차 사업장 매출액 - 2009년 농업인소규모창업사업장 매출액 / 2009년 농업인소규모창업사업장 매출액) × 100	%	5.5

## ○ 사업추진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 증진)
- 농촌진흥법 제2조2항(농촌지도사업은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의 보급)
- 농촌진흥법 제13조(농촌지도사업 실시하는 지자체에 사업비 보조)
-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향토산업의 진흥 : 지역 고유문화, 기술, 특산품 등의 조사, 발굴, 상품화 및 계승에 대한 지원)

## □ '10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및 지방농촌진흥기관
- 사업추진절차 : 사업기획 및 신청지침 시행(농촌진흥청) → 사업계획수립 및 신청(마을 또는 농가→시군농업기술센터) → 심사위원회 구성, 사업타당성 심사 및 선정(지방농촌진흥기관 자율책임하에 진행) → 사업물량 확정 및 시도시행(농촌진흥청) → 사업시행(마을 또는 농가) → 사업자간 정보공유(농촌진흥청) → 사업관리(지방농촌진흥기관)

###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며, 가공·생산·상품화 작업이 해당 지역 거주자들(농업인 또는 2인 이상의 농가공동, 마을단위, 영농 조합 법인 등)에 의해서 행해질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는 향토음식 교육 이수 또는 향토음식 개발·상품화에 대한 경험이 있는 향토음식연구회, 생활개선회, 농업인, 귀농인 등
  -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운영 능력과 의지를 갖춘 농업인으로서 농진청 전자상거래 사이트 우먼팜의 활성화에 적극적인 농업인

- 사업 규모 : 신규 33개소('09년까지 135개소), 우먼팜 유지·관리 1건
- 지원금액 및 형태
  - 신규 : 33개소 16,500백만원(국비50%), 자치단체 자본보조 (농업인 창의적 손맛 사업화 18, 향토음식 자원화 15개소)
  - 우먼팜 유지·관리 : 70백만원, 중앙집행 국고 100%
- 지원조건 : 사업주체인 농가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에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생산·상품화를 희망하고,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운영능력과 의지를 갖춘 농업인 또는 법인·단체 등
- 사업 주요내용
  -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유통을 위한 원료확보
  - 전통식품 등의 생산, 가공을 위한 작업장 및 시설설치, 가공장비 구입 및 설치
  - 포장개발 및 유통개선에 필요한 자금 지원
  -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 및 우수 지역 벤치마킹
  - 전자상거래 우먼팜 유지·관리
  -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기반 조성 및 활성화 지원
  - 향토음식 개발 및 농가맛집 조성, 스토리텔링, 홍보 마케팅 등
- 시도별 배분내역

< 농업인 창의적 손맛 사업화 >

구 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사업량(개소)	18	2	3	1	2	2	3	2	3
사업비(백만원)	900	100	150	50	100	100	150	100	150

<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 >

구 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량(개소)	15	2	2	3	1	2	1	2	1	1
사업비(백만원)	750	100	100	150	50	100	50	100	50	50

○ 예산

- 사업기간 : '06년 ~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9	4,250	-	50	-	4,300	4,200	-	8,500
2010	-	1,650	70	-	1,720	1,650	-	3,370
(증△감)	-	-	△20	-	△2,580	△2,550	-	△5,130

※ '09년 예산은 추경예산 5,500백만원이 포함된 예산임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식품가공에 대한 농업인의 상시 기술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농업인 및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 농업인 창업과정 및 현장 담당공무원의 창업관련 교육과정 개설·운영
- 신규창업자에 대한 창업기술교육 및 현장 컨설팅 강화
  - 사업전 창업기술교육 지속 실시
  - 연구소, 학계, 관련 업체 등으로 구성된 현장 기술지원 및 컨설팅 강화
- 전자상거래 우먼팜 활성화 사업
  - 홍보 및 마케팅 확대로 전자 상거래 활성화 및 농가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경진 및 시상 추진
- 대상자별·농가별·지역별 맞춤형 농가맛집 비즈니스모델 유형 제시
- 역사, 문학, 고전 등 지역문화와 연계한 스토리텔링으로 소비자의 수요에 맞춘 콘텐츠의 다양화, 차별화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33		16.5	0.7		16.5		33.7
'11	50		25.0	1.0		25.0		51.0
'12	60		30.0	1.0		30.0		61.0
'13	85		42.5	1.5		42.5		86.5
'14	95		47.5	1.5		47.5		96.5

< 4-1-3-2 : 소규모 농업인 창업 및 소득화 지원(농촌진흥청) >

담당부서	농촌정책과	담당자	윤종탁(농업연구사)
전화번호	031-299-1071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국내원료를 기반으로 한 여성농업인의 소규모 창업지원으로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증진 및 농업인의 경제적 여권 신장
- 농업인 생산제품의 품질향상과 온라인 홍보 시스템 구축으로 농가 소득 증대
- 지역 식자재와 문화를 활용하여 스토리가 있는 향토음식의 상품화 및 체험 공간 조성으로 우리 식문화 계승 및 확산 기여
- 농업인 소규모 가공 창업활동 지원으로 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 활성화 촉진 및 지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농촌의 인적·물적·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농가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사업추진방향

- 농업인들의 보유솜씨와 지역농산물을 연계한 농외소득활동 기반 조성
- 소규모 창업을 위한 고품질 제품생산 및 전문기술 지도강화
- 사업주체에 대한 경영교육 및 우수지역 벤치마킹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우먼팜 콘텐츠 보강과 온라인 홍보 강화
- 전문적 컨설팅 지원체제 확보 및 연구모임 활성화
- 지역 농립수산물과 문화를 활용하여 차별화된 향토음식의 개발과 상품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활동 지원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2010년 농업인 창업사업장 매출액 증가율	(2010년 지원후 3년차 사업장 매출액 - 2009년 농업인소규모창업사업장 매출액 / 2009년 농업인소규모창업사업장 매출액) × 100	%	5.5



##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5조(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확대)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 □ '10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
- 사업추진절차 : 분야별 사전연구협의회(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 과제계획 심의(해당 과, 외부전문가) → 연구과제 계획보고회(기관장) → 연구과제 중간 진도관리 및 현장평가(해당 과) → 연구과제 평가 및 보고회(기관장) → 결과활용심의회(연구정책국)

### ○ 사업 내용

- 지역 자원과 농특산물을 활용한 마을축제 개발 : 창포축제 등 3종
- 전통지식보유자 농촌관광 해설사 육성 매뉴얼 개발 : 1종
- 농가소득 확대를 위한 농가민박 서비스 품질 제고
  - 농가민박接客 매뉴얼 및 품질평가 지표 현장적용 : 서천 등 3개군
- 농촌의 유무형자원을 활용한 농어촌신문화공간조성 전략 개발 : 6지역
  -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 신문화공간 조성 매뉴얼 개발 등

○ 예산

- 사업기간 : '10년 ~ '14년 (총 5년)
- 재원형태 : 국비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					-
2010			30					30
(증△감)			-					-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농촌자원의 부가가치제고를 위한 농촌관광상품개발
  - 농촌축제, 농촌관광 해설사 교육프로그램 등
- 농촌관광 품질제고 및 수요창출
  - 농촌관광 품질관리를 위한 평가지표의 현장적용연구 강화
  - 도시민의 농촌관광실태 조사 및 대응 전략 개발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5			23				23
'10	5			3				3
'11	5			4				4
'12	5			4				4
'13	5			4				4
'14	5			4				4

< 4-1-4-1 : 지역간 연계·협력 프로그램 지원(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최국일(사무관)
전화번호	02-500-1800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산업, 문화관광, 지역특화품목, 향토자원 등의 지역간 연계 협력 촉진으로 규모의 경제화 및 지역경제정책의 시너지효과 극대화
- 1, 2, 3차산업의 공동마케팅강화, 특화품목(한방약초, 천일염 등)의 시군간 협력촉진 등을 통한 유사 중복사업의 통폐합 및 지역경쟁력강화

○ 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동일 광역권내 시·군간, 타 광역권내 시·군간, 지역자원의 연계협력 등 유형별로 지역간 연계·협력 지원 확대
- 연계협력유형 : 공간별 (동일광역권내 시군간, 타 광역권내 시군간 등) 자원별 (생태문화자원, 산업자원(1,2,3차), 품목별, 기능별 등)

<기존 연계협력 추진사례>

타권역권	(유형 1)	(지역간 종합연계) 한방약초산업 지역간 연계·협력 사례 - 제천시, 상주시, 장흥군 등 13시군
	(유형 2)	(홍보·마케팅 연계) 천일염 공동 홍보·마케팅 협력 사례
	(유형 3)	(공동정책개발) 경북북부지역인 봉화, 영양, 청송, 영월 간 네트워크 형성과 공동정책 개발 추진
	(유형 4)	(문화관광) 지리산권 관광개발 공동연계사업 - 남원, 장수, 곡성, 구례, 하동, 산청, 함양
동일광역권	(유형 5)	(공동브랜드) 4개시군 원예작물 공동브랜드 연계협력 사례 -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유형 6)	(특화품목간연계) 와인&인삼 트레인사업 (영동군, 금산군)

- 농어촌지역의 지역별 특화자원의 연계 및 유사자원의 통합, 연계를 통한 사업 추진의 효율성제고 및 시너지효과를 제고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	-	-	-

\* 선정된 연계사업의 성과지표

○ 사업 추진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9조

□ '10년도 추진계획

-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사업 선정\*(’10.4월), 협약체결 및 사업 추진
- ’10년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11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
- ’11년에는 ’10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12년 계속지원 여부 결정
- \* 한방약초 신시장 창출을 위한 광역적 연계협력 기반조성(수도권)
- \* 천일염 공동브랜드 및 소비자 직거래 운영지원 사업(호남권)

○ 예산

- '10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2010								
(증△감)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연계협력사업의 위한 브랜드개발, 역량강화 등 소프트웨어 및 추진체계 구축 중심으로 지원
- 연계협력 참여시군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홍보마케팅, 공동브랜드, 시설물 등을 지원하되, 시군단위 하드웨어시설물, 브랜드, 마케팅 등의 지원은 지양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11								
'12								
'13								
'14								

< 4-1-4-2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 舊, 광역클러스터 활성화(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식품산업정책과	담당자	정병석(주무관)
전화번호	02-500-1924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중앙정부 주도의 평균적 농어가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지역특화 농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산·학·관·연이 주도하는 사업결정·지원 시스템 구축
- 지역의 가용자원을 통합·유기적으로 활용하고 지역농수산업 주체들의 역량을 집중하여 지방농어정 활성화와 농어가소득 증대 도모
  - \*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품목 육성과 지원체계 구축
  - \* 산학연관 네트워크에 의한 시너지 효과 창출 및 농업경쟁력 강화

○ 사업추진방향

-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품목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학·연·관이 네트워크 형성하여 지원체계를 구축
- 1차 산업인 농림어업을 2·3차 산업과 연계·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어업분야 신성장 동력 창출 지원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지역특화품목 매출액 증가율(%)	(측정년도 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100	%	15.5

○ 사업추진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개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제16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추진), 제51조(농촌지역 산업의 진흥 및 개발)

## □ '10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도지사, 지역식품산업육성사업단
- 사업추진절차 : 사업시행지침 마련(농식품부) → 심사대상 사업계획 제출(지자체 및 사업단)→실무 사전검토(농식품부)→비공개 서면평가(평가위원)→현장평가(평가위원 및 농관원)→공개발표 평가(평가위원)→사업비 심의·조정(농식품부)→ 사업단 최종선정(중앙농산업혁신위원회)→신규 사업단 교육실시(농식품부 또는 외부전문기관)→사업추진(사업단)

###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시·도, 시·군, 지역식품산업육성사업단
- 사업규모 : 2016년까지 100개소 지원
- 지역전략식품 : '16년까지 100개소 육성('09년까지 既추진 54개소)
- 향토산업 : '13년까지 200개 사업('09년까지 既추진 79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개소당 3년간 50억원(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단 시설비는 자부담 20%)
  - 농식품부에서 실시하는 선정평가에선 선정된 사업단
- 사업 주요내용
  -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품목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산·학·연·관이 네트워크 형성하여 지원체계를 구축
  - \* 1차 산업인 농림어업을 2·3차 산업과 연계·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어업분야 신성장 동력 창출 지원
  -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 하도록 하고, 정부지원금 활용도 전문CEO영입, 브랜드 개발, R&D지원 등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패키지 방식으로 포괄적 지원

- 2010년 시도별 배분내역

(단위 : 개소수)

계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4	1	2	3	2	4	6	7	5	2	2

○ 예산

- 사업기간 : '05년 ~ 계속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9	-	40,700	-	-	40,700	40,550		81,250
2010	-	61,470	-	-	61,470	61,320		122,790
(증△감)	-	20,770			20,770	20,770		204,040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참여주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산·학·관·연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으로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농산업 발전전략을 구상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실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48,450			347,700		696,150
'10			61,470			61,320		122,790
'11			70,770			70,620		141,390
'12			73,970			73,820		147,790
'13			76,870			76,720		153,590
'14			65,370			65,220		130,590

## 4.2. 체험, 휴양기반 구축 및 도농교류 활성화

### (1) 개관

#### □ '10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산림휴양공간조성사업의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야영시설 인프라 구축 및 노후화 시설 개선, 자연휴양림 설계·조성·보완
  - 주차장, 화장실, 취사장, 샤워장 등 부대·편의시설 확충 및 인터넷 예약 등 인프라 구축
- 공립수목원 조성(산림박물관 건립을 통해 산림문화와 휴양이 연계된 공간을 조성하고 식물유전자원의 효과적 이용을 위한 수집·보전)
  - 공립수목원 27개소, 산림박물관 7개소 조성(신규설계, 조성, 보완 등)
-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도시민과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시행
  - 다양한 홍보·공모전, 도농교류 정부포상 실시하고 상향식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마을사무장 채용지원, 컨설팅 지원,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시행
  -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증대할 수 있도록 농촌관광 서비스 활동과 학교 교육을 연계한 체험상품·프로그램 보급
  - 농어촌지역의 어메니티 활용을 통한 신문화공간조성
-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해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사업(20개소), 농촌교육농장 육성사업(64개소), 농촌체험활동 기술보급(20개소) 지원
- 도시학교와 농촌체험마을 사이에 1교1촌 결연을 맺어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어촌 체험학습을 운영하도록 하는 팜스쿨(Farm school) 시범운영(20개소)
  - 수도권과 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중 20개소를 선정하여 5백만원씩 지원



□ 예산 내역

<2010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산림휴양공간 조성		27,252	33,043		60,295	27,252	500	88,047
수목원 조성		17,173			17,173	17,173		34,346
산림박물관 건립		2,560			2,560	2,560		5,120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18,340				18,340	5,244	486	24,070
슬로시티 녹색관광 자원화				5,200	5,200	5,100		10,300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2,000			2,000	2,000		4,000
초중등학생의 농어촌체험·교류확대	100				100			100
합계	18,440	48,985	33,043	5,200	105,668	59,329	986	165,983

□ '11년도 추진 방향

- 노후화 휴양림을 대상으로 장기체류형 자연휴양림으로 전환하여 시범 운영 하고 수요자 중심의 체험·모험·산악레포츠 등의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한 맞춤형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
- 도시민의 도농교류 참여 촉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마케팅 전개
- 농촌전통테마마을의 자율적인 운영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기틀 조성 및 우수마을 활동사례 홍보 강화
- 팜스쿨 학교당 예산을 확대하여 내실있는 체험교육 추진(5백만원 → 10백만원)

< 4-2-1-2 : 산림휴양공간 조성(산림청) >

담당부서	산림휴양등산과	담당자	조병철(사무관)
전화번호	042-481-4211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도시화, 산업화로 환경 건강에 대한 관심이 무한히 커져감에 따라 국민들이 산림내에서 단기 체류를 하면서 산림이 가지고 있는 정화 기능과 치유능력 등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을 향유하고 산림의 중요성 이해 및 다양한 산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

○ 사업추진방향

- 경제 여건 및 야영 장비의 발달 등으로 가족단위의 야영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산림휴양 시설을 야영시설 중심으로 조성
  - 야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야영시설 및 화장실, 취사장, 샤워장 등 부대·편의시설 확충 및 인터넷 예약 등 인프라 구축
  -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야영장 조성시에는 반드시 취사장, 화장실, 샤워장, 주차장 등 공동시설과 연계하여 조성
- 운영이 부진하거나 노후화된 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야영문화 전용 자연휴양림으로 전환 추진
  - 시설의 노후 또는 오지에 위치한 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야영에 필요한 기본시설을 조성하여 야영 전용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하는 방안 검토 추진
  -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적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산책로 등 별도의 휴식공간 마련

- 노후화된 야영시설의 개선·보완

- 기존 설치된 데크 교체시 야영장비 대형화에 맞춰 적합 규격으로 설치하고 야영장내 전기 공급 등 편의시설 확충
- 모든 야영데크에 대해 번호판을 부착하고 홈페이지 및 현장에서 이용객이 쉽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도면 제공

- 자연휴양림 설계·조성 및 보완사업의 체계적 추진

- 자연휴양림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 사업비의 충분한 확보
- 자연휴양림 설계 및 조성은 자연친화적이고 특성화·다양화되게 추진
- 자연휴양림내 신·개축 및 보완공사시 목재 등 친환경자재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국산목재 등 목조시설 개발기술 활용 및 에너지 효율화 제고
- 자연휴양림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에 대하여 휴식년제 실시
- 자연휴양림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자연휴양림 조성 협의회」 운영

- 지자체자연휴양림 조기착공 및 선금·기성금 등 조기집행 촉진

-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신규조성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 필요한 절차는 1월내로, 기본 및 실시설계는 3월내로 완료하여 4월안에는 반드시 전 개소가 착공
- 업기간 단축을 통한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대행 위탁규정을 최대한 적용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자연휴양림 이용자 만족도 (국립·공립)	설문조사	점	90
자연휴양림 연간 가동률(국립)	자연휴양림 가동실적 보고서	%	51
자연휴양림 연간 가동률(공립)	자연휴양림 가동실적 보고서	%	37
자연휴양림 재정 향상율(국립)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	3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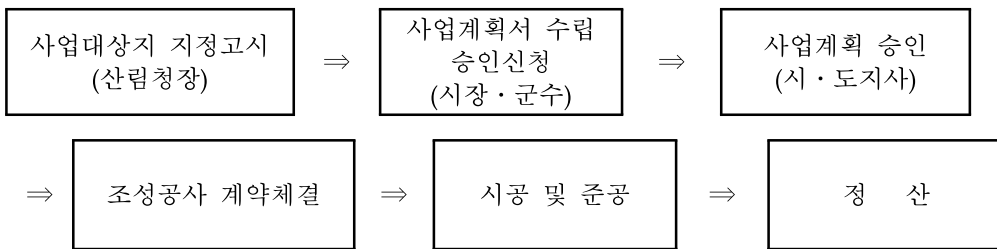
○ 사업추진근거

- 「산림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및 제20조(산림 휴양 공간 조성 및 산림문화의 창달)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 및 제14조(자연휴양림의 조성)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국가, 지자체
- 사업추진절차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기간 : '88~계속
- 사업주체 : 산림청, 시·도 및 시·군·구
- 사업추진 내용
- 지원대상 : 국가 및 지자체
- 사업규모
  - 설계 : 3개소(지자체 3)
  - 조성 : 17개소(지자체 17)
  - 보완 : 67개소(국가 37, 지자체 30)
  - 산림욕장 : 12개소(지자체 12)

- 지원조건

- 국유자연휴양림 조성(30억) : 국가 100%
- 국유자연휴양림 보완(4억) : 국가 100%
- 지자체자연휴양림 조성(30억) : 국가 50%, 지자체 50%
- 지자체자연휴양림 보완(4억) : 국가 50%, 지자체 50%
- 지자체 산림욕장 조성(4억) : 국가 50%, 지자체 50%

- 사업 주요내용

- 자연휴양림 조성 및 보완, 산림욕장, 숲속수련장 등

○ 예산

- 사업기간 : '88~계속
- 재원형태 : 국립(국비 100%), 공립(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9	-	21,409	32,315	-	53,724	15,633	1,000	70,357
2010	-	27,252	33,043	-	60,295	27,252	500	88,047
(증△감)	-	5,843	728	-	6,571	11,619	△500	17,690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국립자연휴양림별 다양화·특성화 전략 추진

- 자연휴양림별 시설의 다양화로 고객 만족도 향상
- 운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시설이 노후화된 휴양림을 대상으로 장기체류형 자연휴양림으로 전환하여 시범 운영 추진

- 수요자 중심의 체험, 모험, 산악레포츠 등의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한 맞춤형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94		273	330		273	5	881
'11	96		235	315		235	10	795
'12	97		235	285		235	10	765
'13	93		236	286		236	-	758
'14	92		236	293		236	-	765

< 4-2-1-3 : 수목원 조성 및 산림박물관 건립(산림청) >

담당부서	산림환경보호과	담당자	김판중(주무관)
전화번호	042-481-4249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식물유전자원의 체계적 수집·증식·보전·연구로 현지 외 보전기능 강화 및 자원화·이용을 촉진하고 국민정서·휴양·학습공간을 제공하여 삶의질 향상
- 산림사료 및 산림생물표본의 영구적인 보존으로 학술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전시·홍보·교육을 통하여 국민 인식제고

○ 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식물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전하고 증식에 필요한 서식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수목원을 지속적으로 조성
- 산림박물관을 수목원 관람 등의 산림문화·휴양공간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수목원 부속기관으로 건립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공립수목원의 식물종 누적평균 확보량(종)	식물종 확보량 조사	종	1,900

○ 사업 추진근거

- 「산림기본법」 제19조(수목원의 보호 및 육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산림생물 다양성의 보전)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사업비 등의 보조)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시·도→산림청) → 사전타당성 심사 및 결과 통보(산림청→시·도) → 균특회계 예산확정(국회) → 국고보조금 교부(산림청→시·도) → 사업실행(시·도, 시·군·구)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공립수목원 : 10ha이상의 조성부지와 지방비를 확보한 지자체
  - 산림박물관 : 산림박물관 건립부지와 지방비를 확보한 지자체
- 사업규모
  - 공립수목원 조성 : 27개소(신규설계 3, 조성 10, 보완 14)
  - 산림박물관 건립 : 7개소(신규설계 1, 조성 2, 보완 4)
- 지원금액 및 형태
  - 공립수목원 : 개소당 총사업비 60억원(국비 50% · 지방비 50%)
  - 산림박물관 : 개소당 총사업비 40억원(국비 50% · 지방비 50%)
- 지원조건
  - 「타당성심사위원회」에서 부지확보 및 입지여건 등을 종합심사하여 적합한 지자체에 한하여 사업 지원
  - 조성기간 : 공립수목원 4년(1년 설계, 3년 조성), 산림박물관 3년(1년 설계, 2년 조성)
- 사업 주요내용
  - 공립수목원 : 증식 및 재배시설, 관리 및 전시시설, 편익시설 등 조성
  - 산림박물관 : 산림사료 및 산림생물표본의 보존·전시관 등 건립
- 시도별 배분내역
  - 공립수목원

(단위 : 개소수)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7	1	1	1	1	1	1	3	2	1	6	1	2	2	3	1



· 산림박물관

(단위 : 개소수)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	-	-	-	-		-	1	-	-	2	1	1	1	1	-

○ 예산

- 공립수목원 : '92년 ~ 계속
- 산림박물관 : '95년 ~ 계속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 공립수목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12,973			12,973	12,973		25,946
2010		17,173			17,173	17,173		34,346
(증△감)		4,200			4,200	4,200		8,400

· 산림박물관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3,095			3,095	3,095		6,190
2010		2,560			2,560	2,560		5,120
(증△감)		△535			△535	△535		△1,070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7,925			107,925		215,850
'10	34		19,733			19,733		39,466
'11	35		22,048			22,048		44,096
'12	35		22,048			22,048		44,096
'13	35		22,048			22,048		44,096
'14	35		22,048			22,048		44,096

< 4-2-2-1 :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농촌사회과	담당자	이태용(사무관)
전화번호	02-500-1813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어촌 지역의 활력 회복 및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와 농어촌 간 인적·물적·문화적 자원의 원활한 교류 촉진 도모
- 도시·농어촌 주민간 상호이해 증진 및 도농교류에 대한 참여 활성화 도모

○ 사업추진방향

- 도농교류 활동을 지속시킬 수 있는 참여프로그램 개발 및 확충
- 도시민의 도농교류 참여 촉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마케팅 전개
- 도시지역의 자원과 활력을 농어촌에 유입시켜 농어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체험마을방문객수 증가율	당해년도 체험마을 방문객 수 / 전년도 체험마을 방문객 수 * 100	%	32
포털이용자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기관을 통한 설문	%	85

○ 사업추진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 (지역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 (농어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1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 농어촌정비법 제81조 (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제35조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제36조 농산어촌 투자유치 활성화, 제37조 도·농교류센터의 설치·운영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제12조 도농교류활동의 지원, 제16조 농어촌정주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 제17조 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 등

## □ '10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민간단체, 농어촌마을
- 사업추진절차 :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한국농어촌공사 → 농식품부) → 사업시행 계획 승인(농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시행 및 사후 보고(한국농어촌공사 → 농식품부) → 사업비 검정(농식품부)

### ○ 사업 내용

- 사업지원대상 : 도시민, 농어촌주민
- 지원금액 및 형태 : 민간보조(국고100%), 지자체보조(국고·지방비 각 50%, 사무장채용지원은 국고50%, 지방비40, 마을10)
- 사업 주요내용
  - 농어촌체험관광 수요창출과 국민적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공모전, 도농교류 정부포상 실시
  - 농촌체험마을 보험가입 및 마을사무장 채용지원과 전문가 그룹의 컨설팅 연계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상향식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할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시행
  - 도농교류 업무를 전담지원하고 다양한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도농교류센터 운영
  - 소비자단체·농어업관련 단체 등이 청소년·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어촌체험 및 문화사업 등을 통해 도농교류 촉진 도모
  - 농어촌체험 및 이주·정착 희망 도시민들이 불편 없이 교류할 수 있도록 농어촌관련 종합적인 정보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
  - 문화·관광축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어촌 경관·농촌체험·어메니티 등을 소재로 한 농어촌축제 지원
  - 농어촌 체험관광 글로벌화를 위한 외국인 유치 및 홍보활동 전개
  - 농촌체험관광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체험마을 평가 실시
  - 체계적인 체험마을 관리를 위한 체험마을 기초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농어촌 지역의 유·무형 문화를 매개로 신문화공간을 조성, 지역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도농교류 네트워크 기반으로 활용
  - 대도시 입지 도농교류 거점으로 농어촌체험·휴양정보, 도농교류 기업의 제품 전시·판매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도농교류 안테나 슙' 운영방안 마련

- 도시농업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도시농업모델 개발 및 교육, 기술지도,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10)을 거쳐 도시농업 정착 유도

- 시도별 배분내역

(단위 : 개소)

계	합계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382	5	3	3	42	66	31	48	47	46	32	45	14
체험마을사무장	350	4	3	3	39	62	27	44	43	43	28	42	12
농어촌축제	26	1			3	3	3	3	3	3	3	3	1
신문화공간조성	6					1	1	1	1		1		1

\* 농어촌축제 시도별 배분 개소수는 '10.3월 결정 예정

○ 예산

- 사업기간 : '02년 - 계속
- 재원형태 : 민간보조(국고100%), 지자체보조(국고50%, 지자체 최대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16,600					3,414	366	20,380
2010	18,340					5,244	486	24,070
(증△감)	1,740					1,830	120	3,690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 도시민의 도농교류 참여 촉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마케팅 전개
- 도시지역의 자원과 활력을 농어촌에 유입시켜 농어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 4-2-3-1 : 슬로시티 녹색관광 자원화(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관광진흥과	담당자	남우현(주무관)
전화번호	02-3704-9736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아시아 최초로 인증된 슬로시티 6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 운동 확산 및 지역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보존함으로써 기존 단체관광의 대안이 되는 한국만의 독특한 관광상품으로 개발

※ 슬로시티(Citta Slow) 운동

- '느림의 미학'(slow is better) 즉, 자연친화적 환경속에서 지역 고유의 먹거리와 전통 문화를 지키며 삶의 질적 향유를 추구하고, 현대인들에게 인간다움의 회복 및 마음의 고향을 제공하고자 하는 운동

○ 사업추진방향

- 슬로시티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슬로라이프 확산 지원
  - 주민교육, 마을 향토자료 조사 및 활용, 슬로시티 추진위원회 운영 등
- 슬로시티 자원을 활용하여 외부방문객의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슬로시티 체험프로그램 개발, 슬로시티 마을 정비, 안내센터 조성 등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 현재 지역별 슬로시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및 기초 기반사업 추진 증으로 성과측정이 가능한 '11년 이후부터 성과지표 수립 계획

○ 사업추진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 및 제76조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 슬로시티 인증(시·군 신청 및 슬로시티 본부 인증) → 사업 계획 제출(시·군→시·도) → 사업계획 종합 및 검토(시·도) → 사업계획 검토 및 지원(문화부) → 사업추진(시·군) → 사업현장점검(문화부) → 사업실적 제출(시·군) → 정산 확정(문화부)

###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슬로시티 인증 시·군
- 사업규모 : 6개 슬로시티 인증 지역(전남 신안, 완도, 담양, 장흥, 경남 하동, 충남 예산)
- 지원금액 및 형태 : '10년도 52억원(국비 50%·지방비 50%)
- 지원조건
  - 슬로시티 인증지역 사업계획 검토결과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지원
- 사업 주요내용
  - 슬로시티 인프라 조성 : 마을 경관개선, 마을 생태자원(다랭이논, 구들장논) 추가조성, 슬로시티 경관계획 수립, 체험장 조성 등
  - 슬로시티 프로그램 운영 등 : 주민교육 실시, 슬로시티 추진위 운영, 체험 프로그램 개발, 슬로푸드 개발 및 판매 등
- 시도별 배분내역 ('10년 슬로시티 개소수-예시)

(단위 : 개소수)

계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6						1		4		1	

### ○ 예산

- 사업기간 : '09년도~계속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예시)

(단위 : 억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9	-			37	37	37		74
2010	-			52	52	51		103
(증△감)	-			15	15	14		29

※ '10년도 국고예산 중 150백만원은 총회개최를 위한 민간보조로 추진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마을 위주의 슬로시티 사업 추진을 위한 선진지 견학, 주민 교육 실시
- 개인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및 연계시설 조성 지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0				112	111		223
'10	6				52	51		103
'11	6				20	20		40
'12	6				15	15		30
'13	6				15	15		30
'14	6				15	15		30

※ '10년도 국고예산 중 150백만원은 총회개최를 위한 민간보조로 추진

< 4-2-4-1 :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농촌진흥청) >

담당부서	농촌자원과	담당자	오승영(지도관)
전화번호	031-299-1073	이메일	

□ 사업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촌체험관광마을 및 농장(농가)에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보급과 품질관리 강화로 방문객에게 농촌의 정서 함양 및 고객 만족도 제고
- 농촌 어메니티자원을 관광 상품화하여 농업·농촌의 부가가치 향상 및 소득 증대에 기여
- 청소년에게 학교 내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농업·농촌생활을 교과과정과 연계한 체험학습 유도로 농촌에 대한 이해증진 및 체험관광사업의 활성화
- 시군단위(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관광 서비스 유형별 공급능력의 체계적 육성과 조직화를 통한 역할 확대 및 농촌관광 운영협의체 운영 마케팅 지원

○ 사업추진방향

- 농촌체험마을의 지역자원을 체험상품으로 개발, 마을의 체험프로그램을 다양화, 특성화
-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증대할 수 있도록 농촌관광 서비스 활동과 학교 교육과 연계된 체험상품·프로그램 보급
- 도시민에게 농업·농촌을 알리는 학습관광 유도로 도농교류 확산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수혜자만족도	2개분야별 만족도 조사결과(5점척도)를 백분율로 환산한 평균값 ①대상자만족도(2년차 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 지역주민) ②교육생 만족도(당해년도 교사양성과정 교육생)	%	78%
방문객증가율	전년대비 방문객 증가율(2년차 농촌교육농장 체험방문객 수)	%	20%



##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의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5조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확대)
- 농업·농촌기본법 제 38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 도농교류 촉진법 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 24조(전통식생활 문화 및 농어촌식생활 체험활성화)

## □ '10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마을) → 마을추천(시·군농업기술센터→ 도농업기술원) → 대상마을 선정(도농업기술원) → 사업시행 준비(마을, 시·군 농업기술센터) → 예산지원(농촌진흥청 → 도농업기술원 →시·군) → 농촌전통테마마을 및 교육농장 운영마을

### ○ 사업 내용

<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사업 >

- 사업지원대상 :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규모 : 20개소 ('09년까지 42개소) 조성
- 지원금액 및 형태 : 2,000백만원(국비 50%·지방비 50%) 개소당 100백만원 2년간 지원
- 주요 사업내용
  - 농산어촌체험관광 지역 협의체 구성 및 one stop service 지원체계 구축
  - 농촌관광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농촌관광대학 운영 등) 및 컨설팅
  - 농촌관광 활동의 공동 브랜드개발 및 홍보마케팅, 지역간 네트워크 형성 및 관광상품의 품질관리 기술 개발

< 농촌교육농장 육성사업 >

- 사업지원대상 : 농업활동과 체험관광활동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농장 또는 영농법인체, 체험활동 교육이수 및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보유한 농가
- 사업규모 : 64개소 ('09년까지 176개소) 육성
- 지원금액 및 형태 : 1,600백만원(국비 50% · 지방비 50%) 개소당 25백만원
- 주요 사업내용
  -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촌체험활동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교육환경 조성 및 정비, 교육장비 설치, 교구·교재 및 워크북 개발
  - 체험장·원두막 설치, 자연학습장, 산책로 조성, 기술지원 및 컨설팅 등

< 농촌체험활동 기술보급 >

- 사업지원대상 : 농촌전통테마마을의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농촌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추진과 관리가 용이하며 시범효과가 큰 마을
- 사업규모 : 20개소 ('09년까지 40개소) 육성
- 지원금액 및 형태 : 400백만원(국비 50% · 지방비 50%) 개소당 20백만원
- 주요 사업내용
  - 농촌전통테마마을 사후관리에 필요한 체험학습 환경조성 및 정비
  - 체험 상품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지원
  - 지역의 농특산물 및 부존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의 브랜드 개발

○ 시도별 배분내역 ('10년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사업 개소수)

(단위 : 개소수)

구 분	계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사업	20			2	4	2	3	3	1	3	2	
농촌교육농장	64	4	4	8	8	4	4	8	4	8	8	4
농촌체험활동 기술보급	20		1	2	3	2	3	2	2	2	3	
계	104	4	5	12	15	8	10	13	7	13	13	4

○ 예 산

- 사업기간 : '06년 ~ '15년 (총 10년)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예시)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9	-	2350	-	-	2350	2350	-	4700
2010	-	2000	-	-	2000	2000	-	4000
(증△감)	-	△350	-	-	△350	△350	-	△700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농업·농촌 체험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체험 학습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보유한 농가나 영농법인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대상요건을 두어 사업추진 전에 농촌체험 학습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
- 농촌전통테마마을의 자율적인 운영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기틀 조성 및 우수마을 활동사례 홍보 강화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951개소		194			194.0		400.0
'10	104		20.0			20.0		40
'11	140		24.5			24.5		49
'12	194		36.5			36.5		73
'13	225		49.5			49.5		99
'14	278		63.5			63.5		117

< 4-2-4-2 : 초·중·고등학교의 농어촌 체험·교류 확대(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농촌사회과	담당자	하지은(사무관)
전화번호	02-500-1821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미래 세대의 주역인 초·중·고·대학생에 대해 농어촌을 체험하고 농어촌의 가치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농어업 우호세력 및 미래의 건전한 농수산물 소비자 육성

○ 사업추진방향

- 도시학교와 농촌 체험마을 사이에 1교1촌 결연을 맺어 초등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어촌 체험학습을 운영하도록 하는 팜스쿨(farm school) 시범운영('10년 20개소)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팜스쿨 시범사업 대상학교	대상학교 공모	개소	20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학교
- 사업추진절차 : 농식품부 공모 → 사업신청(학교→농식품부·농어촌공사)  
→ 농식품부 평가 및 통보(농식품부→학교)→사업시행(학교)

○ 사업 내용(신규사업)

- 사업지원대상 : 서울, 경기 및 6대 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 사업규모 : '10년 20개소 조성
- 지원금액 및 형태 : 학교당 5백만원(국비 100%)

- 지원조건

- 학교 내 유휴지 또는 빈 공간에 소규모 농촌 체험공간 조성(옥상텃밭, 상자텃밭 등)이 가능한 학교
- 연 1회 이상 체험마을 방문을 통한 체험활동 운영이 가능한 학교
-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친환경 농업·식생활에 대한 교육 시행 의사가 있는 학교
-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팜스쿨 운영위원회·동호회 등의 운영 의사가 있는 학교
- 친환경 급식을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을 검토 중인 학교

○ 예산

- 사업기간 : '10~'14 (총 5년)
- 재원형태 : 정액보조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9	-	-	-	-	-	-	-	-
2010	100	-	-	-	-	-	-	100
(증△감)	100	-	-	-	-	-	-	100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의를 통해 '농어촌 체험 시범학교'로 공식 추진
- 개소당 예산을 10백만원으로 확대하여 내실있는 체험교육 추진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0	9	-	-	-	-	-	9
'10	20	1	-	-	-	-	-	1
'11	20	2	-	-	-	-	-	2
'12	20	2	-	-	-	-	-	2
'13	20	2	-	-	-	-	-	2
'14	20	2	-	-	-	-	-	2

## 5. 문화·여가여건 개선

### 5-1. 생활친화형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

#### (1) 개관

##### □ '10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 공공도서관 19개소, 지방테마과학관 8개소 지원
- 공공 체육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자체의 읍·면 단위에,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균형있는 생활체육시설 확충
  - 복합체육시설에 대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A, B, C형으로 유형을 다양화하고 '10년도에는 5개소(6억원/개소)를 조성
-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예술전문가 및 문화기반시설 관계자가 참여하는 컨설팅팀을 구성하여 지역문화 역량 강화

##### □ 예산 내역

<2010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4,595			14,595	16,177		45,367
지방테마과학관 건립 지원				4,000	4,000	6,000		10,000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조성 지원				3,000	3,000	1,200		4,200
지역문화 컨설팅 기반 구축		400			400	400		800
합계		14,995		7,000	21,995	23,777		60,367

## □ '11년도 추진 방향

-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이 계속사업으로서 지속적 확충 추진
  - 공공도서관 6개소, 지역 수요가 반영된 테마과학관 약 8개 내외 건립
  - '10년부터 광특회계로 개편되면서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이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세부 사업 내에 통합되어 국가에서 인위적인 조정에 한계 존재
-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조성은 '06~'10년간 시범사업으로 계속 시행 여부는 그간 추진실적에 대한 현장만족도 조사 등 사업평가 실시후 결정 예정

< 5-1-1-1 :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도서관진흥팀	담당자	임혜은
전화번호	02-3704-2739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공공도서관 건립을 특별 지원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 인프라 구축에 기여
- 농어촌주민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도농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 소외 지역의 삶의 질 향상

○ 사업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2013년까지 농어촌공공도서관 총 260관 건립 목표
- 수요자 예측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한 규모의 적정성 유도
- 중소형·접근성 높은 복합건물 형태의 도서관 건립 권장
- 1관당 평균건립(20억) 비용을 적용하여 한도 내에서 80%(16억)까지 지원
  - 총사업비가 평균건립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지방비에서 추가부담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지원 도서관수	총 지원 도서관수	관	19

○ 사업추진근거

- 도서관법 제27조 (공공도서관 설치 등) 및 도서관법시행령 제17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특별법 제34조(농산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 '새문화관광정책사업'('98), 농어촌발전종합대책('94)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5조(지역문화·관광의 육성), 제16조(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 일반회계('91~'94)→특별교부세('95~'04)→균특회계('05~)→광특회계('10~)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 사업추진절차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신청(지자체) → 예산신청서 검토(문화부) → 정부지원예산 확정(기획재정부) → 예산확정(국회)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지자체)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문화부) → 예산집행 및 정산(지자체)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행정구역상 읍면지역
- 사업 규모(사업량) : 2013년까지 260관 조성 목표
- 지원금액 및 형태
  - 1관 당 16억원 한도 내 총 건립비의 80%까지 국고지원
  - 자치단체 자본보조
- 지원조건 : 지방비 및 부지 확보
- 사업 주요내용
  - 읍면지역에 건립하는 도서관에 대하여 건립비의 80%범위 내에서 국비지원
  - '10년도 지원 내역 : 19개관(신규 7관, 계속 12관) 14,595백만원 지원
- 시도별 배분내역

(단위 : 개소수)

시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지원관 수	2	2	1	3	1	5	2	3	19

○ 예산

- 사업기간 : '94년 ~ 계속
- 재원형태 : 국비 80%, 지방비 2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11,417	-	-	11,417	10,211	-	21,628
2010		14,595	-	-	-	16,177	-	30,772
(증△감)		3,178	-	-	3,178	△5,966	-	9,144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계속사업으로서 지속적 확충 추진
  - 총 목표대비 연도별 실적 점검
- 보조사업자의 집행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추진 상황 점검 및 독려
  - 국고 교부시마다 평가표를 작성하여 집행상황 점검 및 적시의 국고 교부
  - 분기별 집행실적 파악 및 수시 현장실사를 통한 집행독려
-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전문가 컨설팅 지원시 농어촌공공도서관 우선 지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3		52,995			56,177		70,772
'10	19		14,595			16,177		30,772
'11	6		9,600			10,000		10,000
'12	6		9,600			10,000		10,000
'13	6		9,600			10,000		10,000
'14	6		9,600			10,000		10,000

※ '10년부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되면서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이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세부 사업 내에 통합되어 국가에서 인위적으로 사업을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 5-1-1-2 : 지방테마과학관 건립 지원(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과학기술문화과	담당자	이병수
전화번호	2100-6634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지방의 테마과학관 건립지원을 통해 과학문화 소외지역 주민 및 청소년들에게 과학기술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간 과학문화 격차해소 촉진
- 지역특성을 반영한 생활친화적 과학문화 환경조성을 통하여 지역의 자연환경 및 문화시설과 연계·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13년까지 국·공·사립과학관 100개 운영을 목표로 지속적 건립 지원
- 분야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매년 8개 내외의 지방테마과학관을 선정·지원
- 대상선정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지방테마과학관 건립지원 수	건립지원 통계확인	개소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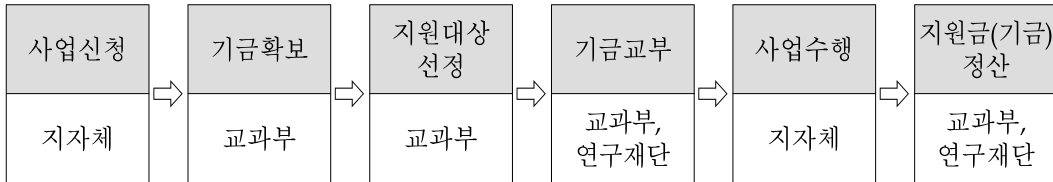
○ 사업 추진근거

- 과학관육성법 제4조의 2(과학관육성기본계획 수립), 제17조(경비의 보조등)
-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농산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 □ '10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기초)
- 사업추진절차



###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기초자치단체
- 사업 규모(사업량) : 매년 8개 내외 지자체(과학관) 선정 · 지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건립비의 50%이내 최대 10억원을 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 지자체 Matching(건립비 50%이내 보조)
- 사업 주요내용
  - 분야별 ·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부지확보 등 추진실적이 우수한 8개 내외 (신규 + 계속) 지방테마과학관 선정 · 지원
  - 일부 사업지연 사례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및 실적점검 강화
- 시도별 배분내역 : 선정 · 심의위원회 개최 · 운영을 통해 최종 확정
  - '10년 지원신청한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중 선정 지원

### ○ 예산

- 사업기간 : '04년 ~ 계속
- 재원형태 : 국비 50%(최대 10억),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4,000	4,000	12,395		16,395
2010				4,000	4,000	6,000		10,000
(증△감)				-	-	△107		△64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부지확보 등 사전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이 우수한 8개 내외 테마과학관 건립에 총 40억원 지원
  -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테마과학관 건립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부지 및 지방비 확보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심의를 통해 선정·지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0,000	24,000		44,000
'10	8개소				4,000	6,000		10,000
'11	8개소				4,000	6,000		10,000
'12	8개소				4,000	6,000		10,000
'13	8개소				4,000	6,000		10,000
'14	8개소				4,000	6,000		10,000

< 5-1-2-1 :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조성 지원(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담당자	강성태
전화번호	02-3704-9856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공공 체육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자체의 읍·면 단위에,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균형있는 생활체육시설 확충
- 상대적으로 체육시설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체육시설 및 주민 화합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농간 격차 완화

○ 사업추진방향

- 2006~2010년 기간 시범사업으로 읍·면 단위에 복합체육시설 지원(총 33개소)
- 지역 균형발전(도·농간 격차 완화)을 위해 스포츠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지역적 특성, 수요자의 선택권 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체육시설 지원
- 지방자치단체가 아래 조성 유형 3가지("A", "B", "C" 형) 중에서 자율 선택하여 건립 추진

※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조성 유형

A형	➡	레크레이션센터, 커뮤니티센터, 자기운동센터, 아쿠아센터, 다목적구장(노인 건강체육시설) 등 (연면적 1,297㎡- 본건물 350㎡, 다목적구장 947㎡)
B형	➡	커뮤니티센터, 자기운동센터, 아쿠아센터, 다목적구장(노인 건강체육시설) 등 (연면적 1,228㎡ 본건물 280㎡ 다목적구장 948㎡)
C형	➡	레크레이션센터, 실내체육관, 소그룹실, 다목적구장(노인 건강체육시설) 등 (연면적 1,482㎡ 본건물 564㎡ 다목적구장 918㎡)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지원 개소수	지원실적	개	5

○ 사업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및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제1항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시장 · 군수

- 사업추진절차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성지원계획을 수립, 시·도로부터 신청받아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기금을 교부·집행관리하며, 지자체에서 조성사업 수행

①	지원계획 안내, 공고	○ 지원계획 공고 / 1월초 (문화체육관광부⇒시·도⇒시·군)
②	신청서 접수 및 정량평가	○ 시·군 기초지자체 지원신청서 접수 / 1월말 (시·군⇒시·도⇒문화체육관광부)
③	선정위원회 평가 실시	○ 정성 평가 및 최종평가 결과 정리 / 2월초
④	지원대상 확정·통보	○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대상 확정 및 통보 / 2월중 (문화체육관광부⇒시·도, 공단)
⑤	사업 수행	○ 국민체육진흥기금 교부 및 사업 수행 / 3월~ (시·군⇔국민체육진흥공단)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특별시, 광역시 제외 9개도 관할 기초 지자체의 읍·면지역으로 이미 농어민 복합체육시설 및 문화체육센터를 지원받은 지역은 제외
-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확정(전년도 국회의결) 후 지원대상 사업을 공모,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

- 선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체육 관련 전문가 및 내부 공무원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외부 전문가 50%이상 참여
- 사업규모 : 복합체육시설 5개소 조성('09년까지 28개소 지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개소당 6억원(정액) / 자치단체 자본보조
- 지원조건 : 기금 보조금 외의 추가 사업비(부지매입비 포함)는 지방자치단체 부담
- 사업 주요내용
  - 다목적구장 및 소규모 실내 체육시설 설치
  - 부대 편의시설(아쿠아시설 및 커뮤니케이션룸 등) 설치
- 시도별 배분내역
  - 특별시, 광역시 제외 9개도 관할 지자체 중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등 유사 체육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적정 사업대상 선정(5개소)
  - ※ 지원 개소수가 적어 사전에 시도별 물량 배분 불필요

○ 예산

- 사업기간 : '10년(단년도 계속사업)
- 재원형태 : 국민체육진흥기금(6억원 정액지원) 및 지방비(추가부담액)
  - ※ 1개소당 조성비 9억원 내외 소요(부지매입비 제외)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9	-	-	-	3,750	3,750	1,500	-	5,250
2010	-	-	-	3,000	3,000	1,200	-	4,200
(증△감)	-	-	-	△750	△750	△300	-	△1,050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조성은 '06~'10년간 시범사업으로 계속 시행 여부는 그간 추진실적에 대한 현장만족도 조사 등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결정 예정



< 5-1-4-1 : 지역문화 컨설팅기반 구축(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지역문화과	담당자	최금정
전화번호	02-3704-9557	이메일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지역의 문화 분야에 해당지역의 대학을 중심으로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진흥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써 지역문화 역량 강화

○ 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추진방향에 대한 개괄적 서술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컨설팅 지원 개수	사업실적 보고	개수	15

○ 사업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39조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 사업추진절차 : 기본계획수립(문화관광부) → 사업수행기관선정(문화관광부)  
→ 사업비교부(문화관광부) → 사업시행/상황관리(문화관광부, 사업기관)  
→ 사업성과 보고/정책반영(문화관광부, 사업기관)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지원대상 : 지역소재 대학
- 지원금액/형태 : 4억/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정률지원(5:5)

- 사업내용 :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예술전문가 및 문화 기반시설 관계자가 참여하는 컨설팅팀 구성
- 시도별 배분내역 : 부산(4), 대구(1), 전북(5), 경북(2), 경남(2), 제주(1)

○ 예산

- 사업기간 : '05년 - 계속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5				5		10
2010		4				4		8
(증△감)		-				-		-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2			22		44
'10	15		4			4		8
'11	15		4			4		8
'12	17		5			5		10
'13	15		4			4		8
'14	16		5			5		10

## 5-2. 농어촌 주민 문화향유 지원

### (1) 개관

#### □ '10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국립예술단체의 우수공연 프로그램을 소외지역 문예회관 및 연계시설에 제공하여 지방 소외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 어르신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국 지방문화원 227개소 중 공모를 통한 선정·지원
- 문화부와 농식품부가 MOU를 체결하여 문화향수 격차해소 및 문화·관광을 통한 지역경쟁력제고를 위해 공동 노력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 지역축제 중 관광상품성이 있는 관광축제 44개를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국제적인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 및 농어민 소득 창출

#### □ 예산 내역

<2010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방방곡곡 문화예술 지원			2,500		2,500			2,500
찾아가는 도서관, 박물관 운영			794		794			794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2,300		2,300			2,300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1,200		1,200			1,200
향토문화 관광축제 육성				7,250	7,250	7,250		14,500
지역개발과 문화예술프로그램연계	700			700	1,400			1,400
합계	700	0	6,794	7,950	15,444	7,250	0	22,694

#### □ '11년도 추진 방향

- 오지·낙도 등 소외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추진
- 지역고유의 지리적·문화적 특성을 주제로 한 축제를 대표축제로 집중 육성

< 5-2-1-1 : 방방곡곡 문화예술 지원(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공연전통예술과	담당자	이형수(주무관)
전화번호	02-3704-9567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국립예술단체의 우수공연 프로그램을 전국 문예회관 및 연계된 소외시설 등을 통한 공연지원으로 지방 소외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 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평소 공연을 접할 기회가 제한된 소외지역 주민의 수준 높은 국립예술단체 공연관람을 통한 문화감수성 제고
- 국립예술단체의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연범위 확대 기여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수혜자수	관람객 조사	천명	54

○ 사업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항(시책과 권장)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사)전국문예회관연합회
- 사업추진절차 : 사업계획수립 및 국고보조금 신청(전문연)→사업계획 검토 및 교부(문화부)→국립예술단체 프로그램 확정(참여 국립단체)→대상 문예회관 및 시설 공고·선정(전문연)→공연추진(참여 국립단체)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지방문예회관(재정자립도 40%미만지역) 및 인근 소외시설  
\* 서울 및 광역시 문예회관, 독립문예회관 제외
- 사업 규모 : 10개 국립예술단체 참여 80개소 120회 공연
- 지원금액 및 형태 : 공연당 20~40백만원 지원(정액)
- 참여단체 :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국립국악원 등 10개 국립 예술단체
- 사업 주요내용 : 국립예술단체의 우수 레퍼토리 및 지역맞춤 프로그램을 소외 지역 문예회관 및 연계시설에 파견 공연
- 시도별 배분내역 : 문예회관 대상 공모사업

○ 예산

- 사업기간 : '09년 - 단년도 계속사업
- 재원형태 : 국비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2,000		2,000			2,000
2010			2,500		2,500			2,500
(증△감)			500		500			500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오지, 낙도 등 소외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추진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80개소, 54천명			2,500				2,500
'11	82개소, 54천명			2,575				2,575
'12	85개소, 55천명			2,652				2,632
'13	87개소, 55천명			2,732				2,732
'14	90개소, 56천명			2,814				2,814

< 5-2-1-2 : 찾아가는 도서관, 박물관 운영 >

담당부서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민속박물관	담당자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신은식 - 국립중앙박물관 : 양평석 - 국립민속박물관 : 김미경
전화번호	02-3413-4756 02-3704-9295 02-3704-4524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도서관 :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소외계층 어린이에게 도서관을 통해 꿈과 상상력, 미래를 향한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기회와 안정적 독서기반을 제공하고 정보 문화 격차를 해소함
- 박물관 :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축소된 형태의 작은 박물관 운영을 통해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 고취 및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지역 내 학교에 문화교육 확대

○ 사업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

- 기간 : 2010 3월~11월
- 횟수 : 총 1,800여회
- 대상 : 정보문화소외계층 어린이들
- 내용
  - 도서관 이용을 생활화하게 함으로써 건강하고 창의성 있는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 운영도서관별로 협력단체, 보육원 등 참여기관을 선정하여 운영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운영도서관수	공문	개관	75
참여어린이수	운영계획서 및 현지조사	명	1,500

< 국립중앙박물관 >

- 기간 : 2010년 3월~12월

- 횟수 : 총 69회
- 대상 : 문화적 소외지역으로 낙도·벽지학교, 복지시설, 군부대 중심으로 선정
- 내용 :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축소된 형태의 작은 박물관 운영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교육 실적	횟수, 인원	회, 명	69회 40,000명

### < 국립민속박물관 >

- 기간 : 2010년 4월~7월, 9월~11월
- 횟수 : 총 25회
- 대상 : 초등학교 1~6학년 1회 80명 내외, 총 2,000명
- 내용 : 전시 관람, 전래놀이 장난감 만들기, 놀이 체험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교육 만족도	설문지	%	85
교육 운영 횟수 및 참가 인원	설문지	회, 명	25회 약 2,000명

### ○ 사업추진근거

- 도서관 : 도서관법 제19조 제1항 제8호, 도서관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 박물관 : 박물관미술관진흥법

### □ '10년도 추진계획

#### <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전국 공공도서관) → 대상도서관 선정(운영도서관) → 사업시행 준비(운영도서관) → 예산지원(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운영도서관 → 사업시행 및 연계된 아동센터 및 보육원 대상 프로그램 운영 → 운영 심사

#####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전국의 공공도서관
- 사업규모 : 전국75개 공공도서관과 연계되어 있는 3,274개 아동센터 및 보육원 대상 도서 및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지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도서관당 368만원(도서, 프로그램운영비 등, 민간보조금)
- 지원조건
  - 책읽기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사업 추진 의지가 높은 도서관
  - 어린이 독서습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적합한 도서관
  - 참여기관 지정의 적합성과 사업 목적의 달성가능성이 높은 도서관
  - 자체도서관의 지원 및 계속사업 추진 의지가 높은 도서관
- 사업 주요내용
  - 독서프로그램 운영 : 1,800회(75개관 × 24회)
  - 사서들이 선정한 우수 어린이책 지원 : 18,750책(75개관 × 250책)
  - 독서캠프 운영 : 참여 어린이 대상(1,500명) 권역별 독서캠프
  - 운영사례집 제작·배포 : 소외계층 어린이 프로그램 확산 및 보급
- 시도별 배분내역

(단위 : 개관)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75	6	7	5	5	3	2	2	9	5	7	12	9	3

### ○ 예산

- 사업기간 : '07년 ~
- 재원형태 : 국비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예시)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일반회계	기금등	소계			
2009	-		250	-	250		-	250
2010	-		500	-	500		-	500
(증△감)	-		100	-	100		-	100

## < 국립중앙박물관 >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국립중앙박물관
- 사업추진절차 : 신청·접수(연초) → 계획 수립 → 사업 운영

###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문화소외 지역민



- 사업 규모(사업량) : 연 69회 40,000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108,000천원(운영비)+시설비(미정)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전액국고
- 사업 주요내용(\*제도개선사항을 포함하되, 구체적으로 기재)
  - 주제 : 고구려 역사와 문화를 찾아서
  - 유물 전시·설명, 주제 연계 체험·참여 프로그램 운영
  - 목판인쇄, 탁본, 문양찍기, 활쏘기, 나무다리 걷기(투호놀이), 영상물 상영 등
- 시도별 배분내역

차	회	운영일	지역	참여기관(단체)
1	1	3.9(화)	증평군	보광초등학교
	2	3.11(목)		도안초등학교
2	3	3.16(화)	안양시	안양해솔학교
	4	3.18(목)	수원시	수원서광학교
2	5	3.23(화)	대전시	산서초등학교
	6	3.24(수)	영동군	한국군부대
4	7	3.30(화)	해남군	화원초등학교
	8	4.1(목)		산이초등학교
5	9	4.8(목)	동두천	미8군2사단
	10	4.10(토)	하동군	벚꽃축제
	11	4.11(일)	남해군	도서관
	12	4.12(월)	하동군	화개초등학교
6	13~14	4.17(토)~18(일)	과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7	15~16	4.21(수) ~22(목)	의령군	의병제전
8	17	4.27(화)	상주시	상주상회학교
	18	4.29(목)		함창초등학교
	19~21	5.1(토)~3(월)	문경시	문경전통차사발 축제
9	22~23	5.8(토)~9(일)	산청군	산청한방축제
10	24	5.18(화)	고양시	한국경진학교
	25	5.20(목)		고양명현학교
11	26	5.25(화)	철곡군	신동초등학교
	27	5.27(목)		동명초등학교
12	28	6.8(화)	속초시	속초청해학교
	29	6.10(목)		청호초등학교
13	30	6.14(월)	신안군	비금초등학교
	31	6.15(화)		도초초등학교
	32	6.17(목)		흑산초/중학교
14	33	6.29(화)	임실군	오수초등학교
	34	7.1(목)		관촌초등학교
15	35	7.6(화)	거창군	셋별초등학교
	36	7.8(목)		가조초등학교
16	37~38	7.21(수)~22(목)	충주시	충주시립도서관

차	회	운영일	지역	참여기관(단체)
17	39~40	7.28(수)~29(목)	성남시	분당구미도서관
18	41~44	8.5(목)~8(일)	무안군	연산업축제
19	45~46	8.14(토)~15(일)	강진군	강진청자문화제
20	47~48	8.25(수)~26(목)	영월군	영월도서관
21	49	9.7(화)	강릉시	강릉오성학교
	50	9.9(목)		주영초등학교
	51~53	9.10(금)~12(일)	원주시	원주한지문화제
22	54	9.28(화)	고창군	매산초등학교
	55	9.30(목)		홍덕초등학교
23	56	10.5(화)	천안시	천안인애학교
	57	10.7(목)		양대초등학교
24	58	10.12(화)	제천시	제천청암학교
	59	10.14(목)		봉양초등학교
	60~62	10.15(금)~17(일)	정선군	정선아리랑축제
25	63	10.26(화)	군산시	대야초등학교
	64	10.28(목)		월명초등학교
26	65	11.2(화)	경산시	임당초등학교
	66	11.4(목)		자인초등학교
27	67	11.16(화)	마산시	하북초등학교
	68	11.18(목)		진전초등학교
28	69	11월~12월중	주둔지	주한미군부대

○ 예산

- 사업기간 : '10년
- 재원형태 : 국비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192					192
2010			235					235
(증△감)			△43					43

\* '10년 예산은 잠정적으로 변동될 수 있음

< 국립민속박물관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국립민속박물관

- 사업추진절차
  - 1월~4월 :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버스 전시 개선
  - 4월 : 운영계획안 보고, 참여 학교 선정  
공고(홈페이지, 공문 등) → 참가학교 신청 → 선정통보
  - 5월~7월 : 상반기 교육 운영(약 13회 예정)
  - 9월~11월 : 하반기 교육 운영(약 12회 예정)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문화소외지역 초등학교
- 사업 규모(사업량) : 총 25회 2,000명 참가 예상
- 지원금액 및 형태 : 8,000천원(운영비 56,155천원, 버스 전시 개선비 11,840천원)/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전액국고
- 사업 주요내용 : 전시 관람, 전래놀이 장난감 만들기, 놀이 체험
- 시도별 배분내역 : 충청남도(80%), 기타지역(20%)
  - \* '2010 충남민속문화의 해'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 따라서 충청남도 내 학교 배정률이 높음

○ 예산

- 사업기간 : '10년
- 재원형태 : 국비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59					59
2010			68					68
(증△감)			△9					△9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

- 소외계층과 다문화가정 지원을 연계한 종합적 독서프로그램으로 육성
  - 정보 및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개발 및 보급 확대

- 지역문화중심 기관으로서의 도서관역할 제고
  - 소외계층어린이의 도서관 접근성 향상 및 독서습관형성
  -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문화적 소통 증대 도모
- 지역 문화 인력 활용 및 지역 실정에 맞는 독서문화 확산
- 지역실정에 맞는 자발적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지역 공공도서관 자체 독서 프로그램, 독서 캠프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유도
  - 지역 문화 인력의 적극적 참여유도 및 독서문화운동 활성화

	사업규모 (관, 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일반회계	기금등			
합계				31				31
'10	75, 1,500			5				5
'11	80, 1,600			5.3				5.3
'12	90, 1,800			6.2				6.2
'13	100, 2,000			7				7
'14	110, 2,200			7.5				7.5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은 추후 수립

< 5-2-1-3 :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운영(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지역문화과	담당자	김효진
전화번호	02-3704-9553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퇴직자, 노인 등 어르신의 여가 기회 확대를 위해 지방문화원 실버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문화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세대간 소통 강화

○ 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추진방향에 대한 개괄적 서술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사업참여 지방문화원 개수	사업실적 보고	개	150
프로그램 참여자수	사업실적 보고	명	4,500

○ 사업 추진근거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개괄적으로 서술)

- 사업추진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원연합회
- 사업추진절차 : 기본계획수립(문화부) → 교부 신청(한국문화원연합회) → 사업비 교부(문화부) → 사업시행/추진상황 모니터링(한국문화원연합회/문화부) → 사업성과 보고/정책반영 및 환류(한국문화원연합회/문화부)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지원대상 : 전국 지방문화원 227개소 중 공모를 통한 선정, 지원
- 지원금액/형태 : 23억원/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정액지원
- 사업내용 : 어르신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 시도별 배분내역 : 공모진행중

○ 예산

- 사업기간 : '09년 - 계속
- 재원형태 : 국비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19					19
2010			23					23
(증△감)			4					4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150			23				23
'11	155			24				24
'12	155			24				24
'13	160			25				25
'14	160			25				25

< 5-2-2-1 :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지역문화과	담당자	김효진
전화번호	02-3704-9553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지역을 기반으로 한 주민들의 자율적 문화활동의 형성 및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여 문화향유의 '객체'에서 '주체'로의 변화 기대
- 문화를 매개로 한 주민공동체의 구축과 발전을 위한 자생력 기반 마련 및 생활문화공동체의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확산

○ 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추진방향에 대한 개괄적 서술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문화예술단체 지원 개수	사업실적 보고	개	20

○ 사업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39조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사업추진절차 : 사업설명회(교육진흥원)→사업추진단체 공모(교육진흥원)→추진단체 심의·확정(문화체육관광부·교육진흥원)→사업계획 보완·협의(교육진흥원·선정단체)→보조금 교부신청(선정단체→교육진흥원)→사업비 교부(교육진흥원→선정단체)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지원대상 : 문화소외지역(임대아파트단지, 농산어촌지역)에서 사업 수행이 가능한 문화예술단체, 공모를 통한 선정, 지원
- 지원금액/형태 : 12억원/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정액지원
- 사업내용 : 지역특성에 연관된 예술활동을 매개로 주민동아리 형성 등
- 시도별 배분내역 : 공모진행중

○ 예산

- 사업기간 : '09년 - 계속
- 재원형태 : 국비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12				12
2010				12				12
(증△감)				-				-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0				60			60
'10	20				12			12
'11	20				12			12
'12	20				12			12
'13	20				12			12
'14	20				12			12



< 5-2-2-2 : 향토문화 관광축제 육성(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관광진흥과	담당자	박성필
전화번호	02-3704-9760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지역축제 중 관광상품성이 있는 축제를 국제적인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하여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친환경, 향토 특산물 등을 활용한 관광축제 활성화를 통해 농어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추진방향에 대한 개괄적 서술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문화관광축제 총 관광객수	지자체 보고	백만명	32
문화관광축제 총 경제파급효과	지자체 보고	억원	14,000

○ 사업 추진근거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 제71조제1항,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제3항
- '99년 관광진흥5개년계획 사업(특색있는 관광상품개발)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개괄적으로 서술)

- 사업추진주체 : 시·도지사, 시장, 군수
- 사업추진절차 : 문화관광축제 추진계획 수립 시달(문화부→시·도) →사업계획 수립(축제추진주체) → 사업신청(시·군·구) → 문화관광축제 추천(시·도→문화관광부) → 문화관광축제 선정 및 등급결정

(문화부) → 예산지원(문화부→시·도→시·군·구) → 사업  
 시행 및 문화관광축제 개최(시·군·구) → 사업평가(문화부 등)  
 → 평가결과 다음해 선정시 피드백

###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지역축제 중 관광상품성이 있는 관광축제
- 사업 규모(사업량) : 44개 문화관광축제
- 지원금액 및 형태 : 7,250백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원조건 : 문화관광축제 선정, 지방비 50% 확보
- 사업 주요내용
  - 문화관광축제 육성 지원(44개 축제)
    - ⇒ 대한민국 대표축제(2개) : 각 800백만원 지원
      - ▷보령머드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 ⇒ 최우수축제(10개) : 각 300백만원 지원
      - ▷화천산천어축제, 춘천국제마임축제, 금산인삼축제, 김제지평선축제, 강진청자문화제, 함평나비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 하동야생차문화축제
    - ⇒ 우수축제(10개) : 각 150백만원 지원
      - ▷이천쌀문화축제, 연천구석기축제, 양양송이축제, 영동난계국악축제, 강경젓갈축제, 천안홍타령축제, 무주반딧불축제, 남원춘향제,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문경찾사발축제
    - ⇒ 유망축제(24개) : 각 70백만원
      - ▷부산자갈치축제, 광안리어방축제, 대구약령시한방축제, 인천소래포구축제, 광주김치대축제, 7080충장축제,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수원화성문화제, 과천한마당축제, 인제빙어축제, 평창효석문화제, 태백산눈축제, 충주세계무술축제, 한산모시문화제, 순창장류축제, 담양대나무축제, 영암왕인문화제, 풍기인삼축제, 경주한국의술과떡축제, 고령대가야체험축제, 산청한방약초축제, 통영한산대첩축제, 김해분청도자기축제, 제주정월대보름축제
- 시도별 배분내역('10년 문화관광축제 선정 수)

(단위 : 개수)

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4	2	1	1	2	5	6	2	5	4	5	5	5	1

○ 예 산

- 사업기간 : '98년 - 계속
- 재원형태 : 관광진흥개발기금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	-	-	7,500	7,500	7,500	-	15,000
2010	-	-	-	7,250	7,250	7,250	-	14,500
(증△감)	-	-	-	△250	△250	△250	-	△500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지역고유의 지리적·문화적 특성을 주제로 한 축제를 대표축제로 집중 육성
- 세계적인 대표축제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컨설팅 추진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평균 44개 축제	-	-	-	34,606	34,606	-	69,212
'10	44개 축제	-	-	-	7,250	7,250	-	14,500
'11	44개 축제	-	-	-	6,839	6,839	-	13,678
'12	44개 축제	-	-	-	6,839	6,839	-	13,678
'13	44개 축제	-	-	-	6,839	6,839	-	13,678
'14	44개 축제	-	-	-	6,839	6,839	-	13,678

< 5-2-2-3 : 지역개발과 문화예술프로그램 연계(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농촌사회과	담당자	김춘기(사무관)
	문화여가정책과		이혜림(사무관)
전화번호	02-500-1822	이메일	
	20-3704-9465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문화부의 농어촌 문화향수 격차 해소 및 문화·관광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와 농식품부의 농어촌 삶의 질 제고 및 농어촌 지역 활성화
-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주민의 욕구에 대하여 문화로 접근, 지역 내 정서적 교류와 지역 정체감 형성을 통한 마을의 문화적 재생을 도모
- 주민들의 일상 범위에서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초 생활권에 기반한 문화향유 정책의 전국적 체계를 구축
- 양 부처간 공동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협약 체결 및 대외적 홍보 강화를 통하여 농촌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 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지속가능성) 재정 지원은 자생적 문화활동의 촉매 역할을 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 구조를 설계하는데 집중
- (문화의 확장) 예술의 개념을 생활문화로 확장하고, 특정 장소·전문 분야에 국한된 문화예술을 일상공간으로 확대하여 가장 먼 곳부터 전국에 촘촘히 문화가 스미도록 기획
- (주민의 행복) 정주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공간·인력·프로그램을 통합적 연계사업 지원으로 주민의 복합적 생활수요를 충족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 문화이모작사업(시범사업)	○ 공동협력사업지구수	지구수	100%
○ 농촌문화(마을-학생교류)	○ 마을수 및 학생수	마을수 및 학생수	100%

○ 사업 추진근거

- 농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 업무협약서(5.6 체결예정)

## □ '10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농림수산식품부 - 문화체육관광부 공동협력 추진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에 위탁시행
- 사업추진절차 : 농식품부 - 문화부 공동협력체결(예산지원, 사업시행체계, 정산 등) → 문화부에서 사업시행자 선정(문화이모작, 문활, 홍보 등) 및 협력(농식품부) → 농식품부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자금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자금을 지원토록 통보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자금지원 → 사업시행자 사업시행(경북 영덕군, 전남 강진군) → 집행 및 정산(관광연구원→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보조금 정산서 제출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식품부에 보조금 정산보고

### ○ 사업 내용

- 총사업비 : 1,400백만원
- 사업 지원대상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사업시행자
- 사업 규모(사업량) : 문화이모작 2개마을(경북 영덕, 전남 강진), 대학생문활(20개마을, 200명 대학생), 문화농부키움(매개인력 교육·연수, 공동워크숍, 매뉴얼 제작 등)
- 지원조건 : 보조금 100%
- 사업 주요내용 :

<문화이모작>

지역	사업명	PM	예산
경북 영덕군	'21C 농촌마을의 대안'	류재현(상상공장)	400백만원
	· 강점 : 주민이 자부담으로 폐교 구입하는 등 참여의지 높음, 고택 자원 · 약점 : 주민 노령화, 경제적 기반 취약 → 전략 :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문화행사 유일무이한 차별적인 사업아이템 개발	· 농촌문화체험축제 '농사'(농촌사랑) - 한 달에 한번 옛 삶의 모습을 재현 · 영덕 한옥의 날 - 인근 4개리 한옥 238호를 활용한 '한옥길' · 대학생 농촌'문활' : 문화기획활동	

지역	사업명	PM	예산
전남 강진군	「이야기가 자라는 마을」	김병수(사회적기업 이음)	400백만원
	· 강점 : 전통문화자원(돌담길, 하멜 역사, 와보랑개 박물관 등) · 약점 : 초고령화 사회, 방치된 빈집 → 전략 : 유희공간 문화공간 리모델링, 예술작가와 외국인 유학생 등 외부인의 문화적 유입 기획	· 발굴 : 마을이야기 지도, 마을자서전 · 만들기 : 돌담길 다시 잇기, 돌담 갤러리, 농가레스토랑, 빈집 작가 레지던시 · 잇기 : 하멜 네트워크 파티(외국인 유학생 초청 공정여행), 만물수리센터, 주민교육(요리, 특산품 포장 디자인 등)	

<대학생 농촌문화>

- 사업대상 : 전국 20개 농산어촌 마을 및 20개 대학생 팀
- 활동기간 : 5월~10월 (여름방학 집중 활동/매주 활동으로 이원화)
- 사업내용 : 대학생 봉사단 선발(농촌 지역 인접 대학생 팀 선발·매칭)
- 활동내용 예시(온라인 포털과 협업 추진)

아이템	내용	참여 대학생
140자 글쓰기 프로그램	기초교육에 소외되었던 노인층에게 '문해교육 + 시 창작', 트위터 등에 모아 연재하여 입소문	문학동아리, 국어교육 전공
한 마을 구술사 정리	중·장년, 노인층의 생생한 기억을 구술사로 기록, 자서전 제작, 동영상을 유튜브 등에 공개·공유	다큐멘터리 동아리, 인류학 전공
다문화 교류프로그램	대학생이 '다문화를 배운다' - '베트남 동화 구연 발표회' 등 문화적 활동	사회학, 교육학 전공 등
빅브라더 맺어주기	농촌의 아동 청소년에게 놀이 친구, 또는 삼촌 되어주기 (공동 다큐멘터리 작업 등)	영화동아리, 영상관련학 전공
마을이야기 축제 기획	마을 이야기를 담은 소규모 공연, 공작·공예품 창작으로 마을장터에 베품시장 행사 등 마을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적 퍼포먼스를 기획	공연기획 동아리, 연극학 전공

<문화농부키움>

- 농산어촌 공무원 문화역량 강화 교육(문화예술교육 아카데미 CETA) : 농산어촌 공무원 및 사무장 등 대상 문화역량 강화 및 문화감수성 함양 교육

- **농촌문화캠프** : 전국 지역 문화활동가의 합숙 캠프, 농촌 매개인력 합동 연수, 상호 교차 교육, 시범사업 참여관계자 공동워크숍 등
- **농어촌문화심기 매뉴얼북 제작·교육**
  - (제작) 주민참여형 공공미술·생활문화 사업과 농촌의 자생적 문화·관광 사업 등의 우수사례와 실행 매뉴얼, 관련 전문단체·전문가 인력풀 정리
  - (활용) 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농촌 지역 활동가, 체험마을 등 시설 관리자에게 배포·교육

○ 예 산

- 사업기간 : 2010. 1 - 12
- 재원형태 : 농식품부(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문화부(토토기금)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2010	700			700	1,400			1,400
(증△감)	700			700	1,400			1,400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농식품부와 문화부가 협력하여 추진방향 모색
  - '10년도 사업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미비점 보완
- 재정의 부담이 안되는 범위에서 지속적인 농어촌-문화사업 추진

	사업규모 (천 세대)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개마을	27			27			54
'10	2개마을	7			7			14
'11	2개마을	5			5			10
'12	2개마을	5			5			10
'13	2개마을	5			5			10
'14	2개마을	5			5			10

### 5-3. 문화예술 전문인력 지원 및 교육강화

#### (1) 개관

##### □ '10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국악, 연극, 영화 등 분야별 전문 예술강사를 전국 초.중.고교에 파견/지원 하여 학생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지원
  - '10년도 5,436개교 174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예술강사 4,136명 파견
- 지역거주 현장예술인을 예술강사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강사비(시간당 4만원 보조)로 총사업비 625억원 지원

##### □ 예산 내역

<2010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농산어촌 학교 문화예술교육 확대			323			59	243	625
합계			323			59	243	625

##### □ '11년도 추진 방향

-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현행 문화예술교육 체제를 공교육 내에서 체계적이고 질 높은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부-교과부-지자체 공동 협력 사업으로 추진
  - '11년도에도 '10도와 동일한 규모로 5,436개교에 625억원 지원



< 5-3-1-1 : 농산어촌 학교 문화예술교육 확대(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문화예술교육팀	담당자	박백우
전화번호	02-3704-9598	이메일	F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등 분야별 전문 예술강사를 전국 초.중.고교에 파견/지원으로 학생들의 문화적 소양과 사고력을 키우고 창의적인 인재양성에 기여함
- 지역거주 현장예술인을 예술강사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추진방향에 대한 개괄적 서술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참여자 수해만족도 조사	설문조사(5점 리커트 척도)	점수	82점

○ 사업 추진근거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32조(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 제1항 : 진흥원 및 지역센터,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등의 장은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으로 하여금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 제4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개괄적으로 서술)

- 사업추진주체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6개 시도
- 사업추진절차 : 문화예술교육 운영계획 확정 및 공고 → 대상학교 선정 → 강사 선발 → 강사 연수 → 국고보조금 교부 → 강사 하계연수 → 예술 강사 학교파견 교육 시행 → 평가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전국 초·중·고등학교(총 11,323개교)
- 사업 규모(사업량) : '10년도 5,436개교(수혜학생 174만명), 예술강사 4,136명 파견
- 지원금액 및 형태 : 총 사업비625억원(국고323억원, 지방비 59억원, 지방교육재정 243억원)
  - 지원대상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수업시간에 따른 강사비(시간당 4만원) 보조
- 지원조건 : 예술교육 신청학교 대상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학교로 선정된 학교
- 사업 주요내용
  - 국악, 연극, 영화 등 분야별 전문 예술강사를 전국 초.중.고교에 파견/지원하여 학생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함
- 시도별 배분내역
  - 예술교육 지원학교 및 강사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강원	제주	계
학교수	560	356	177	176	158	147	127	835	442	513	427	428	241	401	329	119	5,436
강사수	661	283	106	169	183	134	117	513	390	317	342	268	175	206	214	78	4,156

○ 예산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재원형태 : '10년 총 사업비 625억원(국비323억원, 지방비59억원, 지방교육재정243억원)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29,320		29,320	4,140	25,180	58,640
2010			32,323		32,323	5,893	24,357	62,573
(증△감)			3,003		3,003	1,753	△823	3,933

※ 기타 부분은 지방교육재정예산(16개 시도교육청 분담)임.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현행 문화예술교육 체제를 공교육 내에서 체계적이고 질 높은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부-교과부-지자체 공동협력 사업으로 추진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지방교육재정)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7,572개교/ 예술강사21,212			1,651		300	1,309	3,260
'10	5,436개교/ 예술강사4,156			323		59	243	625
'11	5,436개교/ 예술강사4,156			323		59	243	625
'12	5,500개교/ 예술강사4,200			328		59	269	656
'13	5,500개교/ 예술강사4,200			333		60	273	666
'14	5,700개교/ 예술강사4,500			344		63	281	688

## 6. 농어촌 환경·경관 개선

### 6-1.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활용

#### (1) 개관

##### □ '10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경관보전직불제를 개편하여 농어촌 경관형성·보전을 도모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하여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활성화 도모
  - 경관작물(소득손실 기준 170만원/ha), 준경관작물(생산비 기준 100만원/ha)
  - 경관보전직불제를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농어촌 경관보전에 실질적으로 효과 제고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약 국비 400억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활성화 도모
  - 조건불리지역의 인구감소와 교육, 문화, 의료 등 복지지원 부족으로 인한 지역 공동화 예방 및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
    - \* 조건불리지역 선정지표인 경지율(22%미만)과 경지경사도(14%이상 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 및 도서의 법정리는 경지율 및 경사도 관계없이 지원
- 지역생태숲(29개소), 자생식물원(4개소) 조성을 통해 향토·자생식물의 체계적 보전, 국민의 자연학습 및 환경교육의 장으로 제공
  - 전문전시원 및 산림생태관찰원, 탐방·체험시설, 편익시설 등 조성
- 농촌경관계획 및 경관맵 현장적용 연구, 농촌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정보 서비스 구축 연구를 통해 농촌경관조성 및 농촌어메니티자원관리기반 구축
  - 지역주민·지자체 및 지역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실천적 계획 수립 유도

□ 예산 내역

<2010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경관보전직불제	15,679				15,679	6,721		22,400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40,816				40,816	17,492		58,308
자생식물원 조성			1,000		1,000	1,000		2,000
지역 생태숲 조성		10,918			10,918	10,918		21,836
농촌경관조성 관리기반 기출 구축			700		700			700
합계	56,495	10,918	1,700		69,113	36,131		105,244

□ '11년도 추진 방향

-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한 지역활성화 도모
  - 경지경사도 14% → 7% 완화는 중장기적으로 검토
- 지역생태숲, 자생식물원 국비지원 규모 증가 : ('10) 11,918 → ('11) 15,000억원

< 6-1-1-1 : 경관보전직불제 개선 등 농어촌형 경관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농림수산식품부) > \* 6-1-3-1과제와 통합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유영수(사무관)
전화번호	500-1808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경관보전직불제를 개편하여 농어촌 경관형성·보전을 도모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 직불금의 지급기준을 경관작물과 준경관 작물로 구분하고, 정부가 대상작물을 지정,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
- 지원기준 및 단가 : 경관작물(소득손실 기준 170만원/ha), 준경관작물(생산비 기준 100만원/ha)
- 대상작물 지정방법 : 시장·군수 → 농식품부장관이 지정
- 마을경관보전활동비 지급기준을 현행 30만원/ha을 3ha~7ha까지 200만원, 7ha이상부터는 ha당 30만원을 지급하도록 개선

○ 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경관보전직불제를 개편하고,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농어촌 경관보전에 실질적으로 효과 제고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지역축제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율(%)	연계마을/시행마을 × 100	%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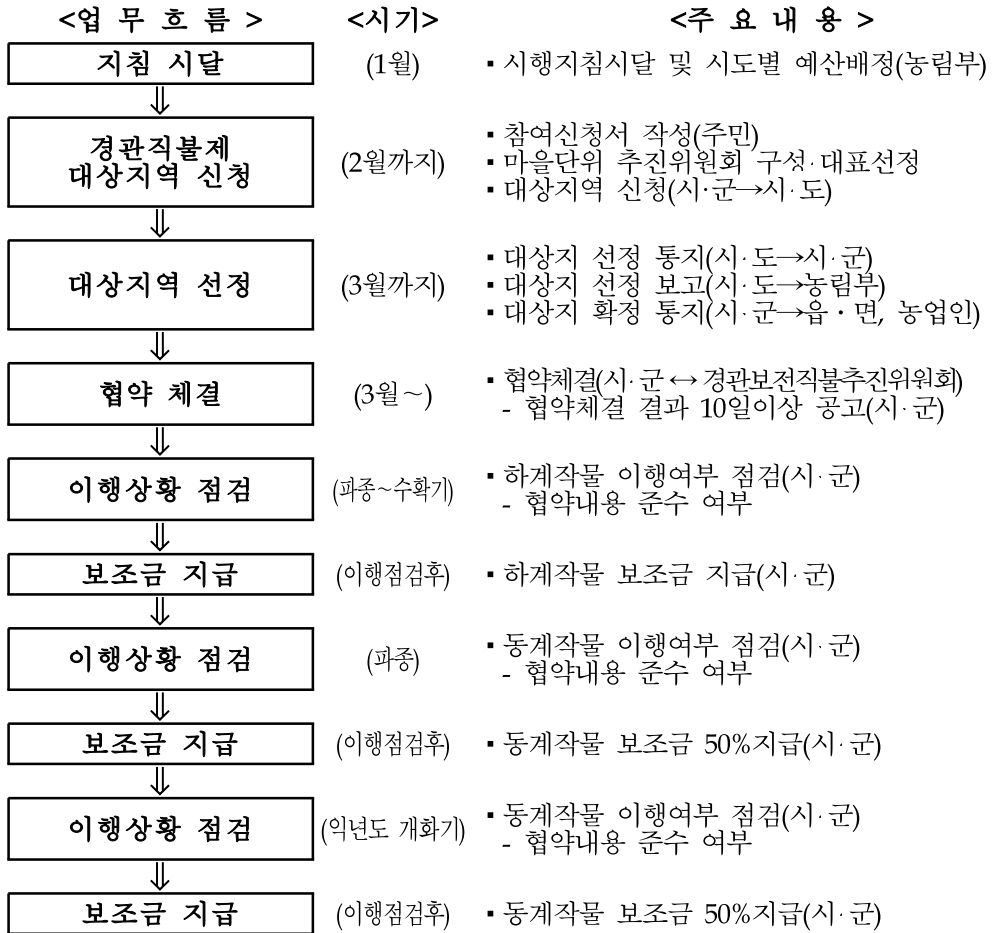
○ 사업 추진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0조(지역농어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농산어촌 경관의 보전)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5장(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농업인 및 농촌마을
- 사업 규모(사업량) : 매년 15천ha 내외
- 지원금액 및 형태 : 15,679백만원(국고보조)
- 지원조건 : 국고 70%, 지방비 30%

- 사업 주요내용 : 유휴농지를 활용 경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고, 경관보전활동을 통한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과 경관협약에 따른 경관보전활동 비용을 지원

- 시도별 배분내역

(면적 : m<sup>2</sup>, 예산 : 천원)

시도	합계		2009 동계완료(50%)			2010 하계작물(100%)			2010 동계착수(50%)		
	(2010) 면적	총예산	면적	직불금	마을 보전 활동비	면적	직불금	마을 보전 활동비	면적	직불금	마을 보전 활동비
합계	166,000,000	15,596,000	156,000,000	5,460,000	1,638,000	10,000,000	1,190,000	210,000	156,000,000	5,460,000	1,638,000
부산	23,016	1,048	-	-	-	-	-	-	23,016	806	242
인천	646,497	90,509	-	-	-	646,497	76,933	13,576	-	-	-
광주	3,227,000	146,828	-	-	-	-	-	-	3,227,000	112,945	33,883
대전	971,872	85,047	765,650	26,798	8,039	63,383	7,543	1,331	908,489	31,797	9,539
울산	452,000	41,041	450,000	15,750	4,725	-	-	-	452,000	15,820	4,746
경기	352,000	24,858	159,000	5,565	1,670	17,000	2,023	357	335,000	11,725	3,518
강원	2,269,829	259,966	891,504	31,203	9,361	1,228,829	146,231	25,805	1,041,000	36,435	10,931
충북	529,154	54,556	205,626	7,197	2,159	223,528	26,600	4,694	305,626	10,697	3,209
충남	6,347,894	596,481	5,791,897	202,716	60,815	466,894	55,560	9,805	5,881,000	205,835	61,750
전북	44,081,525	4,076,023	40,305,929	1,410,708	423,212	2,501,525	297,681	52,532	41,580,000	1,455,300	436,590
전남	82,010,437	7,250,600	75,302,681	2,635,594	790,678	982,568	116,926	20,634	81,027,869	2,835,975	850,793
경북	10,789,000	627,924	-	-	-	1,450,000	172,550	30,450	9,339,000	326,865	98,059
경남	12,826,117	1,089,334	6,940,430	242,915	72,875	2,010,117	239,204	42,212	10,816,000	378,560	113,568
제주	1,130,000	105,847	1,059,220	37,073	11,122	66,000	7,854	1,386	1,064,000	37,240	11,172
유보	343,659	1,145,938	24,128,063	844,481	253,344	343,659	40,895	7,218	-	-	-



○ 예산

- 사업기간 : '05년 - 계속
- 재원형태 : 국비 70%, 지방비 3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9,640					4,130		13,770
2010	15,679					6,721		22,400
(증△감)	6,039					2,591		8,630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ha)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12				347		1,159
'10	16,600	157				67		224
'11	16,600	159				68		227
'12	16,600	162				69		231
'13	16,600	165				71		236
'14	16,600	169				72		241

< 6-1-1-2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담당자	박종완(사무관)
전화번호	02-500-1765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조건불리지역의 인구감소와 교육, 문화, 의료 등 복지지원 부족으로 인한 지역 공동화 예방 및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

○ 사업추진방향

-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된 법정리 내의 밭, 과수원, 초지를 대상으로 지급(도서지역은 경지율과 경지경사도에 관계없이 지급)
- 지역주민 스스로 마을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농지관리 등 실천의무 부과

○ 사업추진근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제5호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시행규칙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0조제3항 제4호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 WTO 농업협정문 부속서 2의 13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 사업추진절차 : 조건불리지역 선정·통지(농식품부 → 시·군·구) → 운영위원회 구성(마을) → 사업신청(운영위원회 → 읍·면 → 시·군·구) → 보조금

지급대상마을 선정·통지(시·군 → 읍·면 → 운영위원회) → 보조금 지급 신청(농업인 → 읍·면 → 시·군) →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시·군 → 읍·면 → 운영위원회) → 지급요건 이행점검(읍·면, 시·군) → 보조금 지급(시·군 → 농업인, 마을)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조건불리지역 법정리 내의 농지 및 초지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서 해당 농지소재 읍·면에 거주하는 자
    - \* 조건불리지역 선정지표인 경지율(22%미만)과 경지경사도(14%이상 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 및 도서의 법정리는 경지율 및 경사도 관계없이 지원
- 지원 금액 및 형태,
  - 지원금액 : 밭·과수원 500천원/ha, 초지 250천원/ha
  -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국고 70%, 지방비 30%), 민간경상보조(국고 100%)
- 지원조건 : 농지관리 의무, 마을공동기금 조성, 마을활성화 실천등 지급요건 이행
- 사업 주요내용
  - '10년 총사업비 : 3,349억원('09년까지 기 투자액 : 1,505억원)
  - '10년 사업규모 : 118천ha(밭, 과수원, 초지)
- 시·도별 배분내역('10년 직불금 예산 가내시액)

(단위 : 백만원)

계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0,816	15	723	20	283	7,295	2,943	872	1,365	7,403	7,501	3,003	9,393

※ '10년 예산 41,745백만원 중 교육·홍보비, DB관리비, 시·군 행정비는 제외

○ 예산(예산사업)

- 사업기간 : '04년 ~ (계속사업)
- 재원형태 : 국비 70%, 지방비 3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직불금)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32,653				32,653	13,994		46,647
2010	40,816				40,816	17,492		58,308
(증△감)	8,163				8,163	3,498		11,661

□ '10년도 사업 기본방향

- 전국의 조건불리지역 3,137개 법정리 대상 소득직불금 지원
- 장기적으로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한 지역활성화 도모
  - 경지경사도 14% → 7% 완화는 중장기적으로 검토

	사업규모 (ha)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118	417				178		595
'11	121	431				184		615
'12	135	495				213		708
'13	142	504				217		721
'14	145	514				219		733

< 6-1-2-1 : 자생식물원 및 생태숲 조성(산림청) >

담당부서	산림환경보호과	담당자	김판중(주무관)
전화번호	042-481-4249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산림식물자원의 현지 내 보전과 산림생태계 연구를 강화하여 산림생물의 다양성을 유지·증진하고 지역적으로 특색있는 숲 조성
- 향토·자생식물의 체계적 보전 및 국민의 자연학습 및 환경교육의 장으로 제공

○ 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각종 인위적·자연적 위해로부터 생태계의 교란·피해 방지를 위한 숲 보존 및 지역특색숲 조성
- 산림환경의 연구 및 교육·탐방·체험 등을 위한 지역생태숲 조성, 자생식물 서식기반 확충
- 자생식물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이를 자원화·이용을 촉진하고 국민정서·휴양문화 증진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생태숲 누적 조성실적	생태숲 조성수 조사	개소	42

○ 사업 추진근거

- 「산림기본법」 제19조(수목원의 보호 및 육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산림생물 다양성의 보전)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사업비 등의 보조)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시·도→산림청) → 사전타당성 심사 및 결과 통보(산림청→시·도) → 광특회계 예산확정(국회) → 국고보조금 교부(산림청→시·도) → 사업실행(시·도, 시·군·구)

##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지역생태숲 : 산림생태계가 안정되고 산림생물의 다양성이 높아 특별히 현 지내 보존·관리가 필요한 산림면적 30ha(휴양림 등과 연결하여 교육·탐방·체험 등의 기능을 높이는 경우 20ha)이상의 부지와 지방비를 확보한 지자체
  - 자생식물원 : 3ha이상의 부지와 지방비를 확보한 지자체
- 사업규모
  - 지역생태숲 조성 : 29개소(신규설계 4, 조성 22, 보완 3)
  - 자생식물원 조성 : 4개소(연차별조성 4)
- 지원금액 및 형태
  - 지역생태숲 : 개소당 총사업비 50억원(국비 50%·지방비 50%)
  - 자생식물원 : 개소당 총사업비 15억원이내(국비 50%·지방비 50%)
- 지원조건
  - 타당성심사위원회에서 부지확보 및 입지여건 등을 종합심사하여 적합한 지자체에 한하여 사업 지원
  - 조성기간 : 지역생태숲(1년 설계, 5년 조성), 자생식물원(1년 설계, 2년 조성)
- 사업 주요내용
  - 지역생태숲 : 전문전시원 및 산림생태관찰원, 교육·탐방·체험시설, 연구 기반시설, 편익시설 등 조성
  - 자생식물원 : 자생식물 전시원, 생태관찰원·탐방로, 편익시설 등 조성

- 시도별 배분내역

· 지역생태숲

(단위 : 개소수)

계	부산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9	-	1	1	2	1	3	7	5	8	1

· 자생식물원

(단위 : 개소수)

계	부산	인천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	1	-	-	1	-	-	-	1	-	1	-

○ 예산

- 사업기간

· 지역생태숲 : '00년 ~ 계속

· 자생식물원 : '06년 ~ 계속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 지역생태숲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12,045			12,045	12,045		24,090
2010		10,918			10,918	10,918		21,836
(증△감)		△1,127			△1,127	△1,127		△2,254

· 자생식물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1,000		1,000	1,000		2,000
2010			1,000		1,000	1,000		2,000
(증△감)			-		-	-		-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71,918			71,918		143,836
'10	33		11,918			11,918		23,836
'11	35		15,000			15,000		30,000
'12	35		15,000			15,000		30,000
'13	35		15,000			15,000		30,000
'14	35		15,000			15,000		30,000



< 6-1-4-1 : 농촌경관조성 관리기반 기술 구축(농촌진흥청) >

담당부서	농촌환경자원과	담당자	김상범
전화번호	031-290-0265	이메일	l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산어촌 경관의 보전·형성·관리를 위한 농촌경관의 유형별 관련기술 및 체계, 프로그램 등에 관한 총체적 추진계획 수립
- 농촌다움의 유지·보전과 환경정비를 통한 쾌적한 농산어촌 공간조성 및 잠재자원의 특성화 등으로 농촌 자립기반 구축

○ 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지역의 잠재자원 개발, 소득화 사업, 경관 형성, 커뮤니티 형성 등으로 권역별 특성화를 유도 및 사업 추진의 시너지 효과 창출
  - 지역주민·지자체 및 지역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천적 계획수립 유도
  - 농촌경관의 보전·형성·관리를 통한 쾌적한 농촌환경정비 및 공간조성
  - 농촌경관의 자원화를 위한 경관계획 체계 구축
- 자연경관, 전통문화경관 등 잠재자원의 특성화를 통한 농촌관광, 도·농교류 연계 및 소득증대 창출
- 추진방향에 대한 개괄적 서술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농산어메니티자원 발굴조사 읍면지역 수	현지조사	읍면	140
농촌경관관리 및 조성 현장지원 수		개소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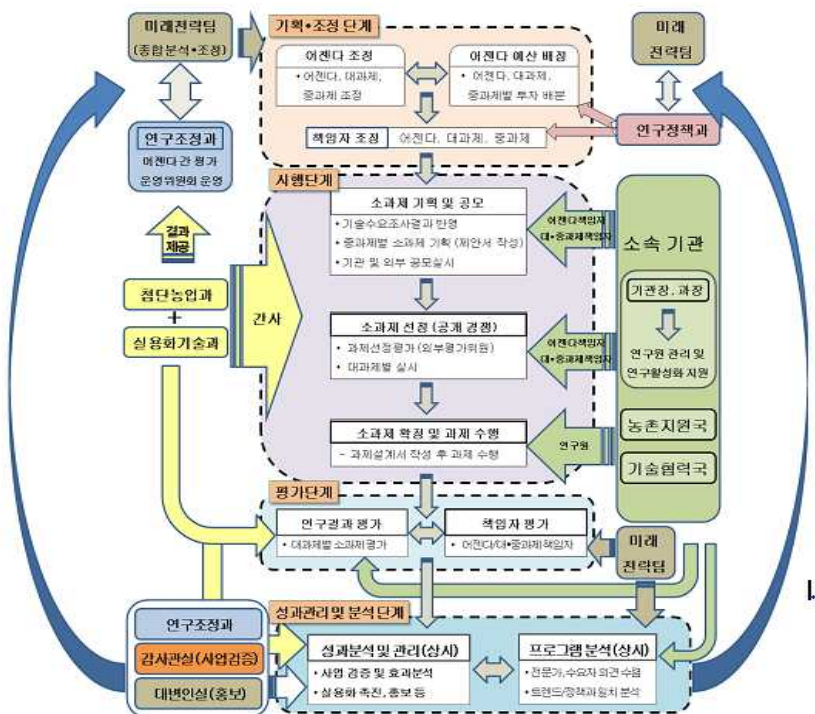
○ 사업 추진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4조 (농어촌의 자연환경·수산자원·어장 환경 및 경관 보전)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농산어촌 경관의 보전)
- 농어촌정비법 제3조(자원조사), 제5조(농어촌경관의 보전관리)
- 경관법 제9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개괄적으로 서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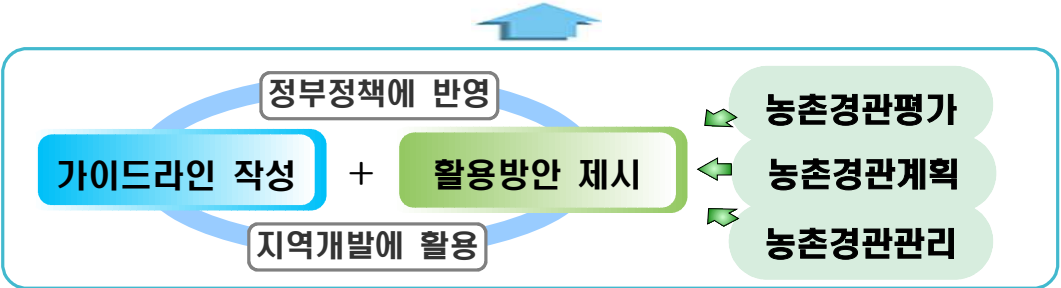
- 사업추진주체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농촌환경자원과
- 사업추진절차



○ 사업 내용(신규사업) \* 신규사업은 '10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을 말함

- 사업 지원대상 : 농촌경관조성 및 어메니티자원 관리기반 기술개발 연구 추진 부서
- 사업 규모 : 농촌경관조성 및 어메니티 자원 관리기반 기술 6과제
- 지원금액 및 형태 : 27억원, 국비 100%,
- 지원조건
  - 전문가 등의 심의와 사전 중복과제 여부 등의 검토를 통하여 농산어촌 경관의 보전·형성·관리를 위한 총체적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과제
  - 농촌경관어메니티 자원화를 위한 관리/계획 관련 연구
- 사업 주요내용(\*제도개선사항을 포함하되, 구체적으로 기재)
  - 농촌경관계획 및 경관맵 현장적용 연구
  - 농촌경관의 원형보전 및 복원연구
  - 농산어촌지역의 대표경관 선정 및 활용연구
  - 녹색경관 형성을 위한 체험공간 및 환경시설물 디자인 현장적용 연구
  - 농촌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정보서비스 구축 연구
  - 그린로드 발굴 및 조성기술 개발

**농촌경관조성 및 농촌어메니티자원관리기반 구축**



- 시도별 배분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예산

- 사업기간 : '10년 ~ '14년 (총 5년)
- 재원형태 : 국비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9	-	-	90	-	90	-	-	90
2010	-	-	700	-	700	-	-	700
(증△감)	-	-	610	-	610	-	-	610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7				27
'10	140			7				7
'11	140			7				7
'12	140			7				7
'13	50			3				3
'14	50			3				3

## 6-2. 농어촌 환경오염 방지

### (1) 개관

#### □ '10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기반 확보를 위해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13개소)하여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
  - 농어촌지역 하수도보급률을 '10년까지 53%로 달성, '15년까지 75% 수준 달성
  - 공공하수도시설 279개 설치('09년까지 895개 처리장 건설지원)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유기질비료를 구매할 때 구입비의 일부 지원하여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전
  - 유기질비료 250만톤에 대해 1,450억원 지원 예정('09년 210만톤, 1,218억원)
- 친환경농업을 위한 생물학적병해충방재를 위해 천적구입비, 미생물 농약 구입비 일부지원
- 친환경농업기반(지구조성) 구축을 위해서 마을단위퇴비장, 미생물배양기 등 생산시설과 선별장 등 유통시설 지원(전국 12개소, 24억 투자)
- 영농폐비닐 수거처리를 지원하여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지역 환경개선
  - 폐비닐을 직접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 지급을 통해 효율적인 폐비닐 수거 도모(톤당 1만원씩 1,950백만원 지원)
- 해양폐기물 정화·쓰레기 수거사업을 통해 수산자원회복 및 해상교통 개선
  - 해양폐기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3개 광역지자체 33개 항·포구에 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지원
-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치수·이수와 자연환경이 조화된 다목적 정비로 친수환경조성(2,072억원)

□ 예산 내역

<2010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농어촌지역 하수도 설치	104,967	2,348	98,349		205,664	88,142		293,805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10,317				10,317			10,317
유기질비료 공급			145,000		145,000			145,000
생물학적 병해충 방제	4,490	-	-	-	4,490	6,735	11,225	22,450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2,400			2,400			2,400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1,950		1,950			1,950
해양폐기물 정화				13,600	13,600	2,200		15,800
소하천 정비	207,169				207,169	207,169		414,338
합계	326,943	4,748	245,299	13,600	590,590	304,246	11,225	906,060

□ '11년도 추진 방향

- 하수도 설치에 있어 계속사업은 계획연도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지원, 신규사업은 농어촌지역 중 시급성을 요하는 지역을 우선순위로 선정
- 유기질비료 사용의 기준 강화 및 신설로 품질관리 강화
  - 현행의 그린퇴비와 퇴비를 가축분퇴비와 일반퇴비로 공정규격을 개정
  - 중금속 기준 강화, 부숙도 기준 및 유해병원성 미생물 기준 신설
- 화학비료·합성농약 40% 절감 달성을 위해 생물학적 병해충 방제 면적 확대
- 친환경농업 생산비중 확대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농업지구 확대 추진
- 연근해 해역에 대한 현장 표본조사 실시를 통해 폐기물 양 추정·개략적 분포도 작성 및 수거처리비 산출
- 피해발생 후 사후 복구에 치중하는 현 예산 운영 방식을 탈피하여, 재해 발생 전 예방사업에 지속 투자하도록 국비 증액 방안 강구

< 6-2-1-1 : 농어촌지역 하수도 설치(환경부) >

담당부서	생활하수과	담당자	이광수(주무관)
전화번호	02-2110-6894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어촌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생활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는 물론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농어촌지역 하수도보급률을 '12년까지 64%로 달성(국정과제), '15년까지 75% 수준 달성 목표(국가하수종합계획)
- 농어촌지역 하수도보급률은 '08년도 기준 49.2%로서 전국 하수도 보급률 88.6%에 비해 낮은 수준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농어촌지역 하수도보급률	농어촌지역 전체인구 중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	%	53

○ 사업 추진근거

- 하수도법 제11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제63조(국고보조)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시·군→시·도) → 대상사업 신청(시·도→환경부) → 대상사업 선정(환경부) → 예산지원(농림부→시·도→시·군) → 사업시행 → 사업완료 → 정산 → 시설운영(시·군)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시·군의 면지역 등 농어촌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 하수처리시설
- 사업 규모(사업량) : '09까지 895개 처리장 건설지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09년까지 국고 9,503억원(국비 70% · 지방비 30%)
- 지원조건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공공하수도시설
- 사업 주요내용 : 공공하수도 설치
- 시도별 배분내역

(단위 : 개소수, 백만원)

구분	계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수	279	1	5	1	1	1	19	11	15	49	37	62	35	38	4
사업비	205,664	3,998	1,515	1,719	289	793	37,653	3,682	17,686	37,305	15,769	29,214	23,456	30,237	2,348

○ 예산 (비예산사업은 비예산사업이라고 표시)

- 사업기간 : 1995년 ~ 계속
- 재원형태 : 국비 70%, 지방비 3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102,460	2,609	137,739		242,808	104,061	-	346,868
2010	104,967	2,348	98,349		205,664	88,142	-	293,805
(증△감)	2,507	△261	△39,390		△37,144	△15,919	-	△53,063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농어촌지역의 하수도보급률 제고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상수원 수질개선 및 생활환경개선 도모
-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공정을 감안하여 계획연도 내에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규 사업은 농어촌지역 중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지역 등 정부시책 상 시급성을 요하는 지역을 우선 순위로 선정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69,738	12,846	693,252		546,779		1,822,884
'10	279	104,967	2,348	98,349		88,142		294,095
'11	306	109,166	2,418	140,000		107,822		359,406
'12		113,553	2,491	144,562		111,680		372,266
'13		118,074	2,566	144,026		113,428		378,094
'14		123,978	3,023	166,315		125,707		419,023



< 6-2-1-2 :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환경부) >

담당부서	폐자원에너지팀	담당자	남궁선(주무관)
전화번호	02-2110-7722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어촌 지역에 매립, 재활용 등 폐기물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보호 및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기반 확보

○ 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농어촌 지역 생활폐기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 매립시설 및 재활용 시설 설치 사업 지속 추진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의 폐기물처리량 증가율	[(09년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에서의 폐기물처리량) - (08년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에서의 폐기물처리량)] / (08년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에서의 폐기물처리량) × 100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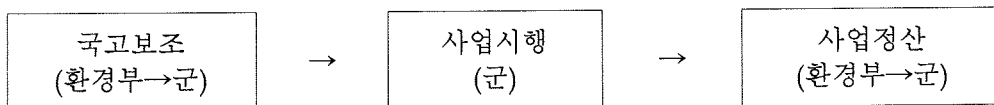
○ 사업 추진근거

-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제3조) 및 폐기물관리법(제56조)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
- 사업추진절차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군단위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 사업 규모(사업량) : 13개소(계속 8, 신규 5)
- 지원금액 및 형태 : 국고보조(15억원/개소)
- 지원조건 : 정액
- 사업 주요내용 : 매립시설 및 재활용시설 설치
- 시도별 배분내역 : 붙임참고

○ 예산 (비예산사업은 비예산사업이라고 표시)

- 사업기간 : '05년 - '14년(총 10년)
- 재원형태 : 국비 100%(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10,355							10,355
2010	10,317							10,317
(증△감)	△38							△38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9	539						539
'10	13개소	103						103
'11	14개소	109						109
'12	14개소	109						109
'13	14개소	109						109
'14	14개소	109						109

붙임 : '10년도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현황 1부.

<붙임>

## '10년도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현황

시도	시군	사업기간	총사업비	총국고	국고지원 실적 및 계획			사업추진현황
					'08까지	'09년	'10년	
합계 (13개)			41,333	21,000	470	4,305	10,137	
계속사업 (8개)			31,833	15,000	470	4,305	5,693	
경남	함양	08-11	10,000	1,500	470	500	260	'09.5월 기본및실시설계완료 '09.6월 공사착공
경북	의성	08-10	3,000	1,500		300	1,200	-1차공사 추진중
경북	영덕	08-10	3,100	1,500		750	600	-1차공사 추진중
경북	성주	08-10	2,690	1,500		750	600	-1차공사 추진중
전남	여수	08-10	2,500	1,500		750	600	-입지선정 및 기본, 실시설계 완료
전남	완도 (노화)	09-10	1,550	1,500		505	995	-실시설계 용역중
전남	신안 (지도)	09-11	5,272	1,500		450	838	'09. 6월 착공
전남	신안 (임자)	09-11	3,721	1,500		900	600	'09. 6월 착공
신규사업 (5개)			9,500	6,000			4,444	
강원	정선	10-11	3,000	1,500			600	'10.05월 : 기본 및 실시설계 '10.07월 공사착공 '11.12월 준공(예정)
전남	함평	10-10	1,500	1,500			1,154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전남	진도 (관매도)	10-10	1,500	750			750	-부지매입 완료
전남	진도 (서거차도)	10-10	1,500	750			750	-기본계획 완료
전남	신안 (가거도)	10-10	2,000	1,500			1,190	-타당성 조사중

< 6-2-2-1 : 유기질비료(친환경비료) 공급(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	담당자	조병임(사무관)
전화번호	02-500-2135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가에 유기질비료를 지원하여 가축분뇨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추진
- 유기질비료를 농경지에 공급함으로써 토양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업을 확산시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확대

○ 사업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농업인의 유기질비료 수요를 조사하고,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농업인이 비료를 구매할 때 구입비 일부 지원
- 친환경비료를 공급하여 친환경농업을 확대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안전한 농산물 공급 확대
  - 환경보전 및 안전한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비료를 공급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단위면적당 화학비료 사용량을 크게 감축토록 유도하여 흙과 물을 살림으로써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단위면적당 화학비료 사용량 감소율	전년대비 금년도 화학비료 판매량을 조사	%	5%

○ 사업추진근거

- “비료관리법” 제7조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시장 · 군수
- 사업추진절차 : 사업지침시행(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시·군, 읍·면·동) 및 농협(지역농협)) → 유기질비료 수요조사 및 신청(지역농협 → 농업인 → 지역농협) → 비료구매 사용(농업인 → 농협) → 사업비 집행 및 정산(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시·군) → 농업인)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농업인 ·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사업규모 : '10년 250만톤, 1,450억원(09년 210만톤, 1,218억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1,160원/20kg(정액지원)
- 지원조건
  - 농업인 ·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유기질비료(퇴비 포함)를 직접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가 비료를 구매할 때 20kg 포대당 1,160원을 지원
- 사업 주요내용
  - 농업등이 유기질비료를 구매할 때 구입비의 일부 지원
- 시·도별 배분내역 ('10년 사업계획)

(단위 : 억원)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2,314	6	17	13	26	15	12	17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45	174	136	238	276	495	390	217	37

○ 예산

- 사업기간 : '99년 ~ 계속(1년단위 사업)
- 재원형태 : 국고 정액지원(1,160원/20kg)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예시)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일반회계	기금등	소계			
2009	-	-	121,800	-	121,800	-	-	121,800
2010	-	-	145,000	-	145,000	-	-	145,000
(증△감)	-	-	23,200	-	23,200	-	-	23,200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유기질비료 지속 지원으로 농림축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품질이 우수한 비료가 농가에 공급되도록 비료 품질관리 강화
  - 현행의 그린퇴비와 퇴비를 가축분퇴비와 일반퇴비로 공정규격을 개정하여 품질관리 강화
  - 중금속 기준 강화, 부숙도 기준 및 유해병원성 미생물 기준 신설 등 퇴비 품질기준 강화
  - 퇴비 품질기준 및 시설관리 강화, 원료수불대장 의무 비치 등

	사업규모 (만톤)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일반회계	기금등			
합계	1,250			7,250				7,250
'10	250			1,450				1,450
'11	250			1,450				1,450
'12	250			1,450				1,450
'13	250			1,450				1,450
'14	250			1,450				1,450

< 6-2-2-2 : 생물학적 병해충 방제(천적 및 미생물) 지원(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	담당자	정 경 석(사무관)
전화번호	02-500-2129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합성농약에 의한 병해충방제를 생물학적 방제방법으로 전환하여 농약 사용량을 줄이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제 구축, 실천농가의 소득증대 및 노동력 절감, 농약 피해로부터 농업인의 건강보호

○ 사업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FTA체결 등 개방확대에 대비 농산물 안전성과 품질경쟁력으로 대응하고 농약 사용량의 조기감축을 위해 원예작물 농약방제 방식을 천적방제로 전환
- 친환경농업인이 천적을 활용하여 해충을 방제하고 있으나, 병방제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환경친화적인 생물농약 지원 필요성
- 환경보전 및 안전한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해 천적 및 미생물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를 통하여 친환경농업을 확대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10)
천적활용 농산물 생산비중	사업대상 면적 중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 면적 비율로 측정(사업관련자료 활용)	%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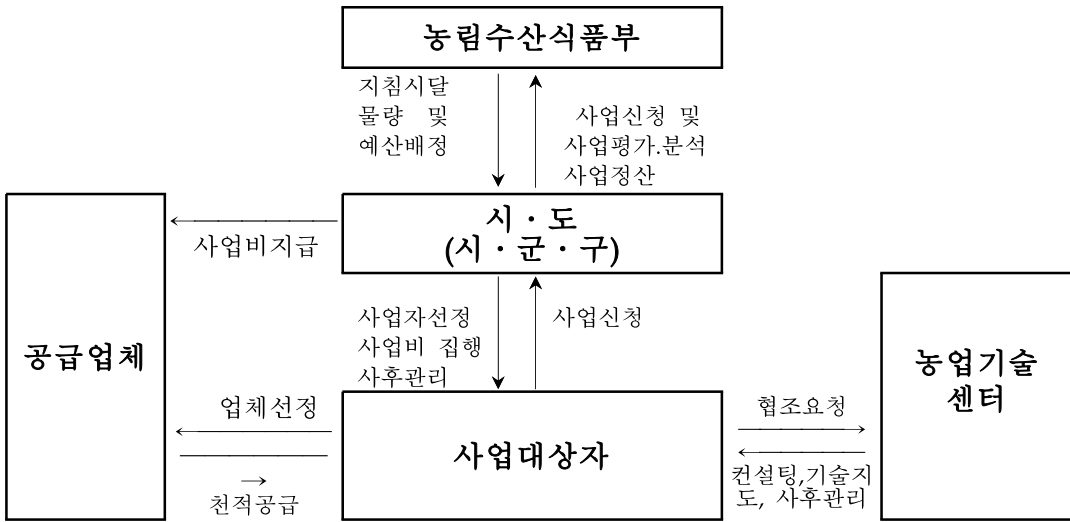
○ 사업추진근거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자에 대하여 시설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시장 · 군수
- 사업추진절차 : 예산배정(농식품부) → 농가선정, 구매 희망량 파악(시·도) → 제조회사와 구매가격 협의(농협중앙회) → 농가 물량 신청(자부담 입금) → 지역농협 통해 농가공급(제회사) → 지역농협에 대금지급(시·군) → 보조금 정산(시·도)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농업인 ·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사업규모 : 8,800ha('09년까지)
- 지원금액 및 형태 : 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 국고20%, 지방비 30%, 자부담 50%
- 사업 주요내용
  - 작물의 해충방제를 위하여 국내에서 생산·증식·보급되는 천적 구입비 일부지원,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미생물 농약 구입비 일부지원
- 시·도별 배분내역 ('10년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4,490	43	12	30	61	297	263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19	790	473	799	776	705	22



○ 예산

- 사업기간 : '05년 ~ 계속(1년단위 사업)
- 재원형태 : 지자체보조(국고 2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예시)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일반회계	기금등	소계			
2009	4,490	-	-	-	4,490	6,735	11,225	22,450
2010	4,490	-	-	-	4,490	6,735	11,225	22,450
(증△감)	-	-	-	-	-	-	-	-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11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 6.2%(저농약 제외) 목표달성과 화학비료 및 합성농약 40% 절감 달성을 위해 생물학적 병해충방제 면적 확대
  - 친적활용 : ('08) 2,000ha → ('09) 2,500 → ('10) 2,500 → ('11) 3,000 → ('12) 3,500
  - 미생물활용 : ('09) 1,000ha → ('10) 1,000 → ('11) 1,000 → ('12) 1,500
- '07년까지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비율을 높여 농가참여를 유도하였으나, '08년부터 국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국고보조 비율을 축소, '09년부터 20% 유지

	사업규모 (ha)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일반회계	기금등			
합계	22,500	279				418	697	1,394
'10	3,500	45				67	112	224
'11	4,000	54				81	135	270
'12	5,000	60				90	150	300
'13	5,000	60				90	150	300
'14	5,000	60				90	150	300

< 6-2-2-3 : 친환경농업기반(지구조성) 구축(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	담당자	임기창(사무관)
전화번호	02-500-2131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마을단위 친환경농업실천에 필요한 생산시설과 장비 등의 지원을 통해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있음

○ 사업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친환경농업 생산비중 확대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생산기반 확대
- '16년까지 1읍면 1지구 조성을 위해 친환경농업지구 1,500개소 조성
  - ('06) 820지구 → ('07) 879 → ('08) 948 → ('09) 983 → ('16) 1,500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친환경농산물 생산 면적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전체 경지면적× 100 *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에 저농약인증 제외 ('10년부터 신규인증 중단관련)	%	5.1%

○ 사업추진근거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친환경농산물생산·유통지원)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시장 · 군수
- 사업추진절차 : 사업지침시행(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시·군) →  
친환경농업지구 선정(시·군) → 사업비 집행(사업대상자)  
→ 정산(사업대상자 → 시·군(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10ha, 10농가 이상의 작목반 등
- 사업규모 : '10년 12개소, 24억원(국고)
- 지원금액 및 형태 : 개소당 2억원 내외
- 지원조건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사업 주요내용
  -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마을단위 퇴비장, 미생물배양기 등 생산시설과 저온 창고, 선별장 등 유통시설 등 지원
- 시·도별 배분내역 ('10년 사업계획)

(단위 : 억원)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4	2	2	2	3	3	5	3	2	2

○ 예산

- 사업기간 : '10(1년단위 사업)
- 재원형태 : 12개소 24억(개소당 2억원 내외 국고지원)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일반회계	기금등	소계			
2009	-	8,800		-	8,800	-	-	8,800
2010	-	2,400		-	2,400	-	-	2,400
(증△감)	-	△6,400		-	△6,400	-	-	△6,400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친환경농업 생산비중 확대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농업지구 확대 추진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일반회계	기금등			
합계	340		680			680	340	1,700
'10	12		24			24	12	60
'11	40		80			80	40	200
'12	40		80			80	40	200
'13	124		248			248	124	620
'14	124		248			248	124	620

< 6-2-2-4 :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지원 (환경부) >

담당부서	자원재활용과	담당자	문정호
전화번호	02-2110-6955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폐비닐 수거비 지원으로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수거활성화를 통한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지역 환경개선

○ 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적체된 폐비닐에 대해 시멘트킬른 연료화 및 폐비닐처리기술 공모사업을 통한 처리
- 폐비닐을 직접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 지급을 통해 효율적인 폐비닐 수거 도모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영농폐비닐 수거처리 지원	영농폐비닐 수거실적	톤	195,000

○ 사업 추진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3호 및 5호
- ※ 농식품부에서는 「농업·농촌기본법」에 의거 농업인에 대한 ‘토양 등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수행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환경부(한국환경공단)
- 사업추진절차

영농 후 발생한 폐비닐을 한국환경공단(사업소)에서 수거 한 후 수집전표를 발행하고 수집전표 및 계량증명서를 근거로 수거자(마을이장, 작목반장, 부녀회장 등 농민)에게 수거보상금 지급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마을이장, 작목반장, 부녀회장 등 농업인
- 사업 규모(사업량) : 195,000톤
- 지원금액 및 형태 : 1,950백만원, 정액지원(국고보조 100%)
- 지원조건 : 영농 후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하여 한국환경공단(사업소)에서 수집전표를 발행한 물량
- 사업 주요내용  
 영농폐비닐을 직접 수거한 농민에게 지급하는 수거보상금으로 경작 후 발생한 폐비닐의 수거활성화를 통하여 농경지 오염방지와 농촌환경개선을 기하고자 그간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던 것을 환경부로 일원화('10)하여 예산반영
- 시도별 배분내역 : 붙임 참조

○ 예산

- 사업기간 : '10년 ~ 계속
- 재원형태 : 국비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0	0	0			0
2010			1,950		1,950			1,950
(증△감)			1,950		1,950			1,950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97.5				97.5
'10				19.5				19.5
'11				19.5				19.5
'12				19.5				19.5
'13				19.5				19.5
'14				19.5				19.5

붙임 : 시·도별 배분내역 1부.

<붙임>

## '10년도 폐비닐수거비지원사업 시·도별 배분내역

(단위 : 톤)

구 분	'10년도 폐비닐 수거 목표량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197,000	195,000	1,950,000
수도권지역본부	24,500	24,260	242,600
영남지역본부	22,000	21,780	217,800
충청지역본부	20,500	20,300	203,000
호남지역본부	30,900	30,600	306,000
강원지사	18,200	18,000	180,000
경북지사	38,000	37,600	376,000
전북지사	19,000	18,800	188,000
충북출장소	19,700	19,500	195,000
제주출장소	4,200	4,160	41,600

< 6-2-3-1 : 해양폐기물 정화 및 쓰레기 수거사업(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해양보전과	담당자	기호영 사무관
전화번호	02)504-5436	이메일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국가가 관리하는 연근해 주요해역 등의 해양쓰레기 분포실태조사 및 수거·처리로 수산자원회복 및 해상교통 위해요소 제거
- 연근해 주요 해역의 침적쓰레기 수거를 통하여 어족자원보호 및 해양생물 서식지를 보존함으로써 가시적으로 자원증강 효과
-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바다속 폐어구 등 조업 중에 인양된 해양쓰레기를 어업인들로부터 수매함으로써 해양환경개선 및 해양정화 활동에 어업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어업인의 인식 제고
- 주요 항·포구에 평부선 형태의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을 설치하여 해양 유입오염원 사전예방 및 수거·처리 사업의 효율성 제고

○ 사업추진방향

- EEZ 및 대수심 해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침적된 쓰레기 수거 등 해양 환경개선 활동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여 어장의 확대 및 어촌정주여건 개선
- 해양유입 오염원을 사전 예방하고 저비용·고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할 수 있는 장비 등의 개선·보완
- 어업인의 자율적인 해양정화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활동 실시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추진율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설계량 대비 실제 수거물량	%	100
쓰레기수매사업 및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확대실적	전년도 실적 비교	개소	70

○ 사업추진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및 제119조(국고보조 등)



## □ '10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국토해양부, 시·도지사(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 민간대행사업 : 사업계획수립(국토해양부)→사무위탁계약체결(국토해양부 ↔해양환경관리공단)→사업집행지침시달 및 예산지원(국토해양부→해양환경관리공단)→재위탁계약 체결(해양환경관리공단↔한국어촌어항협회)→사업시행(폐기물해양수거업체)→사업결과보고 및 정산(해양환경관리공단 →국토해양부)
  - 지자체보조사업 : 수요조사(국토해양부→지자체)→사업비 및 지역선정(국토해양부)→국고보조금 교부신청(지자체→국토해양부)→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송부(국토해양부→지자체)→위탁계약 체결(지자체↔단위수협)→집하장 설치 및 홍보(시군구 지자체 및 단위수협)→ 분기별 사업추진결과 보고(지자체→국토해양부)→사업완료 보고 및 정산(지자체→국토해양부)

###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민간단체(해양환경관리공단) 및 사업신청한 지자체
- 사업 규모 : 해양폐기물 수거처리(민간대행) 및 조업중 인양된 쓰레기 수매(지자체 보조),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지원(지자체보조)
- 지원금액 및 형태 : 민간대행(106억원), 지자체보조(30억원, 국비 50%~60%)
- 지원조건 : 민간보조 사업은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제95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야 하며, 지자체 보조사업(수매사업)은 사업의사가 있는 모든 지자체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사업 주요내용
  - 해양폐기물 분포 및 실태조사, 연근해 주요 해역의 실태조사 결과, 정책적 고려 및 지자체 요청을 토대로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11개 광역지자체(38개 시군구)에서 조업중 인양된 쓰레기 수매, 3개 광역지자체 33개 항·포구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지원

- 시도별 배분내역('10년 지자체 보조사업 국비지원액 및 개소수)

(단위 : 백만원, 개소수)

구 분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3,000	99	291	51	27	300	379	264	843	150	416	180
개소수 (조업중인양 쓰레기)	50	2	2	2	1	8	7	2	7	6	7	6
개소수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23	-	-	-	-	-	5	-	10	-	8	-

### ○ 예산

- 사업기간 : '99년 - 계속 ('09년까지 기 투자액 : 1,198억원)
- 재원형태 : 민간보조(국비 100%), 지자체 보조(국비 50%~6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26,000		1,600		27,600
2010				13,600		2,200		15,800
(증△감)				△12,400		-		△11,800

###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 연근해 해역에 대한 현장 표본조사 실시를 통해 폐기물 양 추정·개략적 분포도 작성 및 수거처리비 산출
- 획득된 제반정보를 기반으로 수거처리 실적 D/B화 및 시스템 운영 관리, 수거·처리 사업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EEZ 및 대수심 해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침적된 쓰레기 수거 등 해양 환경개선 활동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여 어장 확대
- 해양유입 오염원 사전예방 및 수거·처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지원 확대

□ 중기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2,317	11,380		93,697
'10	11개 지자체				13,600	2,200		15,800
'11	"				14,935	2,295		17,230
'12	"				16,320	2,295		18,615
'13	"				17,867	2,295		20,162
'14	"				19,595	2,295		21,890

<6-2-3-2 : 소하천정비사업(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재해경감과	담당자	정희돈
전화번호	2100-5462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목적

- 수해위험 소하천의 지속적인 정비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소득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개선
- 치수·이수(治水·利水)와 자연환경이 조화된 다목적 소하천정비로 친수환경조성

- 기대효과

- 재해위험이 높은 미정비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로 농어촌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득기반 향상과 안전한 주민의 삶의 터전 마련

○ 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수해가 반복 또는 예상되는 소하천의 우선 정비로, 농어촌 지역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 안정에 기여
- 소하천정비법 제6조 내지 제8조 규정의 소하천정비계획에 의거, 체계적으로 치수·이수(治水·利水)와 자연환경이 조화된 다목적 소하천정비
-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지침 시달 및 소하천 담당공무원 직무 교육의 지속적인 실시
- 소하천 특성 및 지역 실정에 적합한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를 통한 자연형 소하천정비
- 국가정책을 사후복구 위주의 예산운영 방식을 탈피하여, 재해발생전 예방 사업에 지속 투자함으로써 피해저감 및 예산 절감 효과 거양
- 소하천정비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농특회계 국고보조금과 지방비의 연계 투자 지속 추진
- 국고보조금 배분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소하천정비사업계획 수립

- 추진방향에 대한 개괄적 서술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소하천정비	소하천정비실적	km	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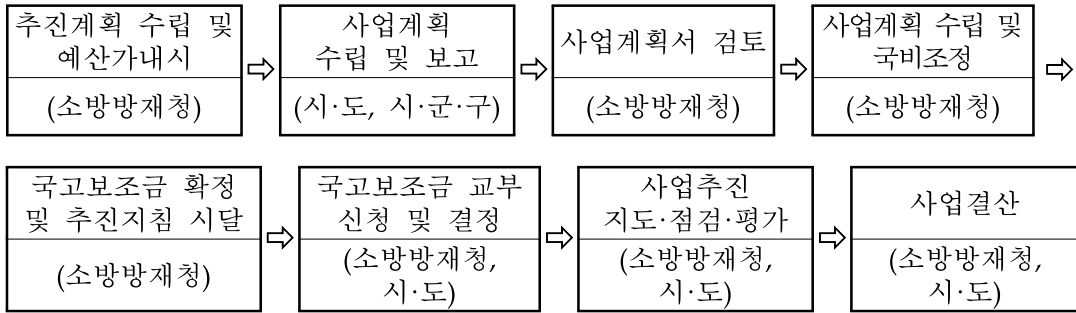
○ 사업 추진근거

- 소하천정비법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제8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 관리청(시장·군수·구청장)은 소하천에 대한 정비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소하천정비중기계획 수립
- 중기계획에 의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원 등을 포함하여 매년 다음 연도의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
- 소하천정비법 제13조(비용보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하천의 정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리청에 보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의 수립)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재정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재정지원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개괄적으로 서술)

- 사업추진주체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 사업추진절차 : 소하천정비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가내시(소방방재청) → 사업계획 수립 및 보고(시·도, 시·군·구) → 사업계획서 검토(소방방재청) → 사업계획 수립 및 국비조정(소방방재청) → 국고보조금 확정 및 추진지침 시달(소방방재청)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소방방재청, 시·도) → 사업추진 지도·점검·평가(소방방재청, 시·도) → 사업 결산(소방방재청, 시·도)



## ○ 사업 내용(기존사업)

### - 사업 지원대상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된 소하천을 대상으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경제성(B/C) 및 재해위험도 분석 등에 의한 투자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정비사업 추진
-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농특회계 국고보조금은, 동 재정제도 취지에 맞추어 군(郡)지역과 도농복합시(都農複合市) 관내 소하천정비사업에 지원
- 인명피해 우려 및 재해위험 발생 우려지구를 최우선으로 하여 과거 침수 및 수해가 발생한 지구, 통수단면 부족으로 수해발생 우려지구에 지원

- 사업 규모(사업량) : 140개 시·군·구 714개소 414km 소하천정비

- 지원금액 및 형태 : 2,072억원, 지방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정률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 사업 주요내용

- 호안의 비탈덧기를 계획홍수위까지 시공
- 호안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낮은 산과 접한 구간은 호안 미시공
- 소하천정비 구간내 수해원인이 되는 교량, 암거 등 시설물 정비
- 소하천 특성 및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연형 하천정비공법 도입
- 투자효과가 낮은 지역은 침수지역 토지매입 추진
- 원활한 사업추진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소하천 담당공무원 교육 실시

- 시·도별 배분내역

(단위 : 개소수, 백만원)

계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비고
714	1	9	6	1	37	65	68	76	67	126	166	88	4	
207,169	401	1,523	1,395	344	21,209	20,189	20,603	21,047	21,579	32,875	36,905	27,195	1,904	

○ 예산

- 사업기간 : '95년 ~ 계속
- 재원형태 : 국비50%, 지방비50%(Matching Fund)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190,171	727			190,898	190,898		381,796
2010	207,169				207,169	207,169		414,338
(증△감)	16,998	△727			16,271	16,271		32,542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한 수해가 반복 또는 예상되는 소하천을 정비하여, 재해사전예방 및 농어촌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 피해 발생후 사후 복구에 치중하는 현 예산 운영 방식을 탈피하여, 재해 발생전 예방사업에 지속 투자토록, 국비 증액 방안 강구
- 안정적인 치수와 하천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과 인간의 생활공간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소하천을 자율적으로 조성토록 유도

《향후 5개년 재정투자계획》

	사업규모 (km)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780	13,912				13,912		27,824
'11	455	2,279				2,279		4,558
'12	501	2,507				2,507		5,014
'13	551	2,757				2,757		5,514
'14	606	3,033				3,033		6,066
'15	667	3,336				3,336		6,672



## 6-3. 저탄소 녹색성장기반 구축

### (1) 개관

#### □ '10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농·산지역에 목재펠릿의 생산·보급을 위하여 펠릿보일러, 펠릿제조시설을 지원하고 산림탄소순환마을을 조성함으로써 고유가대처 및 온실가스 감축 등에 기여
- 유리온실 등에 지열난방을 지원하여 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설원에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
  - 지열난방 시스템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고온성 과채류, 화훼류, 기타 가온을 필요로 하는 작물 재배시설을 지원(10억원/1ha)
- 가축분뇨 처리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에너지화 추구
  - '12년부터 가축분뇨 전량을 육상에서 처리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34개소 설치·개선사업비 82,090백만원 지원
  - 음식물쓰레기 또는 음폐수와 가축분뇨 병합 바이오가스화 시설비 국고지원
- 농작물과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을 통해 친환경에너지 확보 및 저탄소 경제 실현
  - 농작물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 : 3,665백만원 지원
  - 해조류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 : 1,000백만원 지원
- 저탄소 녹색마을을 조성 농산어촌의 에너지자립도 제고와 녹색성장을 구현
  -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 실행계획에 따라 산림탄소순환마을, 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조성

□ 예산 내역

<2010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목재펠릿 사용 확대	11,780				11,780	9,655	8,010	29,445
유리온실 등에 지열냉난방 지원			120,000		120,000	40,000	40,000	200,000
축산분뇨 자원화· 에너지화(공공처리시설)			82,090		82,090	22,102		104,192
축산분뇨 자원화· 에너지화(에너지화시설)			1,200		1,200	514		1,714
가축분뇨처리 지원	77,321	1,771			79,092	42,812	8,505	130,409
농작물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	3,665				3,665		752	4,417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			1,000		1,000			1,000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농식품부)	608				608	486	122	1,216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산림청)			220		220	25		245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환경부)			164		164	164		328
합계	93,374	1,771	204,674		299,819	115,758	57,389	472,966

□ '11년도 추진 방향

- 산림내 방치된 산물을 최대한 수집·활용토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기반여건 마련
-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인 지열 보급으로 화석에너지 대체 유도 및 농가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
- '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금지 등 국내·외적인 정책 환경 변화를 감안한 공공처리시설 확충 및 시설개선 추진
- 자원화 처리 공공처리시설 확충으로 그간 정화처리 위주의 가축분뇨처리를 자원순환형으로 변경
- 농작물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의 '11이후 예산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에 따라 연 31%씩 확대, 자부담은 총 출연금(국비)의 25% 적용

< 6-3-1-1 : 목재펠릿 사용 확대(산림청) >

담당부서	목재생산과	담당자	윤찬균(주무관)
전화번호	042-481-8879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숲가꾸기 사업장이나 제재소 등에서 발생된 산물을 활용, 난방용 연료인 목재펠릿을 생산·보급하여 고유가 대처 및 온실가스 감축 등에 기여
- 산촌지역에서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와 목재이용을 확대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저감을 실현하는 산촌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 사업추진(지원)방향

- 펠릿보일러 : 농·산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지자체 또는 마을에서 운영하는 마을회관, 노인정 등 공익시설, 기 조성된 산촌생태마을 및 정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녹색마을, 농어촌 뉴타운, 전원마을 등에 거주하는 주민
- 펠릿제조시설 : 목재펠릿의 원료공급과 수요처 확보에 유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규모를 다양화(0.5톤, 1톤,2톤/시간당)하여 사업대상자 선정·지원
- 산림탄소순환마을 : 산촌진흥지역 지정 마을 중 사업 참여율 전체 가구의 70%이상, 참여가구 수가 50가구 이상인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에 적합한 마을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펠릿보일러 보급대수	사업완료 보고서	대	4,000
펠릿제조시설 조성개소	사업완료 보고서	개소	8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개수	사업완료 보고서	개소	1

○ 사업추진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23조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7조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추진절차 : 사업계획 작성 및 예산신청(시·군·구) → 사업 검토 및 예산 신청(시·도) → 예산확보 및 사업지시(산림청) → 지방비·자부담 확보 및 사업지시(시·도) → 사업실행(시·군·구)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규모 : 펠릿보일러 보급 4,000대, 펠릿제조시설 8개소,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설계 1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펠릿보일러 대당 380만원(국비 30%·지방비 40%), 펠릿제조시설 개소당 평균 175,0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 산림탄소순환마을 500,000만원(국비 50%, 지방비 20%)
- 시도별 배분내역 (펠릿보일러)

(단위 : 대)

계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000	280	280	260	900	420	350	873	367	237	33

- 시도별 배분내역 (펠릿제조시설)

(단위 : 개소)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8	1	1	1	1	1	1	2

- 시도별 배분내역 (산림탄소순환마을) : 경북 1개소

○ 예산

- 사업기간 : '08년 ~ 계속
- 재원형태 : 펠릿보일러(국비 30%, 지방비 40%), 펠릿제조시설(국비 50%, 지방비 50%), 산림탄소순환마을(국비 50%, 지방비 2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예시)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12,750					13,600	6,150	32,500
2010	11,780					9,655	8,010	29,445
(증△감)	△970					△3,945	1,860	△3,055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산림내 방치된 산물을 최대한 수집·활용토록 정책적 지원확대 및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연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기반여건 마련

	사업규모 (대,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544				1,627	536	3,707
'10	4,000, 9	118				97	80	295
'11	10,550, 17	251				287	114	652
'12	11,050, 28	302				325	114	741
'13	11,050, 38	398				420	114	932
'14	11,050, 38	475				498	114	1,087

< 6-3-1-2 : 유리온실 등에 지열냉난방 지원(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채소특작과	담당자	이 남 윤(주무관)
전화번호	02-500-2020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설원예(채소·화훼·과수)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이용 효율화 등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원인 지열 보급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시설농업 도입 및 확대보급 기반 구축으로 친환경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온실가스 감축

○ 사업추진방향

- 농가(법인체)당 온실면적 0.1ha(1,000m<sup>2</sup>)이상의 자동화 비닐하우스 또는 철골 온실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업 등의 신규 온실 설치 예정 농가도 포함
  - 설치 대상 온실은 자가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임대농의 경우 온실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
- 농업분야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인지열냉난방 설비 보급으로 화석에너지(석유류) 대체 유도 및 농가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지열난방 설치면적	사업추진실적	ha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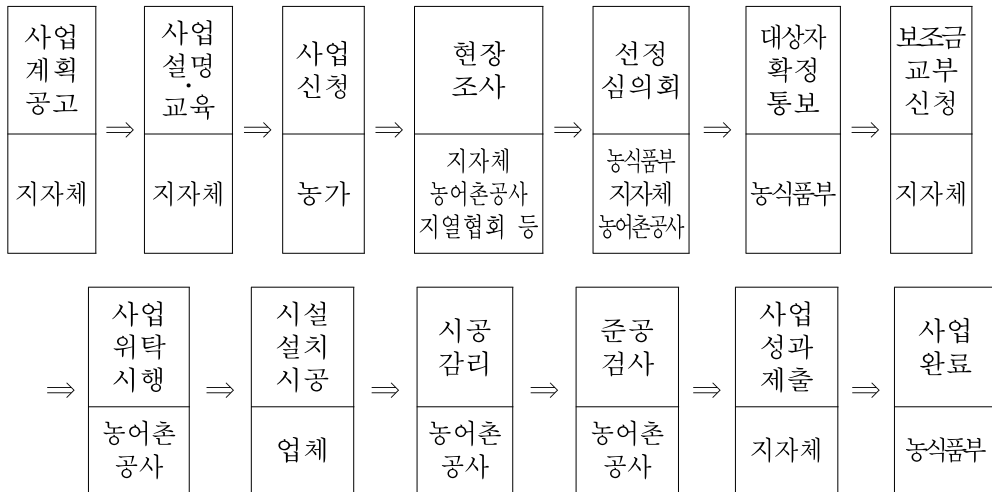
○ 사업추진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촉진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 사업 내용(10 신규)

- 사업지원대상 : 온실면적 0.1ha이상의 가온이 필요한 작물 재배 농업인
- 사업규모 : 250ha에 지열 냉난방 시설 설치
- 지원금액 및 형태 : 1ha당 10억원(국비 60%·지방비 20%·자부담 20%)
- 지원조건
  - 지열난방 시스템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고온성 과채류, 화훼류, 기타 가온을 필요로 하는 작물 재배시설
  - 사업 진행중 설계변경 사유로 인한 지열 형식변경 또는 사업 취소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검토 후 해당 시장·군수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또는 취소
  - 사업진행 중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사업비는 해당 투입 비율(국고보조 60%, 지방비 20%, 자부담 20%)

○ 예산

- 사업기간 : '10년 ~ '17년 (총 16년)
- 재원형태 : 국비 60%, 지방비 20%, 자부담 2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9	-	-	-	-	-	-	-	-
2010	-	-	120,000	-	120,000	40,000	40,000	200,000

\* 기타회계 : 에특회계(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농업분야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인 지열 보급으로 화석에너지(석유류) 대체 유도 및 농가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사업 추진 필요

	사업규모 (ha)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50			6,480		2,160	2,160	10,800
'10	250			1,200		400	400	2,000
'11	250			1,200		400	400	2,000
'12	250			1,200		400	400	2,000
'13	300			1,440		480	480	2,400
'14	300			1,440		480	480	2,400



< 6-3-1-3 : 가축분뇨 자원화 · 에너지화(환경부) >

\* “축산분뇨 자원화 · 에너지화”를 “가축분뇨 자원화 · 에너지화”로  
과제명 변경

담당부서	물환경정책과	담당자	김 현 주(주무관)
	폐자원에너지팀		이 재 덕(사무관)
전화번호	02-2110-6829	이메일	
	02-2110-7732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시설개선을 통해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하여 상수원 등 공공수역 수질 보전에 기여
- 음식물쓰레기, 음폐수, 축분 등 유기성폐자원 에너지(바이오가스) 활용시설 확충 지원
- 폐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 · 공급 · 이용을 확대함으로써 화석연료 대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방지와 녹색성장에 기여

○ 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 및 시설개선 추진
  -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전면금지, 한 · 미 FTA 등 개방화, 수질 오염총량제 실시 등 국내 · 외적인 정책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공공처리시설 확충 및 시설개선 지속 추진('09년말 현재 68개소 가동중, 26개소 설치중)
- 퇴 · 액비화 및 가스화 등 자원순환형 가축분뇨 관리 기반 조성
  - 가축분뇨를 이용한 퇴 · 액비의 생산 및 유통관리 체계를 구축한 통합관리센터 시범사업 추진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의 자원화 촉진 도모(당진, 창녕 등 2개소)
  - 가동중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중간처리수 액비화(상주 등 4개소) 및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시범사업(양산, 창녕 등 2개소) 추진
- 음식물쓰레기(음폐수), 가축분뇨 등을 병합(혼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 · 활용하는 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
  - 병합 바이오가스화를 추진하여 음식물쓰레기, 음폐수, 가축분뇨 등을 하나의 시설에서 처리토록 함으로써 비용절감,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의 시너지 효과 창출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가축분뇨 오염물질삭감량(BOD)	삭감부하량=유입부하량-배출부하량	톤/일	105.1
병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용량	지자체별 사업계획(실적)의 시설용량 합계	톤/일	4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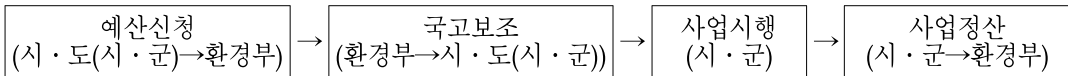
○ 사업 추진근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4조
-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6조
-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08.10) 및 동 실행계획('09.7)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가축분뇨자원화 :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
  - 가축분뇨에너지화 :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 사업추진절차
  - 자원화



- 에너지화

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지자체)→ 국고보조 신청(지자체)→ 사업계획 검토 및 예산 편성(환경부)→ 사업시행(지자체)→ 국고 정산(환경부)

○ 사업 내용(기존사업)

< 기존사업 : 가축분뇨자원화 >

- 사업 지원대상
  - 지자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신규설치 및 가동중인 공공처리시설 중 노후 시설 개선

- 사업 규모(사업량)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34개소 설치·개선사업비 82,090백만원 지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공공처리시설 설치·개선사업비 지자체 국고보조
- 지원조건
  - 시·군·구 80%, 광역시 60%(군지역은 80%)·단,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는 전지역 70%
- 사업 주요내용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34개소 설치(계속 29,신규2,개선3) 지원
    - 계속사업 : 충북 청원 등 29개소(80,390백만원)
    - '10년 신규·개선사업 : 경북 예천 등 5개소(1,700백만원)
- 시도별 배분내역

(단위 : 개소수)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4	3	1	2	5	4	4	7	7	1

### < 신규사업 : 가축분뇨에너지화 >

- 사업 지원대상
  - 음식물쓰레기(음폐수)와 가축분뇨를 병합(혼합)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연료, 전기 등의 에너지로 활용하는 지자체 시설사업
- 사업 규모(사업량) : '10년 신규 2개소(450톤/일)
- 지원금액 및 형태 : 총사업비의 70% 지원(지방비 30% 부담)
  - \* 부지매입비 등 일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조건
  - 음식물(또는 음폐수), 가축분뇨를 하나의 시설에 투입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성하는 공정으로 처리하고 발생한 바이오가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시설설치 사업으로서, 각 물질의 투입비율이 최소 30%(3:7) 이상인 경우 우선지원

- 사업 주요내용

- 음식물쓰레기 또는 음폐수와 가축분뇨 병합 바이오가스화 시설비 국고지원
- 병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추진

- 시도별 배분내역 : 해당없음

\* 지역배분 방침은 없으며, 지자체 신청 및 예산반영 결과에 따라 '10년에는 울산 및 경북지역 각 1개소에 신규사업 지원

○ 예 산

- 사업기간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 '91년 ~ 계속
-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 : '10년 ~ 계속

- 재원형태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 지자체 국고보조
-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 : 국고 지원 70%, 지방비 부담 3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74,904			19,261		94,165
2010			82,090			22,102		104,192
(증△감)			7,186			2,841		10,027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환특	기금등	소계			
2009	-	-	-	-	-	-	-	-
2010	-	-	1,200	-	1,200	514	-	1,714
(증△감)	-	-	1,200	-	1,200	514	-	1,714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2012년 해양배출 전면금지 등 국내·외적인 정책환경 변화를 감안한 공공처리시설 확충 및 시설개선 추진
- 자원화 처리 공공처리시설 확충으로 그간 정화처리 위주의 가축분뇨처리를 자원순환형으로 변경
  - 가축분뇨통합관리센터 설치(당진, 창녕), 중간처리수 액비화시설(상주 등 4개소) 설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양산, 창녕) 설치 추진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52			4,168		1,121		5,289
'10	34			821		221		1,042
'11	31			800		215		1,015
'12	29			824		222		1,046
'13	29			849		228		1,077
'14	29			874		235		1,109

- 음식물쓰레기(음폐수), 가축분뇨 병합처리를 통한 시설비 및 운영비 절감과 바이오가스 생산·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병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지원확대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환특	기금등			
합계	10			563		240		803
'10	2(2)			12		5		17
'11	3(1)			52		22		74
'12	4(1)			73		31		104
'13	6(2)			138		59		197
'14	10(4)			288		123		411

※ 사업규모 합계는 총 시설수, ( )는 신규사업 개소수

< 6-3-1-4 : 가축분뇨처리 지원(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축산정책과	담당자	이덕진
전화번호	500-2056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가축분뇨 처리 시설·장비 등의 지원으로 친환경축산 기반을 조성하고 자연 환경 보전
- 가축분뇨를 퇴비·액비·에너지로 자원화 및 이용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및 온실가스 저감

○ 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및 '12년부터 가축분뇨 전량을 육상에서 처리
-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유통비용 지원으로 가축분뇨 자원화율을 '07년 83%에서 '12년 90%까지 확대
- 가축분뇨 해양투기량을 연차적 감축하여 '12년부터 "0"화 달성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가축분뇨 자원화율	원화 물량/전체 가축분뇨 발생량*100	%	86
가축분뇨 해양배출량	가축분뇨 해양 배출 물량	천톤	700

○ 사업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3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내지 제29조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도(시·군)

-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사업희망자 → 시·군)→사업내용검토 및 심의(시·군, 시·도 농정심의회)  
→ 대상자 선정(시·군, 시·도) → 시·도에 예산배정(농식품부) → 시·군에  
예산배정(시·도) → 대상자 확정 및 통보(시·군, 시·도) →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대상자 → 시·군 → 시·도) → 보조금 교부결정(시·도 → 시·군 → 사업  
대상자) → 가축분뇨시설 허가·신고(시·군) → 시공업체 선정·착공(사업자)  
→ 준공검사(시·군) → 사업완료 신고·사업비 신청 → 사업비 검정·정산  
→ 보조금 집행·용자금대출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축산농가, 농·축협,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지원금액 : 79,092백만원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및 용자
- 지원조건
  - 개별시설 :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축산농가,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돼지·닭), 농업법인, 농·축협
  - 공동자원화시설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군 중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퇴·액비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업대상자 등
  - 정착촌구조개선 : 전국 한센병 정착촌내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법인체 등
  - 액비저장조시설 :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시비 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 등
  - 액비유통센터 : 액비 살포농경지 등을 200ha이상 확보하고 경종·축산농가와와의 액비살포 계약체결 등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
  - 액비살포비 :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는 전문유통주체
  - 액비성분분석기 : 액비성분분석 및 시비처방서를 직접 발급하는 시·군 농업 기술센터,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조직체

- 사업 주요내용

- 가축분뇨를 퇴·액비 및 에너지 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기계장비 지원
- 생산된 퇴·액비를 유통 및 자원화 할수 있도록 액비저장조, 액비유통센터, 액비살포비 등을 지원

- 시도별 배분내역

(단위 : 백만원)

	총계	개별시설	공 동 자원화	정착촌	액 비 저장조	액 비 유통센터	액 비 살포비	분석기
대구	23	23	0	0	0	0	0	0
인천	68	68	0	0	0	0	0	0
울산	133	68	0	0	15	0	49	0
경기	5,106	2,069	2,100	0	454	80	403	0
강원	2,320	1,279	0	0	250	200	531	60
충북	6,444	1,336	4,200	204	255	120	269	60
충남	8,009	2,327	4,200	0	525	160	796	0
전북	13,656	1,671	9,800	406	490	360	857	72
전남	8,517	1,999	4,200	308	520	320	1,110	60
경북	8,159	2,559	4,200	284	485	240	344	48
경남	7,299	3,546	2,100	209	576	280	540	48
제주	4,606	735	2,100	0	907	240	600	24
계	64,340	17,680	32,900	1,411	4,477	2,000	5,500	372
예산액	79,092	18,480	46,200	1,411	4,477	2,640	5,500	384
유보액	14,752	800	13,300	0	0	640	0	12

\* 유보액은 사업대상자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배정

○ 예산

- 사업기간 : '91년 - (계속)

- 재원형태 : 지자체 보조 및 용자

내역사업명	국비 보조	지방비	국비 용자	자부담	용자조건
개별시설	30	20	50		10년(3년거치 7년균분상환), 연 3%(민간기업 등 4%)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50	30	20		
- 에너지화	30	30	20	20	
정착촌구조개선	70	30			
액비저장조시설	30	50		20	
액비유통센터	40	40		20	
액비살포비	50	50			
액비성분분석기	50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73,441	1,968			75,409	38,630	4,202	118,241
2010	77,321	1,771			79,092	42,812	8,505	130,409
(증△감)	3,880	△197			3,683	4,182	4,303	12,168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가축분뇨 해양투기의 연차적 감축 및 금지('12)에 대비하여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경종과 축산이 함께하는 자연순환농업 실현

- 가축분뇨 자체처리가 곤란한 중규모 양돈농가 밀집지역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지원 확대
- 신규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처리 시설·장비 지원 및 기존 처리시설 설치 농가에 대해 개보수 자금 지원
- 퇴·액비로 자원화된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액비유통센터, 액비저장조 등을 확대 추진

○ 저탄소 녹색성장, 대체 에너지 개발 등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촉진을 위해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사업 신규 추진

- '10년에 시범사업 실시(3개소)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994	58			2,125	479	6,656
'10	퇴·액비 17 에너지 3 등	773	18			428	85	1,304
'11	퇴·액비 15 에너지 3 등	746	10			389	74	1,219
'12	퇴·액비 15 에너지 4 등	780	10			409	88	1,287
'13	퇴·액비 15 에너지 5 등	815	10			430	102	1,357
'14	퇴·액비 15 에너지 7 등	880	10			469	130	1,489

< 6-3-1-5-① : 농산바이오매스 에너지생산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과학기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서정아
전화번호	02-500-2453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목적 : 농촌 바이오매스 타운 건설을 위한 요소기술 및 기반 확보
- 기대효과 : 산업폐기물, 비사료용 작물 등의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미래 친환경 에너지 확보 및 저탄소 사회 구축

○ 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1단계('07~'13) : 바이오매스 개량 및 증산 기술개발 등
- 2단계('14~'16) : 부존자원 바이오에너지화 시범사업 등
- 3단계('17~'18) : 바이오에너지 생산, 기술이전, 농가보급 등

○ 사업 추진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농어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사업추진절차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산·학·연 연구팀
- 사업 규모(사업량) : 11과제(기획과제 5, 일반과제 6)
- 지원금액 및 형태 : 3,665백만원(기획과제 2,800, 일반과제 865)
- 지원조건 : 대기업 50%, 중소기업 25% Matching fund
- 사업 주요내용 : 바이오매스에너지작물 개발 및 활용 기술 개발 지원

○ 예산

- 사업기간 : '07년 - '18년(총 11년)
- 재원형태 : 국비 100%(출연)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2,765				2,765		544	3,309
2010	3,665				3,665		752	4,417
(증△감)	900				900		208	1,108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과제)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1	338					8.3	346.3
'10	11	37					0.7	37.7
'11	16	48					1.2	49.2
'12	21	63					1.6	64.6
'13	27	82					2.1	84.1
'14	36	108					2.7	110.7

\* '11년 이후 예산(국비)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에 따라 연 31%씩 확대, 자부담은 총 출연금(국비)의 25% 적용

< 6-3-1-5-② :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자원환경과	담당자	차태황
전화번호	02-500- 2381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해조류 대량생산 및 자동화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바이오매스 공급원을 확보하고 국내 양식어업인 소득 증대 및 그린에너지 원천기술 및 핵심요소기술 확보·표준화

○ 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20년까지 해조양식장 50만ha 조성, 에탄올 22.7억리터 생산

○ 사업 추진근거

- 「수산자원관리법」 제62조(준용규정) 및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개괄적으로 서술)

- 사업추진주체 : 국가
- 사업추진절차 : 사업입찰공고 → 연구기관 선정 → 계약 → 용역비(선금금) 지급  
→ 연구 및 결과보고(중간보고, 최종보고) → 사업비 정산

○ 사업 내용(신규사업)

- 사업 규모(사업량) : 해조류바이오매스 통합활용 기반구축 1식
- 지원금액 및 형태 : 1,000백만원, 직접집행
- 지원조건 : 직접집행
- 사업 주요내용 : 해조류 통합활용 및 그린에너지화 기반구축

○ 예산

- 사업기간 : '10년 - '16년(총 7년)
- 재원형태 : 국비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0			0
2010			1,000		1,000			1,000
(증△감)			1,000		1,000			1,000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	1식			10				10
'11	1식			10				10
'12	1식			30				30
'13	1식			50				50
'14	1식			100				100

< 6-3-2-1 :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환경부, 행안부, 농식품부) >

담당부서	환경부 폐자원에너지팀	담당자	윤은정(사무관)
전화번호	02-2110-7724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어촌 지역에 버려지는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 자립형 마을 조성
- 지역내 가용 자원 활용 및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 실행계획('09.7, VIP 보고)에 따라 농림식품수산부, 행안부, 환경부, 산림청 4개 부처가 '10년부터 시범사업 추진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부처별 시범마을 선정 개소수	'10년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해 부처별로 선정한 마을의 개소수의 합	개수	4

○ 사업 추진근거

-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 실행계획('09.7, VIP 보고)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농림식품수산부, 행안부, 환경부, 산림청 등 4개 부처 및 선정된 각각의 지자체
- 사업추진절차
  - 지자체 공모(중앙부처→지자체) → 지자체 접수 및 심사(중앙부처) → 시범 지역 선정 → 국비 지원 및 사업 관리(중앙부처)

○ 사업 내용(신규사업)

- 사업 지원대상 :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을 희망하는 지자체
- 사업 규모(사업량) : '10년 신규 4개소(부처별 각각 1개)
- 지원금액 및 형태 : 총 사업비의 50% 보조(지원금액은 부처마다 상이), 자치단체보조
  - \* 환경부는 총사업기간 2년으로 기간 내 약 30억원 지원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50% 지원
- 사업 주요내용
  - 마을 내에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사업으로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 실행계획('09.7, VIP 보고)에 따라 부처별로 유형에 따라 시범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 '10년부터 2~3년간 부처별로 시범 사업 추진 후 시범 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국 확산·보급하는 본 사업 추진
- 시도별 배분내역
  - 산림청(경북 봉화), 행안부(충남 공주)는 각각 시범 지역을 선정 완료하였으나, 환경부와 농림부는 아직 시범지역 선정 평가 중에 있음

○ 예산 (비예산사업은 비예산사업이라고 표시)

- 사업기간 : '10년 - '20년(총 11년)
- 재원형태 : 국비 50~60%로서 부처별로 국고, 지방비, 자부담 비율이 상이
  - 환경부·행정안전부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2010			164		164	164	-	328
(증△감)			164		164	164		328

\* 환경부의 투자계획만 기재하였음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8			18,164		18,164		36,328
'10	1			164		164		328
'11	2			3,000		3,000		6,000
'12	5			3,600		3,600		7,200
'13	4			11,200		11,200		22,400
'14	6			1,200		1,200		2,400

\* 환경부의 투자계획만 기재하였음



< 6-3-2-1 :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산림청) >

담당부서	산림휴양등산과	담당자	송영림
전화번호	042-481-4122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청정에너지원인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통해 화석연료 대체 및 에너지 자립 제고
-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목재이용 확대 등 녹색인프라 구축을 통해 산촌의 활성화에 기여

○ 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목표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과 탄소저감을 실현하는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 - 2014년까지 10개 시범마을 조성 후 확대
추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난방연료(펠릿) 등 에너지 공급</li> <li>▪ 목재를 활용한 주택·공공시설 건축 확대</li> <li>▪ 탄소중립 교육과 산촌 관광의 명소로 개발</li> <li>▪ 지자체·마을주민·지역단체 등의 지역협력체 구축 및 탄소저감 활동을 지역주민 실천운동으로 확산</li> </ul>

- 성과목표 : '10년도에는 기본·실시설계만 추진하는 관계로 미설정하였으며, '10년도에 시작하는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12년도 이후에 적용할 성과지표는 사전에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임.

○ 사업 추진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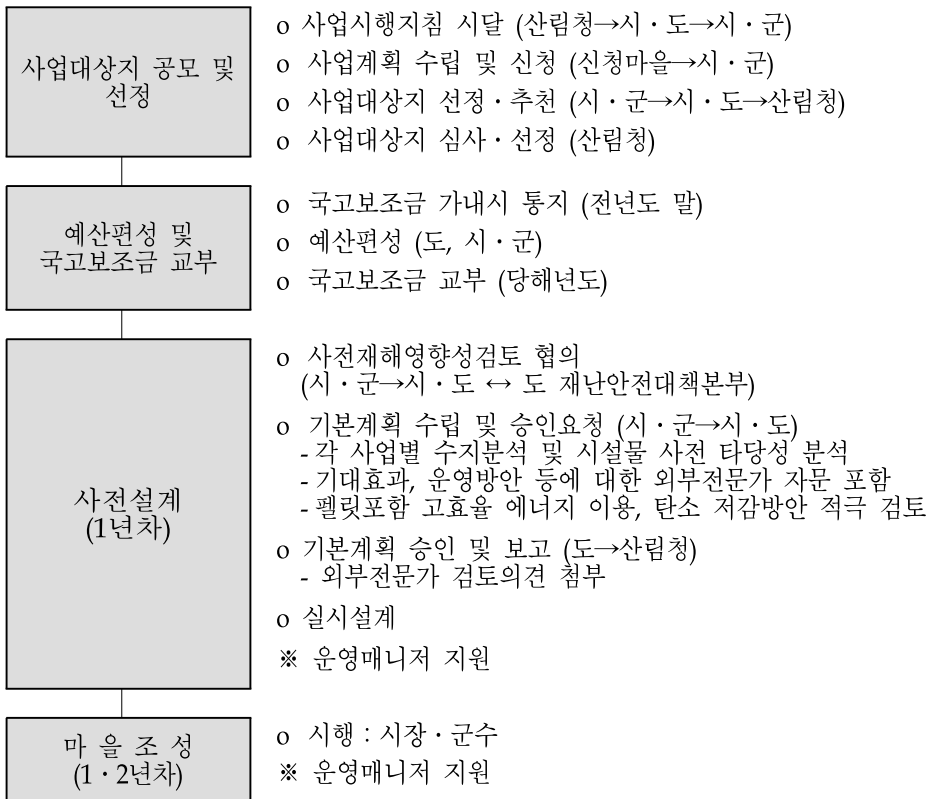
- 지원근거
  - 산림기본법 제5조(산림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 산림기본법 제8조(산촌의 진흥)
- 추진경위
  - '08. 8.15 : 대통령께서 제63회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 60년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비전과 정책방향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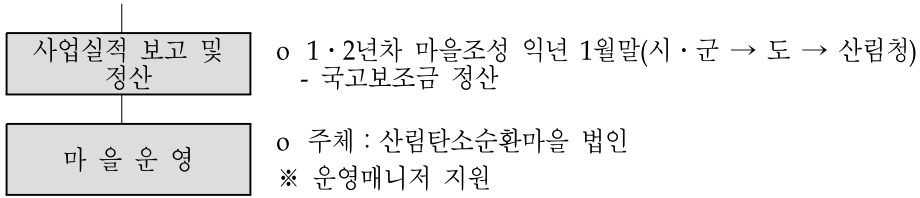
- '08.12 :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수립 (산림청)
- '08.12.22 : 산림자원의 순환이용 활성화에 대해 보고(농림수산식품부의 2009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시)
- '09. 1.20 : 「산림바이오매스의 순환 이용 확대(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가 국정과제로 선정 (제5차 국정과제 점검협의회)
- '09. 7 :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실행계획」에 따라 4개 부처가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추진 (대통령 보고)
  - \* 산림청(산촌형), 농식품부(농촌형), 행안부(도농복합형), 환경부(도시형)
- '09. 8 :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 방안에 관한 정책연구」 용역 추진
- '09. 11 :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계획 수립 및 '10년도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 대상지 공모·선정(경북 봉화 서벽리)

## □ '10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 ○ 사업 내용(신규사업)

- 사업 지원대상 :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특·광역시 및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4,052개 산촌마을
- 사업 규모(사업량) : 기본·실시설계 1개소('10년)
- 지원금액 및 형태 : 50억원 이내(1개소당), 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사업 주요내용 :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와 목재이용 확대를 통해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산촌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난방에너지 공급
  - 에너지 및 탄소저감을 위한 주택 단열 공사 등
  - 다리, 정자, 벤치, 방문자 센터, 이정표 등 목재를 활용한 공공시설의 건축·시설 설치(기존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 시도별 배분내역 : '10년~'11년까지 1개소씩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추진

### ○ 예산

- 사업기간 : '10년 ~ 계속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군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	-	-	-	-	-	-	-
2010	-	-	220	-	220	25	-	245
(증△감)	-	-	220	-	220	25	-	245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4개소	-	-	419	-	217	140	776
'10	1개소	-	-	2	-	-	-	2
'11	2개소	-	-	15	-	8	5	28
'12	10개소	-	-	44	-	17	10	71
'13	17개소	-	-	134	-	70	45	249
'14	24개소	-	-	224	-	122	80	426

< 6-3-2-1 : 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조성(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녹색미래전략과	담당자	장현경
전화번호	02-500-2441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국가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 증대 및 기후변화에 대처
- 특히, 농어촌 및 소도시의 경우 가축분뇨 등 바이오매스, 지열, 태양열 등 에너지 가용자원의 잠재력은 크나, 에너지 활용율은 극히 저조함에 따라
- 에너지 자립형 마을 조성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자원활용 제고 및 경제효과 극대화

○ 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구현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자립형 농촌 실현
  - 유기자원 순환형 저탄소 마을 구축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조성수	조성완료 검사조서 등 서류	개소	1

○ 사업 추진근거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4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이용,장려,육성 등)
- 2009. 7.6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 대통령 보고

-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계획과 농림수산계 바이오매스(농식품부) 및 폐자원계(환경부) 활용 계획 보고

\* 농식품부, 환경부, 행안부, 지경부, 국토부, 교과부, 산림청 공동 보고

— < 저탄소 녹색마을 추진방향 > —

- 각 부처별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10년 ~ '12년까지 시범사업 추진
  - 시범사업 중 우리부에서는 **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조성**

구 분	환경부	농식품부	행안부	산림청
마을 유형	도시형	<b>농촌형</b>	도·농복합형	산촌형

-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토대로 '20년까지 600개의 마을 조성 계획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개괄적으로 서술)

- 사업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마을) → 마을추천(시·군→시·도) → 대상마을 선정(농식품부) → 사업비 교부(농림부→시·도→시·군) → 사업시행 및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시·군 및 마을)

○ 사업 내용(신규사업)

- 사업지원대상 : 참여가구수가 30~50호 규모인 농촌마을
- 사업규모 : 농산 바이오매스 등을 활용한 “농촌형 에너지 자립 녹색마을 (‘20년까지 40개) 조성
- 지원금액 및 형태 : 국고보조사업(국비 50% · 지방비 40% · 자부담 10%)
- \*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 시설등에 대해 소관 부처 협력사업으로 추진
- 지원조건
  - 지자체 사업 공모를 통해 대상적지 심사를 거쳐 선정된 마을로서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시설 등의 설치 및 마을구성원의 참여의지 등이 우수한 마을

- 사업 주요내용

·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시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시설이 집약된 농촌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지원

- 시도별 배분내역 ('10년 녹색농촌체험마을 개소수-예시)

\* 지자체 사업공모를 통해 시범사업으로 1개소('10~'12) 선정 추진

○ 예산

- 사업기간 : '10년 - '20년(총11년)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40%, 자부담 1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9	-	-	-	-	-	-	-	-
2010	608				608	486	122	1,216
(증△감)								

\* 타 부처에서 지원되는 사업비 소요액은 제외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사업규모(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04				164	41	409
'10	설계(1개소)	6				5	1	12
'11	설계(1개소) / 시설(1개소 일부)	25				20	5	50
'12	시설(1개소 완료) / 시설(1개소 일부)	28				22	6	56
'13	시설(1개소 완료) / 설계(4개소) / 시설(4개소 일부)	89				72	18	179
'14	시설(4개소 완료)	56				45	11	112

## 7. 지역역량 강화

### 7-1. 지역발전 인적자원 확충

#### (1) 개관

##### □ '10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농어촌 주민과 마을 리더 등에 대한 전문 교육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하여 시행
  - '교육과정 개발 및 프로그램 검증' 용역 실시('10.3~11)
  - 교육 이수자 풀(pool)을 관리할 수 있는 DB 구축
- 체험지도사와 마을해설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농식품부가 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

##### □ 예산 내역

<2010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단계별·맞춤형 교육훈련 강화	1,073				1,073			1,073
역량 강화 교육품질 제고								예산없음
합계	1,073				1,073			1,073

##### □ '11년도 추진 방향

- '교육과정 개발 및 프로그램 검증' 용역 결과에 따라 맞춤형 교육 체계 수립 및 여건변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설·운영
- 인증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 쿠폰제 도입 검토



< 7-1-1 : 단계별 · 맞춤형 교육훈련 강화(농림수산식품부) >

\* 7-1-1-1, 7-1-1-2, 7-1-1-3 과제 통합

담당부서	농촌사회과	담당자	하지은(사무관)
전화번호	02-500-1821	이메일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어촌 주민과 마을 리더 등에 대해 전문 교육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도농교류 및 지역개발 리더로 육성

○ 사업추진방향

- 리더 양성 과정, 사업 동기화 과정, 사업 특화 과정 등 3개 과정 하에 교육 대상별로 특화된 8개의 세부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수준에 맞는 교육 시행
- 교육 이수자에 대한 풀(pool)을 구축하여 지자체 및 마을 등에 제공함으로써 향후 사무장 채용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교육이수자 수	교육 신청자 수 집계	명	3,200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한국농어촌공사 농산업 · 도농교류지원센터
- 사업추진절차 : 기본계획 수립(농식품부) → 시행계획 수립(농어촌공사) 및 승인(농식품부) → 세부사업 추진 및 결과보고(농어촌공사) → 사업비 정산(농식품부)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지역리더, 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
- 사업규모 : 3개 과정, 8개 세부과정(교육인원 총 3,200명, 교육회수 85회)
- 지원금액 및 형태 : 1,073백만원(국고 100%, 민간경상보조)
- 사업주요 내용
  - 도농교류 활성화 및 상향식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리더, 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에게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
  - '05~'10년까지 교육성과 및 체계를 점검하고 교육 수요자 니즈 중심의 중장기적 개선·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프로그램 검증' 용역 실시('10.3~11월)
  - 교육 이수자 풀을 관리할 수 있는 DB 구축

○ 예산

- 사업기간 : '05 ~ (계속)
- 재원형태 : 정액보조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9	1,230	-	-	-	1,230	-	-	1,230
2010	1,073	-	-	-	1,073	-	-	1,073
(증△감)	△157	-	-	-	△157	-	-	△157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교육과정 개발 및 프로그램 검증' 용역 결과에 따라 맞춤형 교육 체계 수립 및 여건변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설·운영

○ 교육 이수자의 교육이력을 관리하는 학적관리, DB 구축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9,200	59	-	-	-	-	-	59
'10	3,200	11	-	-	-	-	-	11
'11	4,000	12	-	-	-	-	-	12
'12	4,000	12	-	-	-	-	-	12
'13	4,000	12	-	-	-	-	-	12
'14	4,000	12	-	-	-	-	-	12

< 7-1-2 : 역량강화 교육 품질 제고(농림수산식품부) >

\* 7-1-2-1(우수민간교육기관육성)과 7-1-2-2(교육쿠폰제 도입)을 과제 통합에 따라 과제명 변경

담당부서	농촌사회과	담당자	하지은(사무관)
전화번호	02-500-1821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체험지도사와 마을해설가 등 도농교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우수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 활성화
-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 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다양화함으로써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의 품질 제고

○ 사업추진방향

- 인증 신청기관·단체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른 요건을 검토(필요시 전문가 의견 수렴)하여 요건 구비 시 신속한 인증 추진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인증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수	인증기관 개수 집계	개	5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 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및 체험지도사, 마을해설가 교육과정 인증에 대한 운영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09-386호)”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인증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인증절차 : 인증신청(기관·단체) → 인증심사(농식품부, 전문가) → 인증서 발급(농식품부→기관·단체)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주요 내용

- 농어촌 방문 시 체험활동을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마을의 자원에 대해서 해설해 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농어촌 체험 인프라가 활성화 되지 못함
- 체험지도사와 마을해설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농식품부가 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을 통해 공식기관으로 인정

○ 예산 : 별도 예산 없음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인증 제도 및 기 인증받은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인증 신청 장려
- 인증기관이 배출한 교육 이수자에 대해서는 그 DB를 지자체 및 마을에 제공하여 활용하도록 장려
- 인증된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 쿠폰제 도입 검토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5	-	-	-	-	-	-	-
'10	5개소	-	-	-	-	-	-	-
'11	5	-	-	-	-	-	-	-
'12	5	-	-	-	-	-	-	-
'13	5	-	-	-	-	-	-	-
'14	5	-	-	-	-	-	-	-

## 7-2. 지역발전 컨설팅 강화

### (1) 개관

#### □ '10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지역개발 우수 컨설팅 기관 인증제 도입 추진
  - 컨설팅 품질제고 및 수요자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컨설팅업체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우수기관으로 인증
- 농어촌정비계획 수립의 전 과정을 진행·조정할 수 있는 총괄계획가 제도 도입
  - '09.6월 관련법 개정 및 12월 시행

#### □ 예산 내역

<2010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지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지역개발 컨설팅기관 인증제 도입								(해당없음)
농어촌지역개발 총괄계획가 제도 도입								(해당없음)
합계								

#### □ '11년도 추진 방향

- 우수컨설팅 기관 인증제 '10년 중 평가시스템 개발, '11년부터 적용 추진
- 총괄계획가 제도를 지방자치단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7-2-2-1> 농어촌지역개발 총괄계획가 제도 도입(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김동권(서기관)
전화번호	02-500-1804	이메일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어촌정비계획 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조정할 수 있는 총괄계획가 제도 도입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수립에 기여

○ 사업추진근거

- 농어촌 정비법 제54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 총괄계획가 자격요건 등(농어촌정비법시행령제52조)

- 위촉자 : 시장·군수
- 자격요건 : 농어촌계획·지역개발 관련 학과 교수, 박사·기술사로 경력이 7년 이상, 전문지식등을 겸비하여 시장군수가 인정
- 업무수행 : 계획수립과정의 총괄·진행 및 계획의 주요내용 검토·조정
- 운영기간 : 정비개발계획의 승인·마을정비구역의 지정 받기전
- 보수 등 : 시·군 조례로 정함

'10년도 추진계획

- 지방자치단체가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 7-3. 지역발전 네트워크 강화

#### (1) 개관

##### □ '10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농어촌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사업의 발굴, 계획수립, 모니터링 등 지역개발에 참여케 함으로써 지역주도의 상향식 지역개발정책 추진
  -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구성을 위해 '농림어업인삶의질 특별법' 개정 중
-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을 통해 농어촌 지역개발정책 전문가의 역할과 실질적 참여 방안 등을 논의하여 전국단위 지역개발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
- 농어촌체험마을 자원조사를 기반으로 체험여행상품을 발굴·개발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웰촌포탈 활성화, 온·오프라인 홍보 프로모션 추진

##### □ 예산 내역

<2010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지역발전협의회 구성								비예산 사업
전국단위 지역개발 네트워크 구축								비예산 사업
농어촌 개발 포털사이트 확충	1,795				1,795			1,795
합계	1,795				1,795			1,795

##### □ '11년도 추진 방향

- 법개정이 완료되면 지자체에 협의회 구성을 권고하고, 각종 평가시 구성여부를 평가항목 등에 반영할 계획
- 도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내실화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콘텐츠 및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통해, 도시민의 농촌 정주 촉진과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포털사이트로서의 위상 정립



< 7-3-1-1 : 지역발전협의회 구성(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이수열(사무관)
전화번호	02-500-1806	이메일	

□ 개요

○ 필요성

- 중앙주도의 지역발전전략을 탈피하고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등 광역화, 특성화를 기조로 하는 지역주도의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이 대두
- 지역개발관련 회계제도도 지역에서 관련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포괄보조제도로 전환(광특회계) 되는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역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는 등 정책추진여건이 급변
- 또한, 지역개발 등에 있어 지역주민, 관련 단체 등의 사업계획, 추진과정에 전방위적인 참여가 강화되면서 관련주체의 발전역량강화가 매우 중요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지침에서 시장·군수가 '마을개발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의 예비계획 수립을 자문 및 지원토록 하고 있고, 신활력사업 등 광특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위는 기존의 지역혁신자문관(Family Doctor)제도를 흡수하는 지역협력단을 권고하고 있음
- EU의 경우 농촌지역 주민들의 지역개발 역량 강화를 위하여 LEADER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음

○ 기대효과

- 지역주도, 지역자율의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개발 등 관련 사업추진 시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의 발굴, 사업계획 수립, 사업 모니터링 등에 참여케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지역 특성에 기반한 상향식 지역개발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또한, 지역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리더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 '10년도 추진계획

### ○ 법개정 추진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8조의 2조항 신설을 위해 법개정 중

⇒ 관련법 개정을 위해 상임위 소위 회부(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목표)

**제38조의2(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제38조에 따른 농어촌 지역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역 주민
2. 관계 공무원
3. 지역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 예산 : 비예산사업

##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법개정이 완료되면 지자체에 협의회 구성을 권고하고, 각종 평가시 구성여부를 평가항목 등에 반영할 계획

< 7-3-2-1 : 전국단위 지역개발 네트워크 구축(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이수열(사무관)
전화번호	02-500-1806	이메일	

□ 개요

○ 필요성

-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포괄보조사업 계획수립, 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평가 등에 지역개발 관련 전문가 적극 참여 필요

○ 기대효과

- 지역개발 전문가 등이 사업의 발굴, 사업계획 수립, 사업 모니터링 등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지역 특성에 기반한 상향식 지역개발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또한, 지역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리더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10년도 추진계획

○ (가칭) 농어촌지역정책포럼 구성 : '10년 하반기

- 농어촌정책 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정책 전문가의 역할과 실질적 참여 방안 등 논의 (정기적인 워크숍 등 개최)

< 7-3-3-1 : 농어촌개발 포털사이트 확충(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농촌정책과	담당자	이태용(사무관)
전화번호	02-500-1813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어촌 체험관광 및 도시민의 농촌 이주·정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
- 농어촌체험마을을 중심으로 주변의 관광명소, 축제, 문화자원들과 연계하여 우수상품을 개발·보급
- 농가소득 증대 기여 및 농어촌관광 활성화 증진
- 도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내실화된를 제공하여 웰촌포털 활성화에 기여

○ 사업추진방향

- 우수 체험여행 상품개발 보급, 홍보채널 확대 등으로 농가소득 증대 기여
  - 체험 프로그램, 지역 명소와 연계한 체험여행상품 개발
  - 체험여행상품 전시·판매, 예약기능 강화 등 포털 기능개선 추진
- 지속적인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를 통해 고객중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최적의 서비스 제공
- 사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차별화, 전문화된 콘텐츠를 확충·공급함으로써 정보 제공 충실화를 통한 웰촌 활성화 기여
-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홍보 추진으로 지속적인 포털 인지도·만족도 제고 및 포털 이용 활성화 도모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36조, 37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 □ '10년도 추진계획

### ○ 사업 내용

#### - 마을 자원조사를 기반으로 체험여행상품 발굴 및 개발

- 다양한 조사방법을 통한 인적, 물리적 마을자원의 발굴 및 개발
- 소비자 선호조사 및 여행상품 평가·분석을 통한 성공요인 전파
- 체험여행 상품정보를 기반으로 GIS 지도서비스, 투어맵 연계

#### - 웰촌포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확충

-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한 신문화공간조성, 농촌휴양관광, 농촌활력증진 등과 관련한 정보제공 확충 및 보완
- 농어촌 정주에 성공한 분들이 농어촌 생활을 하면서 보고 느낀 이야기를 게재하는 '그린리포터' 운영
- 체험마을 중심으로 체험여행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여행 전문가 운영 및 전담 인력 운용
- 알기 쉽고 생동감 있는 전원생활 정보 제공을 위한 동영상 제작
- 웰촌포털에 등재되어 있는 체험마을에 대한 콘텐츠 확충

#### -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프로모션

- 웰촌 회원가입 유도 및 재방문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추진
- 평가 및 만족도 조사 추진을 통한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 고객 노출빈도가 높은 대형 포털 배너 및 키워드 검색 광고
- 웰촌포털 홍보를 위한 리플렛 및 기념품 제작 등
- 농어촌경관사진 콘테스트, 도시민 농촌유치종합홍보 추진
- 도시민 유치 평가 모니터링 실시

#### - 웰촌포털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유지관리

- DB, 솔루션 등 S/W, 서버, 장비 등 H/W 유지관리

- 시스템 유지보수 및 전용회선 사용 등 지속적인 서비스 관리

- 최적의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다각도 지원

- 최적의 인터넷 서비스 속도 유지를 위한 전용회선(100Mbps) 사용
-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문자서비스 및 도메인 유지 관리

○ 예산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9	2,960	-	-	-	2,960		-	2,960
2010	1,795		-	-	1,795		-	1,795
(증△감)	△1,165		-	-	△1,165		-	△1,165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도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내실화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콘텐츠 및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통해, 도시민의 농촌 정주 촉진과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국내 유일의 포털사이트로서의 위상 정립

	사업규모 (명,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0						110
'10	-	18				-	-	18
'11	-	19				-	-	19
'12	-	21				-	-	21
'13	-	24				-	-	24
'14	-	28				-	-	28

## 7-4. 도시민 및 귀농인력 활용 강화

### (1) 개관

#### □ '10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시·군이 자체 '도시민농촌유치 지원계획' 수립 및 유치활동 추진시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비용 지원(22개 시군, 선정된 시·군당 3년간 5~6억원 이내)
- 도농 인재 매칭시스템을 마련하여 일손돕기 등 봉사활동 활성화를 유도하고 도시민 일자리 창출도 도모
  - 농어촌지역에 관심있고 일하고자 하는 도시민(기술자 및 단체, 농작업인력 등) 또는 귀농·귀촌인을 농어촌 마을·단체 등과 연계해주는 중개제도

#### □ 예산 내역

<2010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시군의 도시민 유치활동 지원	1,500		-	-	1,500	1,500	-	3,000
도농 인재 매칭시스템 구축								비예산 사업
합계	1,500				1,500	1,500		3,000

#### □ '11년도 추진 방향

- 인구감소로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의 적극적인 도시민 유치 활동을 지원하여 도농교류 활성화 유도 및 시·군의 활력증진 유도
- 도시민이 보유한 지식, 기술이 농어촌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관별 시스템 현황 파악 후 연계시스템 구비

< 7-4-1-1 : 시군의 도시민 유치활동 지원(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농촌사회과	담당자	이명남(사무관)
전화번호	02-500-1817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인구감소로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의 도시민유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민 농촌유치프로그램 지원
- 이주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및 지역사회단체의 전문인력 활용 등 자발적 참여 유도

○ 사업추진방향

- 도시민이 농촌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도농간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현지 사정이 밝은 시·군이 자체적으로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을 통해 이주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시·군의 사회단체·교육기관 등 지역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목표치
도시민 농어촌 정주유도	지자체 행정조사	가구	600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시·군) → 대상 시·군 선정(전문가심의위원회) → 기본계획수립 및 승인(시·군 → 도(승인) → 농식품부(결과보고)) → 1년차 시행계획수립 및 승인(시·군 → 도(승인) → 농식품부(결과보고)) → 사업결과보고 및 평가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도농복합 시·군(수도권 및 광역시는 제외)
- 사업규모 : 22개 시·군('10년)
- 지원금액 및 형태 : 시·군당 3년간 5~6억원 이내(국비50%, 지방비50%)
  - 신규추진 시·군(5억원) - 1년차 1억원, 2년차 2억원, 3년차 2억원
  - 계속추진 시·군(6억원) - 1년차 2억원, 2년차 2억원, 3년차 2억원
- 사업 주요내용
  - 도시민이 농촌에 성공적으로 이주·정착할 수 있도록 시·군이 자체 '도시민농촌유치 지원계획' 수립 및 유치활동 추진시 중앙정부에서 비용 지원
  - 지자체에서 도시민 이주·정착지원을 위해 지역사회단체, 교육기관, 마을 등과 협의하여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계획'을 수립한 시군을 선정후 지원
  - 도시민을 위한 정주공간조성으로는 전원마을조성, 농촌마을종합개발 등 하드웨어부분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소프트웨어 위주로 추진하되, 지자체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하드웨어 부분도 지원
- 시도별 배분내역

(단위 : 개소수)

계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2				3	1	1	6	8	3		

○ 예산

- 사업기간 : '07년 ~ 계속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9	2,000		-	-	2,000	2,000	-	4,000
2010	1,500		-	-	1,500	1,500	-	3,000
(증△감)	△500		-	-	△500	△500	-	△1,000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인구감소로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의 적극적인 도시민 유치활동을 지원하여 도농교류 활성화 유도 및 시·군의 활력증진 유도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2	123				123		246
'10	22	15				15		30
'11	24	23				23		46
'12	26	25				25		50
'13	30	30				30		60
'14	30	30				30		60

< 7-4-2-1 : 도농 인재 매칭시스템 구축(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농촌사회과	담당자	이태용(사무관)
전화번호	02-500-1813	이메일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작업 등 농어촌에 관심 있는 도시민(기술자, 예술가, 농작업 인력 등)의 인력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함으로써 농어촌 활력화 도모

○ 사업추진방향

- 도농교류 5개년 계획('09.12)의 도시인력 활용방안과 연계 추진
- 농협과 농촌사랑운동본부 등 우리부 유관기관이 소유한 자원봉사 및 인력 현황 파악을 통해 도시인력 활용방안 및 시스템 구축
- 시·도의 유휴 도시민 활용 농작업 인력지원을 통한 도시민 일자리 창출 도모

○ 사업추진근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10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농림수산식품부, 농협,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 내용

- 사업지원대상 : 도시민, 농어촌주민 등
- 사업 주요내용
  - 농어촌 지역에 관심 있고 일하고자 하는 도시민(기술자 및 단체, 농작업인력 등) 또는 귀농·귀촌인을 농어촌 마을·단체 등과 인세해주는 중개제도를 마련하여 일손돕기 등 봉사활동 활성화를 유도하고 도시민 일자리 창출도 도모
  - \* 도시지역 유휴인력 모집과 지원으로 농작업 일자리 창출
  - \* 도시지역 자원봉사자를 통한 농어촌지역 복지·의료·교육 등 지원

○ 예산 : 비예산사업

□ '11년도 사업 기본방향

- 도시민이 보유한 자원(지식, 기술 등)이 농어촌에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는 기관별 시스템 및 현황과약 등 연계시스템 구비
  - 도시민인력지원시스템 마련으로 농어촌의 필요인력 수급 확충
- 도시민 인력활용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 마련

2010년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

2010년 6월 일 인쇄

2010년 6월 일 발행

발행처 : 농림수산식품부  
(427-71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www.mifaff.go.kr](http://www.mifaff.go.kr)

인쇄처 : 비전기획 (02-504-1555)

---